



## I. 돼지고기이력제 개요 ..... 1

- 1. 이력제 정의 ..... 3
- 2. 돼지고기이력제 개념 ..... 4
- 3. 도입 배경 ..... 4
- 4. 해외 사례 ..... 5
- 5. 기대 효과 ..... 6

## II. 돼지고기이력제 추진 현황 ..... 7

- 1. 추진 경과 ..... 9
- 2. 추진 체계 ..... 11
- 3. 사업시행 주체별 역할과 기능 ..... 19
- 4. 돼지 및 돼지고기 관련 통계 ..... 20

## III.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관리 요령 ..... 23

- 1. 사육단계(종돈) ..... 25
- 2. 사육단계 (비육돈) ..... 44
- 3. 도축단계 ..... 59
- 4. 포장처리 단계 ..... 71
- 5. 판매단계 ..... 79
- 6. 묶음번호 관리요령 ..... 86
- 7. DNA 동일성 검사 ..... 89

## IV.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관련 지침요령 ..... 93

- 1. 농장식별번호 부여 및 관리요령 ..... 95
- 2. 사육단계 전산신고 요령(한돈팜스 VS 이력관리시스템) ..... 113
- 3. 이력번호 자동표시기 관리요령 ..... 120



## V. 단계별 질의응답 ..... 127

1. 사육단계 (종돈·비육돈) .....	129
2. 도축단계 .....	138
3. 포장처리 단계 .....	140
4. 판매단계 .....	148
5. DNA 동일성 검사 .....	154
6. 위반자 처분 .....	156
7. 기타 질문 등 .....	161

## VI. 참고자료 ..... 165

1. 돼지고기이력제 관련 기관·단체 연락처 .....	167
2. 돼지고기이력제 시·도 담당 부서 연락처 .....	168
3. 축산물품질평가원 지원별 연락처 .....	169
4. 돼지고기 위탁기관(한국종축개량협회) 연락처 .....	170

## VII.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 171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173
• 시행령 별표 .....	249
• 시행규칙 별표 및 별지서식 .....	257



I

## 돼지고기이력제 개요

1. 이력제 정의
2. 돼지고기이력제 개념
3. 도입 배경
4. 해외 사례
5. 기대 효과





## 1

## 이력제 정의

- 이력제는 Traceability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추적 또는 소급 가능성을 의미하며, 적용 대상별로 품목 특성에 맞는 사항이나 범위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음
  - 이력제에 대한 정의를 국가 또는 법령에 따라 일부 달리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내용은 거의 유사함
    - EU 식품법 : 식품, 사료, 식품으로 가공된 동물, 가공식품 및 사료의 원료가 되거나 될 것이 예상되는 물질에 대하여, 생산, 가공 및 유통의 모든 단계를 추적하고 역으로 조사할 수 있는 능력으로 규정
    - 일본 쇠고기 생산이력제 : 국내산 쇠고기의 생산, 처리·가공, 유통·판매의 각 단계에서 쇠고기와 그 정보를 추적하고, 또한 소급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
    - Codex 특별위원회(바이오테크놀로지 유래식품에 관한 특별위원회) : 식품시장에 있어서의 모든 단계에 관한 적절한 정보의 연속적인 흐름을 보증하는 시스템이라고 정의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농수산물을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안전성 등에 문제 발생시 추적하여 원인규명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라고 규정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 “이력관리”란 가축의 출생·수입 등 사육과 축산물의 생산·수입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함으로써 가축과 축산물의 이동경로를 관리하는 것이라고 규정
- ※ Traceability : Trace(기록, 흔적)와 Ability(가능, 능력)를 합친 말로 “추적가능” 또는 “추적능력”으로 해석하며 Traceability를 이력제(이력추적)라고 사용하고 있음

## 2

## 돼지고기이력제 개념

- ❑ 돼지와 돼지고기의 거래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 문제 발생시 이동경로에 따라 역추적하여 신속한 조치를 가능하게 하고 판매시 이력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를 안심시키는 제도

### ○ 생산이력 관리

- 농장별로 농장식별번호 부여, 사육현황 정기신고, 도축출하를 포함하여 농장간 이동신고 및 농장식별번호 표시 등

※ 농장식별번호 : 이력관리대상가축을 기르는 사육시설(이하 "가축 사육시설"이라 한다)을 식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가축사육시설마다 부여하는 고유번호

### ○ 유통이력 관리

- 도축단계 이력번호 표시, 포장처리시 농장별 구분 포장처리 원칙하에 농장 간 혼합이 있는 경우는 묶음번호로 관리하고, 돼지고기의 유통·판매시 이력(묶음)번호를 표시 등

※ 이력번호 : 도축이후 돼지고기의 이력을 식별하기 위해 도축단계에서 농장식별번호, 도축일자, 도축장, 도축신청인 등을 고려하여 국가가 부여하는 12자리 식별번호

## 3

## 도입 배경

- ❑ 사육에서부터 판매까지 거래 단계 정보를 기록·관리함으로써 가축질병 등의 문제가 발생 시 이력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 시 회수·폐기 등의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기 위해 도입

- 돼지의 이동경로 파악이 가능하고 유통되는 모든 국내산 돼지고기에 대한 사육농가·농장 소재지·도축일자·도축검사결과 및 포장처리업소의 정보가 소비자 등에게 공개

- ❑ 가축방역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국내산 돼지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돼지고기이력제 도입

## 4

## 해외 사례

구 분		캐나다	덴마크	네델란드	한국
주관기관		Canadian Pork Council	수의식품청	가축 및 육류생산위원회	축산물품질평가원
실시근거		Regulation of the Health of Animal Act	EU식품관련법178조 (178/2002)로 의무화	EU식품관련법178조 (178/2002)로 의무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작 연도	생산단계	2014년 7월	2005년1월부터 의무시행	2005년1월부터 의무시행	2014년 12월28 2015년 6월28
	유통단계				
추진 체계	국가 DB관리	CLIA (Canadian identification agency)	CHR (Central Husbandry register)	I&R (identification and registration)	농림축산식품부 (축평원)
	이표장착	문신(종돈은 귀표장착)	개체별 장착이 기본이나 예외 인정	이동시 개체별 장착	농장식별번호 표시 (종돈: 귀표, 입목, 이각)
	자료입력 주체	농가 및 소유권자	농가 또는 (대행)입력사무소	I&RVL Bureau	농장고에 가하여 축평원, 한돈협회 등에서 입력
	지도감독	식품검역원 (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	수의식품청 덴마크농업지도센터	식품및소비재 안전청, 축산물 생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시·도, 농관원
식별 방법	식별단위	농장, 종축은 개체	농장, 종축은 개체	기본적으로 개체, 농장병행	농장단위 종축은 개체
	식별번호	농가번호(4)+지역번호(1)	12자리(농가번호(6)+출하일자(6))	농가(7자리)+ 개체번호(13)	농장식별번호(6자리) 이력번호(12자리)
	증명서	-	-	차량운송장	돼지열병·구제역예방 접종증명서
RFID 적용계획		비용문제로 보류함	도축가공장 적용	도축가공장 적용	비용문제로 보류
유통단계 라벨표시		해당 없음	EU 라벨법에 근거	EU 라벨법에 근거	이력번호 또는 묶음번호 표시
인터넷 등에 의한 정보제공		소비자를 위한 자료제공은 현재 고려하지 않음	기본정보제공 약품, 질병정보는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제공	도매용 정보제공	사육, 도축, 포장처리 정보 제공
DNA동일성검사 및 사후인증체계		국가차원의 DNA 동일성검사 검토 않음	DNA동일성 검사 않음	DNA동일성 검사 않음	DNA동일성 검사 실시

※ 출처 : 농식품 이력관리체계 확대 및 활성화 방안 연구 (201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National pig traceability becomes mandatory (2014.3)자료를 참고하여 재작성

- 문제발생시 신속한 추적 및 조치로 방역의 효율성 제고
  - 생산·출하 등의 정보를 통해 상시 방역관리 지원이 가능하고, 가축질병 발생시 동 정보를 활용하여 원인규명과 방역조치에 기여함으로써 한돈농가의 피해를 최소화
- 돼지고기에 대한 유통 투명성 확보로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통한 한돈산업 발전에 기여
  - 이력관리를 통해 국내산 돼지고기와 수입산과의 차별화가 가능하여 국내 한돈 산업의 경쟁력 강화
- 국내 한돈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
  - 이력번호 단위로 거래내역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유통경로의 투명성을 높이고 원산지 허위표시 등 둔갑판매 방지로 국내산 돼지고기의 소비 확대에 기여



## 돼지고기이력제 추진 현황

1. 추진 경과
2. 추진 체계
3. 사업시행 주체별 역할과 기능
4. 돼지 및 돼지고기 관련 통계





#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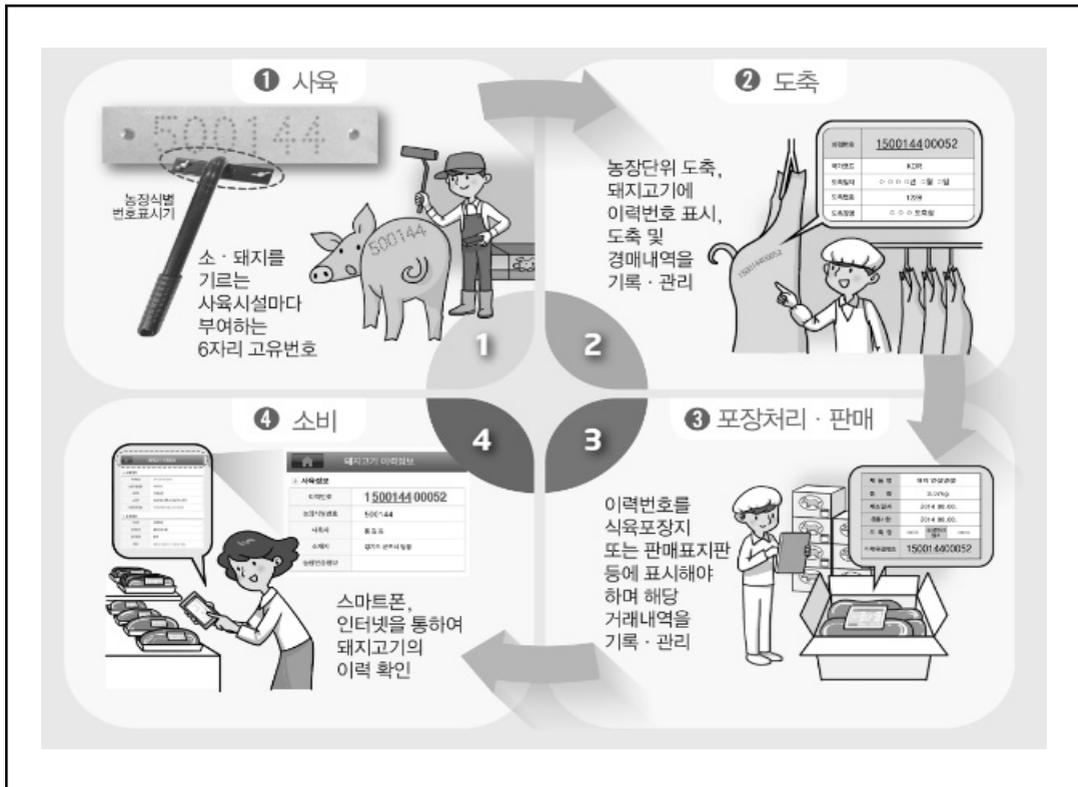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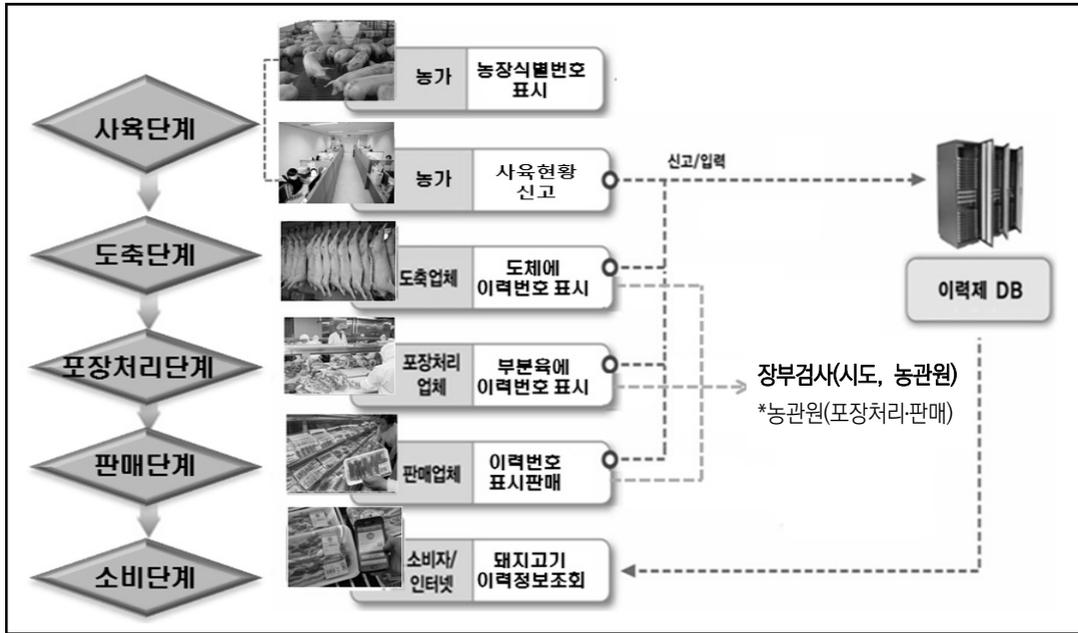
## 추진 경과

- ❑ 이력관리시스템의 등록정보를 통해 돼지 질병 발생시 신속한 방역지원 및 소비자 신뢰제고를 위한 시범사업 실시요구(총리실, '10.6월)
- ❑ “농장단위 돼지이력제”도입 추진방안 수립(축산업선진화대책, '11.5월)
- ❑ 돼지고기이력제 도입을 위한 실무협의회 개최('11.5~11월)
  - 돼지고기이력제 시범사업 가이드라인 및 이력법률 개정안 마련
- ❑ 돼지고기이력제 해외 추진 사례 조사('11.12월)
  - 네덜란드와 독일의 돼지고기이력제 추진 사례 조사
- ❑ 2012년도 돼지고기이력제 시범사업 추진계획 수립('11.12.27)
  - 1유형(사육~판매), 2유형(사육~도축)
- ❑ 돼지고기이력제 시범사업 설명회 개최('12.2.6)
  - 대상 : 이력제 담당 지자체 공무원 및 브랜드 경영체 실무자
- ❑ 사업 유형별 시범 사업 참여업체 16개소 선정('12.5.11) 및 실시('12.10월)
  - 대상 : 제1유형(7개소), 제2유형(9개소)
- ❑ 돼지고기 이력관리시스템 시범사업 실시('12.9월)
  - 사육, 도축단계(9.5), 유통단계(9.12)
- ❑ 돼지고기이력제 시범사업 시행('12.10.30)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법률안 국회(윤명희 의원 발의) 상정('13.3월)
- ❑ 돼지고기이력제 도입을 위한 공청회 개최('13.7.18)
  - 양돈업계, 시민단체, 연구기관 등 120여명 참석 => 도입 필요성 공감

- 종돈의 이력관리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13.8.5)
  - 종돈의 이력제 도입여부 및 이력관리 범위 등 검토
- 종돈의 이력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협의회('13.10.21)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13.12.27, 시행 : '14.12.28)
- 종돈의 이력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실무협의회('14.2.12)
  - 종돈이력제 시범사업 요령 검토
- 돼지고기이력제 시범사업 확대계획 알림('14.3.4)
  - 시범사업 3년차 확대 계획 통보
- 종돈의 이력관리 시범사업 대상업체 15개소 선정('14.4.5)
- 하위법령 개정을 위한 실무(포장처리업소, 판매업소 등) 협의회('14. 1~7월) 8회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입고예고('14.7.15)
  - 실무협의회 등 의견수렴(안) 반영하여 입법 예고
- 부패영향 평가, 통계기반정책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행정서식 승인('14.9~11)
- 총리실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통해 관보게재·공포
- '14.12.28. 돼지고기이력제 전면 시행
- '15.6.28. 포장처리·거래내역 전산신고 유통단계 전면시행
  -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취급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식육포장처리업소 및 판매업소의 포장처리 거래(매입·매출)실적을 이력관리시스템에 신고

## 2

## 추진 체계



## 가 주요내용 요약



- 사육현황 신고 :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익월 5일 이내  
(공휴일 토요일 제외)
- 이동신고 : 돼지의 이동(거래 등)일로부터 5일 이내
- 농장식별번호 표시 : 농장간 이동 및 도축 출하 시  
※ 종돈의 경우 출생신고(종돈 위탁기관) 및 개체식별번호 관리



- 농장식별번호 표시 확인 : “돼지열병 및 구제역 예방접종 확인서” 등 기록사항과 돼지표시 사항 일치 여부
- 이력번호 발급 및 표시 : 도축 전 이력번호 신청 발급 및 이력번호 표시
- 도축처리 결과 전산신고 : 도축(경매) 결과 전산신고



- 매입·포장처리 실적, 거래내역 기록·관리  
- 전산신고 의무대상자 전산신고(5일 이내)
- 이력(묶음)번호 표시 : 포장육의 최소 단위 용기 및 포장에 동일한 이력번호 표시  
- 거래내역 증명서(영수증 등) 이력(묶음)번호 표시



- 매입, 거래내역 기록·관리  
- 전산신고 의무대상자 전산신고(5일 이내)
- 이력(묶음)번호 표시 판매 : 식육판매 표시판 등에 표시  
- 구매자가 요구할 경우 이력(묶음)번호를 기재한 영수증, 거래명세서 등 교부



- 이력(묶음)번호 조회  
- 인터넷([www.mtrace.go.kr](http://www.mtrace.go.kr)) 또는 스마트폰(축산물이력정보 어플리케이션)  
- 사육·도축·포장처리 정보 등 확인 가능



## 나 사육단계

- (사육단계 이력관리 흐름) 월별사육현황신고, 다른 사육시설로 이동 및 도축 출하 시 돼지의 엉덩이에 농장식별번호 표시(종돈의 경우 귀표 등에 개체식별번호 표시) 및 이동 신고
- 사육단계 이력관리 요령

구분	주요업무																		
<p><b>월별 사육현황신고</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돼지 사육시설의 농장경영자는 매월 마지막 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5일이내에 돼지의 종류(일반종, 재래종, 멧돼지), 사육두수(모돈, 후보돈, 웅돈, 자돈, 육성돈, 비육돈)를 이력관리시스템에 신고(공휴일, 토요일 제외)</li> </ul>																		
<p><b>이동(도축출하 포함)신고, 농장식별번호 표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돼지를 양도·양수하거나 가축사육시설에서 다른 가축사육시설로 이동시킨 경우 이동신고서(농장식별번호(양도·양수), 경영자의 성명, 이동일자, 이동두수 포함)를 이력관리시스템에 신고</li> <li>• 돼지를 도축하기 위하여 출하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에 따른 돼지열병·구제역 예방접종확인서에 신고내역이 포함된 경우 이동신고서로 대신할 수 있음</li> </ul> <div data-bbox="571 1169 1124 1491" style="text-align: center;"> <table border="1" style="margin: 0 auto;"> <caption>제1호 돼지열병·구제역 예방접종확인서</caption> <tr> <td>농장 식별번호</td> <td>800144</td> <td>주소</td> <td>경기도 광명시</td> <td>면적</td> <td>157-2833</td> </tr> <tr> <td>대표자</td> <td>홍길동</td> <td>직업</td> <td>1,000㎡(100㎡) 이상(1.3천㎡)</td> <td>등록번호</td> <td>1000000000000000000</td> </tr> <tr> <td></td> <td></td> <td>주수</td> <td></td> <td>확립년월일</td> <td>2000</td> </tr> </table> </div>	농장 식별번호	800144	주소	경기도 광명시	면적	157-2833	대표자	홍길동	직업	1,000㎡(100㎡) 이상(1.3천㎡)	등록번호	1000000000000000000			주수		확립년월일	2000
농장 식별번호	800144	주소	경기도 광명시	면적	157-2833														
대표자	홍길동	직업	1,000㎡(100㎡) 이상(1.3천㎡)	등록번호	1000000000000000000														
		주수		확립년월일	2000														

- (기록관리, 신고) 농장식별번호는 농장단위로 부여한 후 기록, 종돈의 등록·사신고, 종돈 이동신고(개체식별번호), 종돈이외의 돼지의 이동신고(농장식별번호), 월별 사육현황신고 등을 이력관리시스템에 신고

## 다 도축단계

- (도축단계 이력관리 흐름) 농장식별번호확인, 이력번호 발급, 지육에 이력번호 표시, 도축검사증명서 및 등급판정확인서에 이력번호 기재, 도축처리(경매)결과 전산신고

※ 농장식별번호가 표시되지 않은 돼지는 도축금지

- 도축단계 이력관리 요령

구분	주요업무																									
농장식별번호 표시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돼지열병·구제역 예방접종확인서에 기록된 농장식별번호와 돼지에 표시된 사항 일치여부</li> <li>※ 농장식별번호가 없는 돼지는 도축 금지</li> </ul>																									
이력번호 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장식별번호 및 출하두수 확인 후 돼지고기 이력관리시스템에서 발급</li> </ul>																									
이력번호 표시 및 증명서 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돼지도체에 이력번호 표시</li> <li>• 도축검사증명서 및 등급판정확인서에 이력번호를 기재하여 발급</li> <li>• 영수증 또는 공급명세서 등에 이력번호를 기재하여 발급</li> </ul>																									
도축처리(경매) 결과 전산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축(경매) 결과를 돼지고기 이력관리시스템에 완료된 날에 신고</li> <li>-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의 다음 날까지 신고</li> </ul>																									
이력번호 표시(예시)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caption>축산물 공급명세서</caption> <thead> <tr> <th>구분</th> <th>품목</th> <th>이력번호</th> <th>도체 번호</th> <th>낙할 일자</th> </tr> </thead> <tbody> <tr> <td>1</td> <td>국내산 돈_암</td> <td>150014400052</td> <td>1001</td> <td>2014.12.28.</td> </tr> <tr> <td>2</td> <td>국내산 돈_암</td> <td>150014400052</td> <td>1005</td> <td>2014.12.28.</td> </tr> <tr> <td>3</td> <td>국내산 돈_거세</td> <td>150014400052</td> <td>1007</td> <td>2014.12.28.</td> </tr> <tr> <td>4</td> <td>국내산 돈_암</td> <td>150014400052</td> <td>1010</td> <td>2014.12.28.</td> </tr> </tbody>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이하역백</p>	구분	품목	이력번호	도체 번호	낙할 일자	1	국내산 돈_암	150014400052	1001	2014.12.28.	2	국내산 돈_암	150014400052	1005	2014.12.28.	3	국내산 돈_거세	150014400052	1007	2014.12.28.	4	국내산 돈_암	150014400052	1010	2014.12.28.
구분	품목	이력번호	도체 번호	낙할 일자																						
1	국내산 돈_암	150014400052	1001	2014.12.28.																						
2	국내산 돈_암	150014400052	1005	2014.12.28.																						
3	국내산 돈_거세	150014400052	1007	2014.12.28.																						
4	국내산 돈_암	150014400052	1010	2014.12.28.																						

- (기록관리, 신고) 도축업경영자는 도축신고, 경매결과, 도축검사결과 및 등급판정결과를 돼지고기이력관리시스템에 전산신고

## 라 포장처리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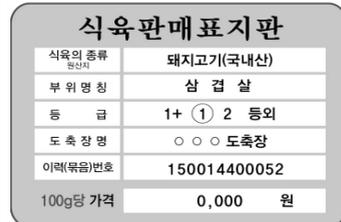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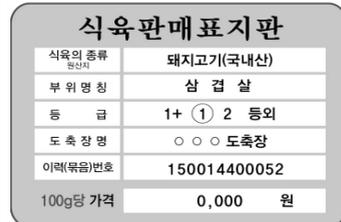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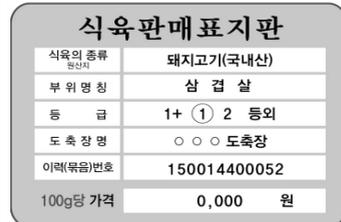
- (포장처리단계 이력관리 흐름) 지육에 표시된 이력번호표시 확인, 이력번호별 포장처리, 포장지에 이력번호 표시, 포장처리실적신고(장부관리), 거래실적 신고, 거래명세서 또는 영수증에 이력번호 표시
- 식육포장처리업소 이력관리 요령

구분	주요업무																																																				
매입실적 기록·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입실적(이력·묶음번호 포함) 기록·관리</li> <li>※ 전산신고 의무대상자 : 이력관리시스템에 매입 후 5일 이내 신고</li> </ul>																																																				
포장처리·포장지 표시 단일 농장 : 이력번호 여러 농장 : 묶음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돼지고기를 이력번호 단위로 구분·가공, 등외등급 별도 포장</li> <li>- 이력번호가 다른 여러 개를 하나로 포장할 경우 묶음번호 사용</li> <li>- 포장육의 최소 단위의 용기·포장에 대하여 동일한 이력번호로 표시</li> <li>※ 이력번호 표시(단일농장), 묶음번호 표시(여러 농장)</li> </ul>																																																				
포장처리·판매반출 실적 기록·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포장처리·판매반출 실적(이력·묶음번호 포함) 기록·관리</li> <li>※ 전산신고 의무대상자 : 이력관리시스템에 포장·판매(반출) 후 5일 이내 신고</li> </ul>																																																				
이력(묶음)번호 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포장처리한 돼지고기의 속, 겉 포장지에 이력(묶음) 번호 표시</li> <li>• 거래내역서(거래명세서, 거래영수증) 이력(묶음)번호 표시</li> </ul>																																																				
이력(묶음)번호 표시(예시)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30%;"><b>제품명</b></td> <td colspan="3">돼지 안심(냉장)</td> </tr> <tr> <td><b>중량</b></td> <td colspan="3">3.07kg</td> </tr> <tr> <td><b>제조일자</b></td> <td colspan="3">2014.00.00.</td> </tr> <tr> <td><b>유통기한</b></td> <td colspan="3">2014.00.00.</td> </tr> <tr> <td><b>도축장</b></td> <td>000</td> <td style="text-align: center;">포장처리 업소</td> <td>000</td> </tr> <tr> <td><b>이력(묶음)번호</b></td> <td colspan="3" style="text-align: center;">150014400052</td> </tr> </table>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margin-top: 10px;"> <thead> <tr> <th colspan="4">거래명세서</th> </tr> <tr> <th>월/일</th> <th>품목·규격</th> <th>이력(묶음) 번호</th> <th>단위</th> </tr> </thead> <tbody> <tr> <td>12/28</td> <td>목심(국내산)</td> <td>L11412281234001</td> <td>35.7</td> </tr> <tr> <td>12/28</td> <td>갈비(국내산)</td> <td>L11412281234001</td> <td>15.5</td> </tr> <tr> <td>12/28</td> <td>등심(국내산)</td> <td>L11412281234001</td> <td>11.6</td> </tr> <tr> <td>12/28</td> <td>삼겹살(국내산)</td> <td>L11412281234001</td> <td>22.9</td> </tr> <tr> <td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이하야백</td> </tr> </tbody> </table>	<b>제품명</b>	돼지 안심(냉장)			<b>중량</b>	3.07kg			<b>제조일자</b>	2014.00.00.			<b>유통기한</b>	2014.00.00.			<b>도축장</b>	000	포장처리 업소	000	<b>이력(묶음)번호</b>	150014400052			거래명세서				월/일	품목·규격	이력(묶음) 번호	단위	12/28	목심(국내산)	L11412281234001	35.7	12/28	갈비(국내산)	L11412281234001	15.5	12/28	등심(국내산)	L11412281234001	11.6	12/28	삼겹살(국내산)	L11412281234001	22.9	이하야백			
<b>제품명</b>	돼지 안심(냉장)																																																				
<b>중량</b>	3.07kg																																																				
<b>제조일자</b>	2014.00.00.																																																				
<b>유통기한</b>	2014.00.00.																																																				
<b>도축장</b>	000	포장처리 업소	000																																																		
<b>이력(묶음)번호</b>	150014400052																																																				
거래명세서																																																					
월/일	품목·규격	이력(묶음) 번호	단위																																																		
12/28	목심(국내산)	L11412281234001	35.7																																																		
12/28	갈비(국내산)	L11412281234001	15.5																																																		
12/28	등심(국내산)	L11412281234001	11.6																																																		
12/28	삼겹살(국내산)	L11412281234001	22.9																																																		
이하야백																																																					

- (기록관리, 신고) 식육포장처리업 허가를 받은자의 전년도 연평균 종업원이 5명 이상이거나, 도축장 연접에 위치에 있는 경우는 이력관리시스템에 포장처리 실적과 거래실적을 전산신고, 그 외의 업소는 자체장부에 기록관리

## 마 판매단계

- (판매단계 이력관리 흐름) 포장지에 표시된 이력번호표시 여부 확인, 거래 내역서 기록 및 보관, 식육판매표시판에 이력번호 표시, 이력번호가 표시된 영수증, 거래명세서 등 교부
- 식육판매업소 이력관리 요령

구분	주요업무						
이력(묶음)번호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입한 지육 또는 포장육과 거래명세서 등에 기재된 이력(묶음)번호 일치여부 확인</li> <li>※ 이력번호(12자리), 묶음번호(L+14자리)</li> </ul>						
거래내역서 기록 및 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산신고 의무대상) 300m<sup>2</sup> 이상의 기타 식품판매업 영업장에서 종업원 5인 이상 또는 50m<sup>2</sup> 이상의 판매업소는 이력관리시스템에 거래내역 신고</li> <li>• (그 외 판매업소) 매입한 돼지고기의 이력번호를 자체 거래내역서에 기록·보관</li> </ul>						
이력(묶음)번호 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돼지고기를 이력(묶음)번호 단위로 구분하고, 식육판매표시판 또는 소포장육에 이력(묶음)번호 표시하여 판매</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50%;">식육판매표시판</th> <th style="width: 50%;">포장지 라벨지</th> </tr> </thead> <tbody> <tr> <td>  </td> <td>  </td> </tr> <tr> <td> <p><b>[진열 판매]</b></p> <p>식육판매표시판에 이력번호를 표시하여 판매</p> </td> <td> <p><b>[소포장 판매]</b></p> <p>라벨지를 이용하여 포장지에 이력번호를 표시하여 판매</p> </td> </tr> </tbody> </table>	식육판매표시판	포장지 라벨지			<p><b>[진열 판매]</b></p> <p>식육판매표시판에 이력번호를 표시하여 판매</p>	<p><b>[소포장 판매]</b></p> <p>라벨지를 이용하여 포장지에 이력번호를 표시하여 판매</p>
식육판매표시판	포장지 라벨지						
							
<p><b>[진열 판매]</b></p> <p>식육판매표시판에 이력번호를 표시하여 판매</p>	<p><b>[소포장 판매]</b></p> <p>라벨지를 이용하여 포장지에 이력번호를 표시하여 판매</p>						
영수증, 거래명세서 등 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매자 등이 요구한 경우 이력(묶음)번호를 기재한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 교부</li> </ul>						

- (기록관리, 신고) 식육판매업자가 300m<sup>2</sup> 이상의 기타 식품판매업 영업장에서 종업원 5인 이상 또는 50m<sup>2</sup> 이상의 판매업소는 이력관리시스템에 거래내역 신고, 그 외 업소는 자체 거래내역서에 기록보관

## 바 소비자

---

- 소비자는 식육판매표지판 또는 돼지고기의 포장지에 표시된 이력번호(또는 묶음번호)를 홈페이지([www.mtrace.go.kr](http://www.mtrace.go.kr)) 또는 스마트폰 어플(축산물이력정보)을 이용하여 이력번호 12자리 또는 묶음번호 L+14자리 등을 입력하면 **돼지고기의 이력정보 확인가능**

## 사 해외사례(프랑스)

### 사육단계

- (관리방법) 농장단위로 관리하며, 종돈에 대하여는 개체별 관리
  - 종돈은 개체식별을 위하여 귀표, 귀문신, 문신으로 표시
- (농장식별번호) 땅(지번) 중심의 농장식별번호로 관리
- (신고사항) 농장간 이동시(도축출하 포함) 중앙시스템에 이동 신고
- (표시사항) 이동시 돼지에 “농장식별번호 표시” 및 이동증명서 휴대



### 도축단계

- (농장식별번호 확인 및 신고) 도축 전 농장식별번호 표시, 출하두수, 이동증명서 확인
  - 확인 후 중앙시스템에 확인 내역 신고
- (도축 및 이력번호 표시) 농장단위(농장식별번호)로 그룹화 하여 도축하고 도체에 일련번호 표시



### 포장처리 단계

- (방법) 동일 도축일자자의 돼지를 묶음으로 구성하여 포장처리, 필요시 농장 단위 포장처리
- (기록·관리 및 신고) 포장처리업체 자체적으로 기록·관리하며, 문제 발생시 회수 의무 부여

### 판매단계

- (표시사항) 식육포장지에 원산지, 도축장, 포장처리업소, 추적코드(Trace Code) 등 표시
- (소비자 정보제공) 온라인을 통한 소비자 정보제공은 없음

### 3

## 사업시행 주체별 역할과 기능

### 가 기관별 추진체계



### 나 기관별 역할과 기능

기 관	역할 및 기능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총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총괄 및 지도·감독</li> <li>■ 사업계획 수립·운영관리, 시스템 구축</li> <li>■ 예산확보 및 집행상황 감독, 관련 법령 개정 등</li> </ul>
지자체 (업무위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독기관의 업무를 위임받아 관할지역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li> <li>■ 법 제23조에 의한 시정명령 및 제24조에 의한 사육에서 판매단계까지 보고 및 출입·검사</li> </ul>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업무위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육포장처리업소, 식육판매업소 등 영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출입·검사 및 수거, 과태료 부과·징수(국내산이력축산물)</li> </ul>
농림축산검역본부 (업무위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입산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www.meatwatch.go.kr) 운영</li> <li>■ 식육포장처리업소, 식육판매업소 등 영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출입·검사 및 수거, 과태료 부과·징수(수입산이력축산물)</li> </ul>
축산물품질평가원 (업무위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www.mtrace.go.kr)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장식별번호 발급, 사육현황 및 이동신고 관리, 이력번호 발급, 가축 및 축산물 식별대장 기록·관리, 도축·유통단계 신고접수 등</li> </ul> </li> <li>■ 전(全) 사육-유통단계 보고 및 출입·검사 및 수거(국내산이력축산물)</li> </ul>
한국종축개량협회, 대한한돈협회 (업무위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돈의 출생, 폐사, 이동 등 신고접수 및 사육현황신고 접수</li> <li>■ 종돈의 가축 및 축산물식별대장의 기록</li> <li>■ 종돈의 개체식별등록을 위한 귀표등의 수불에 관한 사항 등</li> </ul>

## 4

## 돼지 및 돼지고기 관련 통계

## 가 기본통계

구분	현황	비고 (출처 등)
돼지 총 마릿수	11,217천두	통계청 (’21년 4/4분기)
모돈수	926천두	
사육 농장수	5,942개소	
농가당 마릿수	1,888두	
종돈장 수	139개소	’21년 종돈이력제 추진실적(6월)
종돈 사육현황	모돈 99,972두, 후보돈 12,207두, 웅돈 5,636두	
도축장 수	72개소	’21년 축평원
도축 두수	년 18,382천두 (일평균 73,236두)	’21년 축평원
등급별 출현율(탕박)	1*(34.1%), 1(33.6%), 2(28.8%), 등외(3.4%)	’21.1~12월 축평원
포장처리업소 수	7,876개	’21년 식품의약품통계연보
식육판매업소 수	46,316개	
국내산 생산량	(’20년)1,097천톤	농림축산식품 주요 통계(’21)
수입돈육	(’20년)310천톤	
국내산 자급률(%)	(’20년)68.9%	
1인당 소비량	(’20년)27.1kg	
가격	○돼지 평균가격 : 393천원/두 * 돼지 비육돈 농가수취가격(탕박) = 경락가격(원/지육kg) × 생체중(110kg) × 지육율(76.7%)	축평원(’22. 1월)
	○돼지고기 지육 평균가격 : 4,658원/Kg	’22. 1 축평원
	○두당 소비자 가격 : 713천원/두	’20년 4분기 축산물유통정보조사
	○삼겹살 소비자 가격(원/100g) - 대형마트(2,182 <sup>원</sup> ), 슈퍼마켓(2,514 <sup>원</sup> ), 정육점 (2,442 <sup>원</sup> )	’19. 2분기

**나** 국내 돼지 사육현황 (통계청, 가축동향조사 '21년 4/4분기)

(단위 : 천마리, 가구, 마리, %)

구 분	2019	2020		2021				증 감		
	12	9	12	3	6	9	12	전분기	전년동기	
<b>총 마릿수</b>	11,280	11,345	11,078	11,147	11,150	11,465	11,217	-248	139	
- 모돈수	1,026	912	905	921	929	929	926	-3	21	
별 연 령	2개월미만	3,497	3,522	3,399	3,525	3,559	3,601	3,482	-119	83
	2~4개월미만	3,453	3,429	3,379	3,315	3,373	3,550	3,454	-96	75
	4~6개월미만	3,257	3,363	3,257	3,243	3,142	3,248	3,215	-33	-42
	6~8개월미만	132	121	120	124	131	118	121	3	1
	8개월이상	941	930	923	939	946	947	944	-3	21
	규모 별	1,000마리미만	941	964	926	959	934	874	844	-30
1,000~5,000마리미만	6,481	6,736	6,566	6,494	6,557	6,770	6,688	-82	122	
5,000마리이상	3,858	3,665	3,586	3,694	3,659	3,821	3,684	-137	98	
<b>사육 농장수</b>	6,133	6,180	6,078	6,179	6,133	6,084	5,942	-142	-136	
규모 별 농장수	1,000마리미만	2,776	2,743	2,741	2,830	2,761	2,612	2,528	-84	-213
	1,000~5,000마리미만	2,953	3,051	2,954	2,947	2,981	3,062	3,020	-42	66
	5,000마리이상	405	387	383	403	392	411	394	-17	11
	<b>농장당 마릿수(마리)</b>	1,839	1,839	1,823	1,804	1,818	1,884	1,888	4	65
								(0.2)	(3.6)	

주) 돼지는 2017년부터 모집단을 농림어업총조사에서 돼지이력제로 변경하여 작성함





##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관리 요령

1. 사육단계(종돈)
2. 사육단계 (비육돈)
3. 도축단계
4. 포장처리 단계
5. 판매단계
6. 묶음번호 관리요령
7. DNA 동일성 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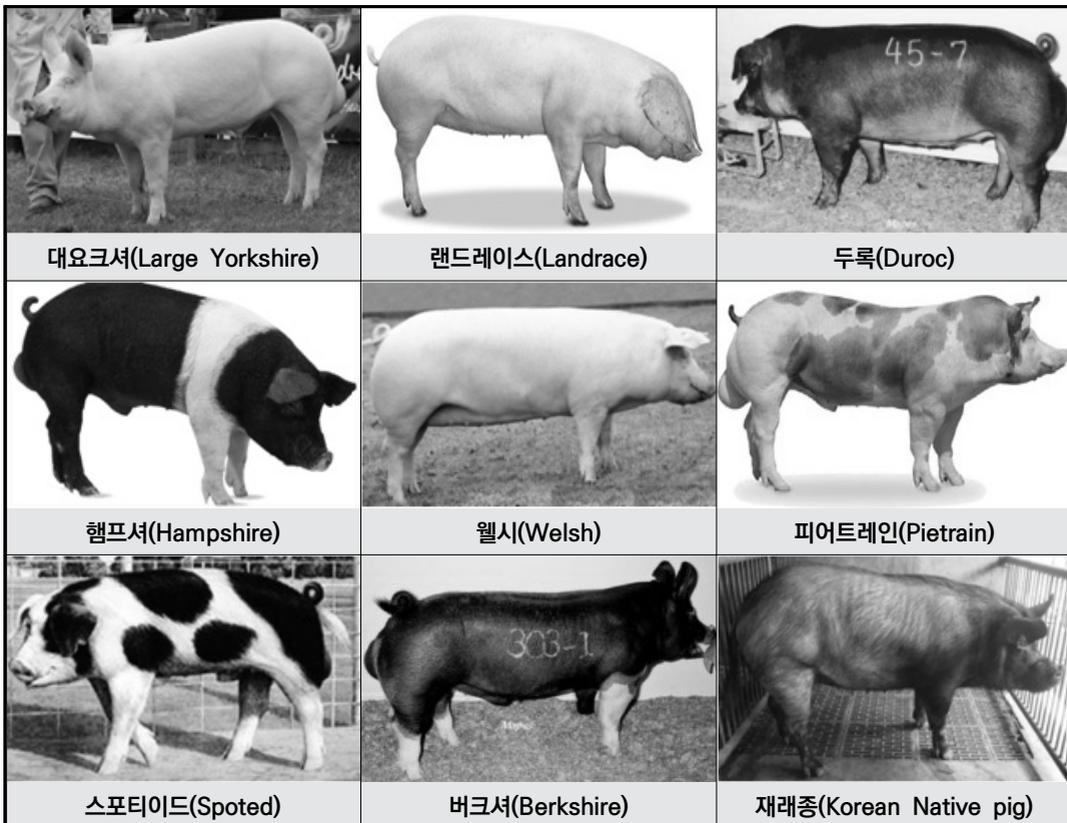
## 1. 종돈이란?

## 가. 정의

## 〈종 돈〉

「축산법」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정기관 및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종축업 또는 정액등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사육하고 있는 돼지로 종축등록기관에서 공고한 기준에 따라 혈통등록되거나 고등등록된 돼지 또는 종축등록기관이 공고한 기준에 따라 혈통이 확인된 번식용 씨돼지

## 〈종돈의 주요 품종별 사진〉



## 2. 종돈의 출생·폐사 신고

### 가. 신고대상

- 종돈장(GGP, GP), AI센터, 검정소
  - 「축산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종축등록기관에서 공고한 종축등록 규정에 따라 혈통 또는 고등등록된 돼지
  - 「축산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종축등록기관에서 공고한 '번식용씨돼지 혈통증명규정'에 따라 번식용씨돼지로 혈통이 확인된 돼지

### 나. 신고기한

- 출생신고 : 출생(종돈의 경우 종돈등록일)일로부터 5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
- 폐사신고 : 폐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
- 양도·양수(이동)신고 : 양도·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
- 수출입신고 : 통관절차가 완료된 날
- 사육현황 신고 : 매월 마지막일 기준으로 다음달 5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

### 다. 신고방법 및 절차

- 출생, 폐사, 양도·양수, 수출·수입의 신고는「종돈 출생, 수입, 수출 등 신고서」 서식을 작성하여 (사)한국종축개량협회 종돈개량부 팩스(Fax : 02-3473-8166) 또는 종돈개량부 게시판(<http://aiak.or.kr/>)에 신고서 제출
  - 도축을 위해 출하하는 경우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도축검사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같음
- 「축산법」에 따른 종돈의 혈통·고등등록신청서, 번식용씨돼지혈통 증명신청서 및 종돈의 혈통 및 이력관리시스템(<http://eswine2.aiak.or.kr/>)에「종돈 출생·수입·수출 등 신고서」서식의 관련내용이 포함된 경우 위의 신청서 및 프로그램으로 대신할 수 있음

※ 종돈의 혈통 및 이력관리시스템은 아이디(ID)와 비밀번호(PW)로 로그인 후 이용 가능

라. 출생신고

① 종돈의 혈통 및 이력관리시스템(<http://eswine2.aiak.or.kr/>) 이용

- 혈통등록을 이용한 출생신고 방법 : 출생신고(등록) → 혈통등록1 or 2 → 등록구분 선택 → 부모돈 검색 및 정보입력 → 개체정보입력

(※단, 개체식별번호는 개체관리번호 6자리만 입력) → 저장

- 상위등록을 이용한 출생신고 방법 : 출생신고(등록) → 개체상위등록관리 → 품종, 등록구분 생년월일 등의 조건 선택 → 조회 → 상위등록 대상돈의 선택 (√) → 개체식별번호 중 개체관리번호 6자리만 입력 → 저장

② 종돈(자돈등기) 혈통·고등등록 신청서 또는 번식용씨돼지(자돈등기) 혈통증명신청서를 이용한 출생신고

- (사)한국종축개량협회(http://www.aiak.or.kr/) → 종돈개량부 → 서식 및 양식 → 종돈(자돈등기)혈통·고등등록신청서 또는 번식용씨돼지(자돈등기)혈통증명 신청서 다운로드 → 신청서 내용 작성 → 등록 및 검정신청에 신청서 업로드 또는 팩스로 신청서 접수



마. 폐사신고

① 종돈의 혈통 및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한 폐사신고

- 폐사관리를 이용한 폐사신고 방법 : 폐사신고 → 폐사돈신고 → 조회(품종 선택 및 생년월일 등 조건 입력) → 폐사신고 대상돈 선택(√) → 폐사원인 선택 → 폐사처리방법 선택 → 매몰장소 및 폐기처리업체(연락처 : 000-000-0000) 입력 → 저장



## 바. 양도(이동) 신고

### ① 종돈의 혈통 및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양도(이동) 신고

- 이동등록을 이용한 신고 방법 : 양도(이동)신고 → 개체이동 → 조회(품종, 등록 구분, 생년월일 등 입력) → 이동농장(양수농장) 조회 및 선택 → 이동 대상돈 선택(√) → 저장

The screenshot shows the '종돈의 혈통 및 이력관리 시스템' (Breed Blood and Record Management System) interface. The main content area is titled '개체이동' (Individual Movement). It features a search form with the following fields and options:

- 등록번호 (Registration Number): [ ] ~ [ ]
- 등록구분 (Registration Category): 전체 (All)
- 이각번호 (Individual Number): [ ]
- 등록일 (Registration Date): [ ] ~ [ ]
- 성별 (Sex): 전체 (All)
- 품종 (Breed): 전체 (All)
- 생년월일 (Date of Birth): [ ] ~ [ ]
- 도입 (Import): 전체 (All)

Below the search form, there is a section for '개체이동 정보입력' (Individual Movement Information Input) with fields for '이동일' (Movement Date), '이동신고일' (Movement Report Date: 2019-01-26), '이동농장 회원번호' (Movement Farm Member Number), and '이동구분 소유사육권이동' (Movement Category: Ownership Transfer).

At the bottom, there is a table with the following columns: [ ], 등록번호, 이각번호, 개체식별번호, 생년월일, 등록구분, 품종, 성별, 나라.

※ 단, 자돈등기 후 이동등록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개체식별번호 중 개체관리번호 6자리를 입력 후 저장해야 함

### ② (종돈)이동 신청서를 사용한 양도·양수신고

- 양도·양수 신고 방법 : (사)한국종축개량협회(<http://www.aiak.or.kr/>) → 종돈개량부 → 서식 및 양식 → (종돈)이동증명신청서 다운로드 → 신청서 내용 작성(개체식별번호 중 개체관리번호 6자리 기입) 입력 → 등록 및 검정 신청에 신청서 업로드 또는 팩스로 신청서 접수

## 사. 수입·수출신고

- 수입 신고 방법 : (사)한국종축개량협회(<http://www.aiak.or.kr/>) → 종돈개량부 → 서식 및 양식 → 종축수입신고서 작성(종돈장별) 및 관련 구비서류 접수(개체별 혈통증명서 등)
- 수출 신고 방법 : 종돈을 수출할 경우 출생(혈통·고등등록 및 번식용씨돼지 혈통증명)신고 후 「종돈의 출생등 신고」 서식을 작성하여 신고

### 3. 종돈장의 월별 사육현황 신고

#### 가. 신고대상

- 종돈을 사육하는 종돈장, AI센터, 검정소 등

#### 나. 신고방법

- 종돈의 사육현황신고는 해당 월의 마지막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5일 이내에 「종돈 출생 신고서」서식에 의해 (사)한국종축개량협회로 신고(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
- 신고방법은 (사)한국종축개량협회 전화(02-588-9301) 또는 팩스(02-3473-8166) 등을 이용하여 신고

사육현황 신고	⑧ 계(두)	⑨ 종류	⑩ 세부내역(두)						
			소계	모돈	후보돈	웅돈	자돈	육성돈	비육돈
		일반종							
		재래종							
		멧돼지							

### 4. 변경신고·신고의 생략, 이동금지 등

- 가축 및 축산물식별대장의 기록 누락이나 오류의 수정을 요구하려는 농장경영자 등은 「가축 및 축산물식별대장 변경신고서」서식을 작성하고, 변경신고 사유서,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종축개량협회장에게 제출
-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한 귀표등이 부착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훼손되어 개체식별이 곤란한 종돈을 양도·양수, 수출 또는 이동시키면 안 됨

## 5. 개체식별번호 부여방법

### 가. 「개체식별번호」의 구성

- 종축등록기관의장은 출생, 또는 수입 신고된 종돈에 대하여 개체식별 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신고자에게 알려주어야 함

#### 〈개체식별번호〉

이력관리대상가축의 개체를 식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가축 한마리마다 부여하는 고유번호

※ 개체식별번호 구성 : 국가코드(KOR) + 농장식별번호(6자리) + 개체관리번호(6자리)로 구성된 15자리

- 수입 신고된 종돈은 해당 국가에서 부여된 개체식별번호를 사용하되, 개체식별 번호가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개체식별번호와 호환되지 않는 번호체계인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개체식별번호로 표시

※ 따라서 수입종돈은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되어 있으므로 출생신고 기한은 통관절차가 완료된 날로 보아도 무방하나, 개체식별번호가 호환되지 않는 경우 변경신고를 해야 함

### 나. 개체식별번호 부여 대상

- 종축업 또는 정액등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육시설 및 검정기관에서 출생(혈통 고등등록) 또는 수출입 신고 된 종돈

### 다. 개체식별번호의 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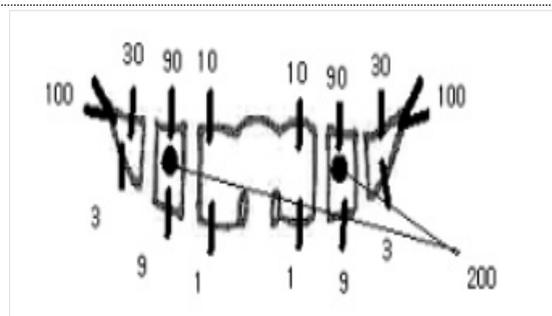
- 출생 신고 또는 수입 신고된 종돈에는 국가코드(KOR), 농장식별번호 (6자리), 개체관리번호(6자리), 바코드 및 농업이미지 엠블렘 등이 표시된 15자리의 개체식별번호를 부여
- 수입 신고된 종돈은 해당 국가에서 부여된 개체식별번호를 사용하되,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개체식별번호와 호환되지 않는 번호 체계인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개체식별번호를 표시

## 라. 개체식별번호의 표시방법

- 종돈의 개체식별번호 표시는 귀표 등을 이용하여 종돈의 귀에 부착 또는 표시할 수 있으며 귀표등의 방법은 귀표, 이각, 입묵의 방식 사용
- 농촌관광이나 학술연구 등으로 귀표 부착이 곤란한 경우에는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목줄을 이용하여 표시할 수 있음

### 1 이 각

돼지의 귀를 삼각의 모양으로 절개하여 표시하는 방식으로 종축개량협회에 정하고 있는 이각방법으로 하여야 함(시행규칙 별표4)



〈표준이각방법〉



- 농장식별번호와 개체관리번호를 동시에 이각방법으로 표시할 수는 없음. (이각으로 표시하는 자릿수의 한계) 이각으로 개체관리번호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현재의 이각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되 종축등록기관이 발행하는 증명서에 개체식별번호 기록
- 이각방법에 의한 개체표시는 식별번호의 중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다만, 순환이각방식에 의해 불가피하게 중복이 발생하는 경우 종축개량협회에 등록된 혈통번호 등을 보아 개체 간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예외로 함
- 이각을 활용하여 개체식별번호를 생성할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발급 받은 농장식별번호와 이각을 활용한 <표1>의 개체관리번호 생성 방법에 따라 개체관리번호를 등록하여 개체식별번호를 부여

# 중돈 혈통 등록증명서



## 중돈 혈통 등록증명서

이각타입 : A

개체식별번호: 600553184024

등록번호 22204014806 (NN) 품종 대요크셔 성별 암 생년월일 2022/04/03  
 명 호 (8)92 B184-24 개체번호 B184-24  
 출산자수 19 생돈산자수 19 포유개시두수 17 이유두수 12 산자 03

조 부 (3)36 A66-170 ( 혈 ) KA 21901090065 (NN)  
 부 (3)36 B58-135 ( 고 ) KA 22101000164 (NN)  
 조 모 (2)42 A27-117 ( 고 ) KA 21809024966 (NN)  
 외조부 (1)939 A116-31 ( 혈 ) KA 21905019017 (NN)  
 모 (8)92 B14-40 ( 혈 ) KA 22006021408 (NN)  
 외조모 (8)92 A26-72 ( 고 ) KA 21809015977 (NN)

산 육 능력 \* PSS 유전자 : 정상(NN) 보유(Na) 발현(nn)

구분	검정구분	능력평가	90kg 도달일령 (일)				근내 등지방 두께 (mm)	경육률 (%)	등심 단면적 (cm <sup>2</sup> )	선별지수		
			육중가	신위도	표현형가	평균				검정	범치	
B184-24	농장 검정	육중가	-0.81	1.93	5.19	0.03	1.31	-1.61	-2.27	100	103	101
		신위도	0.66	0.81	0.12	0.63	0.52	0.53	0.66			
		표현형가	1.85	711.8			15.87	55.7	23.7			
부	농장 검정	육중가	-0.10	2.61	-4.96	0.03	1.19	-1.89	-2.65	99	103	101
		신위도	0.99	0.99	0.18	0.99	0.98	0.68	0.99			
		표현형가	1.34	703.6			12.63	57.0	22.8			
모	농장 검정	육중가	-1.02	4.99	9.57	-0.01	-0.47	0.81	-0.38	100	102	101
		신위도	0.83	0.91	0.15	0.83	0.71	0.63	0.83			
		표현형가	1.39	670.9			19.1	28.6				

\* 일당중량1: 생시체중 1kg ~ 검정중요체중 1kg, 일당중량2: 생시체중 350kg ~ 검정중요체중

산 자 능력

구분	출복수	평균출산자수		평균 생돈산자수		평균 이유두수	구분	출복수	평균 출산자수	평균 생돈산자수
		육중가	표현형가	육중가	표현형가					
모	5	0.9	17.6	1.0	16.4	11.7	부	154	14.8	13.5

사 육 자  
 변 식 자  
 소 유 자

위와 같이 중축등록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였음을 증명함

2023년 05월 15일




사단법인 한국중축개량협회

\*\*\* 본 증명서는 원본과 동일하나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 번식용씨돼지 혈통확인서



## 번식용씨돼지 혈통확인서

이각타입 : A

개체식별번호: 600553021038

구 분: F1  
 확인번호: 12205017534 (NN) 성별: 암 이표번호: G21-38  
 이 름: (1)948 G21-38

생년월일 2022년 05월 06일 산자 05  
 등록자돈수 암 9 수 6 계 15 사산 2  
 검정성적 일 g mm cm<sup>2</sup> %

부 ( L ) (6)83 B48-151 ( 혈 ) 22012020271 (NN)  
 90.0kg 도달일령 147.0일 일당중량 648.6g 등지방두께 9.6mm 로인단면적 30.8cm<sup>2</sup> 경육률 59.9% 선별지수 103.8

모 ( W ) (1)948 A145-137 ( 혈 ) 21910010696 (NN)  
 kg 도달일령 일 일당중량 등지방두께 로인단면적 경육률 선별지수 평균산자수 평균이유두수  
 g mm cm<sup>2</sup> % 13.1 10.0

소 유 자  
 번 식 자  
 사 육 자

이동일자: 2022년 11월 02일

위와 같이 본회 번식용씨돼지혈통증명규정에 의하여




사단법인 한국중축개량협회

\*\*\* 본 증명서는 원본과 동일하나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표1〉 이각을 활용한 개체관리번호 생성 방법

이각 자릿수	이각번호(예)	개체관리번호	비고
1자리	1	000001	"-"없이 숫자로 표시할 경우 이각의 맨 앞에 부족한 자릿수 만큼 "0"을 삽입  "-"을 사용할 경우 좌우측 이각을 가급적 각각 3자리로 생성(부족한 자릿수만큼 "0"을 삽입)
2자리	12	000012	
	1-2	001002	
3자리	123	000123	
	1-23	001023	
	12-3	012003	
4자리	1234	001234	
	1-234	001234	
	12-34	012034	
	123-4	123004	
5자리	12345	012345	
	1-2345	012345	
	12-345	012345	
	123-45	123045	
	1234-5	123405	
6자리	123456 1-23456 12-3456 123-456 1234-56 12345-6	123456	6자리 전체를 개체관리번호로 그대로 사용
7자리이상	1234567 1-234567 12-34567 123-4567 1234-567 12345-67 123456-7	123456	앞에서부터 6자리만 활용하여 개체관리번호 생성

〈표2〉 이각에 의한 번호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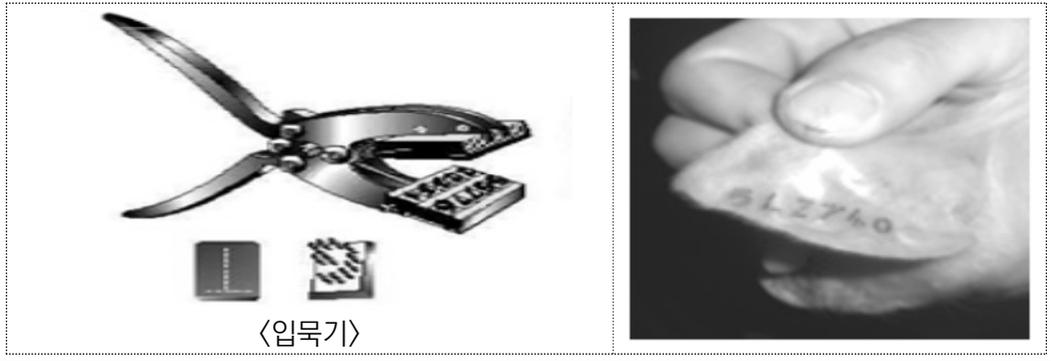
타입	번호체계	읽는 방법	실(예)
A (표준 이각)		좌측부터 차례대로 읽음	 379-246, 379246, 379-246A
B		좌측하단부터 시계방향으로 읽음	 4-3149, 1044-3149(1:농장04:연도)
C		우측상단부터 시계반대방향으 로 읽음	 7249, LR07249(L:품종, R0:생년)
E		양쪽 끝 먼저 읽고 좌측하단 부터 시계방향	 34149
G		좌측상단부터 시계방향 읽음	 1091-1
H		좌측상단부터 시계방향 읽음	 3-714
K		좌우편칭 이각앞자리사용, 좌측하단부터 시계방향	 39-1746
M		미국의 표준이각 숫자의 합계로 읽음	 394-1(394=200+100+81+9+1+3)

〈표3〉 주요 수출국별 개체식별번호 생성방법

<p>〈프랑스〉</p> <p>- 개체식별번호 (수입농장)농장식별번호(6자리)+Animal ID의 뒤 6자리(출생연도(1)+개체번호(5))</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50%;">(수입농장)농장식별번호 : 123456</td> <td style="width: 50%;">개체식별번호 : 123456304502</td> </tr> <tr> <td>Animal ID : FR86CHA304502</td> <td></td> </tr> </table>											(수입농장)농장식별번호 : 123456	개체식별번호 : 123456304502	Animal ID : FR86CHA304502																							
(수입농장)농장식별번호 : 123456	개체식별번호 : 123456304502																																			
Animal ID : FR86CHA304502																																				
<p>〈캐나다〉</p> <p>- 개체식별번호 (수입농장)농장식별번호(6자리)+출생연도(1자리)+Tattoo(3~5자리)</p> <p>※ 부족한 자릿수는 Tattoo 앞에 0~00으로 표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50%;">(수입농장)농장식별번호 : 123456</td> <td style="width: 50%;">개체식별번호 : 123456309645</td> </tr> <tr> <td>Tatto : 9645A</td> <td></td> </tr> </table> <p>- Tattoo : 9645A *먼저 읽고 영문자는 출생년도를 의미함(A : 2013년)</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영문</td> <td>A</td> <td>B</td> <td>C</td> <td>D</td> <td>E</td> <td>F</td> <td>G</td> <td>H</td> <td>I</td> <td>J</td> </tr> <tr> <td>년도</td> <td>2013</td> <td>2014</td> <td>2015</td> <td>2016</td> <td>2017</td> <td>2018</td> <td>2019</td> <td>2020</td> <td>2021</td> <td>2022</td> </tr> </table>											(수입농장)농장식별번호 : 123456	개체식별번호 : 123456309645	Tatto : 9645A		영문	A	B	C	D	E	F	G	H	I	J	년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수입농장)농장식별번호 : 123456	개체식별번호 : 123456309645																																			
Tatto : 9645A																																				
영문	A	B	C	D	E	F	G	H	I	J																										
년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p>〈미국〉</p> <p>- 개체식별번호 (수입농장)농장식별번호(6자리)+Name의 출생연도(1자리)+Ear-Notch(2~6자리)</p> <p>※ 부족한 자릿수는 Ear-Notch 앞에 0~000으로 추가하여 표시하며 Ear-Notch가 6자리인 경우 연도생략</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50%;">(수입농장)농장식별번호 : 123456</td> <td style="width: 50%;">개체식별번호 : 123456400023</td> </tr> <tr> <td>Name : WFD4 BLARNEY</td> <td></td> </tr> <tr> <td>Ear-Notch : 2-3</td> <td></td> </tr> </table> <p>- Ear-Notch : 2-3(2~6자리)</p> <p>- Name : WFD4 BLARNEY 2-3 (※ WFD4의 4는 출생연도를 의미함(4 : 2014년))</p>											(수입농장)농장식별번호 : 123456	개체식별번호 : 123456400023	Name : WFD4 BLARNEY		Ear-Notch : 2-3																					
(수입농장)농장식별번호 : 123456	개체식별번호 : 123456400023																																			
Name : WFD4 BLARNEY																																				
Ear-Notch : 2-3																																				
<p>〈덴마크〉</p> <p>- 개체식별번호 (수입농장)농장식별번호(6자리)+H.B.NO의 출생연도(1자리)+Tag/ Tattoo(4자리)</p> <p>※ 부족한 자리수는 Tag/ Tattoo 앞에 0을 삽입하여 표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50%;">(수입농장)농장식별번호 : 123456</td> <td style="width: 50%;">개체식별번호 : 123456404649</td> </tr> <tr> <td>H.B.NO: 760-4694-14</td> <td></td> </tr> <tr> <td>Tag/ Tattoo : 4649</td> <td></td> </tr> </table>											(수입농장)농장식별번호 : 123456	개체식별번호 : 123456404649	H.B.NO: 760-4694-14		Tag/ Tattoo : 4649																					
(수입농장)농장식별번호 : 123456	개체식별번호 : 123456404649																																			
H.B.NO: 760-4694-14																																				
Tag/ Tattoo : 4649																																				

## ② 입 목

돼지의 귀에 문신을 찍어 표시하는 것으로 생후 3일령 전후에 귀의 잘 보이는 곳 (품종에 따라 귀의 앞쪽 또는 뒤쪽)에 압인하여 숫자를 표시



〈입목기〉

※ 입목 : '살 속에 먹물로 글씨나 그림을 새겨 넣는다'의 의미

- 입목기(돼지 귀에 문신을 찍어 표시하는 장비)의 규격은 표시되는 숫자하나의 크기를 (가로)5mm (세로)7mm 이내로 함
- 귀에 입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농장식별번호(6자리), 또는 개체관리번호(6자리)를 귀에 표시할 수 있음
- 입목기는 주로 고정식과 회전식을 사용할 수 있으며 농장식별번호(6자리)를 포함한 개체관리번호(6자리)를 모두 입목으로 표시할 수 있음
- 농촌관광이나 학술연구 등으로 귀표 부착이 곤란한 경우에는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목줄을 이용하여 표시할 수 있음

### 〈입목시 주의사항〉

- 입목하기 전에 귀의 안쪽을 잘 닦아주고 가능한 귀의 부드러운 부분에 입목
- 입목기의 바늘, 돼지의 귓등, 손에 잉크를 발라 압인한 후에 잉크가 잘 스며 들도록 골고루 잘 문질러 주는 것이 중요

### ③ 귀 표

돼지의 귀에 개체식별번호 등이 표시된 귀표 장착하는 것으로 종돈의 등록시점에서 부착



<귀표>



- 귀표를 이용하여 개체식별번호를 두 줄로 표시하는 경우 윗줄에는 농장식별번호(작계)를 아랫줄은 개체관리번호(크계)를 표시할 수 있으며 개체관리번호 4자리는 인식이 용이하도록 크게 인쇄하여 표시할 수 있음
- 귀표의 종류는 단추형, 일반형, 단추+일반형이 있으며, 단추형은 주로 자돈에 부착, 성돈은 일반형 또는 단추+일반형의 형태로 부착함. 귀표를 부착하는 경우 개체관리번호는 종돈장별로 연번을 부여하거나 이각 번호를 보아 귀표에 관리번호를 별도로 표시할 수 있음
- 귀표등의 부착기한 : 종돈 등록 후 30일 이내

## 6. 귀표의 부착요령

### 가. 「귀표의 표시사항」

- 귀표에 표시되는 내용은 「가축 및 축산물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에 의한 귀표등의 규격에 의함
  - 귀표 표시사항 : KOR, 농업로고, 바코드, 농장식별번호, 개체관리번호, 종돈장명
- 종돈의 귀표는 밝은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 글자색상을 원칙으로 하되, 품종에 따라 귀표의 색깔을 달리 적용할 수 있음
  - (예) : 노랑색(요크셔), 주황(듀록), 하늘색(랜드레이스)

종돈의 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OR(뒷면)</li> <li>- 바코드(뒷면)</li> <li>- 개체관리번호(○)</li> <li>- 농장식별번호(○) (해외사례)</li> <li>- 종돈장로고 + 농장식별번호와 일련번호를 함께 인쇄하되, 일련번호 중 앞 두 자리는 윗줄에 인쇄하거나 인쇄하지 않고 매직 등으로 표시해도 무방</li> </ul>
<p>앞면(종돈장로고+농장식별번호+개체관리번호), 뒷면( KOR+바코드)</p>	

#### 나. 「귀표의 규격」

- 귀표의 종류는 일반형과 단추형이 있고 일반형의 경우 암·수 분리형과 암·수일체형 두 종류를 모두 사용할 수 있음
- 귀표의 크기
  - 가) 일반형 : (가로) 25mm~55mm, (세로) 30mm~70mm
  - 나) 단추형 : 원형으로 지름 25mm~35mm
- 재부착용 귀표 : (앞면) 종돈장 로고, 농장식별번호, (뒷면)KOR, 농업CI, 바코드

#### 다. 「귀표의 관리 등」

- 종돈의 개체식별번호 표시를 위한 입목기, 귀표 등의 관리는 종돈의 위탁기관인 (사)한국중축개량협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관리



### 유의사항

1. 출생·수입·수출신고는 ①~⑰란을 적습니다. ①~④란에는 농장경영자의 인적사항을 적고, ⑤~⑩란은 가축사육시설의 정보인 농장식별번호, 관리자의 인적사항 등을 적습니다. ⑫란의 혈통·고등 등록일(등록번호) 또는 번식용씨돼지 혈통확인일(확인번호) 적으며, ⑭란의 암수구분 및 ⑮란의 종돈 종류는 해당되는 번호에 ○를 표시해야 하며, 종돈의 품종을 아는 경우 V를 표시합니다. ⑯~⑰란은 본인이 알 수 있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2. 양도·양수·이동(반입·반출) 신고는 ①~⑩란과 ⑱~㉔란을 적습니다. 또한, ⑱란의 양도(반입)·양수(반출) 구분은 해당되는 번호에 ○를 표시해야 합니다.
3. 폐사신고는 ①~⑩란과 ㉕란을 적고, ㉖란의 폐사 원인은 해당되는 번호에 ○를 표시하며, ㉗란의 폐사처리방법은 매몰인 경우 장소를 적고, 폐기처리(소각, 재활용)인 경우 업체명과 연락처를 적습니다.
4. 이 신고서는 경영자등이 직접 작성하되 본인이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는 대리인이 작성하고 성명과 연락처를 적습니다.
5. 전화 및 구술의 방법으로 신고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즉시 신고서의 해당란에 그 내용을 적어서 보관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신고접수자가 대리 날인할 수 있습니다.
6. 여러 마리의 출생 등 신고를 할 경우 해당 신고 항목을 표시한 별도의 서식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7. 그 밖의 작성 참고사항
  - 가. 개체식별번호
    - 12자리(농장식별번호 6자리 + 농장별 개체관리번호 6자리)
    - 기입 예) 100001000001
  - 나. 종돈의 종류 구분
    - 대요크셔(Large Yorkshire), 랜드레이스(Landrace), 두록(Duroc), 햄프셔(Hampshire), 웰시(Welsh), 피어트레인(Pietrain), 스폿타이드(Spotted), 버크셔(Berkshire), 재래종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5〉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2. 1. 25.)

- [ ] 농장식별번호의 발급 신청사항
- [ ] 소, 종돈의 출생
- [ ] 소, 종돈의 폐사
- [ ] 양도·양수·이동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 ] 수입·수출
- [ ] 가축시장의 거래내역

※ [ ]는 해당란에 √ 표시하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	-----	-----	------	----

신고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농장식별번호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영업의 종류 및 허가(신고)번호

개체식별번호 또는 이력번호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	----	------

변경사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3항,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 제6조제5항에 따라 신청사항 또는 신고사항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축산물품질평가원장**

**위탁기관의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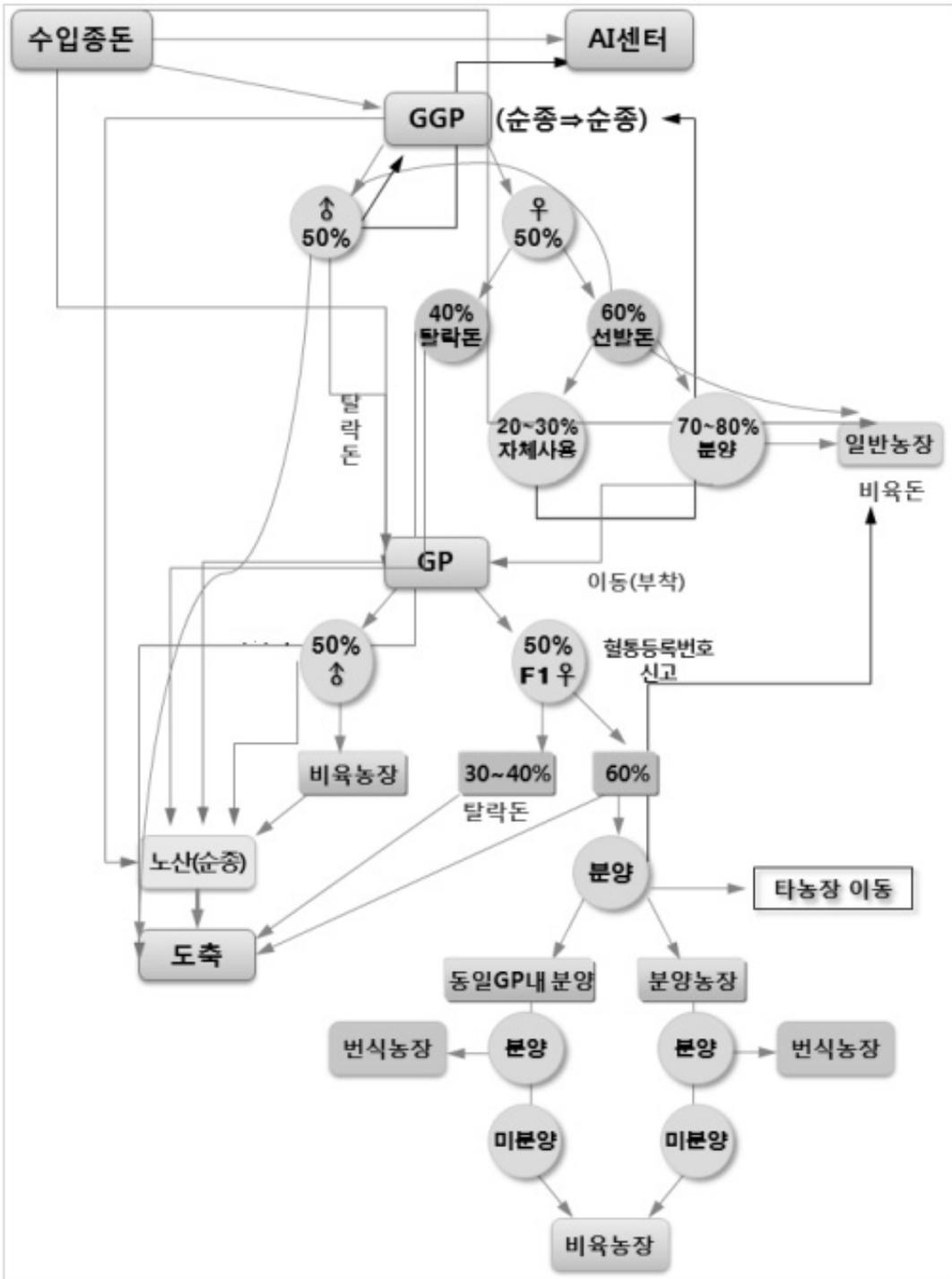
**종돈등록기관의 장**

**종축등수출입 신고기관의 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및 담당직원 확인사항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종돈의 이동현황 모식도〉



## 1. 「농장식별번호」 부여

## 가. 정의

## 〈농장식별번호〉

이력관리대상가축을 기르는 사육시설을 식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가축사육시설마다 부여하는 고유번호

※ 농장식별번호 구성 : 권역코드(1자리), 일련번호(5자리)로 구성된 6자리

- 권역코드 : 서울·인천·경기(1), 강원(2), 충북(3), 세종·대전·충남(4), 전북(5), 광주·전남(6), 대구·경북(7), 부산·울산·경남(8), 제주(9)

## 나. 농장식별번호 부여대상

- 이력관리대상 가축을 사육하는 가축사육시설(소·돼지 농장, 종돈장, AI센터, 검정소 등)

## 다. 농장식별번호의 신청방법

- 가축사육시설을 경영하는 자(이하 “농장경영자”라 한다)는 이력관리대상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사육시작일 5일전까지 <표6>의 농장식별번호 발급신청서를 축산물품질평가원장에게 제출(다만, 지리적 여건으로 서면을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구술, 전화, 전자적 처리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 농장식별번호 신청내용은 신청인 인적사항, 사육가축의 종류 및 사육방식, 가축사육시설정보(농장명칭, 사육시설 소재지, 관리자성명, GPS좌표, 사육개시 연월일) 사육규모 등

## 라. 농장식별번호 부여 및 통보방법

-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은 “농장식별번호”가 신청된 시설에 대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6자리의 농장식별번호를 지체 없이 부여
- 가축사육시설에는 권역코드(1자리), 일련번호(5자리)로 구성된 6자리의 농장식별번호를 부여

- 축종에 관계없이 땅(지번)을 중심으로 1개의 농장식별번호를 부여하며 하나의 가축시설(농장)에 여러 농장경영자인 경우도 1개의 농장식별번호를 부여함. 다만, 같은 지번의 가축사육시설을 다수의 농장경영자가 물리적으로 분할하여 경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농장식별번호 발급 신청을 받아 다른 농장식별번호를 부여할 수 있음
- 농장식별번호를 통보받은 농장경영자는 사육 가축의 출생, 양수·양도·이동, 폐사, 변경신고, 돼지의 농장식별번호 표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당 농장식별번호를 숙지하여야 함

#### 마. 농장식별번호 기록관리

-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은 신청된 농장식별번호를 부여함과 동시에 농장식별번호 발급 및 등록대장의 내용을 이력관리시스템으로 기록관리
- 부여된 농장식별번호가 가축사육시설에 정확히 부여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 확인 등을 할 수 있음 [근거 : 축산물이력법 제 24조(보고 및 출입·검사)]

#### 바. 농장식별번호 표시방법 및 관리

- 돼지를 기르는 농장경영자 등은 농장식별번호(6자리)를 돼지가 이동(도축출하 포함)하는 경우 돼지의 오른쪽 엉덩이에 표시하여야 함
- 농장식별번호를 표시할 수 있는 기구는 검역본부장이 고시한「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돼지가 입는 상해 또는 스트레스를 최소화할 수 있는 표시방법을 사용하여야 함
- 농장식별번호가 표시된 귀표등을 돼지에 부착 또는 표시하는 경우에는 농장식별번호 표시를 생략할 수 있음
- 이동하는 모든 돼지에 농장식별번호를 각각 표시하여야 하되, 하나의 차량에 농장식별번호가 같은 농장의 돼지만을 실어 이동하는 경우에는 출하돼지의 일부(60두 이하의 경우 10두 이상 표시, 61두 이상인 경우 전체 출하돼지의 20퍼센트 이상 표시)만 표시할 수 있음

## 2. 돼지의 이동 신고

### 가. 신고방법 및 절차

- 돼지의 양도 등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서를 서면으로 품질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구술, 전화, 전자적 처리 등의 방법으로 같은 내용을 신고할 수 있다.
- 다만,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른 돼지의 이동을 위하여 시·군·구 등 관계기관에 제출하는 임상예찰서에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내용이 포함되어 해당내용이 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이 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 나. 신고기한 : 양수한 날부터 5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

- 돼지를 이동하려는 날로부터 5일~최소 1일 전에 돼지 이동계획 및 임상예찰서 제출

### 다. 신고종류 및 내용

- 신고종류
  - 돼지를 양도(반출)·양수(반입)하는 경우에 신고
- 신고내용
  - 이동구분 (양도·반출, 양수·반입)
  - 이동일자, 이동두수: 총 OO두 (모돈, 후보돈, 웅돈, 자돈, 육성돈, 비육돈)
  - 농장정보(농장경영자명, 농장식별번호, 사육지 주소)
    - ※ 자돈(3개월 이내)의 임시표시(페인트 색상, 표시모양 등)
- 구술, 서면, 전화 등으로 이동신고를 받은 경우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은 그 내용을 이력관리시스템에 입력
  - 서면의 경우 신고기한까지 서명 도는 날인을 받아야하되, 부득이한 경우 신고 접수자가 대리 날인할 수 있음

# 돼지 구제역 임상검사확인서 휴대의무제 시행



상시 방역체계 구축을 위해 농장 간 돼지이동 시  
'구제역 검사확인서 휴대의무제' 가 시행됩니다

**대 상** 농장 간 이동(거래)하는 돼지(단, 도축 출하는 제외)

**시행시기** 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 시행  
(2016년 7월 15일)

## 신고방법

인터넷 신고 :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 회원가입 후 직접 신고

팩스 등 신고 : 이동계획 및 임상예찰서를 작성하여 시·군·구 또는 가축  
위생방역지원본부(이하 방역본부)에 신고

※ 종돈은 한국종축개량협회(이하 종개협)에 신고

## 시행방법

돼지 이동계획 및 임상예찰서 작성(농장)

돼지구제역 임상검사확인서 2부 발급  
(1부는 신청농장 보관, 1부는 도착농장에 송부)

※ 돼지 이동계획 및 임상예찰서 양식은 농식품부, 시도/시군,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축산물품질평가원,  
(사)한국종축개량협회, (사)대한한돈협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구제역에 감염된 가축의 이동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질병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1

돼지를 이동하려는 날로부터 5일~최소 1일 전에 농장 소재지 시·군·구 또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사)한국중축개량협회 (종돈의 경우에 한함) 돼지 이동계획 및 임상예찰서(5일간 기록) 제출

- 방문, 팩스 등 신고 : 가축소유자 등은 신고일 기준으로 이전 5일간 임상예찰 결과 등을 작성하여 신고
- 인터넷 신고 : 가축소유자 등이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www.mtrace.go.kr)에 회원 가입 후 직접 입력하여 신고



2

방문, 팩스 등으로 신고한 농장으로부터 '돼지 이동계획 및 임상예찰서'를 접수한 기관은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에 입력

- ※ 단, 인터넷으로 신고한 경우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직접 신고한 경우에는 별도의 입력 절차 없음



3

방문, 팩스 등 신고한 접수기관에서 신고 농장의 임상예찰결과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 '돼지 구제역 임상검사 확인서'를 2부 발급하여 신고농장에 송부

(1부는 해당농장에 자체 보관, 1부는 돼지 이동시 양수농장에 인계)

- ※ 단, 인터넷으로 신고한 경우 가축소유자 등이 이력관리시스템에서 직접 발급



4

돼지를 양수(구매)한 농가는 이동두수 및 구제역 등 임상증상 여부를 관찰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입식을 하고 입식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 이력지원실(축산물품질평가원, 1577-2633)로 신고

- ※ 양수농가는 임상검사확인서의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이력지원실 및 농장 소재지 시·군·구 또는 발급기관에 즉시 신고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연락처>

구분	명칭	소재지	주소	접수처(FAX)	연락처
1	경기도본부	경기	경기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350번길 30	031-269-4060	031-230-2600
2	강원도본부	강원	강원 춘천시 금강로 11(소양로3가)	033-244-3305	033-259-3700
3	충북도본부	충북	충북 청주시 청원구 공항로 150번길(울량동)	043-215-4060	043-229-5200
4	충남도본부	충남	충남 아산시 충무로 93번길(권곡동)	041-546-9170	041-339-5600
5	전북도본부	전북	전북 전주시 완산구 운고을로 29(서신동)	063-254-4113	063-240-6800
6	전남도본부	전남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02번길 15(신안동)	062-351-5473	062-604-6600
7	경북도본부	경북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로61(봉덕1동)	053-745-3231	053-605-7100
8	경남도본부	경남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940(구암동)	055-253-3918	055-233-7600
9	제주사무소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애월읍 예원로 95	064-745-4061	064-745-8480

### 3. 돼지의 월별 사육현황 신고

#### 가. 신고방법 및 절차

- 농장경영자는 매월 돼지의 사육현황 및 이동 등 신고서를 축산물품질평가원장에게 제출. 다만, 지리적 여건으로 인하여 서면으로 신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구술, 전화, 전자적 처리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음
-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돼지열병·구제역 예방접종확인서에 돼지의 월별 사육현황이 포함된 경우 예방접종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음

#### 나. 신고기한

- 매월 마지막일을 기준으로 익월 5일이내(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

#### 다. 신고내용

- 공통신고사항
  - 농장경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농장식별번호, 농장경영자주소, 전화번호 또는 휴대 전화번호, 사육시설의 소재지, 사육개시 연월일
- 사육현황
  - 돼지의 종류(일반종, 재래종, 멧돼지)
  - 돼지(모돈, 후보돈, 웅돈, 자돈, 육성돈, 비육돈)의 사육두수
  - 사육 총 두수

#### 라. 사육현황 신고서의 기록관리

- 구술, 전화, 전자적 처리 등으로 신고를 받은 경우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은 그 내용을 입력
- 한돈팜스를 이용하여 한돈협회 지부에서 이력관리시스템에 전산신고한 경우 전자적 처리방법으로 이력관리시스템에 신고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농장경영자는 해당지부에 “사육현황신고서” 작성에 필요한 위임장을 제출

#### 마. 변경신고서 처리절차 및 방법

- 가축 및 축산물식별대장의 기록누락이나 오류의 수정을 요구하려는 농장경영자 등은 <표5>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신고 사유서, 변경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축산물품질평가원장에 제출



### 개인정보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서

-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사육정보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이력관리, 축산물수급관리, 축산물안전관리, 가축방역지원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가축이력관리, 축산물안전관리, 방역 효율성 등 축산업 및 관련 산업 발전과 소비자의 이익 보호 및 증진 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권한의 위임·위탁된 기관에게 제공 및 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는 농장식별번호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등록 말소 후에도 가축이력 정보관리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 ※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 사육·이동, 도축 등 가축이력 정보를 활용하는 가축질병 및 축산 관련 각종 지원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활용 동의자)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신청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직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원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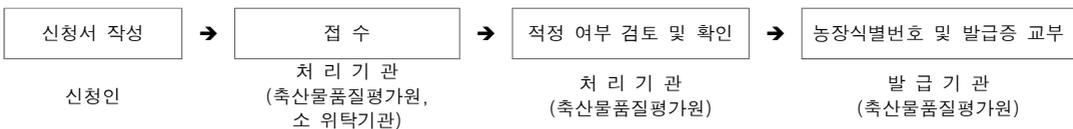
년 월 일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자)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유의사항

- ①~④란은 신청인에 대한 기초정보를 기재하되, 위탁사육인 경우 위탁자의 기초정보도 기재해야 합니다.
  - ⑤란에는 사육가축의 종류 및 신청인이 자가·위탁사육을 분명히 하고, 종축장 또는 종돈장일 경우에 [ ]에 √표를 합니다.
  - ⑥란에는 신청인이 소유 및 관리하는 가축사육시설에 기초정보를 기재하고 관리자는 농장경영자와 계약 또는 가축관계 등에 의해 실질적으로 농장을 관리하는 자를 말합니다.
  - ⑧란에는 축산업 허가증 또는 축산업 등록증에 기재된 고유번호 5자리를 적습니다.
  - 사육규모는 ⑨란에 소 또는 돼지의 사육마릿수를 기재합니다. 돼지의 경우 항목별 기재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 일반종: 우리나라 고유의 재래종을 제외한 서양종 및 모든 교잡종  
 \* 서양종: 대요크셔(Large Yorkshire), 랜드레이스(Landrace), 두록(Duroc), 햄프셔(Hampshire), 웨일시(Welsh), 피어트레인(Pietrain), 스포티드(Spotted), 버크셔(Berkshire)
- 나. 재래종(Korean native pig): 한국중축개량협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재래종 고유의 외모기준을 유지하는 돼지이어야 하고, 실격조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다. 멧돼지: 가축화되어 집에서 사육하는 멧돼지
- 라. 모돈: 자돈을 생산하고 있는 번식용씨돼지 마릿수
- 마. 후보돈: 번식에 이용할 목적으로 사육 중인 후보돈 마릿수
- 바. 웅돈: 번식에 이용할 목적으로 사육 중인 종모돈 마릿수
- 사. 자돈(2개월 미만), 육성돈(2~4개월 미만), 비육돈(4~6개월 이상)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표7〉 농장식별번호 발급증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제 호

## 농장식별번호 발급증

농장식별번호:

가축사육시설 명칭:

가축사육시설 소재지:

가축의 종류:

농장경영자 성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축사육 시설에 대한 농장식별번호를 부여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축산물품질평가원장

직인

※ 농장식별번호를 통보 받은 농장경영자는 사육 가축의 출생, 양수·양도(이동), 폐사, 변경신고, 돼지의 농장식별번호 표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당 농장식별번호를 숙지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1. ①~⑩란은 공통신고사항으로 모든 신고 시에 작성하며, 돼지의 경영자, 관리자에 대한 기초정보를 기재합니다.
2. 사육현황 신고는 ⑫~⑭란에 해당 내용을 기재합니다. 항목별 기재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 일반종: 우리나라 고유의 재래종을 제외한 서양종 및 모든 교잡종
    - \*서양종: 대요크셔(Large Yorkshire), 랜드레이스(Landrace), 두록(Duroc), 햄프셔(Hampshire), 웰시(Welsh), 피어트레인(Pietrain), 스포티드(Spotted), 버크셔(Berkshire)
  - 나. 재래종(Korean native pig): 한국종축개량협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재래종 고유의 외모기준을 유지하는 돼지이어야 하고, 실격조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다. 멧돼지: 가축화되어 집에서 사육하는 멧돼지
  - 라. 모돈: 자돈을 생산하고 있는 번식용씨돼지 마릿수
  - 마. 후보돈: 번식에 이용할 목적으로 사육 중인 후보돈 마릿수
  - 바. 웅돈: 번식에 이용할 목적으로 사육 중인 숫돼지 마릿수
  - 사. 자 돈: 2개월령 미만
  - 아. 육성돈: 2~4개월령 미만
  - 자. 비육돈: 4~6개월령 이상
3. 이동신고는 ⑮란에 양도(반입)·양수(반출) 구분의 □에 √ 를 표시하고, ⑯~㉔란에 해당 내용을 기재합니다.
  - 가. 이동일자: 돼지의 양도(반입)·양수(반출)일자
  - 나. 이동 두수: 양도(반입)·양수(반출) 두수(모돈, 후보돈, 웅돈, 자돈, 육성돈, 비육돈 구분의 □에 √ 를 표시하고 두수기록)
  - 다. 경영자명: 신고인 입장에서 이동 전·후 경영자 성명
  - 라. 농장식별번호(또는 가축거래상인 고유번호): 양도·양수·이동되는 상대 가축사육시설의 농장식별번호(또는 가축거래상인 고유번호)를 기재
  - 마. 사육지 주소: 이동 전·후 사육지 주소
4. 수입·수출신고는 ①~⑩란과 ㉑~㉔란을 적습니다.
5. 이 신고서는 경영자 등이 직접 작성하되 본인이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는 대리인이 작성하고 대리인의 성명과 연락처를 적습니다.
6. 전화 및 구술의 방법으로 신고를 접수받은 기관은 신고를 받은 즉시 신고서의 해당란에 그 내용을 적어서 보관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신고접수자가 대리 날인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1. 농장식별번호 확인 및 이력번호 부여

### 가. 농장식별번호의 표시여부 확인

- 도축장 경영자는 <표8>의 “돼지의 이동 등 신고서” 혹은 “돼지열병·구제역 예방접종 확인서”에 기재된 출하두수와 실제 출하두수 및 돼지 영덩이에 표시된 해당 농장의 농장식별번호의 표시 여부를 확인하고 농장별로 계류장에 입고

#### <농장식별번호 표시>

- 농장식별번호 표시 : 돼지의 **오른쪽 영덩이에** 표시
- \* 하나의 차량에 농장식별번호가 같은 농장의 돼지만을 이동하는 경우 돼지의 일부(60두 이하시 10두이상, 61두 이상시 20%이상 표시)만 표시 할 수 있음



- 도축장 경영자는 도축전 출하 돼지의 농장식별번호의 표시상태를 확인 한 후 제대로 표시가 안 된 경우 소속 검사관에게 신고하고 검사관은 도축검사신청이 된 경우 이를 반려해야 함
- 한 대의 차량에 여러 농장의 모돈을 수집하여 운반하는 경우 개체별로 농장 식별번호를 표시하여야 하며, 돼지의 몸에 페인트 등으로 추가 표시하여 도축시 농장단위로 구분입고하여 농장별로 섞이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 <확인절차>

- (도축의뢰인) 농장식별번호가 기재된 도축검사신청서 제출
- (도축장경영자) 도축검사신청서 접수 ⇒ 농장식별번호 확인 ⇒ 이력번호 신청 (이력관리시스템) ⇒ 이력번호 발급 ⇒ 이력번호 표시된 등급 신청서 제출 ⇒ 하차

**Q. 등록되지 않은 농장식별번호가 접수된 경우**

A. 신고된 가축에 대해서는 검사관은 농장식별번호 발급신청서를 접수받은 후 농림축산식품부 이력지원실로 신고, 이력지원실은 등록여부 등 확인 후 농장식별번호를 확정하고 동 내용을 검사관에게 통보, 검사관은 해당사실을 도축장경영자에게 통지

**Q. 농장식별번호가 틀리게 표시된 경우**

A. 이력지원실(1577-2633)에 신고한 후 품질평가사가 농장 확인 등의 현장실사를 통해 해당 농장의 농장식별번호 표시기상태를 확인

**나. 이력번호 발급 신청 및 발급**

- 도축업자는 농장별 출하두수를 확인한 후 이력관리시스템 혹은 도축검사신청서 입력 프로그램을 통해 이력번호발급을 신청
- 돼지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이력번호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축산물이력제」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시스템 이용신청 서류를 제출하여, 도축장별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고 <표13>의 양식으로 도축전 또는 도축신고시에 이력번호 발급신청하여야 하며 자체 ERP를 사용하고 있는 도축장은OPEN-API를 이용하여 이력번호를 신청·발급받을 수 있음
- 이력번호 : 축종코드(1), 농장식별번호(6), 일련(출하순번)번호(5)자리의 12자리

**<이력번호 생성 방법>**

## 다. 도축요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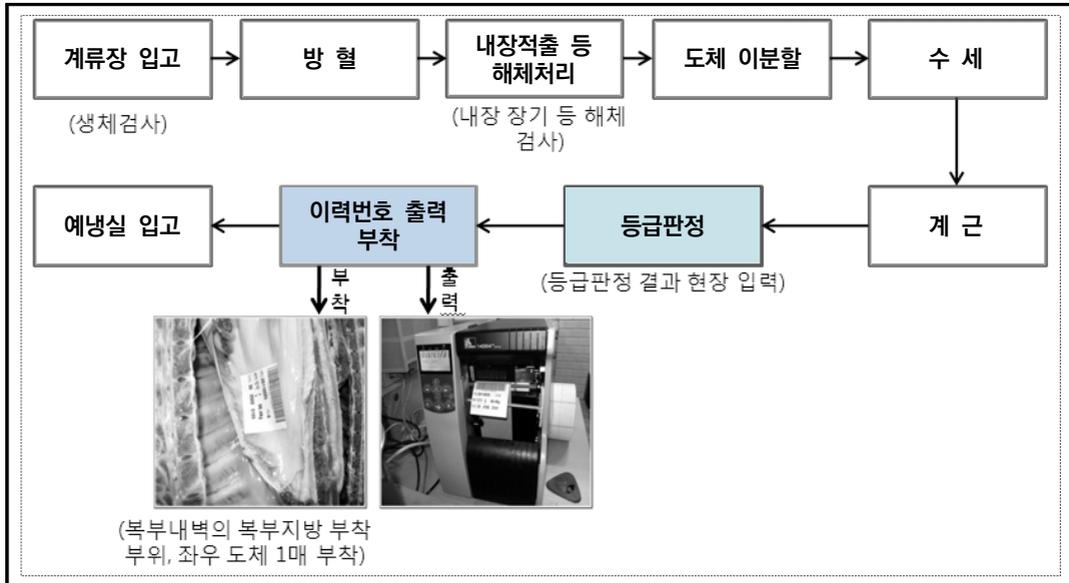
- 계류장에서는 농장단위로 입고하여 농장간 돼지가 서로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도축순번에 맞게 차례로 도축
- 도축과정에서 레일을 벗어난 돼지가 발생시 도축장 경영자는 즉시 도축번호에 맞는 농장식별번호를 검사관과 축산물품질평가사에 통보
- 검사관 및 축산물품질평가사는 신청서와 지육에 표시된 농장식별번호의 일치 여부 확인 후 도축검사 및 등급판정 실시
- 축산물도축장경영자는 도축번호(농장식별번호 단위)와 이력번호가 일치되게 표시되었는지 확인 후 반출
  - 도축과정에서 표시의 오류가 있는 경우 휴대용표시기로 이력번호 표시 내용 정정(정상번호 기입) 후 반출가능

## 라. 도축처리 결과 신고

- 도축장경영자는 도축처리 결과를 <표14>에 의한 도축업자의 도축처리결과 등 신고서를 이력관리시스템으로 신고. 다만, 도축장에서 도축신청자 및 사육 농가의 인적사항 등이 포함된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입력된 내용을 텍스트로 변환하여 신고할 수 있음
- 도축처리 결과는 도축이 완료된 날까지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해야 함. 다만, 전산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의 다음 날까지 신고해야 함

## 2. 이력번호의 표시

### <이력번호 표시 프로세스>



- 도축장경영자는 도축하는 돼지의 농장식별번호가 포함된 이력번호를 해당 도체에 표시해야 함
- 도축장경영자는 도체에 표시된 이력 번호가 오염 또는 훼손 또는 탈락이 되지 않도록 관리
- 도체에 표시된 이력번호가 오염 또는 훼손되어 확인이 어려운 경우이거나 이력번호를 기계적인 방법으로 표시할 수 없는 위축돈, 통돼지 등에는 라벨지, 휴대용표시기 등의 방법으로 이력번호를 표시
- 지육을 2분체 또는 4분체로 분할, 이동시 분할된 도체마다 이력번호 표시 등
- 도축장과 포장처리업소 시설이 직접 연결되어 도축 후 바로 포장처리업소로 이동되어 개체 또는 농장식별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이력번호와 대응된 도축번호 등으로 표시할 수 있음
- 도축장에서 도체를 2분체 또는 4분체로 분할하여 반출하여 이동하는 경우에는 분할된 도체마다 같은 이력번호를 표시

## 가. 「이력번호 자동표시기」를 이용한 표시

- 도축장 경영자는 당해 도축장에서 도축 신고한 농장식별돼지를 도축한 후 도체 한 마리 한 마리마다 이력번호를 표시해야하며 이력번호는 이력번호자동표시기를 이용하여 표시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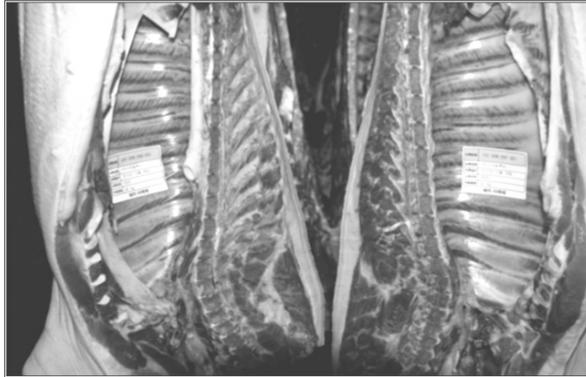
이력번호 자동표시기는 도축과정에서 등급판정 이후 돼지엉덩이 좌우에 이력번호 12자리를 잉크젯 방식으로 자동으로 표시하는 기계

- 이력번호의 표시방법은 이력번호 자동표시기, 라벨지, 휴대용이력번호 표시기를 이용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이력번호 자동표시기를 이용하는 도축장경영자는 매일 기계의 성능과 잉크의 부족상태 및 이력번호 등의 표시상태 및 기계의 청소상태 등을 확인
- 이력번호자동표시기를 이용하는 도축장경영자는 도체에 표시된 이력번호가 오염 또는 훼손되어 확인이 어려운 경우이거나 이력번호를 기계적인 방법으로 표시할 수 없는 위축돈, 통돼지 등에는 라벨지 부착, 휴대용 이력번호 표시기 등을 이용하여 이력번호를 표시
- 도축장 밖으로 반출하는 지육에 분할된 지육의 양쪽에 이력번호를 잘 표시되었는지 확인하고, 반출업자가 이력번호가 표시되지 않은 지육이 반출하지 않도록 관리



## 나. 라벨프린터를 이용한 표시

- 이력번호 자동표시기가 설치되지 않은 도축장은 이력번호 전용 라벨프린터를 이용하여 이력번호 12자리가 포함된 라벨지를 돼지의 좌우 복부내벽 등에 부착
- 라벨프린터에 의해 라벨지를 부착하는 경우 돼지가 이동중에 라벨지가 떨어지는 경우 같은 이력번호가 표시된 라벨지 등을 이용하여 표시



## 다. 휴대용 이력번호 표시기를 이용한 표시

- 이력번호자동표시기 혹은 이력번호 라벨프린터가 전산장애 등으로 도축과 함께 표시하기가 어려운 부득이한 경우 휴대용 이력번호 표시기를 이용하여 표시할 수 있음

※ 휴대용이력번호 표시기는 이력번호 12자리를 표시할 수 있는 휴대용 이력번호 표시기로 색소는 식용색소 적색3호 또는 식품첨가물공전에서 허용하는 색소를 사용

## 라. 이력번호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 도축장과 포장처리업소 시설이 직접 연결되어 도축 후 바로 포장처리 업소로 이동되어 개체 또는 농장식별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이력 번호와 대응된 도축번호 등으로 표시할 수 있음

## 마. 귀표 등이 없는 가축의 처리

- 도축장경영자는 농장식별번호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돼지의 도축을 금지해야 함.

다만, 귀표 등이 천재지변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농장 식별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 가축을 도축 의뢰받은 경우 해당 시도 소속 검사관에 신고하고, 검사관의

확인을 받은 도축장 경영자는 도축장 이력번호 발급신청서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이력 번호를 검사관에 알리고 검사관은 도축업자에게 통보

- 검사관으로부터 이력번호를 통보받은 도축업자는 돼지의 농장식별번호를 근거로 이력번호를 생성 후 해당 번호를 도체에 표시

#### 바. 전산장애 등으로 이력번호가 생성되는 않는 경우

- 돼지이력제 도축단계 전산장애 시 위기대응 절차

구분	위기 상황	위기대응 절차
전산 장애 시 (인터넷)	부분 장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모바일)</b> 모바일 핫스팟을 통해 이력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정상적으로 업무처리(무선 랜카드 활용)</li> <li>• <b>(회선복구)</b> 인터넷 회선의 신속한 복구 처리</li> </ul>
	전체 장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상황보고)</b> 전산장애 상황을 해당 지원 및 이력사업본부 이력지원처(이력지원실)에 신속하게 보고</li> <li>• <b>(수동발급)</b> 이력번호 수동발급 기준에 따라 이력번호를 발급하도록 도축장 경영자에게 통보</li> <li>• <b>(등급판정)</b> 등급판정 신청내역과 발급된 이력번호의 일치 여부 확인</li> <li>• <b>(이력표시)</b> 돼지도체에 이력번호 자동표시거나 라벨지를 통한 이력번호 표시가 불가할 경우에는 휴대용 이력번호 수동 표시기를 이용(이력표시 상태 점검)</li> <li>• <b>(전산신고)</b> 도축 완료 후 도축결과신고용 파일(txt)을 생성하여 이력지원실에 제출</li> <li>• <b>(결과보고)</b> 위기 상황에 따른 이력제 도축단계 업무처리 결과를 이력지원처에 결과 보고</li> <li>• <b>(결번처리)</b> 수동으로 발급한 이력번호는 자동 발급 시 중복되지 않도록 결번처리(IT지원실)</li> </ul>

\* **(중복확인)** 돼지이력번호 수동발급 시에는 기존에 발급된 이력번호와의 중복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 (작업장별 이력번호 수동발급 내역 관리 필요)

\* **(모바일 핫스팟)** 이동통신을 통한 무선인터넷이 가능하도록 노트북 및 무선랜카드(데스크탑 PC용)를 상시 비치하여, 인터넷 장애 시 유연하게 대처

○ 돼지고기이력제 이력번호 수동발급 기준

지원	작업장명	일련번호	지원	작업장명	일련번호
서울	농협부천축산물공판장	900##	광주 전남	농업회사법인(유)참푸른글로벌	936##
	삼성식품(주)	901##		(주)만나	937##
	(주)우석식품	902##		(주)대호축산	938##
	포천농축산(주)	903##		새순천축산	939##
	철원한양영농조합	904##		삼국산업	940##
	(주)친환경명품축산	905##		함평축산물처리장(주)농업회사법인	941##
	(주)경기엘피씨	906##		오성식품	942##
경기	협신식품	907##	전북	대원축산(주)	943##
	(주)우경축산	908##		중앙축산	944##
	(주)평농	909##		(주)미래축산	945##
	도드람엘피씨공사	910##		축림	946##
	농협중앙회 축산물위생교육원	911##		금호산업	947##
강원	우진산업	912##	대구 경북	(주)삼정	948##
	케이엘엘피씨	913##		(주)농협목우촌김제육가공공장	949##
	우리손에프앤지(주)강원엘피씨	914##		국립축산과학원	950##
	(사)평창기업	915##		(주)복수	951##
	(주)박달재엘피씨	916##		(유)남원제일푸드	952##
	(주)부농산업	917##		산수들	953##
	(주)장원식품	918##		도드람김제FMC	954##
대전 충남	사조산업(주)천안가공장	919##	부산 울산 경남	신흥산업	955##
	논산계룡축협	920##		(주)삼세	956##
	화정식품	921##		경신산업	957##
	백제나루 영농조합법인	922##		농협고령축산물공판장	958##
	(주)홍주미트	923##		(주)롯데푸드	959##
	(주)광축	924##		구미칠곡축협	960##
	중앙산업	925##		(주)민속LPC	961##
충북	대전충남양돈농협포크빌축산물공판장	972##	제주	새한축산	962##
	농협음성축산물공판장	926##		소백산한우	963##
	(주)팜스코음성공장	927##		김해축공	964##
	(주)대산에이치농업회사법인	928##		한축산업	965##
	(주)팜스토리한냉	929##		삼와산업	966##
	(주)동아식품	930##		부경축공	967##
	한우영농조합맥우	931##		농업회사법인 서라벌(주)	968##
	대성실업(주)	932##		(주)영남엘피씨	969##
광주 전남	사조산업(주)충주공장	933##	제일리버스(주)	970##	
	농협경제지주(주)나주축산물공판장	934##	제주축협	971##	
	삼호축산	935##	제주LPC	973##	

\* (이력번호) 1(돼지)+농장식별번호(6자리)+일련번호(5자리) ⇒ (예시) 농장별 일련번호를 각각 부여하므로 농장이 다르면 일련번호는 동일하게 가능(1 123456 90001, 1 234567 90001 ...)

\* (수동발급) 전산장애로 이력번호 자동발급이 불가할 경우, 작업장별 고유의 일련번호 규칙에 따라 적용.

\* (주의사항) 도축장, 신청자, 농장식별번호, 도축일이 일치할 경우, 하나의 이력번호를 사용

## 사. 경매내역 신고

- 도축장경영자는 도축 또는 경매 결과를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도축 또는 경매가 완료된 날까지 신고. 다만, 전산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의 다음 날까지 신고
  - 다만, 농협 축산물공판장의 경우 축산경제통합시스템을 이용하여 신고내역을 이력관리시스템으로 신고할 수 있음
- 농협의 축산경제통합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도매시장의 경매결과는TXT파일이나 Excel파일로 변경하여 이력관리시스템으로 전송가능

## 아. 도매시장 관리사항

- 축산물품질평가사는 경매내역이 경매가 완료된 즉시 정확한 경매내역이 이력관리시스템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관리
- 도매시장은 모돈이 많고 대부분 지육으로 반출하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이력번호 표시 및 반출에 특히 유의
- 증명서 발행
  - 도축장경영자는 경매 후 발행하는 증명서인 축산물낙찰서와 축산물공급명세서 등에 이력번호를 표시
  - 축산물낙찰서 및 축산물공급명세서
- 축산물수입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또는 식육판매업자·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 및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가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판매하는 경우에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에 이력번호를 기재하여 발급하는 대상자

### 〈이력관리대상 축산물의 거래명세서 등 발급 대상자〉 (시행규칙 제20조)

1. 식육포장처리업자
2. 식육판매업자·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 및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3.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자
4. 「식품위생법」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
6. 이력번호를 요구하는 구매자
7.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 자. 증명서 발급

- 검사를 실시한 검사관은 이력번호를 기재한 도축검사증명서를 검사신청인에게 교부하며, 축산물품질평가사는 등급 및 이력번호가 표시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등급판정신청인에게 교부

### 3. 장부의 기록관리·증명서교부 등

- 도축업자는 도축처리 및 경매 결과를 장부 또는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날짜별로 기록·관리해야 하며 기록일로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함
  - 도축장 경영자는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www.lpsms.go.kr](http://www.lpsms.go.kr)) 또는 이력관리시스템에 신고할 수 있음

### <표13> 돼지이력번호 발급신청서 양식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 돼지 이력번호 발급신청서

※ 아래 신청서 작성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대표자 또는 명칭)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도축 의뢰인	성명(대표자 또는 상호)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출하 농장정보	농장명		성명(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농장식별번호	
	주소	GPS좌표	연락처	
출하 돼지정보	출하 두수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축산물품질평가원장 귀하

#### 유의사항

신청서는 도축 출하시 농장식별번호 또는 도축 의뢰인별 단위로 작성합니다.

〈표14〉 도축처리 결과 등의 신고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19. 12. 31.〉

도축처리 결과 등의 신고(제12조제3항 관련)

신고의 종류	신고 내용
도축처리 결과	1. 검사신청인 가. 성명 나. 생년월일(법인의 경우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다. 업소명 라. 주소(전화번호) 2. 도축의뢰인 가. 성명 나. 생년월일(법인의 경우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다. 업소명 라. 주소(전화번호) 마. 인허가(등록)번호 3. 도축 목적 4. 출하 농장 가. 성명(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농장경영자 성명 등을 말한다) 나. 생년월일(법인의 경우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다. 주소 라. 농장식별번호 5. 접수번호 6. 가축의 종류(소, 돼지, 닭, 오리) 7. 소의 종류(한우, 젃소, 육우, 수입소) 8. 닭의 종류(육계, 삼계, 토종닭, 산란노계, 산란중계, 육용중계, 검용중) 9. 성별(소, 종돈만 해당) 10. 연령(소만 해당) 11. 생체량 12. 총수량 13. 도체중량 14. 개체식별번호(소, 종돈만 해당) 15. 이력번호 16. 수입가축의 경우 가. 수출국가명 나. 검역계류장 도착일 17. 신청 연월일
경매 결과	1. 개체식별번호(소만 해당) 2. 이력번호(돼지만 해당) 3. 접수번호(도체순번) 4. 지육·부분육 중량 5. 자체 도축이 아닌 지육·부분육의 경우 가. 지육·부분육 구분 나. 반입처 정보(업소·도축장명,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등) 6. 중도매인 가. 성명 나. 생년월일(사업체인 경우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다. 업소명 라. 주소(전화번호) 7. 경매 거래·반출처 가. 성명 나. 생년월일(사업체인 경우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다. 업소명 라. 주소(전화번호)
그 밖에 도축처리 결과 및 경매 결과 신고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1. 식육포장처리 실적 신고

### 가. 전산 신고대상(국내산 돼지고기)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자 중 도축업의 작업장 시설과 일체를 이루는 시설이나 연접(連接)한 시설에서 영업을 하는 자
- 식육포장처리업자 중 영업장의 전년도 연간(1월 1일 - 12월 31일) 평균(휴업 등의 이유로 전년도 연간 기준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 또는 월별 기준으로 산정하고, 신규 허가의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해당 작업장의 시설 규모나 사업계획 물량 등을 고려한 연간 예산 평균으로 산정한다) 종업원이 5명 이상인 자

### 나. 신고기한

- 포장처리 및 거래신고 : 돼지고기를 포장 처리 또는 거래(매입·반입·판매·반출)한 날부터 5일 이내

#### <용어의 정의>

- 판매(販賣) : 포장처리업소에서 다른 식육판매업소 등에 판매하는 경우이며 매출과 같은 의미임
- 반출(搬出) : 지육 혹은 부분육을 다른 포장처리업소나 식육판매업소 등으로 매출행위 없이 옮기는 것을 말함
- 매입(買入) : 식육을 포장처리하기 위해 도축장 또는 다른 포장처리업소에서 지육 혹은 부분육을 구입 하는 것을 말함
- 반입(搬入) : 식육을 포장처리하기 위해 지육 또는 부분육을 도축장 또는 다른 포장처리업소에서 매출발생이 없이 해당 업소로 옮기는 것을 말함

### 다. 이력관리시스템 이용권한 부여

- 영 제4조에 따라 국내산 이력축산물을 취급하는 식육포장처리업자 중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산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19>의 이력관리시스템 이용신청서를 축산물품질평가원장에게 제출

-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은 신청서를 접수받으면 해당 사업장의 전산처리 능력, 규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한을 부여

## 2. 포장처리 방법

### 가. 이력번호별 포장처리

- 포장처리 시 농장 간 혼입이 없도록 이력번호 단위로 구분·가공함.
- 일반등급(1+/1/2)과 등외등급은 별도로 구분하여 포장해야 함. (등외등급은 묶음번호로 별도 구성)

### 나. 묶음번호 구성

- 이력번호가 다른 여러 개의 국내산이력축산물을 하나로 포장하는 경우 묶음번호 구성내역을 기록한 후 묶음번호를 사용할 수 있음
- 묶음번호 구성 시 가급적 성별·등급별로 구성하고 이력번호는 최대 30개 이하로 해야 함
- 묶음번호를 구성한 이력번호는 다시 묶음번호로 사용할 수 없음. 다만, 묶음 구성내역에 대하여 이력관리시스템으로 전산신고를 하는 돼지고기의 경우 한 번 더 묶음번호를 구성할 수 있음(재묶음 할 경우에도 최대 30개 이하)
- 구성된 묶음번호의 구성내역은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해야 하며, 전산신고 대상이 아닌 업소에서는 묶음번호 구성내역서(축산물이력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구매자 등이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함.
- 묶음번호는 L을 포함한 15자리 문자·숫자로 표시.  
[묶음번호(15) = 묶음고정코드(1)+구분코드(1)+묶음날짜코드(6)+영업자코드(4)+일련번호(3)]

※ 영업자코드 : 전산신고 대상 - 이력관리시스템으로 부여 (정보수정에서 확인 가능)  
 전산신고 비(非)대상 - 사업자등록번호 10자리 숫자 중 마지막 한 자리를 제외한 4자리

〈식육 재 포장처리 과정〉

			
<p><b>입고</b> (파렛트 단위)</p>	<p><b>적재(박스육 단위)</b> - 도축장별, 브랜드별 분리</p>	<p><b>속포장(모두 표기)</b> (로트, 농장단위, 무 표시)</p>	<p><b>이동(포장처리업소)</b></p>
			
<p><b>세절 작업</b> (삼겹살 2라인)</p>	<p><b>산소 포장</b> (보존기간 : 10일)</p>	<p><b>라벨프린팅(일괄) 후 출고</b></p>	

### 3. 포장처리 및 거래내역 신고

#### 가. 신고방법

- 영 제4조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자가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포장처리 하는 경우 <표15>서식의 포장처리 실적을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
- 영 제4조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자가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거래하는 경우 <표16>서식의 거래내역신고서를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
- 전산신고대상이 아닌 식육포장처리업자가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포장처리 할 때에는 <표15>서식의 포장처리 실적신고, 판매·반출하는 경우에는 <표17>에 기록·관리해야 하며, 포장처리하지 않고 매입 및 반출만 하는 경우에는 매입 내역에 대하여 <표16>로 신고서를 기록·관리해야 함
- 포장처리 및 거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
  - 포장처리 신고 (표15 참고) : 업체명/전화번호/소재지/포장처리일/이력(묶음) 번호/원료 또는 부위명/무게/매입·반입처/의뢰업체명
  - 거래내역 신고 (표16 참고) : 신고인/출고(입고)처/거래처/거래내역

#### 나. 지육거래 시 신고 방법

- 전산신고대상인 포장처리업소에서 지육을 매입·판매(반출)하는 경우에는 <표16> 서식에 따른 신고내용을 이력관리시스템에 신고

#### 다. 다른 포장처리업소 등에서 포장처리를 의뢰하는 경우

- <표15>서식의 이력관리대상축산물 포장처리 신고서 중 ⑥의뢰업체명란에 “상호, 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를 기록·관리하거나 전산신고대상인 경우 이력관리시스템에 신고

## 〈표15〉 이력관리대상축산물 포장처리 신고서 양식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9. 12. 31.>

# 이력관리대상축산물 포장처리 신고서

※ 작성 시 아래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체명	전화번호
주소	

① 포장 처리일	② 이력(묶음) 번호	③ 원료 또는 부위명	④ 무게 (kg, t)	⑤ 매입·반입처			⑥ 의뢰업체명		
				상호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전화 번호	상호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전화 번호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포장처리 내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축산물품질평가원장 귀하

### 유의사항

- ① 포장 처리일은 매입 또는 반입된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포장 처리한 날짜를 적습니다.
- ② 이력번호는 매입 당시 해당 이력관리대상축산물에 표시된 이력번호 12자리를 적습니다. 다만, 묶음번호를 적은 경우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른 묶음번호 구성내역을 작성하고 보관(이력관리시스템 전산신고 포함)해야 합니다.
- ③ 원료 또는 부위명은 해당 식육포장처리업체에서 매입한 도체 또는 부분육의 명칭을 적습니다.
- ④ 무게는 해당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무게(kg 또는 t)를 적습니다.
- ⑤ 매입·반입처는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구입한 업체의 상호,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및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도축장에서 직접 매입·반입한 경우에는 도축장의 상호,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및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⑥ 의뢰업체명은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등에 의하여 의뢰되어 포장처리된 이력관리대상축산물에 대하여 의뢰업체의 상호,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및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16〉 국내산이력축산물의 거래신고서 양식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9. 12. 31.>

**국내산이력축산물의 거래신고서(소·돼지·닭·오리 고기)**

※ 아래 및 뒤쪽의 신고서 작성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법인명)	대표자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연락처		
	영업허가(신고)번호			
	주소			
(출고·입고)처	영업장의 명칭(상호)	영업허가(신고)번호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거래처	성명(법인명)	대표자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연락처		
	영업허가(신고)번호			
	주소			
거래내역	거래일	도축일	가공일	
	이력번호	도축번호	원료 또는 부위명	
	수량(BOX, 마리)	무게(kg, t)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내산이력축산물의 거래내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축산물품질평가원장 귀하

유의사항

1. (출고·입고)처란 판매·반출신고의 경우에는 "출고"에, 매입·반입신고의 경우에는 "입고"에 "O"표를 하고, 국내산이력축산물 이 포장처리 또는 보관되어 있는 창고의 영업장 명칭(상호) 및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 국내산이력축산물 거래내역 신고서는 거래처별로 작성합니다.
3. 거래내역이 다수인 경우에는 뒤쪽의 거래내역 목록을 작성합니다.
4. 이력번호는 거래 당시 국내산이력축산물에 표시된 이력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묶음번호를 적는 경우에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묶음번호 구성내역서를 첨부합니다.
5. 원료 또는 부위명은 거래한 국내산이력축산물 또는 거래내역서 등에 적힌 내용을 기준으로 부위별(예: 갈비, 목살, 제4위, 목뼈 등)로 최대한 세부적으로 적습니다.
6. 수량 및 무게는 거래한 물량을 박스 수량과 무게[kg 또는 t(톤)] 단위로 적습니다. 다만, 도체 지육으로 거래하는 경우 도축일, 가공일, 도축번호를 적고, 수량에 두수(마리)와 무게(Kg)로 적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4. 장부의 기록 방법

### ○ 대상

-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취급하는 모든 식육포장처리업소 및 식육판매업소

### ○ 기록내용

- 대통령령으로 지정 된 식육포장처리업자(5인이상, 도축장 연접)는 식육을 포장처리한 경우 <표15>에 의한 포장처리실적을, 거래한 경우는 <표16>에 의한 거래내역신고서를 전자적 처리방식으로 날짜별로 구분하여 관리
- 대통령령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식육포장처리업자(5인 미만)는 식육을 포장 처리한 경우 <표15>와 업체간 거래한 경우 <표17>를 장부에 기록 관리

### ○ 장부의 비치

- 식육포장처리업자는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포장처리 또는 거래·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록(전자적 처리방식을 포함한다)하고, 기록일부터 2년간 보관

### ○ 영수증·거래명세서 교부

- 식육포장처리업자는 구매자가 요청할 경우 해당 이력번호를 기재한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나, 축산법에 의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사본을 교부하여야 함

## 1. 거래(전산)신고 대상 방법 및 절차

가. 전산 신고대상 : 식육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 「축산물 위생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식육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신고를한 자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나목6)에 따른 기타식품 판매업으로 신고한 영업장에서 영업을 하는 자로서 종업원 5인 이상이거나 영업장 면적이 50㎡이상인 자 또는 「축산물이력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신고 의무자가 되기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한 자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나목6)에 의한 기타식품판매업이란?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영업장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자)

나. 신고절차 : 거래신고 대상자는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아래의 신고내용을 전자적으로 신고

□ 신고 내용 : 국내산 축산물의 거래실적

- 신고인(성명, 대표자, 법인번호, 영업허가번호), 출·입고처(영업장 명칭, 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영업허가번호), 거래처, 거래내역(거래일, 이력(묶음)번호, 제품명(부위명), 수량, 무게, 도체번호 등

다. 신고기한 : 거래한 날로부터 5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

라. 장부의 보관 : 매입기록 1년간, 매출기록 2년간 보관

## 2. 이력(묶음)번호의 표시방법

### □ 이력(묶음)번호 표시방법 및 이력번호의 관리

- 도체 또는 포장 처리된 부분육에 표시된 이력번호를 확인한 후 재 포장 또는 식육판매업소로 판매 등 이동을 할 경우 동일한 이력번호를 표시
- 표시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포장육의 최소단위의 용기, 포장에 동일한 이력번호를 표시
- 식육판매업자는 식육포장처리업소 등으로부터 매입한 국내산이력축산물을 판매할 경우 포장육 등에 표시된 이력번호를 확인한 후 식육 판매표시판 등에 같은 이력번호를 표시
- 이력번호가 다른 여러 개의 국내산이력축산물을 한 개로 포장할 경우 묶음번호로 표시할 수 있으며 표시된 이력번호는 환경의 변화 등으로 훼손되거나 지워지지 않도록 관리
- 이력번호는 12자리로 표시
  - 묶음번호는 L을 포함한 15자리 문자·숫자로 표시한다. 다만, 이력관리시스템에서 부여받은 영업장의 고유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영업자코드를 사업자등록번호의 조합으로 표시(「축산물이력법」시행규칙 별표 14)
- 이력번호 표시 예시(돼지의 경우, 등급은 자율적으로 표시가능)

표시	<b>식육판매표시판</b>	
	식육의 종류 원산지	돼지고기 (국내산)
	부위명칭	삼겹살
	등급	1+ ① 2 등외
	도축장명	충청남도농업기술원
	이력(묶음)번호	170116800101
	100g당 가격	1,950 원

- 거래·판매 후 남은 국내산이력축산물을 보관하는 경우 이력번호를 표시하여 보관

### 3. 거래내역 전산신고·기록방법

#### 가. 전산신고 방법

- 영 제4조에 의한 식육판매업자(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포함)가 국내산 이력축산물을 거래하는 경우 <표16>서식 별지10호서식의 거래내역신고서를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
- 전산신고대상이 아닌 식육판매업소에서 국내산이력축산물을 거래할 때는 거래내역신고서를 장부로 기록 관리(단,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서도 가능)

#### <신고내용>

- ① 신고자 정보 : 법인명, 대표자, 사업자, 영업인허가 번호, 법인등록번호 등
- ② 출고(입고처) 및 거래처 정보
  - 영업자 명칭, 영업인허가 번호, 법인등록번호 등
- ③ 거래내역
  - 거래일자, 이력·묶음번호, 제품명(부위명), 수량, 무게, 도체번호 등

#### 나. 거래내역서 기록방법

- 영 제4조에 의한 거래신고 의무자인 식육판매업자,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및 식용란수집판매업자는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매입한 경우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1조에 따른 거래내역서에 이력번호(묶음)를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날짜별로 기록·관리해야 하며, 「축산물이력법」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에게 판매·반출한 경우에는 수입산이력축산물은 별지 제8호서식, 국내산이력축산물은 별지 제10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에 따른 판매·반출실적을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관리해야 하고, 매입에 관한 기록은 매입한 날부터 1년간, 매출에 관한 기록은 매출한 날부터 2년간 보관
- 영 제4조에 의한 거래신고 의무대상이 아닌 식육판매업자, 식육부산물 전문판매업자 및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가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매입한 경우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에 따른 거래내역서에 이력번호(묶음)를 자체적으로 기록·관리하고, 「축산물이력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에게 판매·반출한 경우에는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른 판매·반출

실적을 장부에 거래일별로 기록관리하고, 매입은 1년, 매출은 2년간 보관 (판매·반출실적의 기록·관리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에 따른 거래내역서의 작성으로 같음할 수 있음)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 및 이력관리대상축산물판매업자가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에 이력번호를 기재하여 발급
- 법 제18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 별표12 및 별표13에 따라 해당 영업자가 발급하여야 하는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를 말함

#### 4. 이력정보의 공개

- 이력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휴대전화기를 이용하는 등 소비자가 이력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이력번호를 조회하는 경우에는 이력번호가 구성된 개체의 가장 낮은 등급이 표시되며, 묶음번호는 <표20>의 구성내역서 중 ‘⑦ 등급’란 신고한 등급이 조회 됨. 즉, 1개의 등급(단일등급)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해당등급이 공개되고, 1+, 1등급으로 묶인 경우에는 1등급이상(1+, 1등급 포함) 으로, 1+,1 ,2등급으로 묶인 경우에는 2등급이상(1+, 1, 2등급 포함) 으로 공개
- 포장처리업소를 포함한 식육판매업소는 최종 소비자 편의의 입장에서 특정등급, 성별 등의 표시가 구체적으로 표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행하여야 함
-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이력관리대상가축과 국내산이력축산물에 대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음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조(이력관리대상가축·국내산이력축산물 이력정보 공개 참고)

〈이력정보 조회 시 등급정보 공개화면〉

이력번호 조회	묶음번호 조회														
돼지 개체조회 <span style="float: right;">닫기</span>	돼지 개체조회 <span style="float: right;">닫기</span>														
<p>&gt; 사육정보</p> <table border="1"> <tr><td>이력번호</td><td>1 200189 00021</td></tr> <tr><td>농장식별번호</td><td>200189</td></tr> <tr><td>농장경영자</td><td>████████████████████</td></tr> <tr><td>농장소재지</td><td>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 예말리</td></tr> </table>		이력번호	1 200189 00021	농장식별번호	200189	농장경영자	████████████████████	농장소재지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 예말리						
이력번호	1 200189 00021														
농장식별번호	200189														
농장경영자	████████████████████														
농장소재지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 예말리														
<p>&gt; 도축정보</p> <table border="1"> <tr><td>도축장</td><td>(주)팜스토리 한냉</td></tr> <tr><td>소재지</td><td>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성재리 421-3번지</td></tr> <tr><td>도축일자</td><td>2014-12-11</td></tr> <tr><td>검사결과</td><td>합격</td></tr> </table>		도축장	(주)팜스토리 한냉	소재지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성재리 421-3번지	도축일자	2014-12-11	검사결과	합격						
도축장	(주)팜스토리 한냉														
소재지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성재리 421-3번지														
도축일자	2014-12-11														
검사결과	합격														
<p>&gt; 식육포장처리 정보</p> <table border="1"> <tr><td>업소명</td><td>(주)팜스토리 한냉</td></tr> <tr><td>포장일자</td><td>2014-12-12</td></tr> <tr><td>소재지</td><td>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성재리 421-3번지</td></tr> <tr><td>등급</td><td></td></tr> </table>		업소명	(주)팜스토리 한냉	포장일자	2014-12-12	소재지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성재리 421-3번지	등급							
업소명	(주)팜스토리 한냉														
포장일자	2014-12-12														
소재지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성재리 421-3번지														
등급															
<p>&gt; 묶음번호</p> <table border="1"> <tr><td>묶음번호</td><td>L11412125073002</td></tr> <tr><td>상호</td><td>(주)팜스토리 한냉</td></tr> <tr><td>주소</td><td>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성재리 ██████████</td></tr> </table>		묶음번호	L11412125073002	상호	(주)팜스토리 한냉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성재리 ██████████								
묶음번호	L11412125073002														
상호	(주)팜스토리 한냉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성재리 ██████████														
<p>&gt; 이력정보</p> <table border="1"> <thead> <tr> <th>번호</th> <th>이력번호</th> </tr> </thead> <tbody> <tr><td>1</td><td>120018900021</td></tr> <tr><td>2</td><td>110114900023</td></tr> <tr><td>3</td><td>170067700009</td></tr> <tr><td>4</td><td>149003900029</td></tr> <tr><td>5</td><td>140017000130</td></tr> <tr><td>6</td><td>140029400014</td></tr> </tbody> </table>		번호	이력번호	1	120018900021	2	110114900023	3	170067700009	4	149003900029	5	140017000130	6	140029400014
번호	이력번호														
1	120018900021														
2	110114900023														
3	170067700009														
4	149003900029														
5	140017000130														
6	140029400014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당 이력관리대상가축이 가축 및 축산물식별 대장에 등록된 날부터 도축·폐사·수출된 후 3년까지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제1항에 따른 정보를 공개

**5. 전산신고를 위한 이력관리시스템 이용 신청방법**

- 이력관리시스템에 전산신고를 희망하는 식육판매업소는 돼지고기이력제 홈페이지에서 이력관리시스템이용신청서(표19)를 다운로드하여 농림 축산식품부 이력지원실(1577-2633)로 신청
- ‘이력관리시스템 이용신청서’ 서식 (축산물이력제 홈페이지 [www.mtrace.go.kr](http://www.mtrace.go.kr)) 자료실 등재



〈표19〉 이력관리시스템 이용신청서 양식

## 이력관리시스템 이용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3일		
사업장 정보	사업장명		사업자번호	
	대표자명		연락처 (휴대전화)	
			팩스(FAX)	
	소재지 주소	(도로명)	(우 : )	
	이메일			
	영업장 면적	m <sup>2</sup>	종업원수	명
	이력관리품목	【 】소 【 】돼지 【 】닭 【 】오리 【 】계란		
영업의 종류 ※ 해당업종 모두 체크	【 】계열화사업자(닭·오리)	축산계열화사업등록증 :		
	【 】농장경영자	농장식별번호 :		
	【 】도축업	허가번호 :		
	【 】식육포장처리업	허가번호 :		
	【 】식육판매업 등	신고필증번호 :		
	【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번호 :		
	【 】농장내부 【 】농장외부	농장식별번호 :		
【 】식용란수집판매업	신고필증번호 : HACCP인증번호 :			
이력시스템 사용자 정보	사용자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유선전화	
	이메일		팩스번호	

위와 같이 이력관리시스템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명 : (서명 또는 인)

### 축산물품질평가원장 귀하

첨부 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업자등록증 1부.</li> <li>2. 허가증(축산업, 도축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용란선별포장업) 1부.</li> <li>3. 신고필증(식육판매업 등, 식용란수집판매업) 1부.</li> <li>4. HACCP-식용란수집판매업 인증서 1부.</li> </ol>
----------	---

이력지원실 문의 : 전화 1577-2633 / 팩스 044-410-7178 / mtrace@ekape.or.kr

## 1. 묶음번호

### 가. 묶음번호 표시 방법

- 식육포장처리업자,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및 식육판매업자가 여러 개의 다른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한 개로 포장 처리·판매할 경우 이력번호를 전부 표시하거나 <표20> 묶음번호 구성내역서를 기록한 후 묶음번호를 사용할 수 있음
- 국내산 쇠고기의 경우 등급표시 의무 부위인 안심, 등심, 채끝, 양지, 갈비, 설도, 앞다리는 같은 등급으로 포장한 경우에만 묶음번호로 표시할 수 있음
- 여러 개의 다른 이력번호를 하나의 포장지로 묶은 경우 소포장지마다 해당 이력번호를 표시
- 식육포장처리업자 또는 식육판매업자는 소의 종류가 같을 때에만 묶음 번호를 구성할 수 있음
- 묶음번호를 구성한 이력번호는 다시 묶음번호로 사용할 수 없음. 다만, 묶음번호 구성내역에 대한 이력관리시스템으로 전산신고를 하는 돼지고기의 경우 한 번 더 묶음번호를 구성할 수 있음
- 돼지고기의 묶음번호 가공시 선택적으로 성별, 등급별로 묶음번호 구성을 권장

### 나. 묶음번호의 관리

- 묶음번호를 구성하는 쇠고기의 개체는 20마리 이하로 함. 다만, 여러 마리의 쇠고기를 혼합하여 포장하는 갈비, 세절육, 분쇄육 등은 50마리 이하로 구성할 수 있음
- 묶음번호를 구성하는 돼지고기의 이력번호는 30개 이하로 함(재묶음 포함)
- 식육포장처리업자와 식육판매업자는 구매자 등이 요청한 경우 묶음번호 구성내역서를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함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전산신고 대상 식육포장처리업소, 식육판매업소는 소비자가 묶음번호를 인터넷 등으로 이력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묶음번호 구성내역서를 전산신고

## 다. 묶음번호 구성 체계

- 묶음번호는 아래 구성체계와 같이 L을 포함한 문자와 숫자로 표시.

### 〈묶음번호의 구성체계〉

구분	묶음고정코드	구분코드	묶음날짜코드	영업자코드	일련번호
길이	1	1	6	4	3
타입	영문자(L)	숫자	숫자	숫자	숫자

가. 묶음고정코드는 영문자 'L'을 표기한다.

나. 구분코드는 쇠고기는 '0'으로 하고, 돼지고기는 '1'로 표기한다.

다. 묶음날짜는 연도 2자리, 월 2자리, 일 2자리로 표기한다.

라. 영업자코드는 다음과 같이 부여한다.

- (1) 포장처리실적 전산신고 대상 영업자의 경우 : 이력관리시스템으로 부여 받은 영업장의 고유번호를 사용한다.
- (2) 포장처리실적 전산신고 대상 영업자가 아닌 경우 : 영업자코드는 세무서에 부여 받은 사업자등록번호 10자리 숫자 중 끝에서 마지막 한 자리 숫자를 제외한 4자리 숫자를 사용한다.

마. 일련번호는 묶음상품의 일별로 중복되지 않도록 영업자가 자체적으로 부여한다.



## 1. 검사추진체계

### 가. DNA동일성검사의 실시목적

- 돼지고기이력제의 유효성을 확인·감시함으로써 소비자 등으로부터 신뢰 확보
- 위생·안전성, 원산지 표시 등의 문제 발생에 대비한 추적검사 시스템 확립으로 문제발생시 그 이력을 추적하여 회수, 폐기 등을 신속하게 조치

### 나. 시행기관

- 시·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축산물품질평가원

### 다. 이력단계별 지도단속·모니터링

- 지도단속(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출입·검사 및 수거)
  - 시·도 : 사육농가,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업소, 식육판매업소, 축산물 유통전문판매업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식육판매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소
- 모니터링(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전자검사에 필요한 시료의 수거 및 검사)
  - 축산물품질평가원 : 사육농가,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업소, 식육판매업소,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소
- 모니터링 : 축산물품질평가원(이력정보 검증, 단속기관 정보제공)
- 이력단계별 시료채취 및 검사기관(모니터링 포함)
  - 도축단계 : 축산물품질평가원(시료채취 및 보관)
  - 포장처리단계 : 시·도, 축산물품질평가원
  - 판매단계 : 시·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축산물품질평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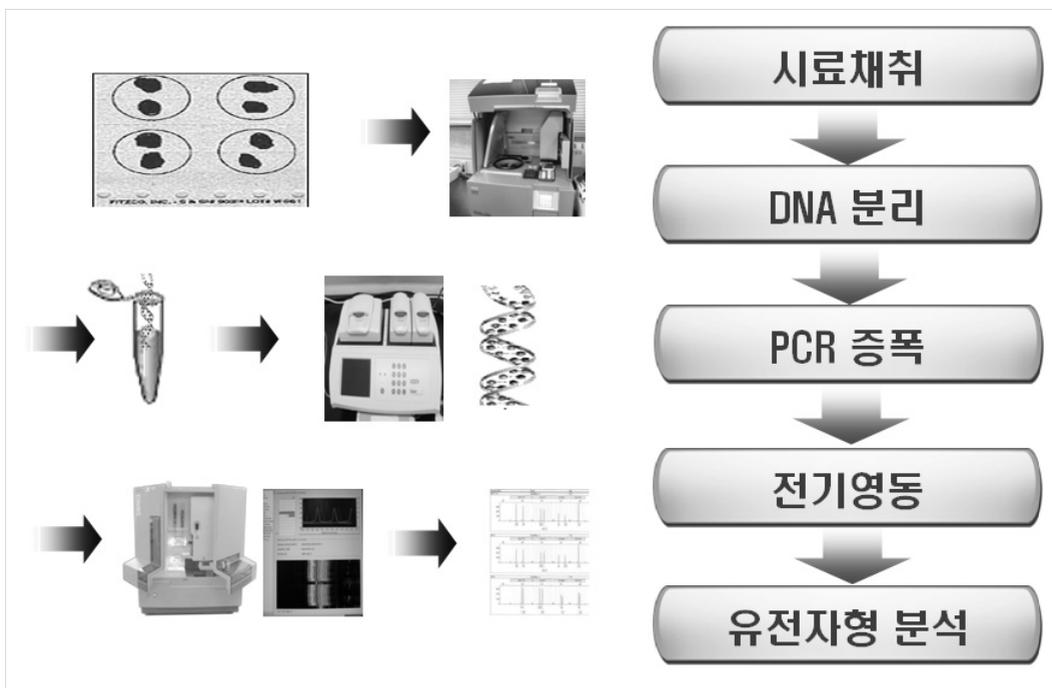
라. DNA동일성검사의 분석 및 판정절차

○ 분석과정

- 일반적인 DNA동일성검사의 분석과정은 5단계로 실시



**DNA동일성검사 분석과정**



## 2. DNA 동일성검사의 시료채취 및 관리

### 가. 검사용 시료의 채취

#### ○ DNA 동일성검사 검사용 시료채취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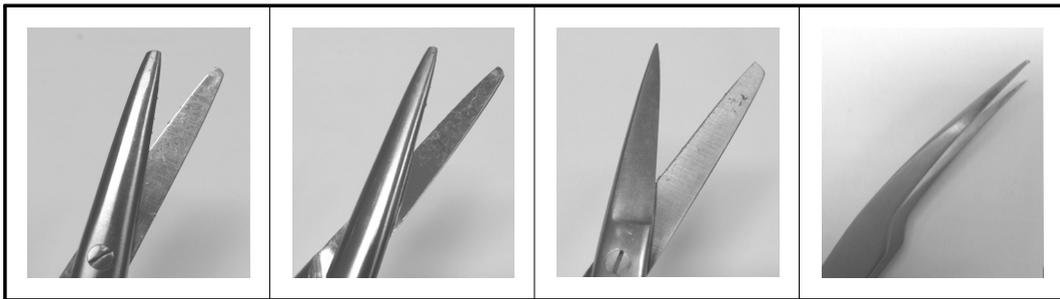
	업무흐름	추진요령
① 시료채취 후 지퍼백에 밀봉		칼, 가위 등 도구를 이용하여 살코기 부분을 약 20g 채취, 이를 약 10g정도로 이등분, 작은 크기의 지퍼백(5cm×10cm)에 밀봉
② 시료채취 확인서 사본과 채취시료 봉투 밀봉		지퍼백에 넣은 시료는 발송대장에 기록한 후, 시료채취 확인서 사본과 함께 시료봉투에 밀봉
③ 담당자 간 서명날인		지정판매장 담당자와 시료채취자 쌍방이 밀봉한 부분에 서명 날인
④ 검사용 지정 봉투 추가봉인		밀봉한 검사용 시료채취 지정봉투를 큰 크기의 지퍼백(25cm×30cm)에 넣음
⑤ 유전자분석처 송부		지퍼백에 넣은 검사용 시료채취 지정봉투를 열음 및 냉매와 함께 스티로폼 박스에 넣어 밀봉한 후, 축산물품질평가원(유전자분석처)에 택배 등을 이용하여 이송

## 나. 검사용 시료채취 및 운송 방법

- 포장처리업소·판매장에서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상태로 판매(포장 또는 대면)되는 경우에만 시료를 채취
- 채취방법은 날카로운 도구(칼, 가위 등)를 사용하여 살코기 부분을 약 20g 채취하고 이를 약 10g 정도로 2등분하여 각각 지퍼백에 밀봉
- 채취한 시료는 지정된 봉투에 넣어 시료채취 확인서 사본과 함께 밀봉하고, 판매자와 시료 채취자 쌍방이 밀봉한 부분에 서명 날인하여 축산물품질평가원(유전자분석처)에 택배 등을 이용하여 우송

## 다. 시료채취 및 운송시 주의사항

- 세척 후 채취기구(핀셋)에 이물질이나 혈흔이 없도록 할 것
  - 동일성 검사에서 다른 개체의 조직 및 혈흔이 묻어 있으면 오염이 일어나 다른 개체로 판명이 나거나 다른 개체 같다고 판명이 날 수도 있음
  - 사용시 물기 없이 완전히 건조 후 사용



- 여름철(5월~10월)시료는 얼음과 냉매 등을 이용하여 우송
  - 온도 상승시 부패 등으로 DNA가 손상될 우려가 있음
- DNA 시료채취 확인서 및 시료봉투작성은 불펜 등을 이용할 것
  - 얼음과 냉매 등이 있을 경우 번짐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련 지침·요령

1. 농장식별번호 부여 및 관리요령
2. 사육단계 전산신고 요령  
(한돈팜스 VS 이력관리시스템)
3. 이력번호 자동표시기 관리요령





## 1. 목적

이 요령은「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이력관리 대상가축을 기르는 사육시설을 식별하기 위하여 부여하는 농장식별번호 관리요령에 대해 규정하여 시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용어의 정의

- 가. “농장식별번호”란 이력관리대상가축을 기르는 사육시설(이하 “가축 사육시설”이라 한다)을 식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가축사육시설마다 부여하는 고유번호를 말한다.
- 나. “이력관리대상가축”이란 소와 돼지를 말한다.
- 다. “이력관리시스템”이란 이력관리대상가축의 출생, 이동, 폐사 등의 이력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 라. “농장경영자”란 농장을 법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 실제 농장을 경영하는 위탁경영자 및 관리책임자 등을 말한다.
- 마. “현장 확인”이란 농장식별번호 발급을 위해 축산농장 기본정보에 대한 정합성 및 유효성을 확인하는 활동을 말한다.

## 3. 농장식별번호 체계

- 농장식별번호에는 권역코드(1자리), 일련번호(5자리)로 구성된 6자리의 고유번호로 구성
  - 권역코드 : 서울·인천·경기(1), 강원(2), 충북(3), 세종·대전·충남(4), 전북(5), 광주·전남(6), 대구·경북(7), 부산·울산·경남(8), 제주(9)

## 4. 농장식별번호 부여

### 가. 부여 대상

- 이력관리대상가축을 사육하는 일정 경계 선상에 있는 지번단위의 모든 가축 사육시설을 대상으로 함
-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에 사육, 휴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가축사육시설에 농장 식별번호 부여, 단 폐업의 경우 부여대상에서 제외

### 나. 부여 기준

- (1) 축종에 관계없이 가축사육시설을 기반 ‘땅(지번) 중심’으로 1개의 농장식별번호 부여
  - 부여된 농장식별번호는 농장경영주, 관리자 등의 정보의 변동이 있어도 땅 중심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변하지 않음
- (2) 동일 지번의 가축사육시설에서 물리적으로 농장경영자(신청자)가 분리된 경우에 한하여 추가로 신청을 받아 다른 농장식별번호를 부여 할 수 있음
  - 농장식별번호 추가 발급을 원하는 경우, 사육시설이 물리적으로 분리된 증빙서류(축산업등록증) 등을 이력지원실에 제출
- (3) 이력관리대상가축을 함께 사육하는 시설은 단일 농장식별번호 사용

### 다. 부여 방법

- (1) 농장식별번호는 권역코드(1자리), 일련번호(5자리)로 구성된 6자리의 고유번호를 부여
- (2) 6자리 고유번호는 첫 번째 자리를 권역코드, 두 번째 자리를 축종별 구분하여 행정자치부의 법정동순으로 농장식별번호가 부여됨

<b>1</b>	<b>0</b>	<b>0</b>	<b>0</b>	<b>5</b>	<b>6</b>
①	②	③	④	⑤	⑥
권역코드	축종코드	일련번호			

○ 축종별 구분은 다음과 같이 분류

- 소 : 1, 2, 3, 4번
- 돼지 : 0, 8, 9번

(3) 단, 돼지 사육시설의 농장식별번호는 배부된 농장식별번호 표시기를 기초로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신규 사육시설은 이미 부여된 농장식별번호 다음부터 부여 방법(2)에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

라. 부여 절차

(1) 신규농장 개설자 또는 농장식별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사육시설의 농장경영자는 축산물품질평가원장에게 농장식별번호 발급 신청

- 이력관리대상가축의 사육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사육시작일 5일 전까지 농장식별번호 발급신청서를 이력지원실에 제출
  - 다만, 지리적 여건으로 서면으로 신청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구술, 전화, 전자적 처리 등의 방법으로 같은 신청서의 내용을 신청할 수 있음
- 소를 사육하고자 하는 농장경영자는 해당지역 위탁기관을 경유하여 이력지원실에 발급신청서를 제출
- 농장식별번호 발급신청서의 기입사항은 농장식별번호 발급신청서에 따름

(2)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접수된 발급신청서의 가축사육시설에 대한 적정 여부 검토 및 확인을 통해 농장식별번호 부여

- 소의 경우 부여된 농장식별번호가 소 사육시설에 정확히 부여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위탁기관 등의 관계기관에 현장 확인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 돼지의 경우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부여된 농장식별번호가 돼지 사육 시설에 정확히 부여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

(3) 신청된 농장식별번호가 부여됨과 동시 농장식별번호 발급 및 등록대장의 내용을 이력관리시스템으로 기록·관리

○ 농장식별번호 발급 및 등록대장 내용은 <표21> 서식에 따름

(4) 최종 확정된 농장식별번호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농장식별번호 발급증(이력관리시스템으로 통지를 포함)을 교부

## 5. 농장식별번호의 폐업 및 승계

### 가. 추가발급

○ 동일 농장식별번호 가축사육시설에서 농장경영자의 추가를 원할 경우 농장경영자 추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력지원실로 제출

- 신청인은 농장경영자 추가 신청서에 최초 농장경영자의 확인 및 서명을 받아 이력지원실에 제출

### 나. 폐업

○ 가축사육시설의 폐업 등으로 농장식별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력관리시스템에서 해당지번에 부여된 농장식별번호가 회수(결번)되며, 동일 지번의 사육시설을 재개할 경우 해당 농장식별번호 사용 가능

- 소의 경우 위탁기관에서 관리농장의 폐업정보를 이력관리시스템에 신고

- 돼지의 경우 농장경영자가 직접 폐업신고 하거나, 시·도(시·군·구)에서 이력지원실로 폐업 사실을 통보

### 다. 승계

○ 농장식별번호가 부여된 가축사육시설을 승계한 농장경영자는 해당 지번의 농장식별번호를 그대로 사용 가능함

- 농장경영자는 가축사육시설의 소유권 변동여부 등에 대하여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이력지원실로 제출

## 6. 농장식별번호 및 축산농장 정보 제공

- 최종 부여된 농장식별번호와 축산농장 정보는 가축방역 등에 활용하는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의 통합DB과 연계
  -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에서 최종 부여한 농장식별번호를 농림축산검역 본부의 통합DB 관리시스템에 주기적으로 동기화하여 제공

# 1 돼지사육시설 현장 확인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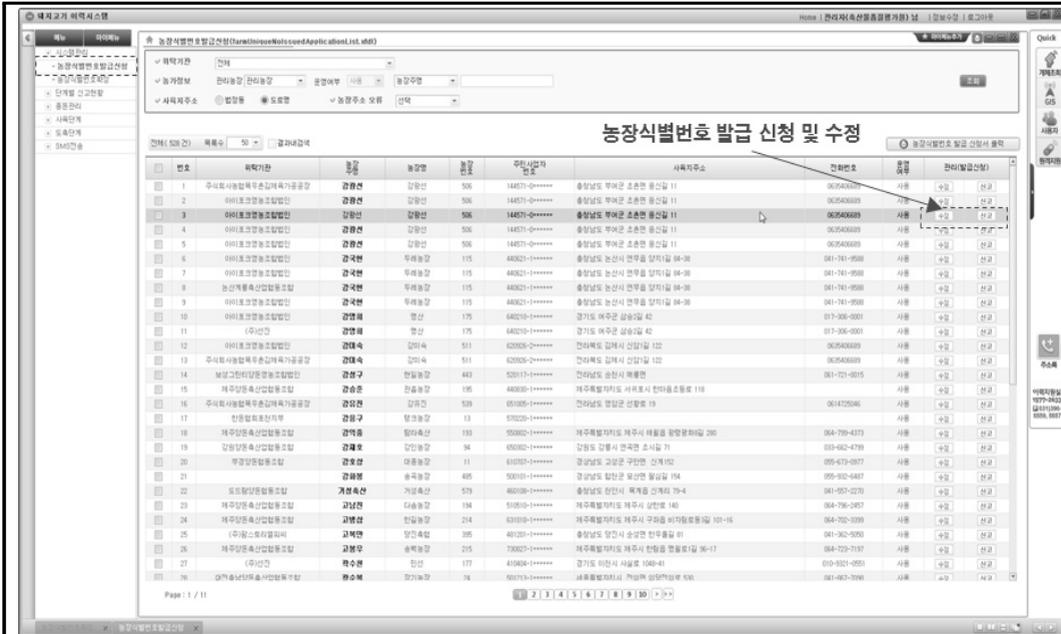
## 가. 이력시스템 이용방법

1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

2 로그인 버튼 클릭

축산물이력제 이력관리시스템 로그인

나. [이력관리시스템에서 GPS 좌표 및 사진 등록 요령]



현장조사에서 GIS 좌표 미입력 시 시스템에서 등록  
 농장식별번호 발급신청 수정 → 해당 농가 관리 클릭

**농장식별번호 발급신청 수정** PORK TRACEABILITY

사육여부  사육  휴업  폐업

○ 농장검색주 ※ 농장식별번호 발급신청 등록 및 수정은 모바일에서 최초 등록한 농가만 가능합니다.

농장주명 \* 김경철

생년월일/사업자번호 \*  \* 법인번호 (6자리 ~ 7자리)만 입력하세요

우편번호  도로명검색  전록 관주군 소양면 해월리

상세주소 549-7

도로명코드 457104619398 도로명검색  전라북도 완주군 소양면 해월신안길

상세주소 1-10

전화번호 063-244-5243 휴대번호 011-9641-5243

\* 연락처는 "-" 배고 입력해주세요.

○ 사육가축의 종류 및 사육방식

소  자가사육  위탁사육  자가사육+위탁사육  종축감  돼지  자가사육  위탁사육  자가사육+위탁사육  종문감

○ 가축사육시설

농장명 \* 신항농장 GIS

법정동로코드 \* 457104619398 법정동검색  전라북도 완주군 소양면 해월리

주 소 \* 필자 일반  번지 549 - 17

도로명코드 457104619398 도로명검색  전라북도 완주군 소양면 해월신안길

GPS좌표 \*  \* GPS좌표는 모바일 또는 GIS에서 수정가능

관리자 성명  관리자 전화번호

① 현장조사 시 가축사육시설의 정확한 주소 입력

② 주소 입력 후 GIS 버튼 클릭

※ 모바일을 통한 GIS 좌표가 등록되면 시스템에서 수정 불가

위치찾기 클릭



- ① 조사 후 시스템에 등록한 주소 표기(정확한 주소 입력)
- ②~③ 해당되는 주소에  표기되며, 위도 및 경도 표기<sup>③</sup>
- ④ 위치 및 좌표 확인 후 GPS 좌표 수정 클릭

농장식별번호 발급신청 수정
PORK TRACEABILITY

사육여부  사육  휴업  폐업

농장경영주 ※ 농장식별번호 발급신청 등록 및 수정은 모바일에서 최초 등록한 평가사만 가능합니다.

농장주명 \*

생년월일/사업자번호 \*  1954-03-01  \* 생년월일을 입력하세요

**현주소**

우편번호  도로명검색

상세 주소

도로명코드  도로명검색

상세 주소

전화번호  휴대번호

\* 연락처는 "-" 배고 입력 해주세요.

사육가족의 종류 및 사육방식

소  자가사육  위탁사육  자가사육+위탁사육  종축장  
 돼지  자가사육  위탁사육  자가사육+위탁사육  종돈장

가족사육시설

농장명 \*  GIS

법정등록코드 \*  법정등록검색

주소 \* 필자 일반

도로명코드  도로명검색

상세 주소

**1**  ,  \* GPS좌표는 모바일 또는 GIS에서 수정가능

- ① GPS 좌표 등록 확인(자동으로 위도 및 경도 입력)
- ※ 모바일에서 등록된 좌표는 변경 안됨. 현장 미등록 시 입력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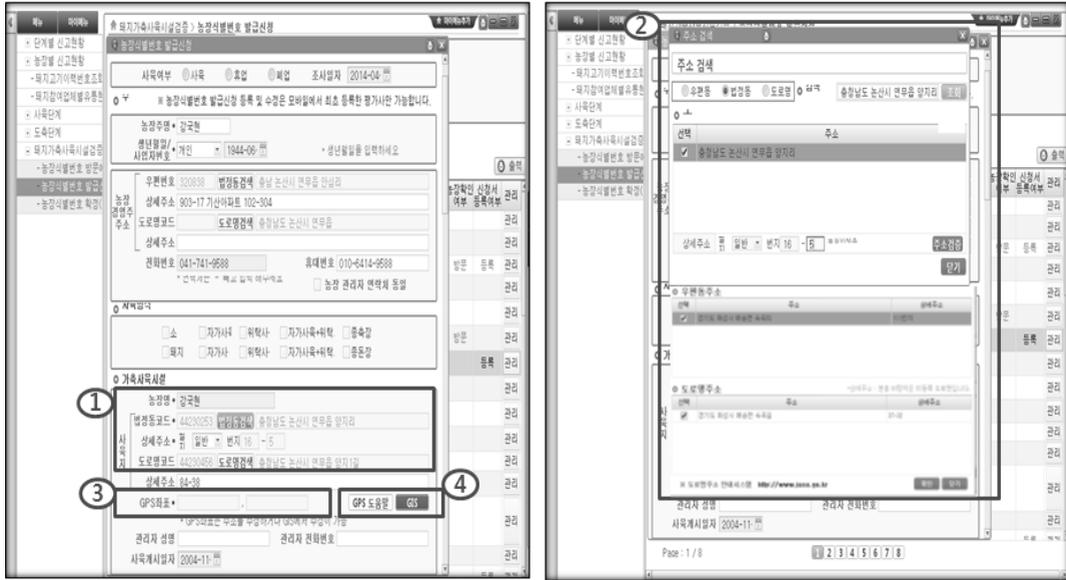
<첨부>

기 존		변 경	
농장식별번호 000000		<input type="checkbox"/> <b>가축사육시설</b>	
소재지 도로명	경기도 군포시 용호1로 46번길 9	농장명칭	수향농장
소재지 지번	경기도 군포시 당동 424-6	농장식별번호	100388
관리자(연락처)	홍길동 (010-0000-0000)	소재지 도로명	경기도 파주시 청룡두길 587-65 (연다산동)
사육개시 년월일	2014-01-01	소재지 지번	경기도 파주시 연다산동 70-11
농장위치 (GPS좌표)	<input type="button" value="좌표등록"/>	관리자(연락처)	
농장입구사진	<input type="button" value="파일선택"/> 선택된 파일 없음	사육개시 년월일	2009-04-01
농장식별번호 표시기 사진	<input type="button" value="파일선택"/> 선택된 파일 없음	농장입구사진	<input type="button" value="Choose File"/> no file selected
농장식별번호 표시기 종이에 찍은 사진	<input type="button" value="파일선택"/> 선택된 파일 없음	번호 및 표시기 사진	<input type="button" value="Choose File"/> no file selected
축산업허가제 등록증	<input type="button" value="파일선택"/> 선택된 파일 없음	축산업허가제 등록증 사진	<input type="button" value="Choose File"/> no file selected
<input type="button" value="농장정보등록"/> <input type="button" value="취소"/>		<input type="button" value="농장정보등록"/> <input type="button" value="취소"/>	
<input type="button" value="홈으로"/> <input type="button" value="수면 위로"/> <input type="button" value="뒤로"/>		종료 <input type="button" value="↻"/>	

모바일 GPS 좌표 등록 기능 삭제 및 사진 등록 개수 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장식별번호 표시기 사진 1매</li> <li>· 표시기를 종이에 찍은 사진 1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장식별번호 표시기와 번호를 기재한 사진 1매</li> </ul>

## 시스템에서 GPS 좌표 등록하는 방법



- ① 이력관리 시스템 → 농장식별번호 발급 신청 → 사육시설 주소 입력
- ② 주소 입력(초기화면 : 기존에 입력된 주소가 보여짐 / 도로명 주소관리시스템 참조) → 수정
- ③ '②'등록 후, GPS 좌표 자동 입력
- ④ GIS 클릭

## GIS에서 사육시설입구로 GPS 좌표 변경 방법



- ① '①(사육시설 입구) 위치에 마우스 왼쪽 클릭 (돼지 표시는 초기화면의 주소를 기반으로 하여 표시)
- ② 안내문 "클릭한 곳을 농장입구로 지정하시겠습니까?" → 확인
- ③ '②' 후에 '농장좌표수정' 클릭 → 농장입구로 GPS 좌표 변경됨

**(현장확인 후) 결과 등록 시, 조사정보 입력화면 변경**

기 존	변 경							
<p>① 조사정보</p>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소유주</td> <td>전화번호</td> <td>핸드폰</td> <td>현우</td> <td>주소</td> <td>육우</td> <td>위탁여부</td> </tr> </table> </div> <p>② 조사정보</p>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p>조사 농장식별번호 <input type="text" value="100894"/> *숫자 6자리를 입력하세요 문신기 보관여부 <input type="checkbox"/></p> <p>조사 문신기정보 <input type="text" value="100894"/></p> <p>*문신기가 여러개일 경우 구분자('I')로 표시해주세요. ex) 123456I23456I456789</p> <p>기타사항 <input type="text" value="시험사업 참여농가(특이사항 없음)"/></p> <p>조사기관 축산물품질평가원      조사제ID sanghee</p> <p>조사자명 이상희                      조사일자 2014-04-02</p> </div>	소유주	전화번호	핸드폰	현우	주소	육우	위탁여부	<p>① 조사정보 기부여부 농장식별번호 : 100894</p>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p>② 조사 후 농장식별번호 <input type="text" value="100894"/> *숫자 6자리를 입력하세요 문신기 보관여부 <input checked="" type="checkbox"/></p> <p>③ 조사 후 문신기정보 <input type="text" value="100894"/></p> <p>*문신기가 2개 이상인 경우 입력: 구분자('I')로 표시해주세요. ex) 123456I23456I456789</p> <p>기타사항 <input type="text" value="시험사업 참여농가(특이사항 없음)"/></p> <p>조사기관 축산물품질평가원      조사제ID sanghee</p> <p>조사자명 이상희                      조사일자 2014-04-02</p> </div>
소유주	전화번호	핸드폰	현우	주소	육우	위탁여부		

- |   |  |
|---|--|
| <p>① 조사 전 농장식별번호(자동입력)</p> <p>② 조사 후 농장식별번호(수동입력)</p> | <p>③ 문신기 번호 입력(수동입력)<br/>(여러 개일 경우, 'I'로 구분하여 모두 입력)</p> |
|---|--|

④ 농장정보(첨부파일)

농장입구사진	파일명	확장자	파일크기	사진관리	
	P20140402_102303124_43C13085-7D60-49FF-	.JPG	2122.3K	확대보기	+ 추가
<b>농장식별번호 및 표시기 사진</b>	P20140402_102321856_7F923150-041F-452F	.JPG	1484.4K	확대보기	- 삭제
	P20140402_102434096_D899F223-318D-4CE	.JPG	1668.3K	확대보기	파일받기
축산물허가제 등록증 사진	파일명	확장자	파일크기	사진관리	+ 추가
					- 삭제
					파일받기

⑤ 조사정보

① '농장식별번호 및 표시기 사진'으로 등록 개수 축소

※ 기 조사된 농가는 '번호 및 표시기 사진'에 2개 (표시기 및 종이에 찍은 사진) 등록되어 있음

## ① 농장식별번호 표시기 유형

<p>배부된 농장식별번호 표시기 SET (손잡이 1개 + 여유 침 1개 + 잉크 + 잉크통 + 문신기 청소도구)</p>	<p>자체구입한 표시기 SET (손잡이 1개 + 여유 침 1개) → 침이 일체형이 아닌 각각의 번호로 구성됨</p>	<p>농가에서 편의성을 위해 자체적으로 제작한 표시기 (나무에 여유 침을 연결)</p>
		

## ② 농장식별번호 표시기 장착의 올바른 유형

※ 표시기 침이 아래와 같이 장착될 수 있도록 필히 교육

농장식별번호 표시기에 침을 넣을 때 올바른 방법  
침이 반대로 있을 경우, 농가에게 오른쪽에 번호가 먼저 들어갈 수 있도록 알림

<p>손잡이를 아래방향으로 첫 번째 숫자(시도구분)가 오른쪽에서 시작해야 합니다.</p>	<p>반대로 침을 장착했을 경우</p>	<table border="1"> <tr> <td colspan="2">Ex) 농장식별번호 : 800001</td> </tr> <tr> <td colspan="2">돼지도체에 날인 후 번호 확인 시 오류</td> </tr> <tr> <td>올바른 침 장착</td> <td>반대로 침 장착</td> </tr> <tr> <td><b>800001</b></td> <td><b>100008</b></td> </tr> </table>	Ex) 농장식별번호 : 800001		돼지도체에 날인 후 번호 확인 시 오류		올바른 침 장착	반대로 침 장착	<b>800001</b>	<b>100008</b>
Ex) 농장식별번호 : 800001										
돼지도체에 날인 후 번호 확인 시 오류										
올바른 침 장착	반대로 침 장착									
<b>800001</b>	<b>100008</b>									
										

### ③ 이력관리시스템에 “이력지원실” 표기농가에 대한 확인

※ '13년도에 유선조사로 실시했던 농장 중에 미사육으로 조사된 농장을 대상으로 1차 조사

#### 이력지원실 등록된 농가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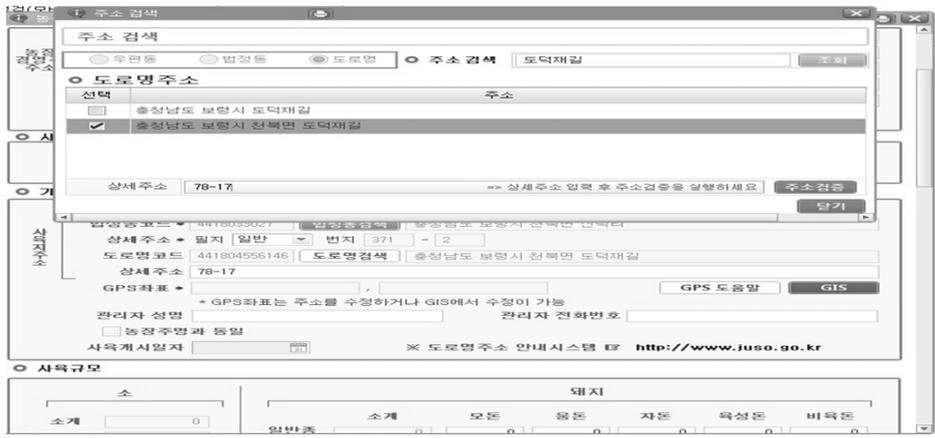
- 「돼지고기 이력관리시스템/방문예약/이력지원실」 표기 농가 - 1차 유선조사 완료  
 조사완료(미사육 + 미수령) 농가는 방문예약 버튼에 “완료”로 변경 → 그 외 농가는 현장확인 필요  
 ※ 이력지원실로 표기된 농가지만, 재등록 시 등록자로 예약자 변경
- 방문예약에서 미사육 + 미수령 등록 시 자동으로 조사완료로 변경  
 ※ 발급신청서에서 조회안됨

노명영도	501026	전라북도 고창군 해산면 해산리 300-1	003-504-0474 010-6559-1020	이력지원실	0	경이영	이영문	수령	지도 보기	[수정] 사육을 하거나 문신기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 현장확인 필요
손기영	501025	전라북도 고창군 고수면 인성리 300-4	003-502-0405 010-461-0405	이력지원실	X	경이영	이영문	완료	지도 보기	[완료] 미사육 + 미수령 선택 → 조사완료(자동)
최수현	501032	전라북도 고창군 공음면 두암리 445-1	003-502-7419 011-625-7419	이력지원실	X	경이영	이영문	완료	지도 보기	
정유옥	501030	전라북도 고창군 무장면 송계리 100-1	011-6664-2117	이력지원실	X			예약	지도 보기	[예약] → 유선조사 시 부재중 일 경우

### ④ 시스템에 주소 입력 시 주의사항

#### 주소 입력 시 주의사항

- 발급신청 주소 입력 시, “면” 소재지를 포함하여 주소 선택  
 Ex) '도덕재길' 검색 → [충남 보령시 도덕재길 / 충남 보령시 천북면 도덕재길] 조회 되나, 면단위 주소 선택



## ② 현장조사 주의사항

### ○ GPS 좌표 획득방법 통일화

⇒ 모바일 GPS 좌표 서비스를 삭제하고, 시스템에서 좌표 획득 단, 이력관리시스템의 GIS를 통해 농장입구로 좌표를 수정하여 최종등록(첨부 참조)

### ○ 현장확인 시, 사진촬영 최소화

- 표시기 관련 사진 2매(표시기 및 종이에 찍은 사진)를 1매로 축소

⇒ 표시기와 농장식별번호 번호를 수기로 적은 내역 1매를 촬영 후 시스템 등록(첨부 참조)

### ○ 시스템 등록 시, 도로명 주소가 조회 안 될 경우

- 도로명 주소시스템(www.juso.go.kr)에서 확인

⇒ 동일한 사육시설 내에 여러 개의 구주소가 있을 경우, 도로명이 있는 위치로 등록  
※ 농장입구 촬영 시, 가능하면 도로명 표시판이 보일 수 있도록 촬영

### ○ 조사농가에 기존(5자리)의 농장식별번호 표시기를 회수하지 않고 보관 할 경우

- 돼지사육시설 현장 확인조사는 6자리(숫자) 표시기 대상임

⇒ · 숫자 6자리('12.10월 신규지급), 영문+숫자 혼용 5자리(기존에 지급되었으며 회수됨)  
· 5자리 표시기 보관여부를 문의하여, 보유 시 이력관리시스템 '기타'에 관련 내역 입력  
※ 5자리 표시는 농가에 보관토록 하고, 차후에 회수 등 검토 예정

### ○ 현장확인 시, 대리신청인(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조사 가능 여부

- 가축사육시설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도 농장식별번호 발급 신청이 가능함

⇒ 관련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1항 및 부칙 제4조  
※ 단, 대리 신청인(관리자)이 한돈협회 자료제공에 동의 시 이력지원실에서 유선확인 예정

### ○ 생산자 단체 등에서 자체조사 가능 여부

⇒ 자체조사(발급 신청서 작성 및 사진 촬영) 결과를 축평원 지원으로 제출 후, 해당 지원의 사육시설 전담반이 현장 검증 필요  
※ 사전조사 된 농장위주로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거부한 농가에 대해서는 사유 등록

### ③ 돼지사육시설 현장확인 Q&A

특이사항	조치사항	절차 등
<p>•농장식별번호 부여 신청서 작성 (위탁사육의 경우)</p>	<p>•농장경영자</p> <p>•가축사육시설</p>	<p>•돼지의 실소유자 현황 기재                      ①성명 : 실소유주 성명, 법인명 등                      ②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기재                      ③주소, ④전화번호 : 실소유자 정보 기재</p> <p>•가축사육시설 현황 기재                      - 조사시점 가축사육시설 현황 기재                      ※⑧관리자 성명, 전화번호                      - 현재 사육관리자 정보 기재</p>
<p>•가축질병(PED)으로 현장방문을 거부하는 경우</p> <p>•농장식별번호 발급 신청서 작성 거부</p> <p>•위탁사육으로 조사 거부</p>	<p>•농가 자체 확인 후 조사결과를 해당지원으로 제출토록 교육(email, fax 등)</p> <p>•돼지고기이력제 법률 4조에 따라 이력관리대상 가축의 사육시설에 대해 농장식별번호 부여를 위한 신청서 등을 축평원 지원사무소로 제출해야 한다는 것을 알림</p>	<p>•유선조사 → 방문거부 → 자체조사 요청 → 조사방법 설명 및 양식 전달(fax, 우편 등) → 시스템(방문예약 → 자체조사로 등록) → 축평원(해당 지원)제출(fax, 우편 및 모바일) → 시스템 등록 → 추후 현장확인                      ※ 사진 등은 email 또는 모바일 등으로 접수</p> <p>•(유선조사 시 자체조사 거부) 시스템 방문예약에 거부 등록</p> <p>※ 유의사항                      · 자체조사한 농가에 대해 추후에 현장확인 필수                      · 농장식별번호 신청서 원본 수령 후 보관 (현장확인 시 수령 가능)</p>
<p>•표시기 보유한 신규 농가                      ※ 신규농가: 시스템에 미등록된 농가</p>	<p>•현장확인 후, 조사결과 (신청서 및 사진) 이력관리팀 제출                      ※시스템은 검역본부에서 농장식별번호를 발급한 내역 중 기초자료(주소 등)가 있는 농가만 등록되어 있음</p>	<p>•조사 진행 → 결과제출(이력관리팀) → 자료 확인 후 시스템 조사결과 등록(이력관리팀)</p>
<p>•표시기 미보유 신규 농가                      ※ 신규농가: 시스템에 미등록된 농가</p>	<p>•현장확인 후, 조사결과 (신청서 및 사진) 이력관리팀 제출</p> <p>•농장경영자에게 농장식별번호 신청 및 표시기 제작을 위한 절차 설명(첨부 참조)</p>	<p>•조사 진행 → 결과제출(이력관리팀)</p> <p>•농장식별번호 신청 및 표시기 제작 절차 설명(해당농가) → 발급번호 확인(지자체 또는 해당농가) 및 표시기 사진 확보(해당농가) → 확보자료(농장식별번호 및 사진) 이력관리팀 제출</p>

특이사항	조치사항	절차 등
<p>• 돼지 사육을 하고 있 으나 표시기가 없음</p>	<p>[표시기 미수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농가에 지자체에서 표시기를 배부했으나, 수령한 적이 없다는 경우</li> </ul> <hr/> <p>[표시기 분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가에서 분실하였을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시기 보관여부 파악 (표시기 배부 기관 : 지자체 및 한돈협회 각 지부) (보관) 해당농가에게 배부요청 → 표시기 수령(농가) 후 사진 확보 → 시스템 등록 (미보관) 해당 표시기 수령자 확인 → 해당 수령자에게 표시기 여부 파악</li> </ul> <p>※ 수령자 확인 표시기 배부 기관(지자체 : 읍·면사무소 및 한돈협회)에서 수령인 확보 가능</p>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시기 구입절차 설명(첨부참조) → 구입 후 농가로부터 표시기 사진확보 → 시스템 등록</li> </ul>
<p>• 농장식별번호 표시기 칩 (번호) 장착 요령 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손잡이를 아랫방향으로 하여 첫 번째 번호(시도 구분)가 오른쪽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교육</li> </ul>	 <p>※ 붙임2 참조</p>
<p>• 동일사육시설에 축산업 등 등록증 2개일 경우 (농장식별번호 및 표시기 1개)</p> <p>※ 동일사육시설에 축산업등록증이 2개일 경우 농장식별번호 2개 보유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사육시설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 각각의 농장식별번호를 신청할 수 있음(의무사항은 아니며, 2개를 보유할 경우, 사육시설 내에 돼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하고, 출하 시 각각의 표시기를 사용하여 표시하여야 함)</li> </ul> <p>※ 동일사육시설이더라도 각각의 축산업 등록증 사육지 주소는 다름</p>	<p>(농장식별번호 2개 신청 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첨부의 절차에 따라 농장식별번호 발급 절차 설명 → 농장식별번호 확인(지자체 또는 해당 농가) 및 표시기 사진 확보 (해당농가) → 확보자료 제출(이력관리팀)</li> </ul> <p>※ 동일사육시설에 축산업등록증이 2개라도 1개의 농장식별번호 및 표시기 사용 가능</p>
<p>• 현장확인 후, 농장식 별번호(시스템)와 표시 기 번호가 불일치하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종 농장식별번호 발급은 표시기 번호를 기준으로 부여할 예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농가 조사 → 시스템 결과 등록 → 조사한 표시기 번호 등록 → 이력지원실에 불일치 내역 알림</li> </ul>

특이사항	조치사항	절차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농가가 폐업 후, 신규 B농가가 동일한 사육 시설에 사육을 하고 있을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당 사육시설을 B 농가로 조사를 진행하고, 해당사육 시설의 축산업 등록증 사진 촬영 후 등록</li> <li>•해당 지자체에 변경신고서를 할 수 있도록 알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장방문 → 변경된 농가정보 현황 확인 → 해당농가가 변경신고서를 이력지원실로 제출토록 교육 → 변경신고서 제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육시설은 휴업이고, 표시기 없을 경우 현장 방문 여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장방문 필요 없음 (표시기 있을 경우에만 조사 실시)</li> <li>•단, 사육 재개 시 농장식별번호 발급신청서를 축평원으로 제출토록 필히 교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방문 → 사육 재개 시 신청서 제출 (이력지원실) → 현장확인 → 농장 식별번호 부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탁사육)돼지 이동시 번호 표시기준 (실소유자 표시기 또는 위탁농가의 표시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탁농장에서 돼지 출하 시, 해당 위탁처리 시설의 표시기를 사용토록 교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돼지 소유주의 표시기가 아닌, 해당 사육시설의 표시기로 표시해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장확인 시, 농가가 금년도 내에 다른 사육 시설로 이전 할 계획이 있거나 폐업예정일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사시점에 사육을 하고 있으면 현장 확인 진행</li> <li>•폐업 시, 이력지원실로 알리고 시군구로 반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추후 다른 지역으로 이동 시에 표시기를 시군구로 반납</li> <li>•다른 지역에서 사육 개시할 경우, 농장식별번호 발급 신청해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폐업 등으로 표시기 회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급받은 시군구로 반납토록 교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자체로부터 도로명 주소가 매정 되었을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로명 주소 발급은 농장경영자가 해당 시·군의 새주소팀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신청토록 알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장경영자가 도로명 주소 발급신청(시·군 새주소팀) → 발급 신청된 해당 도로명 주소 우리원으로 알림 → 시스템에 도로명 주소등록</li> </ul>



## 2

## 사육단계 전산신고 요령(한돈팜스 VS 이력관리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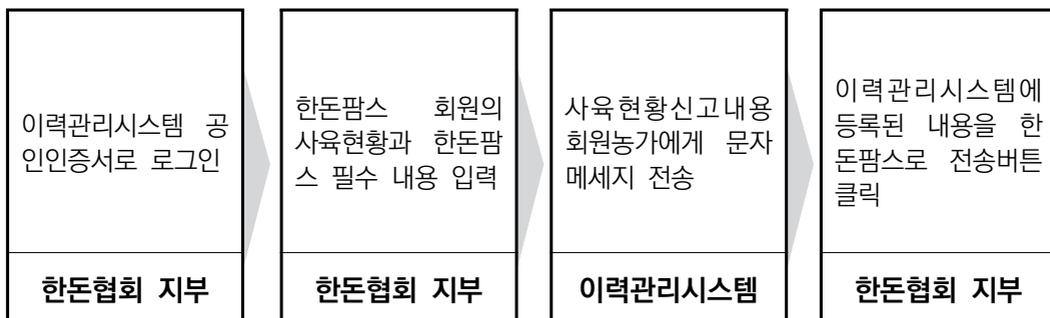
### 가. 사육농가 신고업무 접수처별 업무분장

돼지 농장경영자	신고업무	전화신고 접수처
일반 농장경영자	• 사육현황신고	이력지원실(1577-2633) 또는 축산물품질평가원 관할 지원
	• 이동신고	
	• 변경신고*	
한돈팜스 회원 (위임장 제출 농가)	• 사육현황신고	(사)대한한돈협회 지부 ※ 이력관리시스템에 사육현황 입력 후 한 돈팜스로 자료 전송
	• 이동신고	이력지원실(1577-2633) 또는 축산물품질평가원 관할 지원
	• 변경신고*	

\* 변경신고는 지원에서 접수 받고 이력관리처에서 확인 후 처리

### 나. 한돈팜스 사육현황 등 신고

- 한돈팜스 회원농가가 사육현황을 이력제와 한돈팜스에 이중으로 신고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농가의 사육현황 등의 정보를 이력관리시스템에 입력한 후 동 정보를 한돈팜스에 제공
- 업무처리 절차



## 사육현황 신고 화면

사육현황신고
PORK TRACEABILITY

**○ 기본 정보** ※ 수정은 최초 등록한 위탁기관에서만 가능합니다.

접수방법 ▶  2014-12-11 목요일

농장명 ▶  검색 101-111-570-1\*\*\*\*\* , 경기도 포천시 화현면  한돈팜스 회원 포천지부(000-000-0000)

신고기준월 ▶ 2014-11 신고일자 ▶ 2014-12-11 목요일

**○ 사육 정보** 최신 신고 가져오기 자돈 : 2개월 미만, 육성돈 : 2~4개월령, 비육돈 : 4~6개월령

	합계	소계	모돈	후보돈	유돈	자돈	육성돈	비육돈
일반돼지	1,365	126	3	1	520	390	325	
재래종	1,365	0						
땃돼지	0							

**○ 한돈팜스 사용자 월별 입력자료(필수)**

미유자돈수(당월미유자돈수)  비육출하두수(당월출하두수)  총 사료량(kg)

**○ 한돈팜스 사용자 월별 입력자료(선택)**

교배백수  분탄백수  출산자수(당월 출산자수)  미유백수

**○ 월간 사료구입 세부내역(톤)**

계(톤)  모돈용  자돈용  육성돈용  비육돈용

한돈팜스회원  
필수 입력 값

## 한돈팜스 전송 화면

한돈팜스 전송

신고관리 > 사육현황신고

관리지역 전체 | 읍면동 전체

농장명  검색

기준월 2014-10 | 주소구분 도로명

처리여부 전체 | 신고여부 전체

전체 ( 13 건) 목록수 50

선택	농장명	농장주	농장	농장번호	농장사업번호	농장여타업체 (유/무)	농장여타업체 (업)	출하수	기준월	신고일자	접수방법	처리여부	신고여부	관리기능 [수정][삭제]	한돈팜스연계관리 (보낸날, 재전송)
<input type="checkbox"/>	박두대/원천	김기	구라	강	856	200	011-369-1						미신고		
<input type="checkbox"/>	박두대/원천	채종	지민	강	864	200	010-4459-	039-344-					미신고		
<input type="checkbox"/>	박두대/원천	황병	주은	황봉	865	200	01046521						미신고		
<input type="checkbox"/>	박두대/원천	이세	이화	오합	870	200	039-339-						미신고	신고	
<input type="checkbox"/>	박두대/원천	오형	은혜		874	200	01054975	039-732-					미신고	신고	
<input type="checkbox"/>	박두대/원천	강미	지은		876	200	010-9244-	039-673-					미신고	신고	
<input type="checkbox"/>	박두대/원천	이동	동가		857	200	010-4944-	039-336-	1,985	2014-10	2014.11.21	전화	처리완료	신고	수정 삭제 14/11/05 재전송
<input type="checkbox"/>	박두대/원천	이동	명성		858	200	310-2446-	1,151	2014-10	2014.11.03	Fax	처리완료	신고	수정 삭제 14/11/05 재전송	
<input type="checkbox"/>	박두대/원천	회사	신태	원	859	200	010-334-	039-344-	1,675	2014-10	2014.11.03	전화	처리완료	신고	수정 삭제 14/11/05 재전송
<input type="checkbox"/>	박두대/원천	김명	양자		860	200	010-2420-	039-672-	2,200	2014-10	2014.11.21	전화	처리완료	신고	수정 삭제 14/11/05 재전송
<input type="checkbox"/>	박두대/원천	류재	선진		862	200	310-3381-	2,053	2014-10	2014.11.06	전화	처리완료	신고	수정 삭제 14/11/05 재전송	
<input type="checkbox"/>	박두대/원천	주주	주원		863	200	011-377-	2,060	2014-10	2014.11.21	전화	처리완료	신고	수정 삭제 14/11/05 재전송	
<input type="checkbox"/>	박두대/원천	김현	신형	농조	875	200	0397314	2,021	2014-10	2014.11.21	전화	처리완료	신고	수정 삭제 14/11/05 재전송	

한돈팜스  
전송  
버튼  
클릭

<첨부>

### 축산물품질평가원 양돈농가 관할지역

축평원 지원	(시·도 및 시·군·구)	
	관할 지역	한돈협회 지부
서울지원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고양시, 파주시, 부천시, 김포시, 동두천시, 구리시, 가평군, 남양주시, 의정부시, 양주시, 연천군, 포천시, 강원도 철원군	인천지부, 가평지부, 강화지부, 김포지부, 고양지부, 양평지부, 양주지부, 연천지부, 파주지부, 포천지부, 철원지부
경기지원	경기도 안양시, 수원시, 과천시, 광명시, 안산시, 오산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용인시, 평택시, 이천시, 성남시, 안성시, 하남시, 광주시, 화성시, 여주시, 양평군	안양시흥지회, 이천지부, 안성지부, 여주지부, 용인지부, 평택지부, 하남광주지부, 화성지부
강원지원	강원도(철원군 제외), 충청북도 제천시, 단양군	강원영동지부, 원주지부, 춘천화천지부, 태영평정지회, 황성지부, 홍천지부, 제천지부
대전충남지원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공주지부, 금산지부, 논산지부, 당진지부, 보령지부, 부여지부, 서산태안지부, 세종지부, 서천지회, 아산지부, 예산지부, 천안지부, 청양지부, 홍성지부,
충북지원	충청북도(제천시, 단양군 제외)	괴산지부, 보은지부, 영동지회, 음성지부, 진천지부, 청원지부, 증평지부, 충주지부
광주전남지원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강진지부, 광주장성지부, 광양지회, 고흥지부, 곡성지회, 구례지부, 나주지부, 담양지회, 목포신안지부, 무안지부, 보성지부, 신안지부, 순천지부, 여수지부, 영암지부, 영광지부, 장흥지회, 화순지부, 함평지부, 해남지부

축명원 지원	(시·도 및 시·군·구)	
	관할 지역	한돈협회 지부
전북지원	전라북도	고창지부, 군산지부, 김제지부, 남원지부, 부안지부, 순창지부, 익산지부, 임실지부, 장수지부, 전주완주지부, 정읍지부, 진안지부
대구경북지원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경산지부, 김천지부, 구미지부, 군위지부, 고령지부, 경주지부, 대구지부, 문경지부, 봉화지부, 상주지부, 성주지부, 안동지부, 영덕지회, 영일포항지부, 영주지부, 영천지부, 예천지부, 의성지부, 울진지회, 청도지부, 칠곡지부
부산울산경남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고성지부, 진주지부, 거창지부, 김해지부, 밀양지부, 부산지회, 사천지부, 산청지부, 울산지부, 양산지부, 의령지부, 창녕지부, 창원지부, 하동지부, 함양지부, 함안지부, 합천지부,
제주지원	제주도	남제주지부, 서귀포지부, 제주지부, 제주서부지부

## (사)대한한돈협회 지부별 연락처

도	지부	전화번호	팩스	주소
강원	강릉지부	033-661-4579	033-661-3486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교항리 529-2
	양양고성지부	033-673-5885	033-673-5883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삼촌리 44
	원주지부	033-762-3680	033-762-3681	강원 원주시 원일로 233 (학성동)
	철원지부	033-452-3385	033-452-6475	강원도철원군갈말읍명성로158번길47.2층
	춘천,화천지부	-	0504-437-0292	강원 춘천시 등산면 봉명1길 111-20
	태영평정지회	033-333-4007	033-333-4004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천동리 150-1
	홍천지부	033-432-5393	033-433-5393	강원도홍천군홍천읍갈마로11길23.402호
경기	횡성지회	033-343-3003	033-343-3013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경강로 2900
	가평지회	031-582-9905	031-582-9937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태봉 두밀로 557-113
	강화지부	032-932-0145	032-933-8941	경기도 강화군 강화읍 총렬사로6
	고양지회	031-977-4484	031-977-4483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771번길 12
	김포지부	031-981-1092	031-981-1094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서암로 65
	안성지부	031-675-3264	031-676-5934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남사당로 100
	양주지부	031-836-2533	031-837-2533	경기 양주시 남면 화합로 642
	양평지부	031-771-3905	031-772-3391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시민로 10-1(2층)
	여주시지부	031-881-5317	031-881-5337	경기 여주시 여흥로 47번길 7-20
	연천지부	031-833-1147	031-833-7805	경기 연천군 전곡읍 양연로 1588
	용인지부	031-338-4412	031-338-4413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금학로 521
	이천지부	031-632-6445	031-632-6446	경기도 이천시 단월로 17-13
	파주시지부	031-941-2217	031-946-2042	경기도 파주시 평화로 110
	평택지부	031-663-1082	031-663-3082	평택시 고덕면 문곡길 85
	포천시지부	031-535-2387	031-535-0455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호국로 1696, 2층
화성지부	031-354-9111	031-352-4114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푸른들판로 616	
경남	거창지부	055-944-8948	055-943-9948	경남 거창군 거창읍 소만3길 14-16
	고성지부	055-674-8074	055-674-8076	경남 고성군 고성읍 중앙로 134
	김해지부	055-333-6712	055-334-6712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355번길 36
	밀양지부	055-352-7770	055-352-3426	경남 밀양시 중앙로 264, 밀양축협 3층
	부산지회	051-727-5556	051-722-1381	부산광역시 기장대로 1647-143
	사천지부	055-854-3900	055-854-4900	경남 사천시 사천읍 진삼로 1317-13
	산청지부	055-973-0501	055-973-7976	경남 산청군 산청읍 중앙로 141
	양산지부	055-372-7011	055-372-7013	경남 양산시 북안북2길 4(북부동 3층)
	울산지부	052-262-2922	052-262-2921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읍성로 20
	의령지부	055-572-5589	055-572-1483	경남 의령군 의령읍 의병로 새길 269
	진주시지부	055-762-8941	055-762-8942	경남 진주시 남강로 1689
	창녕지부	055-532-9451	055-532-8712	경남 창녕군 창마면 남지장마로 589
	동창원지부	055-296-2297	055-296-2298	경남 창원시 의창구 천주로 12번길 29
	서창원지부	055-271-5225	055-271-4759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지산1길 71 2층
	하동지부	055-884-0610	055-884-0612	경남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36번지
	함안지부	055-583-1377	055-583-1307	경남 함안군 가야읍 중앙남2길 37
	함양지부	055-963-6565	055-962-9386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함양남서로 996-76
합천지부	055-933-7799	055-932-9246	경남 합천군 합천읍 황강체육공원로 93	

도	지부	전화번호	팩스	주소
경북	경산지부	053-802-5343	053-811-5343	경북 경산시 박물관로 9길 3-16
	경주지부	054-776-0309	054-741-6091	경북 경주시 원효로 52번길 16, 2층
	고령지부	054-956-4477	054-956-4478	경북 고령군 고령읍 우북로 81(쾌빈리 330-6)
	구미지부	054-457-5807	054-457-5808	경북 구미시 고아읍 송선로 110
	군위지부	054-383-5858	054-383-5857	경북 군위군 군위읍 중앙길 12
	김천지부	054-433-8145	054-433-8144	경북 김천시 자산로 192
	대구지회	053-382-2248	053-382-2249	대구시 북구 검단북로 11길 11(검단동)
	문경지부	054-552-0426	054-552-0663	경북 문경시 중앙로 166, 문경축협 3층
	봉화지회	054-674-1555	054-674-1556	경북 봉화군 봉화읍 내성천길78 (1층)
	상주지부	054-532-2873	054-531-0122	경북 상주시 외남면 청동로 35
	성주지부	054-933-9910	054-933-9920	경북 성주군 성주읍 삼산1길 3-6, 202호
	안동지부	054-859-0420	054-859-3878	경북 안동시 공단로 126(수상동 820-118번지)
	영일포항지부	054-277-1162	054-272-6333	경북 포항시 남구 상공로 40
	영주지부	054-636-6149	054-636-4399	경북 영주시 풍기읍 풍기로 71
	영천지부	054-331-0888	054-334-4472	경북 영천시 금노동 천문로 622-13
	예천지부	054-654-5577	054-654-5537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257
	의성지부	054-832-7668	054-832-7669	경북 의성군 의성읍 문소 1길 113번지, 2층
	청도지부	070-8805-6401	054-372-6401	경북 청도군 청도읍 고수서4길 1
	영덕지회	010-3804-9487	054-733-6139	경북 영덕군 강구면 하저길 333-169
	칠곡지부	010-3546-7202	054-974-7860	경북 칠곡군 약목면 동덕로 299번지
전남	강진지회	061-432-9866	061-434-9867	전남 강진군 신전면 영관로 6-111
	고흥지회	061-835-4769	061-835-5769	전남 고흥군 고흥읍 고흥로 1768-7
	곡성지회	061-363-8104	061-363-9104	전남 곡성군 곡성읍 군청로3
	광양지회	061-772-2717		전남 광양시 진월면 차사리 산1번지
	광주, 장성지부	061-395-3465	061-395-3463	전남 장성군 장성읍 역전로 117
	구례지부	061-782-6011	061-783-2604	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성로 48
	나주시부	061-332-8080	061-332-8089	전남 나주시 이창택지길53-11, 1층
	담양지부	061-382-4451	061-383-4876	전남 담양군 금성면 태봉로 328-17
	무안남부지부	061-284-9578	061-284-9579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영산로 1018
	무안지부	061-452-0393	061-452-9570	전남 무안군 운남면 운해로 395-21
	보성지부	061-852-2935	061-852-2936	전남보성군보성읍 흥성로 2543-13
	순천지부	061-752-0414	061-752-0413	전남 순천시 안신기3길 5 (가곡동)
	신안지회	061-271-0011	061-261-0011	전남 신안군 지도읍 원자동길 11-160
	여수지회	061-682-7546	061-683-5700	전남 여주시 화양면 석교로152
	영광지부	061-352-4644	061-351-4898	전남 영광군 영광읍 옥당로 179
	영암지부	061-473-2626	061-471-1913	전남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1-9
	장흥지회	061-864-8864	061-864-8863	전남 장흥군 용산면 어산운주길 208
	함평지부	061-324-0411	061-324-0412	전남 함평군 학교면 함장로 1202-118
	해남지부	061-536-4989	061-536-4678	전남 해남군 해남읍 흥교로 64, 2층
	화순지부	061-372-0808	061-374-4843	전남 화순군 화순읍 시장길 11번지

도	지부	전화번호	팩스	주소
전북	고창지부	063-564-6063	063-564-6083	전북 고창군 고창읍 보릿골로 30-1
	군산지부	063-466-1375	063-466-2067	전북 군산시 삼학8길 18
	김제지부	063-542-6644	063-544-2331	전북 김제시 요촌서길 61(2층)
	남원지부	063-626-7609	063-626-7609	전북 남원시 향교동 257-5
	부안지부	063-581-1222	063-581-1294	전북 부안군 부안읍 번영로 165
	순창지회	063-653-9996	063-653-9923	전북 순창군 순창읍 장류로 300번지
	완주지부	063-241-9476	063-242-2546	전북 전주시 덕진구 안골1길 6(2층)
	익산지부	063-854-0693	063-843-0693	전북 익산시 인북로 288번지
	임실지부	063-643-0070	063-643-0073	전북 임실군 임실읍 운수로 6
	장수지부	063-351-2674		전북 장수군 장수읍 안양1길 5-4
	진안지부		063-433-6634	전북 진안군 진안읍 중앙로 73
정읍지부	063-531-9776	063-531-9775	전북 정읍시 명륜길 15-1	
제주	서귀포최남단지부	064-794-8292	064-794-4434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중앙로 32
	제주서부지부	064-796-8644	064-796-864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중앙로 56, 2층
	서귀포지부	064-763-0469	064-763-0468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일주동로 8532
	제주지부	064-747-6076	064-748-254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월랑로 26
충남	공주시부	041-855-1192	041-855-1193	충남 공주시 번영1로 42
	금산지부	041-752-5016	041-752-5017	충남 금산군 인삼로 151
	논산지부	041-736-3633	041-734-2802	충남 논산시 시민로 194번길 21-10
	당진지부	041-355-3998	041-353-4752	충남 당진시 동부로 220
	보령지부	041-641-8503	041-641-8501	충남 보령시 천북면 천광로 89
	부여지부	041-836-3939	041-836-3933	충남 부여군 부여읍 부여로 39
	서산,태안지부	041-664-0909	041-667-5533	충남 서산시 홍천로 73-1(잠흥동)
	서천지회	041-956-2965	041-951-1448	충남 서천군 장항읍 옥남길 126
	아산지부	041-542-9170	041-547-9170	충남 아산시 번영로 93번길 7, 3층
	세종지부	044-868-1261	044-864-1262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쌍전길 5-19
	예산지부	041-331-2746	041-334-4879	충남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 34
	천안지부	041-576-6946	041-577-6947	충남 천안시 동남구 차들로 50
	청양지부	041-942-3129	041-943-8129	충남 청양군 청양읍 충절로 1205-4
홍성지부	041-633-4303	041-633-6466	충남 홍성군 홍성읍 월산로 5	
충북	괴산지부	043-834-3440	043-834-3442	충북 괴산군 사리면 중부로 3312
	보은지부	043-543-9830	043-543-9831	충북 보은군 보은읍 삼산로 1길 3-9
	영동지회	043-744-9923	043-744-9924	충북 영동군 영동읍 난계로 1110번지
	음성지부	043-882-8633	043-878-8633	충북 음성군 금왕읍 음성로 1204번지
	제천지부	043-653-4001	043-653-4002	충북 제천시 의병대로 1190
	증평지부	043-836-2237	043-836-2622	충북 증평군 증평읍 삼보로 3길 19
	진천지부	043-533-2616	043-532-2616	진천읍 초평로 36-16
	청주시부	043-258-1450	043-258-1451	충북 청주시 오창읍 중심상업로 51-6
충주지부	043-847-0667	043-842-1854	충북 충주시 창현로 1430	

## 1. 이력번호 자동표시기 개요

- 도축과정에서 이력번호를 도체의 표면에 자동으로 표시하는 장치

## 2. 기관·업체별 관리사항

### ▣ 축산물품질평가원

- 이력번호자동표시기의 시설운동을 위한 모니터링
- 작업 시작과 종료시설의 전원상태, 공압 및 잉크 상태 확인
- 세척 및 시설 점검 미비사항을 체크(도축장 경영자와 업무협조)
- 이력번호자동표시기 컴퓨터의 등급판정(Pig-Grade) 데이터 관리 및 점검

### ▣ 도축장

#### <공무팀>

- 이력번호자동표시기의 시설 점검 및 보완 담당자를 지정
- 주간·월간 점검표를 작성하여 이력번호 자동표시기를 관리
- 장비·설비 장애발생시 응급(보완) 조치
- 응급조치 이외 상황발생시 장비 설치업체로 A/S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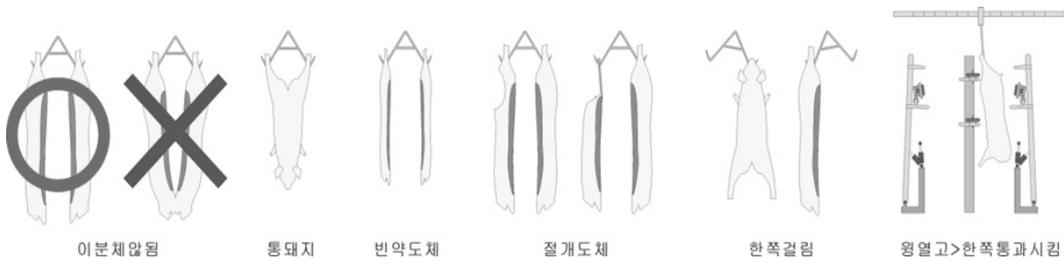
#### <생산팀>

- 이력번호를 생성하여 이력번호자동표시기 컴퓨터에 입력
- 도축번호가 뒤바뀔 경우 등급판정 전에 축산물품질평가사에 공지
- 도축장 상온에서 설비가 구동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
- 이력번호자동표시기에서 인쇄된 이력번호의 일치 여부 확인
- 시설·장비 세척 담당자 지정하여 일일, 주간세척을 진행
- 공정상 특수도체(미 이분체, 통돼지, 절개돼지, 한쪽 걸림 돼지, 박피, 모돈 등) 응급조치

- 특수도체는 이력번호 자동표시기의 도체진입 인식이 안 되거나 인쇄품질 저하 및 심각한 경우 자동표시기 파손의 위험을 초래 함

- 특수도체의 예시 및 처리방법

- ① 미 이분체 : 비상정지 후 이분절단 또는 한쪽진입 유도로 인쇄 안함
- ② 통돼지 : 한쪽진입 유도 및 이력번호 인쇄 안함
- ③ 절개돼지 : 마킹센서 인식을 저하로 인쇄 안함
- ④ 한쪽 걸림 돼지 : 한쪽진입 유도 및 이력번호 인쇄 안함
- ⑤ 박피 및 모돈 : 인쇄품질이 떨어지고, 슬림현상으로 도체 카운터 문제가 발생하여 주의가 요구됨



### <전산팀>

○ ERP전산 : 돼지고기이력제 이력번호를 생성·입력, 등급결과를 입력하는 프로그램 관리 및 업그레이드

※ ERP 미사용 도축장은 이력번호를 Pig-Grade(축산물품질평가원 제공)에 연계할 수 있도록 조치

### ■ 장비·설비 설치업체

- 권역별(수도권, 전라권, 경상권) 서비스망을 통한 신속한 AS 대응
- 현장 응급조치가 불가능 할 경우 해당 문제점 원인 파악 후 조치
- 접수된 장애발생상황의 원인과악 후 권역별 서비스망에 전달
  - 설치업체는 접수된 장애발생상황 및 처리결과를 이력관리팀에 보고
  -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전체 장비·시설 보완

### 3. 장비·설비 관리요령

#### ■ 세척관리를 위한 주요 확인사항

- 일일세척
  - 프레임(중앙, 윙, 베이스, 회전가이드, 유도가이드) 세척
  - 프린터 헤드부 브러쉬 세척 및 이물질 제거 등
- 주간세척
  - 헤드 노즐을 온수 및 전용세척제를 이용하여 세척
  - 헤드 관절부위, 엔코더 등을 브러쉬 정밀세척
  - 물기 제거기, 회전가이드, 유도가이드, 프레임 등을 수세미 세척
  - 각종 센서 및 프린터 헤드 이송 샤프트의 이물질 제거 등
- 월간세척
  - 각종 배관 점검, 장비·설비 전체 정밀세척 및 이물질 제거 등
  - ※ 철저한 세척 및 이물질 제거로 장비 오작동을 최소화

#### ■ 일일 시설점검 사항

- 점검자 : 축산물품질평가사
- 이력번호 자동표시기 운행전 워밍업시 매일 점검하고, 작업종료 후 전원관리를 함
- 세척상태를 점검 후 도축장의 이력번호 자동표시기 청소담당자에게 협조 요청
- 주요 점검사항 : 헤드부(엔코더, 오링이탈, 헤드 노즐 막힘 등) 육안 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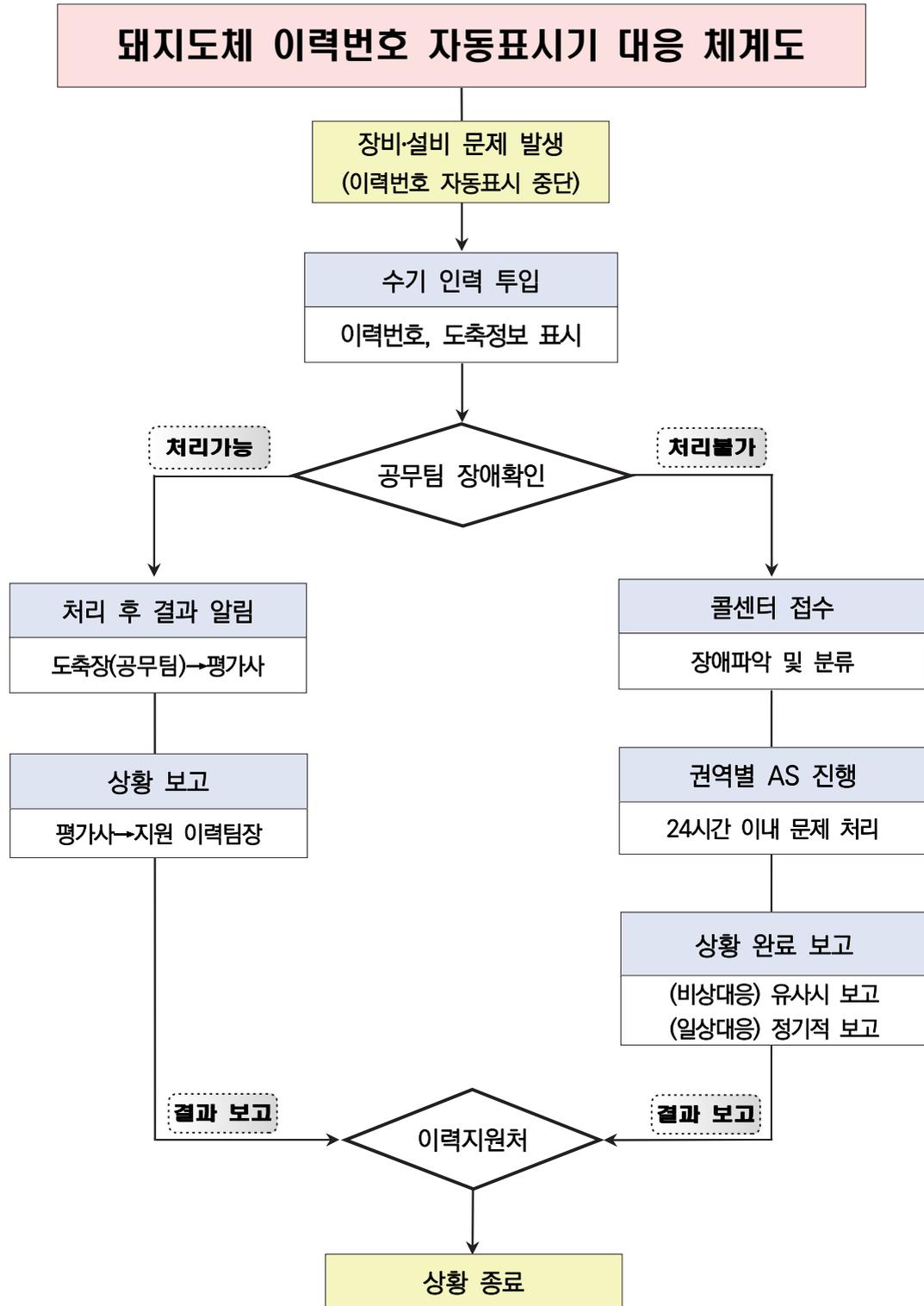
#### ■ 주간 시설점검 사항

- 점검자 : 공무담당자
- 주 2회 이상 도축장 공무담당자는 장비·설비 점검
- 이력번호 자동표시기 세척부위(주요부위)를 주간 점검
- 주간일지 작성
  - 공압 체크 : 메인공압(Dran Port 수분제거), 스윙실린더, 잉크 공압 잉크 잔량을 체크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충함
  - 프린터 헤드 전/후/좌/우 관절 작동, 헤드관절 및 스프링 체결상태를 확인하고 헤드이송 샤프트에 주기적으로 윤활유를 도포함

## ■ 월간 시설점검 사항

- 점검자 : 공무담당자
- 월 1회 이상 도축장 공무담당자는 장비·설비 점검
- 이력번호 자동표시기 세척부위(주요부위)를 월간 점검
- 월간일지 작성
  - 매월 1회 시설 정밀점검 및 보완작업
  - 전기/제어부 : 전원상태, 각종센서 노후 상태 점검 및 보완
  - 헤드부 : 이송벨트 및 샤프트 노후 상태, 헤드 관절부 체결상태, 각종 연결부위 윤활유 작업, 엔코더/오링/휠 작동 등
  - 마킹헤드 : 노즐막힘 여부, 인쇄상태 점검
  - 프레임 : 스윙작동여부, 베어링, 프레임 윤활유, 세척수 공급 등
- 인쇄상태 확인
  - 헤드노즐 온수 및 전용세척제 세척
  - 잉크분사 상태, 노즐 막힘 점검

<참고>



## 이력번호 자동표시기 주간 점검표

분류	점검사항	점검 값	비고
<b>작업 전 점검사항</b>	전원 On/Off	(정상) / (비정상)	
	공압 체크(메인, 실린더, 잉크)	(정상) / (비정상)	
	윙프레임 작동 상태(수동Test)	(정상) / (비정상)	
	도체감지센서 작동(수동Test)	(정상) / (비정상)	
	헤드노즐 이물질 막힘상태(육안)	(유) / (무)	
	오링 이탈 확인(육안)	(여) / (부)	
	엔코더/오링/휠 작동(수동Test)	(여) / (부)	
	유도 가이드 세척상태(육안)	(상) / (중) / (하)	
	회전 가이드 세척상태(육안)	(상) / (중) / (하)	
<b>세척상태</b>	물기제거기 세척상태	(상) / (중) / (하)	
	헤드이송 샤프트 이물질 제거	(여) / (부)	
	각종 센서 이물질 제거	(여) / (부)	
	헤드노즐 막힘상태	(유) / (무)	
	헤드관절 부위 세척상태	(상) / (중) / (하)	
	엔코더 세척상태	(상) / (중) / (하)	
	회전롤러 /유도가이드 세척상태	(상) / (중) / (하)	
<b>공 압</b>	Main공압(0.4Mpa±0.05Mpa)	(            )Mpa	
	스윙실린더 (0.2Mpa ± 0.05Mpa)	(            )Mpa	
	잉크 공압 (0.5Mpa ± 0.05Mpa)	(            )Mpa	
	잉크 잔량 체크 (5%미만 시 보충)	(            ) %	
<b>헤 드</b>	헤드이송 샤프트 윤활유 상태	(상) / (중) / (하)	
	헤드관절 및 스프링 체결 상태	(정상) / (비정상)	
	헤드 전/후/좌/우 관절 작동 (수동체크)	(정상) / (비정상)	
<b>점검의견</b>			※점검일 :
			※ 점검자 :





## 단계별 질의응답

1. 사육단계 (종돈·비육돈)
2. 도축단계
3. 포장처리 단계
4. 판매단계
5. DNA 동일성 검사
6. 위반자 처분
7. 기타 질문 등





# 1

## 사육단계(종돈·비육돈)

### 종 돈

#### ➔ 질의 1 이력법에서 정한 종돈의 개념은?

- ☞ 「축산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정기관 및 같은 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종축업 또는 정액등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사육하고 있는 돼지로서 「축산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종축등록기관에서 공고한 기준에 따라 혈통 또는 고등등록된 돼지와 혈통이 확인된 번식용 씨돼지

#### ➔ 질의 2 종돈이력제의 대상이 되는 사업장의 범위는?

- ☞ 종돈을 사육하고 있는 종돈장, AI센터, 검정소 등이 해당됨

#### ➔ 질의 3 종돈장도 월별 사육현황신고를 해야 하나?

- ☞ 종돈의 사육현황신고는 해당 월의 마지막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5일 이내에 (사)한국종축개량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방법은 (사) 한국종축개량협회(전화 02-588-9301, 팩스 02-3473-8166) 등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고 종축개량협회의 종돈업혈통관리프로그램을 통해 할 수 있음.

#### ➔ 질의 4 종돈의 출생·폐사신고 방법은?

- ☞ 종돈의 출생은 종축등록기관에서 공고한 종축등록 규정에 따라 혈통 또는 고등등록된 돼지, ‘번식용씨돼지 혈통증명규정’에 따라 번식용 씨돼지로 혈통이 확인된 돼지이며 출생신고는 종돈 등록일로부터 5일 이내, 폐사신고는 폐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종축개량협회장에게 신고(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

#### ➔ 질의 5 종돈의 폐사 신고시 폐사원인 등의 신고방법은?

- ☞ 종돈이 폐사한 경우 종돈업혈통관리프로그램(<http://eswine.aiak.or.kr/>) 접속 후 개체관리 → 폐사관리 → 조회(품종 선택 및 생년월일 등 조건 입력) → 폐사신고 대상돈 선택(√) → 폐사원인 선택 → 폐사처리방법 선택 → 매몰장소 및 폐기처리업체(연락처 포함) 입력 → 저장

➔ **질의 6** ▶ **종돈의 양도·양수신고 방법은?**

- ☞ 종돈의 양도·양수신고는 종축개량협회의 종돈업혈통관리프로그램을 통해 가능하며 이동관리 → 이동등록 → 조회(품종, 등록구분, 생년월일 등 입력) → 이동농장(양수농장) 조회 및 선택 → 이동대상돈 선택(√) → 저장

➔ **질의 7** ▶ **종돈의 경우 수입·수출신고 방법은?**

- ☞ 종돈의 수입시 (사)한국종축개량협회(<http://www.aiak.or.kr/>) 접속 후 → 종돈개량부 → 서식 및 양식 → 종축수입신고서 작성(종돈장별) 및 관련 구비서류 접수(개체별 혈통증명서 등)하면 되고, 수출시 혈통·고등등록 및 번식용씨패지 혈통증명서로 신고

➔ **질의 8** ▶ **종돈의 신고내역중 변경사항이 있을 시 신고방법은?**

- ☞ 농장명, 경영자의 소유자 등 신고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신고서의 양식으로 종축개량협회에 신고하며, 종축개량협회장은 신고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가축 및 축산물식별대장에 기록하고 관리

➔ **질의 9** ▶ **종돈의 경우 개체관리를 위한 개체식별번호 부여방법은?**

- ☞ 출생 신고 또는 수입 신고된 종돈에는 국가코드(KOR), 농장식별번호(6자리), 개체관리번호(6자리), 바코드 및 농업이미지 엠블렘 등이 표시된 15자리의 개체식별번호를 부여

➔ **질의 10** ▶ **개체식별번호가 무엇인가?**

- ☞ 이력관리대상가축의 개체를 식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가축 한 마리마다 부여하는 고유번호  
※ 개체식별번호 구성 : 국가코드(KOR) + 농장식별번호(6자리) + 개체관리번호(6자리)로 구성된 15자리

➔ **질의 11** ▶ **종돈의 개체식별번호 표시방법은?**

- ☞ 종돈의 개체식별번호 표시는 귀표 등을 이용하여 종돈의 귀에 부착 또는 표시를 할 수 있으며 표시방법은 귀표, 이각, 입묵의 방식으로 할 수 있음.

➔ **질의 12** ▶ **종돈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

- ☞ 종돈으로 등록된 돼지 중 기형 등으로 개체식별표시를 할 수 없거나 또는 농촌관광이나 학술연구 등으로 귀표 부착이 곤란한 경우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목줄을 이용하여 표시할 수 있음

➔ **질의 13** ▶ **종돈의 개체식별번호 표시방법 중 이각의 방법은?**

- ☞ 이각(돼지의 귀를 절개하여 표시하는 방식)으로 하는 경우 이각방법은 한국종축개량협회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이각번호에 해당하는 개체 식별번호를 종축등록기관이 발행하는 증명서(종돈혈통증명서, 번식용 씨돼지혈통확인서 등)에 표시해야 한다.

➔ **질의 14** ▶ **종돈의 개체식별번호 표시방법 중 입묵의 방법은?**

- ☞ 입묵('살 속 에 먹물 로 글씨 나 그림 을 새겨 넣는다 '의 의미)은 귀에 문신을 찍어 표시하는 것으로 통상 생후 3일령 개체식별번호 중 고정된 번호인 농장식별번호를 압인하여 숫자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입묵하기 전에 귀의 안쪽을 잘 닦아주고 가능한 귀의 부드러운 부분에 입묵한 후 입묵기의 바늘, 돼지의 귓등, 손에 잉크를 발라 압인한 후에 잉크가 잘 스며들도록 골고루 잘 문질러 준 후 입묵

➔ **질의 15** ▶ **종돈의 개체식별번호 표시방법 중 귀표부착시 적용방법은?**

- ☞ 귀표는 돼지의 귀에 개체식별번호 등이 표시된 귀표를 귀에 장착하는 방법으로 종돈으로 등록되는 시점에 부착하게 됨.  
- 귀표의 표시사항 : KOR, 농업로고, 바코드, 농장식별번호, 개체관리번호, 종돈장명

➔ **질의 16** ▶ **종돈에 부착하는 귀표의 경우 색깔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지?**

- ☞ 종돈의 귀표는 밝은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 글자색상을 원칙으로 함.  
다만, 종돈의 경우 품종에 따라 귀표의 색깔을 달리 적용할 수 있음.

**질 의 17** ▶ 종돈의 경우 이각을 대부분 실시하고 있어 귀표부착시 이각 번호를 매직 등 수기로 귀표에 표시해도 무방한가?

- ☞ 종돈의 귀표에 포함되는 개체관리번호는 사전에 일련번호를 인쇄한 귀표를 부착해도 되고, 일련번호를 표시하지 않고 이각번호를 매직 등을 이용하여 수기로 작성해도 무방함

**질 의 18** ▶ 종돈의 경우 귀표 공급방법 및 신청절차는?

- ☞ 종돈의 개체관리를 위한 귀표는 공급할 예정이며 귀표는 종축개량협회를 통해 신청

## 비육돈

### ➔ 질의 1 ▶ 농장식별번호란?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력관리대상(소·돼지) 축종을 사육하는 시설을 식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가축사육시설마다 부여하는 번호이며 농장식별번호는 권역코드(1자리), 일련번호(5자리), 총 6자리로 구성됨

※ 권역코드 : 서울·인천·경기(1), 강원(2), 충북(3), 세종·대전·충남(4), 전북(5), 광주·전남(6), 대구·경북(7), 부산·울산·경남(8), 제주(9)

### ➔ 질의 2 ▶ 농장식별표시기란?

☞ 농장식별번호를 돼지에 표시할 수 있는 기구(문신기)이며, 농장경영자는 돼지를 이동(도축출하 포함)할 때 부여받은 농장식별번호를 돼지에 표시하는 기기임. 농장경영자는 돼지를 이동하기 전에 오른쪽 엉덩이에 표시하여 이동해야 함

### ➔ 질의 3 ▶ 농장식별번호 발급절차는?

☞ 농장경영자가 양돈장을 개설하는 경우 사육시작일 5일 전까지 농장식별번호 발급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를 농림축산식품부 이력지원실(1577-2633)에 제출하면 농장식별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음. 참고로 농장식별번호가 있어야만 전산등록이 되어 도축장에서 이력번호 발급이 가능함

#### 〈신규 사육농장 농장식별번호 발급절차〉

- ① 사육개시 5일전 농림축산식품부 이력지원실(1577-2633)에게 농장식별번호 신청
- ② 부여된 농장식별번호로 농장식별번호 표시기 구입(농장경영자)
- ③ 신규사육농장 사육 현황조사(축산물품질평가원)
- ④ 농장경영자에게 농장식별번호 발급증 통보(5일 이내)

### ➔ 질의 4 ▶ 농장식별번호를 부여 받았으나 농장식별표시기가 없을 경우는?

☞ 농림축산식품부 이력지원실(1577-2633)에 농장식별번호를 확인한 후 기 부여 받은 농장식별번호와 같은 번호를 농장식별표시기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해야 함

〈농장식별표시기 제조업체〉

제조업체	연락처	비고
송강지엘씨	031-776-0780	자사판매표시기 AS
한국이어텍	010-3662-3645	

**질의 5** 기존에 운영하던 농장을 폐업하고 새로운 곳에서 농장을 개설할 경우 기존 농장식별번호표시기를 사용해도 되는지?

☞ 농장식별번호 부여방법은 축종에 상관없이 가축사육시설이 위치한 “땅”(지번)을 중심으로 발급됩니다. 따라서 기존에 운영하던 농장이 폐업되었다면 해당 농장식별번호 표시기는 해당 시군에 반납하여야 하고, 새로운 농장에 맞는 농장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질의 6** 농장식별표시기를 보유하고 있으나 농장식별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

☞ 농장경영자는 농림축산식품부 이력지원실(1577-2633)로 전화하시면 보유하고 계신 농장식별번호 표시기의 번호와 실제 전산상에 등록된 번호와 확인을 하게 되며 축산물품질평가원 직원의 현지조사 등을 거쳐 농장식별번호가 부여됨

**질의 7** 돼지를 판매 또는 위탁하기 위하여 다른 사육지로 이동할 때 신고 방법은?

☞ 농장경영자가 돼지를 판매 또는 위탁사육을 하기 위해 돼지를 이동 시키는 경우 돼지를 이동하려는 날로부터 5일~최소 1일 전에 농장 소재지 시·군·구 또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사)한국종축개량협회(중돈의 경우에 한함)에 돼지 이동 계획 및 임상예찰서(5일간 기록) 제출해야 함. 단, 도축을 위하여 도축장으로 출하 할 경우 돼지열병·구제역 예방접종확인서로 같음이 되므로 별도의 신고 절차는 없음

**질의 8** 돼지를 다른 사육지에서 구매하였을 경우 신고방법은?

☞ 돼지를 구매한 농장경영자는 구매한 농장의 농장식별번호와 돼지 종류별 두수 등을 농림축산식품부 이력지원실(1577-2633)로 신고



**질의 11** ▶ **농장식별번호의 농장경영자(명의)를 변경하고자 할 때 신청인이 이전 농장경영자의 정보를 모르는 경우, 변경신고서의 변경 전 항목을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지?**

- ☞ 변경신고서의 내역 중에서 변경 전 농장경영자의 정보가 확인이 안 되는 경우 “미확인”으로 기재하면 되나, 정확한 농장정보 변경을 위해서는 이전 농장경영자의 정보를 포함하여 변경신고를 해야 함

**질의 12** ▶ **농장식별번호의 농장경영자(명의) 변경 시 변경신고인과 이전 농장경영자의 사육지 주소가 일부 다른데 이전 농장경영자의 사육지 주소가 잘못된 경우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지?**

- ☞ 이전 농장경영자의 사육지 주소가 잘못된 경우 변경신고인은 증빙서류(축산업등록증 등)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이력지원실로 제출

**질의 13** ▶ **농장식별번호 발급증에 농장경영자를 추가하고 싶은데 방법은?**

- ☞ 하나의 농장에 농장경영자가 2명이상인 경우 “농장경영자 추가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농장식별번호 발급증에 경영자를 추가할 수 있음

**질의 14** ▶ **돼지의 사육현황 신고는 농장경영자만 해야 하는지?**

- ☞ 법 제8조에 의해 농장경영자는 매월 돼지의 사육현황을 신고해야하나 농장경영자가 지정한 대리인이 신고할 수 있으며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과 연락처 등을 기재해야 함. 또한 조합, 협회 등을 통해 농장경영자가 대리인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등을 받아 대리신고 할 수 있음

**질의 15** ▶ **농장식별번호 발급증의 내용에 대한 변경신고는 농장경영자만 할 수 있는지?**

- ☞ 농장식별번호 발급신청 당시 기재된 관리인 또는 농장경영자가 지정한 관리인을 통해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 이때 변경신고서에 대리 신고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함

**질의 16** 돼지의 사육현황 신고 방법은?

농장경영자는 사육하는 돼지의 종류(일반종, 재래종, 멧돼지)와 모돈, 후보돈, 웅돈, 자돈, 육성돈, 비육돈의 사육현황을 해당 월의 마지막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5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 이력지원실(1577-2633)에 신고

**<돼지 사육현황 신고방법>**

신고 내용	신고 방법	비고
돼지 사육현황 (종류별 사육두수)	전화(구술), fax(사육현황신고서)	이력지원실(직접신고) 또는 축산물품질평가원 지원
	SMS 신고 * 신고일 기준으로 이력지원실에서 전송	이력지원실(전송) → 해당농가(입력) → 이력지원실(완료)
	돼지열병·구제역 예방접종확인서 기재 * 해당월 마지막일 기준으로 다음 달 5일 까지	도축장 제출 → 품질평가사 입력

**질의 17** 한돈팜스를 이용하는 농장경영자로서 구체적인 월별 사육현황 신고 방법은?

한돈팜스를 통해 가축사육현황을 신고하고자 하는 농장경영자는 한돈 협회 관할지부에 위임장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매월 마지막일과 다음달 5일 사이(공휴일, 토요일 제외)에 한돈지부에 신고하면 됨. 신고를 받은 한돈지부의 사무장이 이력관리시스템으로 로그인하여 사육현황 및 한돈팜스 필수정보(이유자돈수 등) 등을 입력하며 한돈 팜스를 통해서만 월별 사육현황 신고만 가능하고, 이동신고 및 기타 변경신고는 축산물품질평가원 지원사무실 또는 이력지원실(1577-2633) 으로 신고 해야 함

## 2

## 도축단계

### ➔ 질의 1 ▶ 도축 출하시 농장식별번호를 발급받은 농장경영자만 도축검사 신청이 가능한지?

- ☞ 농장식별번호는 이력관리대상가축을 기르는 사육시설의 지번 단위에 부여한 고유번호이며 발급신청인은 농장경영자를 말하지만, 도축검사신청서에 표시하는 출하농가는 가축을 사육하는 농장경영자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자로 농장식별번호를 발급 받은 자와 도축검사신청서의 출하농가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님

예) 남편이 농장경영자인 경우 아내명으로 출하하거나, 위탁농장의 경우 위탁을 받은 대표자 명의로 출하하는 사례 등이 있을 수 있음. 따라서 도축 출하시 농장식별번호 발급자에 명단이 없다면 미리 받아서 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야 함

### ➔ 질의 2 ▶ 이력번호란?

- ☞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이력을 관리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이력관리대상축산물에 부여하는 번호로서 돼지의 경우, 도축장경영자가 도축 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이력번호 발급을 신청해야 함. 이력번호의 구성은 축종코드(1) + 농장식별번호(6) + 일련번호(5)로 총 12자리로 구성됨

### ➔ 질의 3 ▶ 출하된 돼지의 계류장 입고 방법은?

- ☞ 도축장경영자는 출하된 돼지의 농장식별번호 및 출하두수를 확인 후, 농장별로 섞이지 않도록 구분하여 계류하고 농장별 순서대로 도축하여야 함

### ➔ 질의 4 ▶ 이력번호 발급 신청 방법은?

- ☞ 돼지열병·구제역 예방접종확인서 등을 통하여 출하농가의 농장식별 번호를 확인하고 돼지고기 이력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관련 매뉴얼에 따라 이력번호 발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력번호발급 관련 문제 발생 시 농림축산식품부 이력지원실(1577-2633)로 문의하면 됨

### ➔ 질의 5 ▶ 돼지의 이력번호를 표시하기 위한 방법은?

- ☞ 돼지의 이력번호를 표시하기 위하여 이력번호 자동표시기, 라벨부착, 휴대용 이력번호 표시기를 통해 가능함.

**질 의 6** 도축장에서 돼지도체를 여러 부위로 분할하여 반출하고자 할 때 이력번호 표시방법은?

- ☞ 정확한 이력관리를 위하여 쇠고기와 마찬가지로 분할 부위마다 이력 번호를 표시하여 반출하여야 함

**질 의 7** 도축장에서 이력번호 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 ☞ 도축장과 포장처리업소 시설이 연접하여 도축 후, 이동레일에 의하여 즉시 포장처리업소로 이동되고 도축된 돼지고기의 농장식별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이력번호와 대응된 도축번호로 표시할 수 있음. 단 해당도체가 도축장 밖으로 이동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력번호를 표시하여야 함

**질 의 8** 돼지도체에 표시한 이력번호의 오류가 있을 경우 수정방법은?

- ☞ 도축과정에서 이동레일을 벗어나거나(위생검사, 돼지의 탈락 등), 도축 순번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돼지도체에 표시한 이력번호의 오류가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도축검사관과 축산물품질평가사에게 오류가 발생한 돼지도체의 도축번호, 이력번호를 통보하고 수정하여야 함. 또한 이력 번호를 수정할 경우에는 오류 이력번호에 수정표시를 하고 그 주위에 수정한 이력번호를 표시하여야 함

**질 의 9** 돼지도체 이력번호 자동표시기를 활용하는 도축장의 경우 왜소돈, 통돼지, 모돈 등 이력번호 표시가 어려운 돼지도체의 경우 이력번호 표시방법은?

- ☞ 돼지도체 이력번호 자동표시기를 설치한 도축장은 왜소돈, 통돼지, 모돈의 경우에 이력번호 라벨지 부착 또는 휴대용 이력번호표시기를 활용하여 표시하는 것이 자동표시기의 원활한 사용에 유리함

**질 의 10** 도축처리(경매)결과 신고 방법은?

- ☞ 도축장경영자는 도축(경매)결과를 돼지고기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도축(경매)이 완료된 날까지 신고하여야 함. 단, 전산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완료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신고

### 3

## 포장처리단계

### ➔ 질의 1 ▶ 식육포장처리업자는 언제부터 돼지이력제를 이행해야 하는지?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의한 법률」의 시행일인 2014.12.28일부터 적용됨. 단, 국내산 이력축산물의 경우 시행령 부칙 제1조에 의한 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자의 거래신고에 관한 사항은 2015. 6. 28일부터 적용

### ➔ 질의 2 ▶ 돼지고기이력제 시행에 따라 식육포장처리업자가 해야 할 일은?

- ☞ 돼지고기를 포장처리 하는 식육포장처리업소는 포장처리실적과 거래 내역을 전산 또는 장부로 관리해야하며 포장처리 하는 최소단위의 용기 및 포장에 해당하는 이력(묶음)번호를 표시해야 함

### ➔ 질의 3 ▶ 식육포장처리업소에서 돼지고기이력제 시행을 위해 필요한 장비는?

- ☞ 식육포장처리업소에서는 이력번호 표시의 편리를 위해 라벨 출력이 가능한 저울이 있어야 하며, 전산신고를 하는 식육포장처리업자는 인터넷이 가능한 PC를 통해 지육거래 및 소, 돼지고기를 포장처리한 실적과 거래내역을 전산 신고할 수 있어야 함.

### ➔ 질의 4 ▶ 돼지고기 포장처리실적 및 거래신고를 해야 하는 전산신고대상 업소의 범위는?

- ☞ 법 시행령 제 4조에 의하여 도축업의 작업장 시설과 분리되지 아니하고 일체를 이루는 시설이나 연결한 시설에서 영업을 하거나, 종업원이 5인이상인 식육포장처리업소가 해당됨. 또한 그 외에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되기를 희망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한 자

### ➔ 질의 5 ▶ 전산신고대상 식육포장처리업자의 신고와 장부는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 ☞ 돼지고기 전산신고대상 식육포장처리업자는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포장처리한 경우 이력관리대상축산물(소, 돼지) 포장처리실적과 거래실적을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포장처리일별로 기록관리해야 함

**질의 6** ▶ **식육포장처리업자의 경우 이력제 이행업무에 대한 위반시 사실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공표가 되는지?**

☞ 식육포장처리업자가 포장처리 및 거래·판매신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연 2회 이상 위반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속기관인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 관리원과 시·도, 시·군·구, 한국소비자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인터넷 정보제공 사업자\*의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표하게 됨

※ 인터넷 정보제공 사업자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 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공표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천만명 이상인 포털서비스(다른 인터넷 주소·정보 등의 검색과 전자 우편·커뮤니티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공 사업자를 의미함

**질의 7** ▶ **식육포장처리사업장이 5인 미만으로 소규모입니다. 이력제의 전산 신고를 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통해서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면 가능하며 지정 신청을 희망하는 신청자는 돼지고기이력관리시스템 자료실의 포장처리 및 거래신고 대상 사업자 등 신청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이력지원실 팩스(044-410-7178)로 송부 하고 지정신청이 완료되면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ID/PW가 부여됨 <이력지원실(1577-2633)로 문의>

**질의 8** ▶ **식육포장처리업소에서 이력제를 시행하면서 주의하여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 식육포장처리업자는 입고되는 도체 또는 부분육에 표시된 이력(묶음)번호를 확인한 후 포장처리 하여야 하며, 포장처리시 이력(묶음)번호간 혼입이 없도록 하고 이력(묶음)번호 표시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포장육의 최소단위 용기·포장에 동일한 이력(묶음)번호를 표시해야 함

**질의 9** ▶ **식육포장처리업 관련 전자거래 신고 대상자에 경리업무 직원, 납품 기사 및 대표이사도 5인 이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 식육포장처리업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

장·군수·구청장의 허가 사항이며, 동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조 제4항에 따라 허가관청에서 허가증을 발급할 때 영업허가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고 있으며, 이 관리대장에서는 업소명, 영업 허가 번호·영업장 소재지·대표자·종업원 수 등이 포함되어 있음. 따라서 동 관리대장에 포함된 종업원수가 연간 5인 이상이면 전산신고 대상에 포함됨.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허가권자인 지자체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 질의 10** ▶ **묶음번호를 만들 경우 어떻게 관리하여야 하는지?**

☞ 이력번호에 따라 포장처리 및 판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다수의 이력번호를 한 개로 포장할 경우 묶음번호를 표시할 수 있음. 묶음 번호를 구성하는 돼지고기의 이력번호를 최대 30개 이하로 하여야 함

**➔ 질의 11** ▶ **묶음번호 구성시 영업자코드는 무엇인지?**

☞ 영 제4조에 의한 전산신고 대상자는 이력관리시스템에서 영업자코드를 부여하고 전산신고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 10자리 숫자 중 끝에서 마지막 한 자리 숫자를 제외한 4자리 숫자를 사용함. 따라서 5인 이상의 전산신고 대상 식육포장처리업소는 농림축산식품부 이력지원실(1577-2633)로 전화하면 영업자코드를 부여받을 수 있음

**➔ 질의 12** ▶ **묶음번호란 무엇이며 어떤 방법으로 만들 수 있는지?**

☞ 묶음번호란 다수의 이력번호이거나 이력번호 외의 번호 또는 이를 새로운 기호로 대체한 것을 말하며 묶음번호는 고정코드(L), 구분코드(0=소, 1=돼지), 묶음 날짜코드(6), 영업자코드(4), 일련번호(3)자리로 표시할 수 있음.

※ 예시(2019년 4월 10일 3번째 묶음번호를 표시한 경우)

〈 L 1 190410 0001 003 〉

## [묶음번호 구성 체계]

가. 묶음번호는 아래 구성체계와 같이 L을 포함한 15자리 문자, 숫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나. 묶음번호 구성체계

	묶음고정코드	구분코드	묶음날짜코드	영업자코드	일련번호
길이	1	1	6	4	3
타입	영문자(L)	숫자	숫자	숫자	숫자

(1) 묶음고정코드는 영문자 'L'을 표기한다.

(2) 구분코드는 쇠고기는 '0'으로 하고, 돼지고기는 '1'로 표기한다.

(3) 묶음날짜는 연도 2자리, 월 2자리, 일 2자리로 표기한다.

(4) 영업자코드는 다음과 같이 부여한다.

가) 포장처리실적 전산신고 대상 영업자의 경우 : 이력관리시스템으로 부여 받은 영업장의 고유번호를 사용한다.

나) 포장처리실적 전산신고 대상 영업자가 아닌 경우 : 영업자코드는 세무서에 부여 받은 사업자등록번호 10자리 숫자 중 끝에서 마지막 한 자리 숫자를 제외한 4자리 숫자를 사용한다.

(5) 일련번호는 묶음상품의 일별로 중복되지 않도록 영업자가 자체적으로 부여한다.

### ➔ **질의 13** 묶음번호를 한번 만들면 다시 묶음번호를 사용할 수 없는지?

☞ 묶음번호를 구성한 이력번호는 다시 묶음번호로 사용할 수 없음. 다만, 돼지고기에 한하여 묶음번호 구성내역에 대한 관리를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산으로 관리하는 업소의 경우에는 이력번호 30개 범위 내에서 재 묶음번호를 구성할 수 있음

### ➔ **질의 14** 학교급식을 하는 식육포장처리업소입니다. 1등급이상으로 납품하고자 하는데 이력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 다수의 이력번호에서 특정등급 이상으로 포장처리 하는 경우 도축일자, 이력번호, 도축번호 등이 포함된 매입내역을 근거로 1등급 이상의 지육을선택할 수 있음. 이 경우 전산신고된 자료와 실제 포장육의 제품이 일치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는 등급판정확인서 등이 있어야 함.

**질의 15** ▶ 등외등급은 별도로 구분하여 포장처리 하는데 이력(묶음)번호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 등외등급은 정상등급(1+,1,2등급)과 별도로 구분하여 포장처리 하여야 하며 등외등급은 등외등급 끼리 묶음을 구성하여 표시하여야 함

**질의 16** ▶ 도축장에서 연접한 포장처리업소로 돼지를 반출할 경우 도축번호 대신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일련번호 등을 부여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 도체번호는 축산법 시행규칙 제43조(도축장경영자의 준수사항) 제3항에 의거 도체번호 및 중량을 표시토록 하고 있음. 다만, 계량장치를 통해 별도로 도체중량이 표시되는 경우에는 중량의 표시를 생략토록 하고 있음. 따라서 돼지의 이력번호 생성은 도체번호(농장간 구분)가 반드시 있어야 함

**질의 17** ▶ 지육 판매시 반드시 도체에 이력번호가 있어야 하나요? 이력표시기 고장시 라벨이라도 붙여야 되는지? 전산상으로 출력해주면 되는지?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 9(도축업자의 이력번호 표시 방법 및 관리 등)에 의거 도축장경영자는 도체를 반출할 때에는 이력번호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이력번호 표시는 도축장별로 자동이력번호 표시기가 설치되지 않은 곳은 라벨출력, 혹은 휴대용 이력번호표시기로 표시 가능

**질의 18** ▶ 일반등급과 등외등급은 반드시 분리해야 하는지?

☞ 돼지고기 포장처리시 등외등급은 일반등급(1+,1,2등급)과 별도로 구분하여 포장처리 해야 함. 이 경우 동일농장(이력번호가 같은)에서 정상등급과 등외등급이 발생하면 정상등급에는 이력번호를 등외등급에는 묶음번호 요령을 적용하여 표시

**질의 19** ▶ 이력번호를 관리해야 하는 부위가 따로 있는지? 부산물은?

☞ 이력관리대상 축산물은 이력관리법률 제2조제1항 제1호가목에 따라 지육이나 지육을 이용하여 생산한 정육 또는 포장육이 포함되므로 부산물은 해당되지 않음

**질의 20** 포장처리 과정에서 잔여육 등이 발생하여 속포장지와 박스 포장지의 이력(묶음)번호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어떻게 표시해야 하는지?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13에 따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포장육의 이력번호 표시는 최소 단위의 용기·포장에 대하여 동일한 이력번호를 표시토록 하고 있음

**질의 21** 하나의 이력번호에 개체가 100두인 경우 도체번호 단위가 아닌 총중량 단위의 매입신고가 가능한지?

☞ 이력번호에 해당하는 지육의 도체번호별로 가급적 예시1)의 매입신고를 하여야 하나 불가피한 경우 예시2)의 총 두수에 대한 총 중량단위로 신고가능

예시1)	이력번호	123456723012	0001	도체번호	90kg 중량
			~		
	이력번호	123456723012	0100	도체번호	85kg 중량
예시2)	이력번호	123456723012 100두에 대한 총 중량으로 매입신고			

**질의 22** 매입 후 지육 출고 시 먼저 묶음번호를 구성하여 출고 할 수 있는지?

☞ 예, 다만, 매입 후 지육을 출고한 후 구성된 묶음번호를 그대로 사용하여 포장처리 할 경우는 묶음번호 출고가 가능함.

**질의 23** 묶음에 묶음인 경우 재 묶음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 L1과 L2를 L3로 재 묶음의 경우 묶음번호는 L3로 신고하고, 구성내역서의 이력번호란에서 해당 묶음번호가 구성되기 전 묶음번호인 L1과 L2에 기록된 이력번호를 기재해야 함

**질의 24** 포장지에는 도축장명을 모두 표시해야 하는지?

☞ 도축장명 표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제2018-9호) ‘축산물의 표시기준’ <별표1> 축산물의 세부표시기준에 의하면 “두 곳 이상의 도축장에서 도축된 식물이 서로 혼재된 경우에는 도축된 도축장 모두를 각각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질의 25** 하나의 이력번호를 묶음번호로 생성할 수 있는지?

☞ 묶음번호 생성은 다수의 이력번호를 하나로 묶음을 하는 경우 생성해야 함. 다

만, 하나의 이력번호가 정상등급(1+, 1, 2)과 등외등급으로 구분이 되는 경우 등외등급을 묶음번호를 사용할 수 있음

**질 의 26** ▶ 같은 이력번호인데 서로 다른 매입처로부터 매입된 경우 전산신고는?

☞ 포장처리는 동일한 이력번호로 사용할 수 있으나 매입신고시 매입처는 다르게 입력하면 됨

**질 의 27** ▶ 등급별 포장처리를 하고 싶은 경우 전산신고가 가능한지?

☞ 등급별 포장처리를 원할 경우, 매입신고단계에서 해당등급의 도체번호를 사전선택 하고, 이력(묶음)번호 생성 후 포장처리 한 후 해당결과를 전산신고

**질 의 28** ▶ 모든 제품박스에 100% 이력관리를 해야 하는데, 거래내역신고서에 이력번호를 빈칸으로 두고 수량, 중량을 작성하거나 일부를 누락한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 거래내역서에 이력번호, 수량, 중량 등을 빈칸으로 작성하시면 실제 거래내역을 알 수 없으므로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질 의 29** ▶ 회사 내 내부 사무소(창고)간 판매가 아닌 물건의 이동도 거래내역 신고서를 주고받아야 하는지? 예를 들어 사업자번호가 다른 내부 사무 소 간 이동하거나 물류를 위탁한 외부 회사에 물건을 이동하는 경우

☞ 축산물의 거래내역은 출고(판매·반출)와 입고(매입·반입)의 경우를 말하며 출고처 와 입고처는 국내산 이력축산물이 포장처리 또는 보관되어 있는 창고를 포함하 고 있음. 즉, 사업자번호, 영업장인허가번호가 다른 식육포장처리업소나 식육판 매업소 및 물류창고(거래명세서상의 사업자번호 등록)로 거래신고 대상입니다

**질 의 30** ▶ 거래처간 거래명세서는 기존 것을 그대로 사용하고, 첨부로 거래내역 신고서를 첨부해도 되는지?

☞ 법 제18조에서 정한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 력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가 첨부하여 거래현황을 알 수 있다면 거래내 역서를 첨부해도 무방함

**질 의 31** ▶ 과태료는 어떤 경우에 부과되며 얼마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 ☞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식육포장처리업자 등의 포장처리 및 거래신고 등 규정을 위반하여 포장처리 및 거래·판매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며 법32조에 의거 포장처리 및 거래·판매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부과대상이 됨

### ➔ 질의 1 ▶ 전산신고대상인 식육판매업소에서 해야 하는 일은?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이력대상 축산물(국내산 쇠고기 및 돼지고기, 수입산 쇠고기)을 판매시 이력(묶음)번호를 라벨지 또는 식육판매표지판 등에 표시하고 닭·오리·계란의 경우 최소포장지에 이력(묶음)번호를 표시 또한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거래(매입·매출)내역을 거래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전산신고(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하여야 함.

전산신고 관련 접속권한(아이디 등)은 이력지원실(1577-2633)로 문의

### ➔ 질의 2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식육판매업소에서 전산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은?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4조2항 관련 [별표1] ‘포장처리 및 거래 신고 의무자’에 따라 종업원이 5명 이상이거나 영업장 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자 또는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신고 의무자가 되기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신청한 자

### ➔ 질의 3 ▶ 2개이상의 이력축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경우 식육판매 표지판에 이력(묶음)번호를 모두 표시해야 하는지?

- ☞ 시행규칙 별표 13에 따르면 식육판매업자는 식육포장처리업소 등으로부터 매입한 국내산이력축산물(쇠고기, 돼지고기)의 포장육 등에 표시된 이력번호를 확인하고, 식육판매표지판 등에 같은 이력번호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2개 이상의 이력번호가 혼합된 축산물을 한 개의 채반에서 판매하는 경우 해당되는 모든 이력번호를 표시하거나 하나의 묶음번호로 표시할 수 있음

### ➔ 질의 4 ▶ 돼지고기이력제도 쇠고기와 마찬가지로 지육, 정육만 이력제를 실시하는지?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제8항의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은 국내산의 경우 돼지를 도축하여 얻은 지육(枝肉)과 지육을 이용하여 생산된 정육 또는 포장육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부산물은 제외됨

➔ **질의 5** ▶ 판매업소에서 축산물이력제 시행을 위해 준비할 사항은?

- ☞ 전산신고 대상 판매업소는 거래내역을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인터넷이 가능한 PC를 통해 지육거래 및 쇠고기·돼지고기를 포장처리한 실적과 거래내역을 전산신고 할 수 있어야 하며, 이력번호 표시 라벨이 인쇄되는 저울을 이용하여 이력관리를 편리하게 할 수 있음.

➔ **질의 6** ▶ 식육판매장에 입고된 돼지고기의 이력번호 확인방법은?

- ☞ 지육상태로 입고된 경우 지육에 표시된 이력번호(또는 라벨지)와 거래 명세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도축검사증명서 등에 기재된 이력번호를 확인하고, 전산신고대상인 납품 포장처리업소는 이력정보 조회를 통하여 해당 포장처리업소명 등을 확인 할 수 있음

➔ **질의 7** ▶ 냉장고에 보관하는 쇠고기, 돼지고기에도 이력번호를 표시해야 하는지?

- ☞ 거래·판매 후 남은 이력축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도 이력번호를 표시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판매시 다른 축산물과 혼동하여 이력번호가 뒤바뀌지 않도록 이력(묶음)번호를 관리해야 함.

➔ **질의 8** ▶ '14.12.28일부터 새로 개정된 이력제도가 실시되어도 기존에 생산된 원료육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가 표시한 것은 이력 번호로 다시 표시해야 하는지요?

- ☞ 돼지 및 돼지고기에 이력번호를 표시하는 것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국내산 돼지고기의 이력관리에 관한 적용례)에 따라 법 적용이전에 생산된 원료육 즉,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한 것은 동 법 부칙 제5조(판매표지판 등의 이력번호 표시등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이력번호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추가로 이력 번호 표시는 하지 않아도 됨. 다만, 해당되는 축산물은 가급적 빨리 소진되도록 하여 소비자 혼란을 최소화 하여야 함

➔ **질의 9** ▶ 정육식당에서도 쇠고기·돼지고기를 판매시 이력번호를 표시해야 하는지?

- ☞ 정육식당의 경우 식육판매업의 영업신고가 있다면 식육판매업소에 해당 되므로

이력대상 쇠고기, 돼지고기에 이력번호를 표시해야 하고,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의한 거래내역서를 기록·관리해야 함.

**질의 10** 소비자 구매 이력관리대상 축산물을 비닐봉지 등에 담아 줄 때 영수증 등에 이력번호를 표시해야 하는지?

☞ 소비자는 식육표지판매판에 이력번호가 표시되어 있고, 이를 확인하여 구매할 수 있으므로 구매한 쇠고기, 돼지고기를 포장한 비닐봉투에는 별도로 이력번호를 표시하지 않아도 됨. 다만, 소비자가 이력번호를 표시한 영수증 등을 요구하는 경우는 판매시 영수증 등에 이력번호를 기록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함

**질의 11** 대형마트의 영업장은 대부분 EDI(전자데이터교환)를 통해 필요 고기량을 본사에 주문하며 본사에서 주문량과 재고량을 파악 후 육가공업체에 발주하는 방식임. 이 때 납품업체는 본사에서 정한 물류센터(보관창고)에 상품을 먼저 배송한 후 물류센터는 영업점으로부터 발주를 받아 정육을 제공합니다. 이 때 각각의 거래내역 신고는?

☞ 축산물을 납품하는 업체가 최종 판매처를 모르고 물류센터로 상품을 배송 하는 경우 최종 반출처를 물류센터로 할 수 있음. 다만, 물류센터는 식육 판매업소 등이 아니므로 신고 의무는 없으나 물류센터에서 최종 식육판매 업소로 반출시 해당 식육판매업소는 거래내역 신고를 해야 함

**질의 12** 돼지이력법이 적용되는 12.28일 이후에는 기존 포장육(냉동육)의 경우 개체식별번호 및 LOT등의 묶음표시를 그대로 식육판매표지판에 표시하여도 되는지?

☞ 법 시행이전에 생성된 개체식별번호와 묶음번호는 그대로 표시해도 되며, 조회도 가능함. 단, 묶음번호를 소와 돼지 동일하게 L+14자리의 표시를 원칙으로 하지만 전자저울 등에서 동 방식이 어려운 경우('LOT' 또는 'L')를 포함한 연월일과 일련번호 및 사업자번호 조합으로도 표시할 수 있음

**질의 13** 식육판매업소에서도 묶음번호를 구성할 수 있는지?

☞ 식육판매업소에서도 묶음번호를 구성할 수 있으며 전산신고 대상 업소는 소비자가 묶음번호를 인터넷 등으로 이력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구성내역서를

이력관리시스템에 신고하고, 비 전산신고 대상자는 서류를 보관한 후 구매자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함.

**질의 14** ▶ **묶음번호가 표시되어 입고된 돼지고기를 판매시 하나의 판매표지판에 묶음번호 2개를 표시하여 판매할 수 있는지?**

- ☞ 식육판매업소에서는 하나의 식육표지판매판에 하나의 묶음번호를 표시하여야 함. 다만, 2~3개 이상의 이력번호를 하나의 묶음으로 구성할 경우에는 묶음구성 후 묶음번호를 표시하여야 함

**질의 15** ▶ **돼지고기도 등급표시를 해야 하는지?**

- ☞ 돼지고기는 쇠고기와 달리 등급표시는 의무사항이 아님. 다만, 식육포장 처리단계에서 등외등급은 별도로 구분하여 포장처리토록 하고 있고, 등외등급은 묶음번호를 사용토록하고 있음. 등외등급과 일반등급(1+,1,2)은 구분되어 입고되므로 돼지고기에 등급표시를 하고 판매하는 식육판매업소의 경우에서 해당 돼지고기의 정확한 이력번호와 등급을 확인한 후 판매해야 함

**질의 16** ▶ **식육판매장에서 이력번호 표시를 위해 반드시 전자저울을 구입해야 하는지?**

- ☞ 식육판매업소의 경우 포장육에 표시된 이력(묶음)번호를 식육판매표지판에 표시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자저울을 추가로 구입할 필요는 없음. 다만, 매장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전자저울을 사용하는 경우 이력(묶음)번호의 출력이 가능하도록 프로 그래를 업데이트할 필요성은 있음

**질의 17** ▶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경우 이마트 등 대형 식육판매업소로 포장육을 납품하는 경우가 많으나, 전산신고대상이 아니어서 최종 납품처에서 전산으로 요청할 가능성이 있음**

- ☞ 전산신고는 일정규모 이상\*의 식육포장처리업소, 식육판매업소 이외에 희망하는 경우 전산신고를 할 수 있음.

※ 일정규모 이상 : ① 도축장과 일체 또는 연접한 식육포장처리업소, ② 연간 평균 종업원 5인 이상 식육포장처리업소, ③ 기타식품판매업 신고대상에서 정한 300㎡ 이상의 영업장내에서 영업을 하는 국내산 이력관리대상축산물(쇠고기, 돼지고기)을 취급하는 종업원 5인 이상 또는 영업장 면적이 50㎡ 이상인 식육 판매업소, ④ 그 밖의 식육포장처리업소, 식육판매업소, 식육부산물판매업소 및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소 중 희망업소

➔ **질의 18** ▶ **식육판매장의 이력관리시스템 회원가입은 점포단위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일괄로 회원가입이 가능한지?**

- ☞ 이력관리시스템 회원가입은 이력관리시스템에 신청서가 등재되어 있으며 점포 단위 혹은 일괄로도 회원가입이 가능함. 다만, 일부 대형마트의 경우 1~2개의 대표 사업자번호에 점포별로 각각의 영업장 인허가번호가 있는 경우는 영업장 인허가번호에 따라 별도의 ID · PW의 부여가 가능함

➔ **질의 19** ▶ **종업원 5인 이상은 전산신고 의무대상인데 종업원의 범위는?**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종업원의 범위를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동법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 하고는 "축산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음. 이와 관련하여, 식육포장처리업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특별 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사항이며, 동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조 제4항에 따라 허가관청에서 허가증을 발급할 때 **영업허가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고 있고, 이 관리대장에서는 업소명, 영업 허가번호·영업장 소재지·대표자·종업원 수 등이 포함되어 있음. 이를 종합해볼 때 **정확한 종업원 수는 영업허가권자인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종업원 수가 연간 5명 이상인 경우 전산신고 대상자에 해당함.**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 하시기 바람

〈참고〉 과태료 부과 기준

□ 식육포장처리업소·식육판매업소

위반행위 내용	근거 법조문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			
		1회	2회	3회	4회 이상
○ 쇠고기, 국내산 돼지고기 포장처리 및 거래·판매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 제1항 제16호	70	140	280	500
○ 쇠고기, 국내산 돼지고기 이력번호의 게시 또는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34조 제1항 제17호	70	140	280	500
○ 쇠고기, 국내산 돼지고기 이력번호를 명시한 거래명세서 등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 제1항 제18호	70	140	280	500
○ 장부 또는 거래내역서 등에 기록하여야 하는 사항을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규정에 정한 기한까지 장부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 제1항 제21호	50	100	200	400

□ 기타 모든 이행대상자

위반행위 내용	근거 법조문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			
		1회	2회	3회	4회 이상
○ 이법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34조 제1항 제19호	100	200	400	500
○ 이법에 따른 보고 및 출입·검사 등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하거나 검사 또는 검사물건, 시료수거를 거부 및 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34조 제1항 제20호	100	200	400	500

### ➔ 질의 1 DNA는 무엇이며, 축산물이력제 DNA동일성검사의 의미는?

☞ DNA(Deoxyribo Nucleic Acid)는 사람 또는 동물 등의 몸을 이루는 모든 세포 속에 존재하면서 생명체가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 주는 물질로 일란성 쌍둥이를 제외하고 사람 또는 동물마다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음. DNA동일성검사는 모든 개체마다 유전자(DNA)구조가 다르다는 점을 이용하여 개체식별번호가 부여된 축산물로부터 채취한 시료에 대해 유전자 감식기법을 활용하여 각각의 시료에서 추출된 DNA의 분석결과를 비교하여 동일성 여부를 검사하는 것을 말함.

### ➔ 질의 2 DNA동일성검사를 하기 위해 시료를 채취하는 대상은?

☞ 도축업자·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의 영업장에서 도축·포장처리·진열·보관·판매되고 있는 이력번호 표시 돼지고기가 시료 채취의 대상이 됨.

### ➔ 질의 3 DNA동일성검사를 위해 시료를 채취하는 방법은?

☞ 도축장에서 도축된 돼지의 경우에는 도체의 조직 등에서 시료를 채취함. 또한 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가 식육포장처리·진열·보관·판매하고 있는 돼지고기는 피 채취자(당해업주 또는 그 대리인 등)의 입회하에 살코기 부분을 약 20g를 채취하여 10g정도로 2등분 후 각각의 시료채취봉투에 넣어 채취자와 피 채취자가 모두 봉인한 후에 1점은 피 채취자 에게 인계하여 검사가 끝날 때까지 변질되지 않게 보관하도록 조치하고 시료채취 확인서를 작성하여 채취된 시료와 시료채취 확인서 사본을 해당 검사기관으로 송부함.

### ➔ 질의 4 DNA동일성검사의 결과 판정은 어느 기관에서 어떻게 하며, 판정결과를 얼마동안의 기간 내에 통보받을 수 있는지?

☞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는 DNA동일성검사를 하고, 보관용 시료와 검사용 시료의 검사 결과를 비교하여 대립유전자가 일치할 경우에는 '일치', 대립유전자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일치'로 판정함. 판정 결과 통보는 DNA동일성검사 신청에 따른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판정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검사신청 기관에 DNA동일성검사 결과 통보서에 의해 통보하여야 하며, 판정결과를 통보 받은 검사기관의 장은 시료채취 대상자에게 7일 이내에 알려주어야 함.

**질의 5** ▶ 예를 들어 칠레산 돼지고기와 국내산을 섞었을 경우 쇠고기처럼 DNA분석이 가능한지?

- ☞ 돼지고기도 쇠고기처럼 동일성검사에 대한 기술 확보는 되어 있으며 연간 30,000건 이상을 검사할 계획이며, 검사방법도 쇠고기처럼 DNA 동일성 검사방법과 동일함

**질의 6** ▶ 시·도에서 시료를 채취하였으나 여건상 DNA동일성검사를 할 수 없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 ☞ DNA동일성검사기관의 검사능력 또는 장비 등이 미비하여 채취 시료에 대한 검사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채취한 시료와 함께 검사를 신청할 수 있음.

## 6

## 위반자 처분

**질의 1** 각 단계별 위반행위별 과태료부과 세부기준 및 부과금액은?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사육장 또는 영업장 단위이며,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 받을 경우에 적용함. 이 경우 위반횟수별 부과기준의 적용일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사항을 적용한 날로 함. 또한 부과원자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으나 가중하는 경우에 과태료의 총액은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과태료가 부가되는 대상 및 위반행위별 부과금액은 다음의 표와 같음.

## □ 사육농가

(단위 : 만원)

위반행위 내용	근거 법조문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			
		1회	2회	3회	4회 이상
○ 농장식별번호 발급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 제1항 제1호	100	200	400	500
○ 농장식별번호 신청한 내용에 대한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34조 제1항 제2호	100	200	400	500
○ 소, 돼지(종돈)의 출생, 폐사, 이동, 변경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 제1항 제3호	50	100	200	400
○ 소 또는 종돈의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귀표등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 제1항 제4호	50	100	200	400
○ 돼지에 농장식별번호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 제1항 제5호	50	100	200	400
○ 매월 돼지의 사육현황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34조 제1항 제6호	50	100	200	400
○ 소 또는 종돈의 귀표등이 부착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귀표등이 훼손되어 개체식별이 곤란한 가축을 양도·양수, 수출하거나 가축사육시설에서 이동하게 한 경우	법 제34조 제1항 제7호	50	100	200	400

□ 도축장

위반행위 내용	근거 법조문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			
		1회	2회	3회	4회 이상
○ 개체식별 또는 농장식별이 곤란하거나 가축 식별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소, 돼지 또는 가축식별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가축사육시설에서 출하한 돼지를 도축한 경우	법 제34조 제1항 제8호	100	200	400	500
○ 소, 돼지의 도축 또는 경매신고나 돼지의 이력 번호 발급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 제1항 제9호	50	100	200	400

□ 축산물수입업자

위반행위 내용	근거 법조문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			
		1회	2회	3회	4회 이상
○ 수입쇠고기의 이력번호 발급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 제1항 제10호	50	100	200	400
○ 수입쇠고기 수입신고 시 이력번호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 제1항 제11호	50	100	200	400
○ 수입유통식별표가 훼손되어 유통경로의 확인이 곤란하거나 수입 유통식별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수입산쇠고기를 양도·양수 또는 수출한 경우	법 제34조 제1항 제12호	100	200	400	500
○ 수입쇠고기 이력번호가 표시된 수입유통식별표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 제1항 제13호	50	100	200	400
○ 수입쇠고기의 양도 또는 수출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 제1항 제14호	50	100	200	400
○ 수입쇠고기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하는 경우	법 제34조 제1항 제15호	50	100	200	400

□ 유통업자

위반행위 내용	근거 법조문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			
		1회	2회	3회	4회 이상
○ 쇠고기, 국내산 돼지고기 포장처리 및 거래·판매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 제1항 제16호	70	140	280	500
○ 쇠고기, 국내산 돼지고기 이력번호의 게시 또는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하는 경우	법 제34조 제1항 제17호	70	140	280	500
○ 쇠고기, 국내산 돼지고기 이력번호를 명시한 거래명세서 등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 제1항 제18호	70	140	280	500
○ 장부 또는 거래내역서 등에 기록하여야 하는 사항을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규정에 정한 기한까지 장부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 제1항 제21호	50	100	200	400

□ 기타 모든 이행대상자

위반행위 내용	근거 법조문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			
		1회	2회	3회	4회 이상
○ 이법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34조 제1항 제19호	100	200	400	500
○ 이법에 따른 보고 및 출입·검사 등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하거나 검사 또는 검사물건, 시료수거를 거부 및 방해하거나 기피 경우	법 제34조 제1항 제20호	100	200	400	500

**질의 2** ▶ 축산물이력제를 위반하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 '13.12.27일 개정 공포된「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력 관리대상 가축인 소, 돼지 사육농장 경영자,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업소, 식육판매업소 등이 축산물이력제 이행사항을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기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규정된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도 부과 될 수 있음.

**질의 3** ▶ 축산물이력제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관은?

구분	시도, 시군구	농림축산검역본부	농산물품질관리원
부과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육농가</li> <li>- 가축시장개설자</li> <li>- 도축장경영자</li> <li>- 축산물수입판매업소, 포장처리업소,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소, 식육(부산물)판매업소,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통신판매업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 수입·수출업자</li> <li>- 수입쇠고기 취급 축산물수입판매업소, 포장처리업소,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소, 식육(부산물)판매업소,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통신판매업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산이력축산물(국내산 쇠고기, 돼지고기) 취급 포장처리업소, 식육판매업소</li> </ul>

**질의 4** ▶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및 방법은?

☞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고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가 제기되면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하게 됨. 다만 정해진 기한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게 됨.

**질의 5** ▶ 이력번호 거짓표시가 식육판매업소의 잘못이 아닌 경우에는 누가 처벌되는지?

☞ 이력번호를 도축장·포장처리업소에서 잘못 표시하여 식육판매업소에 공급되었다면 공급자를 조사하여 처벌함. 그러나 이력번호가 정상적으로 표시된 쇠고기, 돼지고기를 공급받아 표시하지 않거나 잘못 표시한 경우에는 판매업소에 책임이 있음.

➔ **질의 6**

**이력번호를 표시하지 않은 업소 등을 신고할 수 있는 신고전화  
가 있는지?**

- ☞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원산지표시 위반 등에 관한 신고접수를 위해 안전 상담 센터를 운영중이며 전화번호는 1577-1203번임. 또한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별도의 원산지표시 관련상담 전화를 운영중(1588-8112번)임. 이와 별도로 축산물 이력제와 관련하여 사육농가, 유통업체, 소비자 등의 실시간 민원상담을 위해 “이력지원실”을 운영중이며 전화번호는 ‘1577-2633’임. 이와 함께 축산물이력제 홈페이지([www.mtrace.go.kr](http://www.mtrace.go.kr)) 의 질의응답 코너도 운영하고 있음.

→ **질의 1** ▶ 개체식별번호, 이력번호, 수입유통식별번호의 용어의 정의와 해당되는 용어는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 ☞ 지금까지 쇠고기 판매시 국내산 쇠고기는 개체식별번호, 수입쇠고기는 수입유통식별번호를 사용했으나,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소에 이어 돼지까지 이력관리대상에 포함됨. 이에 개체식별번호와 수입유통식별번호로 구분되는 용어를 동 법률에 따라 이력이 관리되는 축산물은 유통단계에서 “이력번호”란 용어로 통일하여 소비자 혼선을 최소화 시켰음. 다만, 개체식별번호는 사육단계에서 소와 종돈의 경우 개체별로 이력관리를 해야 하므로 개체식별번호 용어는 그대로 사용됨

→ **질의 2** ▶ 우족, 돼지족발, 꼬리, 뼈, 지방 등의 부산물도 이력번호 표시 대상에 해당되는지?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이력관리대상 축산물은 가축사육시설에서 사육한 돼지를 도축 처리하여 얻은 축산물[지육(枝肉)이나 지육을 이용하여 생산한 정육 또는 포장육]이 해당됨. 따라서 우족, 돼지족발, 꼬리, 뼈, 지방 등은 이력번호 표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질의 3** ▶ **국내산이력축산물의 이력번호를 확인하는 방법은?**

<p>〈식육판매표지판〉      〈라벨지〉</p> <p>* 소의 귀표번호(12자리) ⇒ 라벨지 등에 표시 판매</p>	<p>* 축종구분(1자리)+식별번호(6자리)+도축순번(5자리)⇒이력번호(12자리) 라벨지 등에 표시 판매</p>	
<p>쇠고기 개체식별번호 표시(예)</p>		<p>돼지고기 이력번호 표시(예)</p>

	<table border="1"> <thead> <tr> <th>이력정보</th> <th>English</th> <th>한국어</th> </tr> </thead> <tbody> <tr> <td>이력번호</td> <td>002 2002 0118 3</td> <td></td> </tr> <tr> <td>재배/사육장번호</td> <td>7754321</td> <td></td> </tr> <tr> <td>소식명/우/생년</td> <td>한우 (9개월)</td> <td></td> </tr> <tr> <td>출생일자</td> <td>14.04.07 (09개월)</td> <td></td> </tr> <tr> <td>소유주(농장/업장/차)</td> <td>양재동(72055)</td> <td></td> </tr> <tr> <td>사육지</td> <td>경남/마포 관내(사육장)</td> <td></td> </tr> <tr> <td>구역별 이동일/출생일</td> <td>17.02.16 (8월) # 39일 경과</td> <td></td> </tr> <tr> <td>부위명/감사/등급/가</td> <td>목심 (감사/등급: 1등급)</td> <td></td> </tr> <tr> <td>판매/감사/등급/가</td> <td>목심 (감사/등급: 1등급)</td> <td></td> </tr> <tr> <td>도축장</td> <td>김해축육</td> <td></td> </tr> <tr> <td>도축장/도축일자</td> <td>경남/도 김해(사육장/도축장)</td> <td></td> </tr> <tr> <td>도축일자</td> <td>17.03.13</td> <td></td> </tr> <tr> <td>도체중</td> <td>507kg</td> <td></td> </tr> <tr> <td>도체중/사육일자</td> <td>감사/도 김해(사육장/도축장)</td> <td></td> </tr> <tr> <td>체중/사육일자</td> <td>11-8월</td> <td></td> </tr> <tr> <td>표지사항/비고</td> <td colspan="2">한우(도축순번)가/우/구/사/연(2018/04/07) / 이력번호(이력번호)로 검색시 정정명 사용(00201803)</td> </tr> </tbody> </table>	이력정보	English	한국어	이력번호	002 2002 0118 3		재배/사육장번호	7754321		소식명/우/생년	한우 (9개월)		출생일자	14.04.07 (09개월)		소유주(농장/업장/차)	양재동(72055)		사육지	경남/마포 관내(사육장)		구역별 이동일/출생일	17.02.16 (8월) # 39일 경과		부위명/감사/등급/가	목심 (감사/등급: 1등급)		판매/감사/등급/가	목심 (감사/등급: 1등급)		도축장	김해축육		도축장/도축일자	경남/도 김해(사육장/도축장)		도축일자	17.03.13		도체중	507kg		도체중/사육일자	감사/도 김해(사육장/도축장)		체중/사육일자	11-8월		표지사항/비고	한우(도축순번)가/우/구/사/연(2018/04/07) / 이력번호(이력번호)로 검색시 정정명 사용(00201803)		<p>〈축산물 이력정보 조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터넷 : <a href="http://www.mtrace.go.kr">www.mtrace.go.kr</a> 검색</li> <li>○ 스마트폰 (축산물 이력정보)</li> </ul> <p><b>접속 후! 이력번호 12자리 조회</b></p>
이력정보	English	한국어																																																			
이력번호	002 2002 0118 3																																																				
재배/사육장번호	7754321																																																				
소식명/우/생년	한우 (9개월)																																																				
출생일자	14.04.07 (09개월)																																																				
소유주(농장/업장/차)	양재동(72055)																																																				
사육지	경남/마포 관내(사육장)																																																				
구역별 이동일/출생일	17.02.16 (8월) # 39일 경과																																																				
부위명/감사/등급/가	목심 (감사/등급: 1등급)																																																				
판매/감사/등급/가	목심 (감사/등급: 1등급)																																																				
도축장	김해축육																																																				
도축장/도축일자	경남/도 김해(사육장/도축장)																																																				
도축일자	17.03.13																																																				
도체중	507kg																																																				
도체중/사육일자	감사/도 김해(사육장/도축장)																																																				
체중/사육일자	11-8월																																																				
표지사항/비고	한우(도축순번)가/우/구/사/연(2018/04/07) / 이력번호(이력번호)로 검색시 정정명 사용(00201803)																																																				

➔ **질의 4** ▶ **국내 돼지고기이력제도와 유사한 이력제도가 있는지?**

☞ 아래는 우리나라 식품관련 이력추적제도 비교표

구분	쇠고기이력제 (축산물이력제)	농산물이력제	식품이력제	수산물이력제
BI				
개요	소의 출생에서부터 도축·가공·판매에 이르기까지 이력관리	농산물을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이력관리	식품을 제조·가공단계부터 판매까지 이력관리	수산물을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이력관리
본 사업 개시	2008년(쇠고기) 2010년(수입쇠고기)	2008년	2009년	2008년
근거법령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식품위생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대상품목	<b>의무제 (모든 소 및 쇠고기)</b> *14.12월부터 돼지 및 국내산 돼지고기 이력제 시행	GAP농산물 중심 과실 등 총3,878건 88,218농가 참여 중('10년)	185개품목, 18개업체 참여 중('10년) *14.12월부터 영유아 및 건강기능식품	굴, 김, 굴비 등 16개품목, 1,300개업체 참여 중('11년)
운영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품질평가원 (국내산)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입산)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품질관리원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보원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	www.mtrace.go.kr (국내산) www.meatwatch.go.kr (수입산)	www.farm2table.kr	www.tfood.go.kr	www.fishtrace.go.kr
이력 관리번호	번호구성 기준 有 (12자리, 국가코드포함 15자리)	번호구성 기준 有 (12자리)	18자리	번호구성 기준 有 (13자리)
활용매체	웹, 오픈서비스, 매장내 터치스크린, 모바일(모바일주소, QR코드, 앱)	웹, 오픈서비스, 모바일(모바일주소, QR코 드, 앱)	웹, 단말기, 모바일	웹, 모바일, 바코드스캔
추진방향	'04~ '07 : 시범사업 의무화 '08. 12 : 사육단계 '09. 06 : 유통단계	'03~ '05 : 시범사업 '06 : 자율등록 실시 '09. 12 : 자율등록 전품목 GAP 인증시 의무	'08~ : 시범사업 '09~ : 12업체, 77품목 등록 (10. 9. 30 기준)	'05~ '07 : 시범사업 '08~ : 확산홍보활동





## 참고자료

1. 돼지고기이력제 관련 기관·단체 연락처
2. 돼지고기이력제 시·도 담당 부서 연락처
3. 축산물품질평가원 지원별 연락처
4. 돼지고기 위탁기관(한국종축개량협회) 연락처





기관명	부서명	전화번호 (FAX)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044-201-2346~7 (044-868-0127)
농림축산식품부	이력지원실	1577-2633 (044-410-7178)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관리과	054-429-4163 (054-429-4168)
농림축산검역본부	운영지원과	054-912-1004~5 (031-467-1906)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	가축개량평가과	041-580-3358 (041-580-336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061-820-2000 (061-820-2211)
농협중앙회	축산경영부	02-2080-6552 (02-2080-6560)
축산물품질평가원	이력사업본부	044-410-7104 (044-410-7175)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유통관리부	070-8282-2657 (031-436-8776)
대한한돈협회		02-581-9751 (02-581-9768~9)
한국종축개량협회		02-588-9301~5 (02-582-3475)
축산기업중앙회		02-466-2573 (02-466-2574)
한국축산물처리협회		031-391-9766~7 (031-395-6661)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031-394-8147~9 (031-394-8150)

기관명	부서명	전화번호 (FAX)
서울특별시	식품안전과 축산물안전팀	02-2133-4723
부산광역시	농축산유통과	051-888-4992
인천광역시	농축산유통과	032-440-4396
대구광역시	농산유통과	053-803-3422
광주광역시	생명농업과	062-613-3983
대전광역시	농생명산업과	042-270-3823
울산광역시	농축산과	052-229-2936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축산과	044-300-4446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	031-8030-3483
강원도	축산과	033-249-2656
경상북도	축산경영과	054-880-3433
경상남도	축산과	055-211-6564
충청북도	축산과	043-220-3732
충청남도	축산과	041-635-2543
전라북도	축산과	063-280-4640
전라남도	축산과	061-286-6532
제주도	축산과	064-728-3413

## 3

## 축산물품질평가원 지원별 연락처

지원명	전화번호 (FAX)	사육현황 신고	주소
본부 (이력지원처)	044-410-7104 (044-410-7175)	1577-2633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길 21 (아름동) 축산물품질평가원
서울지원	032-613-6368 (032-671-6340)	032-613-6368	경기도 부천시 부천로198번길 36 춘의테크노파크 102동 108호 축산물품질평가원 서울지원
경기지원	031-216-7902 (031-216-7903)	031-216-7902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대학로 34 (동진캠퍼스 프라자 803호), 축산물품질평가원 경기지원
강원지원	033-813-1583 (033-813-1582)	033-813-1583	강원도 횡성군 횡성로 402 3층 축산물품질평가원 강원지원
대전충남지원	042-626-3860 (042-822-3890)	042-626-3860	대전시 유성구 반석서로 77 스마트빌딩 3층 축산물품질평가원 대전충남지원
충북지원	043-882-7358 (043-211-7356)	043-882-7358	충북 음성군 삼성면 상곡로 45 축산물품질평가원 충북지원
광주전남지원	062-573-3644 (062-332-3644)	062-573-3644	광주시 북구 첨단 연신로 107번길 45-22 토담빌딩 8층801호 축산물품질평가원 광주전남지원
전북지원	063-278-2363 (063-272-2363)	063-278-2363	전북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506 대림빌딩 403호 축산물품질평가원 전북지원
대구경북지원	053-384-2711 (053-384-2713)	053-384-2711	대구 북구 학정로 149 한우리 메디컬타워 3층 축산물품질평가원 대구경북지원
부산울산경남	055-723-2588 (055-723-2589)	055-723-2588	경남 김해시 내외로 95번길 7(내동) 1145-2 노블레스빌딩 4층 403호 축산물품질평가원 부산울산경남
제주지원	064-744-7691 (064-744-7693)	064-799-769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리로48 (이호1동 674-1) 축산물품질평가원 제주지원

연번	시도별	위탁기관명	전화번호 (FAX)	주소
1	서울	본부	02-588-9301~5 (02-582-3475)	서울 서초 명달로88 (서초3동 1516-5 축산회관)
2	경기	경기인천지부	031-282-9303 (031-282-9305)	경기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산101-3 희스 유타워 지식산업센터 1306호
3	강원	강원지역본부	033-434-9301 (033-434-9302)	강원 홍천군 홍천읍 설악로 1271-3
4	충북	충북지역본부	043-214-9301 (043-214-9302)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오창시내1길 39 2층
5	충남	대전세종지역본부	041-575-9301 (041-575-9302)	충남 천안시 동남구 통정 9로 15 2층 (신방동 1251)
6	전북	전북지역본부	063-224-9301~2 (063-224-9304)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남로 27 (효자2동 1238-7 4층)
7	전남	전남광주지역본부	061-334-9301 (061-334-9302)	전남 나주시 빛가람로 685, 비전타워 604 호
8	경북	경북대구지역본부	054-977-9605 (054-977-9606)	경북 칠곡군 가산면 경북대로 1701-3 (석우리)
9	경남	부산울산지역본부	055-346-6310~1 (055-755-6312)	경남 진주시 사들로 123번길 42 (충무공동 225-3 라온프라이빗위버 304호)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시행령 별표
- 시행규칙 별표 및 별지 서식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b>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b> <small>(약칭: 축산물이력법)</small>	<b>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b> <small>(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령)</small>	<b>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 <small>(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규칙)</small>
제정 2007. 12. 21. 법률 제 8755호 타법개정 2010. 1. 25. 법률 제 9952호 타법개정 2010. 5. 25. 법률 제10310호 전부개정 2010. 5. 25. 법률 제10311호 전부개정 2010. 5. 25. 법률 제10311호 타법개정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일부개정 2012. 5. 23. 법률 제11431호 전부개정 2013. 12. 27. 법률 제12119호 일부개정 2014. 10. 15. 법률 제12813호 일부개정 2016. 12. 27. 법률 제14478호 일부개정 2016. 12. 27. 법률 제14478호 일부개정 2018. 12. 31. 법률 제16114호 일부개정 2020. 2. 11. 법률 제16960호 일부개정 2018. 12. 31. 법률 제16114호 일부개정 2019. 8. 27. 법률 제16536호 타법개정 2020. 5. 26. 법률 제17324호 타법개정 2021. 8. 17. 법률 제18445호 타법개정 2022. 4. 26. 법률 제18853호	제정 2008. 12. 9. 대통령령 제21157호 제정 2008. 12. 9. 대통령령 제21157호 타법개정 2010. 11. 19. 대통령령 제22497호 전부개정 2010. 12. 20. 대통령령 제22533호 타법개정 2011. 6. 7. 대통령령 제22962호 타법개정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55호 타법개정 2013. 12. 30. 대통령령 제25050호 타법개정 2014. 1. 28. 대통령령 제25133호 전부개정 2014. 12. 26. 대통령령 제25891호 타법개정 2016. 1. 22. 대통령령 제26936호 타법개정 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51호 일부개정 2017. 6. 27. 대통령령 제28153호 타법개정 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 일부개정 2019. 12. 17. 대통령령 제30247호	제정 2008. 12. 19. 농림수산식품부령 제 43호 타법개정 2009. 4. 30. 농림수산식품부령 제 68호 타법개정 2010. 10. 12.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51호 전부개정 2010. 12. 22.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59호 타법개정 2011. 6. 15.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94호 전부개정 2010. 12. 22.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59호 타법개정 2011. 6. 15.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94호 타법개정 2013. 3. 23. 농림축산식품부령 제 1호 타법개정 2014. 8. 29.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04호 전부개정 2014. 12. 30.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20호 타법개정 2015. 2. 27.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36호 일부개정 2016. 1. 6.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89호 타법개정 2016. 1. 19.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92호 타법개정 2017. 1. 2.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37호 일부개정 2017. 6. 28.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73호 일부개정 2018. 11. 21.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41호 일부개정 2018. 11. 21.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41호 타법개정 2018. 12. 24.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46호 타법개정 2019. 8. 26.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1호 일부개정 2019. 12. 31.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04호 일부개정 2022. 1. 25.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17호 타법개정 2023. 4. 27.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84호
<b>제1장 총 칙</b>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축 및 축산물의 이력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역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소비자 이익의 보호 및 증진과	제1조(목적) 이 영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b>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b> <small>(약칭: 축산물이력법)</small>	<b>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b> <small>(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령)</small>	<b>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 <small>(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규칙)</small>
<p>축산업 및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lt;개정 2016. 12. 27., 2018. 12. 31., 2020. 2. 11., 2020. 5. 19.&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가축”이란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말한다.</li> <li>2. “축산물”이란 「축산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축산물을 말한다.</li> <li>3. “이력관리”란 가축의 출생·수입 등 사유와 축산물의 생산·수입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함으로써 가축과 축산물의 이동경로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li> <li>4. “이력관리대상가축”이란 소, 돼지, 닭, 오리를 말한다.</li> <li>5. “종돈”이란 「축산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종축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에 따라 등록된 돼지를 말한다.</li> </ol> <p>5의2. “씨알”이란 「축산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허가 받은 자의 사육시설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닭 또는</p>		<p>제2조(종돈의 범위)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에 따라 등록된 돼지”란 「축산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정기관 및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종축업 또는 정액등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사육하고 있는 돼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돼지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축산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종축등록기관(이하 “종축등록기관”이라 한다)이 공고한 기준에 따라 혈통등록되거나 고등(高等)등록된 돼지</li> <li>2. 종축등록기관이 공고한 기준에 따라 혈통이 확인된 번식용 씨돼지</li> </ol> <p>제2조의2(씨알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5호의 2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닭 또는 오리 간의 교배에 의해 생산된 알”이란 「축산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부화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알로서 다음 각 호의</p>

<b>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b> <small>( 약칭: 축산물이력법 )</small>	<b>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b> <small>( 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령 )</small>	<b>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 <small>( 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규칙 )</small>
<p>오리 간의 교배에 의해 생산된 알을 말한다.</p> <p>6. “농장식별번호”란 이력관리대상가축을 기르는 사육시설(이하 “가축사육시설”이라 한다)을 식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가축사육시설마다 부여하는 고유번호를 말한다.</p> <p>7. “개체식별번호”란 소, 돼지(중돈에 한정한다)의 개체를 식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가축 한 마리마다 부여하는 고유번호를 말한다.</p> <p>8.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물을 말한다.</p> <p>가. 국내산이력축산물</p> <p>1) 개체식별번호가 부여된 이력관리대상가축이나 농장식별번호가 부여된 가축사육시설에서 사육한 돼지, 닭, 오리를 도축 처리하여 얻은 축산물[지육(枝肉: 도살하여 머리, 내장, 다리를 잘라내고 아직 부위를 나누지 않은 고기)이나 지육을 이용하여 생산한 정육 또는 포장육을 말한다]로서 식용으로 제공되는 것</p>		<p>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유정란은 제외한다)을 말한다.</p> <p>1. 종계·종오리의 알</p> <p>2. 「축산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축업 중 종오리업으로 허가받은 자의 중오리사육시설에서 육용 씨숫오리와 산란용 씨암오리 간의 교배에 의해 생산된 알</p> <p>3. 「축산법」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가축사육업 중 양계업으로 허가받은 자의 가축사육시설에서 육용 씨수탉과 산란용 암탉 간의 교배에 의해 생산된 알</p> <p>[본조신설 2019. 12. 31.]</p>

<b>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b> <small>( 약장: 축산물이력법 )</small>	<b>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b> <small>( 약장: 축산물이력법 시행령 )</small>	<b>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 <small>( 약장: 축산물이력법 시행규칙 )</small>
<p>2) 농장식별번호가 부여된 가축사육시설에서 사육한 닭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된 계란 중 식용으로 제공되는 것</p> <p>나. 수입산이력축산물: 이력번호가 부여된 수입 쇠고기나 수입 돼지고기(지육이나 지육을 이용하여 생산한 정육 또는 포장육 및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산물을 말한다)로서 식용으로 제공되는 것</p> <p>9. “이력번호”란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이력을 관리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이력관리대상축산물에 부여하는 번호를 말한다.</p> <p>10. “귀표등”이란 이력관리대상가축의 이력관리를 위한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기 위하여 문자와 숫자 및 바코드[전자태그(RFID tag)를 포함한다] 등으로 기재하여 귀나 그 밖의 곳에 붙이거나 표시할 수 있도록 제작한 표 등을 말한다.</p> <p>11. “수입유통식별표”란 수입산이력축산물의 유통이력 관리를 위한 이력번호 및 수입산이력축산물 관련 정보를 문자와 숫자 및 바코드[전자태그(RFID tag)를</p>		<p>제3조(수입산이력축산물의 부산물) 법 제2조제1항제8호나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산물”이란 별표 1과 같다.</p> <p>제4조 삭제 &lt;2017. 6. 28.&gt;</p>

<b>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b> <small>(약칭: 축산물이력법)</small>	<b>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b> <small>(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령)</small>	<b>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 <small>(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규칙)</small>
<p>포함한다)로 기재하여 수입산이력축산물의 포장박스 등 포장에 붙일 수 있도록 제작한 표를 말한다.</p> <p>12. 삭제 &lt;2016. 12. 27.&gt;</p> <p>13. “수입”이란 외국 가축이나 축산물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경우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것을 말한다.</p> <p>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축산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다.</p> <p>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가축 및 축산물의 이력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p> <p><b>제2장 가축 및 축산물의 이력관리</b></p> <p><b>제1절 사육단계의 이력관리</b></p> <p>제4조(농장식별번호의 부여) ① 가축사육시설을 경영하는 자(사실상 관리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농장경영자”라 한다)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농장식별번호의 발급</p>		<p>제5조(농장식별번호 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시설을 경영하는 자(사실상 관리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농장경영자”라 한다)는 이력관리</p>

<b>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b> <small>(약칭: 축산물이력법)</small>	<b>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b> <small>(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령)</small>	<b>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 <small>(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규칙)</small>
<p>을 신청하여야 한다.</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가축사육시설을 식별할 수 있는 농장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농장경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자는 신청한 내용 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의 방법, 절차 및 기한, 부여 방법, 부여대상 범위, 변경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lt;개정 2018. 12. 31.&gt;</p>		<p>대상가축의 사육을 시작하기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전까지 소, 돼지는 별지 제1호서식, 닭, 오리는 별지 제1호의2 서식의 농장식별번호 발급신청서에 축산업 허가신청서 사본(축산업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축산업 등록신청서 사본(축산업 등록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첨부하여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이하 “품질평가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소의 경우에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5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lt;개정 2018. 11. 21., 2019. 12. 31., 2022. 1. 25.&gt;</p> <p>1. 삭제 &lt;2022. 1. 25.&gt;</p> <p>2. 삭제 &lt;2022. 1. 25.&gt;</p> <p>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품질평가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축산업 허가증(축산업 허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축산업 등록증(축산업 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p>

<b>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b> <small>( 약칭: 축산물이력법 )</small>	<b>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b> <small>( 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령 )</small>	<b>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 <small>( 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규칙 )</small>
<p>제5조(출생 등의 신고) ① 농장경영자[닭, 오리 등의 경우에는 농장경영자로부터 출생 등의 신고에 관하여 위임을 받은 「축산계열</p>		<p>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lt;신설 2018. 11. 21., 2022. 1. 25.&gt;</p> <p>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품질평가원은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농장식별번호를 부여하고,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이력관리 시스템(이하 “이력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법 제19조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이하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이라 한다)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lt;개정 2018. 11. 21.&gt;</p> <p>④ 제1항에 따라 신청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품질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lt;개정 2018. 11. 21.&gt;</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신청 및 변경신고의 방법과 절차, 농장식별번호의 부여 및 통보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lt;개정 2018. 11. 21.&gt;</p> <p>제6조(출생 등 신고의 방법과 절차 등) ① 농장경영자[닭, 오리의 경우에는 농장경영자로부터 출생 등의 신고에 관하여 위임을</p>

<b>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b> <small>( 약칭: 축산물이력법 )</small>	<b>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b> <small>( 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령 )</small>	<b>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 <small>( 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규칙 )</small>
<p>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계열화사업을 하는 자(이하 “계열화사업자”라 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력관리대상가축 및 씨알을 수입·수출하는 자, 가축시장개설자(「축산법」 제34조에 따른 가축시장을 개설·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가축거래상인(「축산법」 제34조의2에 따른 등록된 가축거래상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양도·양수·이동 또는 수입·수출한 이력관리대상가축 및 씨알이 있는 경우에는 소는 위탁기관의 장에게, 종돈은 영 제12조제6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중등등록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닭, 오리 및 씨알(「축산법」 제29조에 따라 수출입의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은 영 제12조제7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중축등수출입신고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돼지(종돈은 제외한다), 닭, 오리, 씨알(중축등수출입신고기관에 신고하는 종축 등은 제외한다)은 품질평가원장의 장에게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lt;개정 2019. 12. 31.&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소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li> </ol>	<p>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계열화사업을 하는 자(이하 “계열화사업자”라 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력관리대상가축 및 씨알을 수입·수출하는 자, 가축시장개설자(「축산법」 제34조에 따른 가축시장을 개설·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가축거래상인(「축산법」 제34조의2에 따른 등록된 가축거래상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lt;개정 2018. 12. 31., 2020. 5. 26.&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소, 종돈이 출생(종돈의 경우에는 등록을 말한다)하는 경우</li> <li>2. 소, 종돈이 폐사한 경우</li> <li>3. 이력관리대상가축 및 씨알을 양도(도축을 위한 출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양수하거나 가축사육시설에서 다른 가축사육시설로 이동시킨 경우</li> <li>4. 이력관리대상가축 및 씨알을 수입하는 경우</li> <li>5. 이력관리대상가축 및 씨알을 수출하는 경우</li> <li>6. 이력관리대상가축을 가축시장에서 거래</li> </ol>	<p>받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계열화사업을 하는 자(이하 “계열화사업자”라 한다)를 포함한다, 가축거래상인(「축산법」 제34조의2에 따른 등록된 가축거래상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영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따라 출생(종돈의 경우에는 등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폐사, 양도·양수·이동 또는 수입·수출한 이력관리대상가축 및 씨알이 있는 경우에는 소는 위탁기관의 장에게, 종돈은 영 제12조제6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중등등록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닭, 오리 및 씨알(「축산법」 제29조에 따라 수출입의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은 영 제12조제7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중축등수출입신고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돼지(종돈은 제외한다), 닭, 오리, 씨알(중축등수출입신고기관에 신고하는 종축 등은 제외한다)은 품질평가원장의 장에게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lt;개정 2019. 12. 31.&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소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li> </ol>

<b>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b> <small>(약칭: 축산물이력법)</small>	<b>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b> <small>(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령)</small>	<b>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 <small>(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규칙)</small>
<p>하는 경우</p> <p>7. 이력관리대상가축을 가축거래상인에게 거래하는 경우</p> <p>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신고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및 변경 신고의 방법·절차·기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p>		<p>2. 종돈의 경우: 별지 제4호서식</p> <p>3. 돼지(종돈은 제외한다)의 경우: 별지 제5호서식</p> <p>4. 닭, 오리, 씨알의 경우  가. 수입, 수출의 경우: 별지 제5호의2 서식  나. 양도, 양수, 이동 및 입란의 경우: 별지 제5호의3서식</p> <p>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하여야 한다.</p> <p>1. 출생·폐사 신고: 출생·폐사한 날부터 5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다만, 종돈의 폐사는 14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p> <p>2. 양도·양수·이동 신고: 양도·양수·이동한 날부터 5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p> <p>3. 수입·수출 신고: 통관절차가 완료된 날</p> <p>③ 가축시장개설자(「축산법」 제34조에 따른 가축시장을 개설·관리하는 축산업협동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라 가축의 양도자와 양수자의 정보를 확인하고 거래내역을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품질평가원장에게 거래가 완</p>

<b>기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b> <small>( 약장: 축산물이력법 )</small>	<b>기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b> <small>( 약장: 축산물이력법 시행령 )</small>	<b>기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 <small>( 약장: 축산물이력법 시행규칙 )</small>
		<p>료된 다음날(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장에 등으로 인하여 이력관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거래가 완료된 날부터 3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에 품질 평가원장이 정하는 서면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lt;개정 2019. 12. 31.&gt;</p> <p>④ 제1항 및 제3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품질평가원장, 위탁기관의 장, 종돈 등록기관의 장 및 종축등수출입신고기관은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lt;개정 2019. 12. 31.&gt;</p> <p>⑤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품질평가원장, 위탁기관의 장, 종돈등록기관의 장 및 종축등수출입신고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lt;개정 2019. 12. 31.&gt;</p> <p>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신고 및 변경신고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3과 같다.</p>

<b>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b> <small>(약칭: 축산물이력법)</small>	<b>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b> <small>(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령)</small>	<b>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 <small>(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규칙)</small>
<p>제6조(개체식별번호의 부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가축및 축산물식별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개체식별번호의 부여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p>		<p>제7조(개체식별번호의 부여방법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개체식별번호의 부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4와 같다.</p> <p>제8조(귀표등의 부착기한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개체식별번호를 통보받은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 기한까지 소 또는 종돈에 귀표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 2호의 경우로서 그 기한 전에 가축사육시 설에서 이동하는 경우에는 그 이동 전에 귀표등을 부착하여야 한다.</p> <p>1. 출생 신고된 소의 경우: 출생 신고 후 30일(육우의 경우는 7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p> <p>2. 등록된 종돈의 경우: 종돈 등록 후 7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p> <p>3. 수입 신고된 소 또는 종돈의 경우: 통 관절차가 완료된 날</p> <p>② 출생 신고된 소의 농장경영자가 고령(高齡) 등으로 귀표를 부착하기 곤란한 경 우에는 위탁기관에 귀표등의 부착을 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관은 그 요청 을 받은 날부터 30일(육우의 경우는 7일,</p>

<b>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b> <small>( 약장: 축산물이력법 )</small>	<b>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b> <small>( 약장: 축산물이력법 시행령 )</small>	<b>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 <small>( 약장: 축산물이력법 시행규칙 )</small>
<p>제7조(귀표등의 부착 등) ① 제6조에 따라 개체식별번호를 통보받은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해당되는 소 또는 종돈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한 귀표등을 붙여야 한다. &lt;개정 2020. 2. 11.&gt;</p> <p>② 농장경영자, 소 또는 종돈을 수입하는 자 등은 소, 종돈의 귀표등이 없어지거나 훼손되어 식별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같은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한 귀표등을 새로 붙여야 한다. &lt;개정 2020. 2. 11.&gt;</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귀표등의 규격과 부착 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p> <p>제8조(농장식별번호의 표시 등) ① 돼지를 기</p>		<p>다음 각 호의 사유지역에서는 90일 이내에 귀표등을 부착하여야 한다.</p> <p>1. 도서지역(제주특별자치도 본도를 제외한다)</p> <p>2. 소를 방목하여 사육하는 소 방목 사육지</p> <p>③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귀표등의 규격·부착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4와 같다.</p> <p>제9조(돼지에 대한 농장식별번호의 표시 및 관</p>

<b>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b> <small>(약칭: 축산물이력법)</small>	<b>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b> <small>(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령)</small>	<b>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 <small>(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규칙)</small>
<p>르는 농장경영자는 제4조제2항에 따라 부여받은 농장식별번호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돼지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도축을 위하여 출하하는 돼지</li> <li>2. 다른 가축사육시설로 이동하는 돼지</li> </ol> <p>② 농장경영자는 매월 돼지의 사육현황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농장식별번호의 표시방법 및 관리 등과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 기한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p>		<p>리 등) ①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천재지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천재지변 등으로 긴급 이동할 필요가 있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li> <li>2. 출생 후 3개월 이내의 돼지인 경우. 다만, 페인트를 이용하는 등 임시적인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li> <li>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li> </ol> <p>②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농장식별번호의 표시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5와 같다.</p> <p>제10조(돼지의 사육현황 신고) ① 돼지를 사육하는 농장경영자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돼지의 사육현황 신고서를 해당 월의 마지막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품질평가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종돈을 사육하는 농장경영자는</p>

<b>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b> <small>(약칭: 축산물이력법)</small>	<b>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b> <small>(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령)</small>	<b>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 <small>(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규칙)</small>
<p>제8조의2(가금 농장식별번호의 표시 등) ① 닭, 오리틀 기르는 농장경영자는 제4조제2항에 따라 부여받은 농장식별번호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닭, 오리의 가금(家禽: 집에서 기르는 날짐승) 이동신고서, 거래명세서 등(이하 “가금이동신고서 등”이라 한다)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lt;개정 2020. 5. 19.&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도축을 위하여 출하하는 닭, 오리</li> <li>2. 다른 가축사육시설로 이동하는 닭, 오리, 씨알</li> <li>3. 가축거래상인에게 판매하는 닭, 오리</li> </ol> <p>② 농장경영자는 매월 닭, 오리의 사육현황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농장식별번호의 표시방법 및 관리 등과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 기한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p>		<p>중돈등록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6과 같다.</p> <p>제10조의2(가금 농장식별번호의 표시 등) ① 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천재지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lt;개정 2022. 1. 25.&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천재지변 등으로 긴급 이동할 필요가 있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li> <li>2. 닭, 오리의 가금(家禽: 집에서 기르는 날짐승) 이동신고서, 거래명세서 등(이하 “가금이동신고서등”이라 한다)이 천재지변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훼손되어 농장식별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li> <li>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li> </ol> <p>②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가금농장식별번호의 표시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6의2와 같다.</p> <p>③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닭, 오리를</p>

<b>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b> <small>(약칭: 축산물이력법)</small>	<b>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b> <small>(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령)</small>	<b>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 <small>(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규칙)</small>
<p>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12. 31.]</p> <p>제9조(귀표등이 없는 가축의 이동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소, 중, 증에 붙여진 귀표등 또는 돼지의 농장식별번호 표시를 위조·변조하거나 떼어내거나 고의로 훼손하여 식별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lt;개정 2020. 2. 11.&gt;</p> <p>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력관리대상가축을 양도·양수하거나 수출하거나 기축사육시설에서 이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lt;개정 2020. 2. 11.&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한 귀표등이 붙어 있지 아니하거나 훼손되어 개체식별이</li> </ol>	<p>제2조(귀표등이 없는 가축의 이동 등 금지의 예외)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단서에서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천재지변이나 교통사고의 발생으로 인한 경우</li> <li>2. 농촌관광이나 학술연구의 목적으로 사육된 경우</li> </ol>	<p>기르는 농장경영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사유현황 신고서를 해당 달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품질평가원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p> <p>④ 제3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6의3과 같다. [본조신설 2019. 12. 31.]</p>

<p>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축산물이력법 )</p>	<p>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령 )</p>	<p>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규칙 )</p>
<p>곤란한 소나 증돈</p> <p>2. 농장식별번호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돼지(증돈은 제외한다)</p> <p>제9조의2(농장식별번호가 없는 가축의 이동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제8조의2에 따라 닭, 오리, 씨알에 대한 가금이동신고서등의 농장식별번호 표시를 위조·변조하거나 표시를 하지 않아 식별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닭, 오리, 씨알을 양도·양수하거나 수출하거나 가축사육시설에서 이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농장식별번호 부여대상이 아닌 소규모농가에 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가금이동신고서등이 없는 닭, 오리, 씨알</p> <p>2. 가금이동신고서등에 농장식별번호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닭, 오리, 씨알</p> <p>[본조신설 2018. 12. 31.]</p>	<p>제2조의2(농장식별번호가 없는 가축의 이동 금지 등의 예외) 별 제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천재지변이나 농장식별번호 부여 대상이 아닌 소규모농가에 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천재지변이나 교통사고의 발생으로 인한 경우</li> <li>2. 농촌관광이나 학술연구의 목적으로 사육된 경우</li> <li>3. 「축산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호에 따라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닭 또는 오리 사육업인 경우</li> <li>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거래하는 경우(닭을 도축하는 시설을 설치한 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와 거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li> <li>5.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7조제1항제2호</li> </ol>	<p>제10조의3(농장식별번호가 없는 가축의 이동금지 등) 영 제2조의2제4호에서 "닭을 도축하는 시설을 설치한 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1호나목(2)(가)12)에 따라 닭을 도축하는 시설을 설치한 자를 말한다.</p> <p>[본조신설 2019. 12. 31.]</p>

<b>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b> <small>( 약칭: 축산물이력법 )</small>	<b>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b> <small>( 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령 )</small>	<b>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 <small>( 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규칙 )</small>
<p style="text-align: center;"><b>제2절 도축단계의 이력관리</b></p> <p>제10조(귀표등이 없는 가축의 도축금지) ①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른 도축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이하 “도축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력관리대상가축을 도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친제지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lt;개정 2018. 12. 31., 2020. 2. 11.&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귀표등이 붙어 있지 아니한 소 또는 농장식별번호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돼지</li> <li>2. 귀표등 또는 농장식별번호 표시가 훼손되어 개체식별 또는 농장식별이 곤란한 소, 돼지</li> <li>3. 제19조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소, 종돈 또는</li> </ol>	<p>에 따라 닭 또는 오리 또는 자가소비하기 위하여 양도·양수 또는 이동하는 경우</p> <p>6.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닭 또는 오리 또는 소비자에게 직접 조리하여 판매하는 경우</p> <p>[본조신설 2019. 12. 17.]</p>	<p>제11조(귀표등이 없는 가축의 처리 등) ①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친제지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lt;개정 2017. 6. 28.&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친제지변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귀표등이 떨어지거나 훼손되어 개체식별번호 또는 농장식별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li> <li>2. 잉크 번짐 등으로 돼지에 표시한 농장식별번호 표시의 확인이 곤란하나, 제6조에 따른 신고서를 통하여 해당 농장식별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li> <li>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li> </ol>

<b>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b> <small>(약칭: 축산물이력법)</small>	<b>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b> <small>(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령)</small>	<b>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 <small>(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규칙)</small>
<p>같은 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가축 사육시설에서 출하한 돼지, 닭, 오리</p> <p>② 도축업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이력관리대상가축이 도축 의뢰된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의 검사관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이력관리대상가축의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p>		<p>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이력관리대상 가축의 신고는 구술, 전화, 전자적 처리 등의 방법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11조(도축 등의 신고 및 이력번호 표시) ① 도축업자가 이력관리대상가축을 도축하거나 경매에 부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돼지, 닭, 오리를 도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이력번호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lt;개정 2018. 12. 31.&gt;</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후단에 따라 돼지, 닭, 오리의 이력번호 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력번호를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lt;개정 2018. 12. 31.&gt;</p>		<p>제12조(도축처리 결과 등의 신고) ①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른 도축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이하 “도축업자”라 한다)는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른 도축 또는 경매 결과를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도축 또는 경매가 완료된 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의 다음 날까지 신고하여야 한다.</p> <p>② 도축업자는 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이력번호의 정확한 관리를 위하여 「축산물</p>

<b>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b> <small>(약칭: 축산물이력법)</small>	<b>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b> <small>(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령)</small>	<b>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 <small>(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규칙)</small>
<p>③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도축장에서 도축 처리하는 이력관리대상가축 및 그 국내산이력축산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검사관은 이력번호를 기재한 도축검사증명서를 검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p> <p>④ 「축산법」 제40조에 따라 국내산이력축산물에 대한 등급판정을 한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이력번호를 기재한 축산물등급판정 확인서를 해당 축산물의 등급판정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p> <p>⑤ 도축업자는 도축한 이력관리대상가축에게서 얻은 국내산이력축산물에 이력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p> <p>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 신고방법 및 기한 등과 이력번호의 표시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p>		<p>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도축 검사신청서를 작성할 때 귀표등의 부착, 개체식별번호 또는 농장식별번호의 표시 및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7과 같다.</p> <p>제13조(도축업자의 이력번호 발급 신청 등) ① 도축업자는 법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돼지, 닭, 오리의 이력번호 발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력번호 발급신청서를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품질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장에 등으로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화 등으로 이력번호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lt;개정 2019. 12. 31.&gt;</p> <p>1. 돼지의 경우: 별지 제6호서식</p> <p>2. 닭, 오리의 경우: 별지 제6호의2서식</p> <p>② 제1항에 따른 이력번호 발급신청 및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력번호 부여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8과 같다.</p>

<p>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축산물이력법 )</p>	<p>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령 )</p>	<p>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규칙 )</p>
<p>제11조의2(계란의 신고 및 이력번호 표시·관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란에는 이력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최종소비자를 목적으로 하는 가정용으로 유통·판매하는 계란</li> <li>2.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계란</li> </ol>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계란이력번호 표시의무자”라 한다)가 제1항의 계란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란의 이력번호 표시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이력번호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lt;개정 2022. 4. 26.&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식용란선별포장업의 허가를 받은 자</li> <li>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받은 농장 및 「동</li> </ol>	<p>제2조의3(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 법 제11조의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부종류의 영업”이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7호바목에 따른 식용란 수집판매업(이하 “식용란수집판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p> <p>[본조신설 2019. 12. 17.]</p>	<p>제14조(도축업자의 이력번호 표시방법 및 관리 등)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도축업자의 이력번호 표시방법 및 관리 등은 별표 9와 같다.</p> <p>제14조의2(계란의 선별포장 결과 등의 신고)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계란을 거래하려는 법 제11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계란이력번호 표시의무자”라 한다)는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계란의 선별포장 결과 및 거래 결과를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계란의 선별포장 및 거래가 완료된 날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의 다음 날까지 신고해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신고방법 등은 별표 9의 2와 같다.</p> <p>[본조신설 2019. 12. 31.]</p> <p>제14조의3(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의 이력번호 발급 신청 등) ①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는 법 제11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계란</p>

<b>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b> <small>(약칭: 축산물이력법)</small>	<b>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b> <small>(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령)</small>	<b>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 <small>(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규칙)</small>
<p>물보호법」 제59조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을 받은 농장으로서 직접 판매를 하기 위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축산물판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부 종류의 영업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신고를 한 자</p> <p>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p> <p>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계란의 이력번호 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력번호를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④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축산물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는 계란 포장지 등에 이력번호를 표시하여야 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에 이력번호를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p> <p>⑤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축산물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는 이력번호 발급 및 표시 등을 위하여 계란을 운송하는 경우 농장식별번호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난좌(卵座: 가축의 알을 운반·판매</p>		<p>의 이력번호 발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3서식의 계란 이력번호 발급 신청서를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품질평가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산장애 등으로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이력번호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p> <p>②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는 제1항에 따른 이력번호의 발급신청 시 이력번호의 정확한 관리를 위하여 농장식별번호, 가축및축산물 식별대상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신청 및 별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이력번호 부여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9의3과 같다. [본조신설 2019. 12. 31.]</p> <p>제14조의4(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의 범위) 별 11조의2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7호바목에 따른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식용란수집판매업자”라 한다)로서 가축사육시설에서 생산한 계란을 직접 판매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계란의 이력</p>

<b>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b> <small>(약칭: 축산물이력법)</small>	<b>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b> <small>(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령)</small>	<b>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 <small>(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규칙)</small>
<p>등의 목적으로 담아두거나 포장하는 용기 또는 운송상자에 표시하거나 붙여야 한다. &lt;개정 2020. 2. 11., 2020. 5. 19.&gt;</p> <p>⑥ 「축산법」 제40조에 따라 계란에 대한 등급판정을 한 축산물품질평가사는 이력번호를 기재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해당 계란의 등급판정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p> <p>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 신고방법 및 기한 등과 이력번호의 표시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18. 12. 31.]</p> <p style="text-align: center;"><b>제3절 수입단계의 이력관리</b></p> <p>제12조(이력번호의 신청) ①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의</p>		<p>번호 발급을 신청한 자(사육하는 닭의 수가 1만 마리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p> <p>[본조신설 2019. 12. 31.]</p> <p>제14조의5(계란의 이력번호 표시방법 및 관리 등) ① 법 제11조의2제4항에 따른 계란의 이력번호 표시방법 및 관리 등은 별표 9의4와 같다.</p> <p>② 법 제11조의2제4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 별표 12 및 별표 13에 따라 해당 영업자가 발급해야 하는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를 말한다.</p> <p>③ 법 제11조의2제5항에서 “농장식별번호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농장식별번호를 말한다.</p> <p>[본조신설 2019. 12. 31.]</p> <p>제15조(수입산이력축산물에 대한 이력번호 발급 신청) 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p>

<b>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b> <small>(약칭: 축산물이력법)</small>	<b>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b> <small>(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령)</small>	<b>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 <small>(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규칙)</small>
<p>허가를 받은 자(이하 “식육포장처리업자”라 한다)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라 한다)가 쇠고기나 돼지고기를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수입신고 이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이력번호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lt;개정 2016. 12. 27.&gt;</p> <p>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방법, 절차, 기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p>		<p>조제1항에 따라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라 한다)가 별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입 쇠고기 또는 돼지고기에 대한 이력번호 발급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7호서식의 이력번호 발급신청서를 수입신고 전까지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 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장에 등으로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등으로 이력번호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lt;개정 2017. 6. 28., 2018. 11. 21.&gt;</p> <p>② 제1항에 따른 이력번호 발급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10과 같다.</p>
<p>제13조(이력번호의 부여 및 수입유통식별표 부착)</p> <p>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이력번호가 신청된 수입 쇠고기나 수입 돼지고기에 대하여 이력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lt;개정 2016. 12. 27.&gt;</p> <p>② 제1항에 따라 이력번호를 통보받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 및 식육포장처리</p>		<p>제16조(수입산이력축산물에 대한 이력번호 부여방법 등)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력번호의 부여방법, 수입유통식별표의 표시사항과 규격, 부착방법 및 관리 등은 별표 11과 같다.</p>

<b>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b> <small>(약칭: 축산물이력법)</small>	<b>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b> <small>(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령)</small>	<b>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 <small>(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규칙)</small>
<p>업자는 수입신고 이전에 해당 수입산이력 축산물에 그 이력번호를 표시한 수입유통 식별표를 붙여야 한다. &lt;개정 2016. 12. 27., 2020. 2. 11.&gt;</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력번호의 부여방법, 수입유통식별표의 표시사항과 규격, 부착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p> <p>제14조(수입신고 시 이력번호 표기) ①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자 및 식육포장처리업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쇠고기나 돼지고기의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 제13조에 따라 부여받은 이력번호를 표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lt;개정 2016. 12. 27.&gt;</p> <p>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쇠고기나 돼지고기의 수입신고를 한 자에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을 교부할 때 이력번호를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lt;개정 2016. 12. 27.&gt;</p>	<p>제3조(수입유통식별표 부착 등의 예외) 법 제</p>	

<b>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b> <small>(약칭: 축산물이력법)</small>	<b>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b> <small>(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령)</small>	<b>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 <small>(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규칙)</small>
<p>등 금지) ① 누구든지 수입산이력축산물에 붙여진 수입유통식별표를 위조·변조하거나 떼어내거나 고의로 훼손하여 이력번호의 식별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lt;개정 2020. 2. 11.&gt;</p> <p>② 누구든지 수입유통식별표가 붙어 있지 아니하거나 훼손되어 유통경로의 확인이 곤란하거나 제20조에 따른 수입유통식별 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수입 쇠고기나 수입 돼지고기를 양도·양수하거나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술연구의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lt;개정 2016. 12. 27., 2020. 2. 11.&gt;</p> <p>③ 판매 또는 영업 등의 목적으로 수입산 이력축산물을 소유·관리하는 자(해당 수입산이력축산물의 운송위탁을 받은 운송업자는 제외한다)는 수입유통식별표가 없어 지거나 훼손되어 식별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같은 이력번호를 표시한 수입유통식별표를 붙여야 한다. &lt;개정 2020. 2. 11.&gt;</p> <p>제16조(거래신고 등) ① 수입식품등 수입·판</p>	<p>15조제2항 단서에서 "학술연구의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학술연구의 목적으로 수입된 경우</li> <li>2. 「대의무역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방법으로 외화를 획득하기 위하여 수입된 경우</li> <li>3. 자사(自社)의 제품을 만들기 위한 원료로 수입된 경우. 다만, 포장육을 만들기 위하여 수입된 경우는 제외한다.</li> <li>4. 그 밖에 수입유통식별표를 부착하기 곤란한 상황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li> </ol>	<p>제17조(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의 거래신고</p>

<b>기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b> <small>(약칭: 축산물이력법)</small>	<b>기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b> <small>(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령)</small>	<b>기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 <small>(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규칙)</small>
<p>매입자는 수입한 수입산이력축산물을 양도 또는 수출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lt;개정 2016. 12. 27.&gt;</p> <p>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및 변경 신고의 방법·절차·기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p>		<p>등) ①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입산이력축산물의 양도·수출의 거래 신고를 하려면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신고서를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장애 등으로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lt;개정 2017. 6. 28.&gt;</p> <p>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수입산이력축산물을 양도 또는 수출한 날부터 3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에 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거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변경 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에 따른 거래 신고의 내용과 방법·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12와 같다.</p> <p>[제목개정 2017. 6. 28.]</p>
<b>제4절 유통·판매단계의 이력관리</b>		

<b>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b> <small>(약칭: 축산물이력법)</small>	<b>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b> <small>(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령)</small>	<b>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 <small>(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규칙)</small>
<p>제17조(식육포장처리업자 등의 포장처리 및 거래 신고 등) ① 식육포장처리업자,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축산물판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부 종류의 영업에 한정한다)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식육즉석판매가공업판매업자”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거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lt;개정 2016. 12. 27., 2018. 12. 31.&gt;</p> <p>② 식육포장처리업자 및 이력관리대상축산물판매업자가 수입산이력축산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lt;개정 2016. 12. 27.&gt;</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과 절차, 기한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p>	<p>제4조(포장처리 및 거래 신고 의무자) 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부 종류의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영업을 말한다. &lt;신설 2017. 6. 27., 2019. 12. 17.&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7호가목에 따른 식육판매업</li> <li>2.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7호나목에 따른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li> <li>3.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7호마목에 따른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li> <li>4. 식용란수집판매업</li> </ol> <p>②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별표 1에 따른 신고 의무자를 말한다. &lt;개정 2019. 12. 17.&gt;</p> <p>[시행일:2015. 6. 28.] 제4조제1호(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자에 관한 사항과 쇠고기를 취급하는 자의 거래신고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제4조제2호라목, 제4조제2호마목</p> <p>제5조(수입산이력축산물의 판매 신고 대상자)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수입산이력축산물(부산물은 제외한다)을 취급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p>	<p>제18조(포장처리 및 거래신고의 방법·절차 등)</p> <p>①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식육포장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 “식육포장처리업자”라 한다),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식육판매업 신고를 한 자(이하 “식육즉석판매가공업판매업자”라 한다)·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신고를 한 자(이하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라 한다)·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신고를 한 자(이하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라 한다)·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라 한다) 또는 식용란수집판매업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거래 신고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신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lt;개정 2017. 6. 28., 2019. 12. 31.&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내산이력축산물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를 품질평가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별지 제10호서식</li> <li>나. 계란: 별지 제10호의2서식</li> </ul> </li> </ol>

기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축산물이력법 )	기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령 )	기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규칙 )
	<p>는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의 신고를 한 자 중 영업장 면적이 700제곱미터 이상인 자</li> <li>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위탁급식영업의 신고를 한 자 중 제3호에 해당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자</li> <li>3. 「식품위생법」 제88조에 따라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의 신고를 한 자 중 「학교급식법」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li> <li>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통신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li> </ol> <p>[시행일:2015. 6. 28.] 제5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2. 수입산이력축산물의 경우: 별지 제8호 서식의 수입산이력축산물의 거래 신고서를 검역본부장에게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② 식육포장처리업자 및 계란이력번호표시 의무자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포장처리 신고를 하려면 별지 제11호서식의 이력관리대상축산물 포장처리 신고서를 국내산이력축산물의 경우에는 품질평가원장에게, 수입산이력축산물의 경우에는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lt;개정 2019. 12. 31.&gt;</li> <li>③ 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는 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수입산이력축산물의 판매 신고를 하려면 별지 제8호서식의 판매 신고서를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lt;개정 2017. 6. 28.&gt;</li> <li>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는 다음 각 호의 기한(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까지 하여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거래 신고: 거래한 날부터 5일 이내</li> <li>2. 포장처리 신고: 포장처리한 날부터 5일 이내</li> </ol> </li> </ul> </li> </ol>

<p>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축산물이력법)</p>	<p>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령)</p>	<p>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규칙)</p>
<p>제18조(판매표지판 등의 이력번호 표시 등) ① 식육포장처리업자, 계란이력번호표시 의무자 및 이력관리대상축산물판매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포장지 및 식육의 판매표지판 등에 해당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이력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lt;개정 2016. 12. 27., 2018. 12. 31.&gt;</p> <p>② 제1항의 경우에 식육포장처리업자, 계란이력번호표시 의무자 및 이력관리대상축산물판매업자는 하나의 이력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수의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한 개로 포장하거나 판매할 경우에는</p>	<p>제6조(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이력번호 게시 또는 표시 의무자 등) ① 법 제18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p> <p>②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이력번호를 게시 또는 표시하여야 하는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범위는 부산물을 제외한 이력관리대상축산물로 한다. &lt;개정 2019. 12. 17.&gt;</p> <p>[제목개정 2019. 12. 17.]</p>	<p>3. 판매 신고: 판매한 날부터 5일 이내</p> <p>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서의 제출은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하되, 전산장애 등으로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p> <p>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 내용 및 신고서의 기록·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12와 같다.</p> <p>제19조(판매표지판 등의 이력번호 표시 방법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력번호의 표시 및 관리 방법은 별표 13과 같다.</p> <p>② 법 제18조제2항 단서에 따른 묶음번호의 표시 및 관리 방법은 별표 14와 같다.</p> <p>제20조(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거래명세서 등 발급 대상자 등) ① 법 제18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lt;개정 2017. 6. 28., 2019. 12. 31.&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식육포장처리업자</li> <li>2. 식육판매업자</li> <li>3.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li> </ol>

<b>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b> <small>(약칭: 축산물이력법)</small>	<b>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b> <small>(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령)</small>	<b>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 <small>(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규칙)</small>
<p>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묶음번호(다수의 이력번호이거나 이력번호 외의 번호 또는 이를 새로운 기호로 대체한 것을 말한다)로 표시할 수 있다. &lt;개정 2016. 12. 27., 2018. 12. 31.&gt;</p> <p>③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 식육포장 처리업자,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 및 이력관리대상축산물판매업자가 이력관리대상 축산물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에 이력번호를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lt;개정 2016. 12. 27., 2018. 12. 31.&gt;</p> <p>④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자(이하 “식품접객업자”라 한다) 및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이하 “집단급식소운영자”라 한다)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이하 “통신판매업자”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조리하거나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이력번호를 영업장이나 제품, 인터넷 등에 게시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게시 또는 표시를 하여야 하는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범위는 대</p>		<p>4.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p> <p>5.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p> <p>5의2.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p> <p>5의3. 식용란수집판매업자</p> <p>6.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자(이하 “식품접객업자”라 한다)</p> <p>7. 「식품위생법」 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이하 “집단급식소운영자”라 한다)</p> <p>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통신판매업자”라 한다)</p> <p>9. 이력번호를 요구하는 구매자</p> <p>② 법 제18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별표 8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 별표 12 및 별표 13에 따라 해당 영업자가 발급하여야 하는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를 말한다. &lt;개정 2017. 6. 28.&gt;</p>

<b>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b> <small>( 약칭: 축산물이력법 )</small>	<b>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b> <small>( 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령 )</small>	<b>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 <small>( 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규칙 )</small>
<p>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small>( 약칭: 축산물이력법 )</small></p> <p>통령령으로 정한다. &lt;개정 2018. 12. 31.&gt;</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력번호 게시 또는 표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p> <p><b>제3장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의 작성·관리</b></p> <p>제19조(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의 작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하였거나 농장식별번호를 부여한 가축사육시설에서 사육된 이력관리대상가축 및 국내산 이력축산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lt;개정 2018. 12. 31., 2020. 2. 11.&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농장식별번호</li> <li>2. 개체식별번호</li> <li>3. 이력번호</li> <li>4. 출생 또는 수입 연월일</li> <li>5. 암수 구분</li> <li>6. 수입된 이력관리대상가축은 원산지(국가명, 수출국, 수출한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및 수입한 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명칭,</li> </ol>	<p>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small>( 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령 )</small></p>	<p>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small>( 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규칙 )</small></p> <p>제21조(식품접객업자 등의 이력번호 게시 또는 표시 방법 등) 식품접객업자, 집단급식소운영자 및 통신판매업자의 법 제18조제4항 및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이력번호 게시 또는 표시 방법은 별표 15와 같다.</p> <p>제22조(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의 작성 등) ① 법 제19조제1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lt;개정 2017. 6. 28., 2019. 8. 26., 2019. 12. 31.&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소의 종류(한우, 젖소, 육우 및 수입소로 구분한다)</li> <li>2. 종돈의 종류</li> <li>3. 소, 종돈의 부모(父母) 개체식별번호</li> <li>4. 소, 종돈의 폐사 및 미사육(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사육기록을 삭제한 경우를 말한다) 내역</li> <li>5. 이력관리대상가축의 양도·양수·이동 내역</li> <li>6. 돼지의 종류(모돈, 후보돈, 웅돈, 자돈, 육성, 비육돈으로 구분한다)</li> </ol>

<b>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b> <small>(약칭: 축산물이력법)</small>	<b>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b> <small>(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령)</small>	<b>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 <small>(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규칙)</small>
<p>사업등록번호 및 대표자 주소·성명)</p> <p>7. 가축사육시설의 소재지</p> <p>8. 농장경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사업등록번호 및 대표자 주소·성명)</p> <p>9. 도축업자의 경매에 따른 거래내역</p> <p>10.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신고 및 변경내역</p> <p>11. 제17조에 따른 포장처리 및 거래·판매 내역</p> <p>12. 돼지, 닭, 오리 사육시설의 사육두수 (돼지의 경우 암수 구분)</p> <p>12의2. 닭, 오리 사육시설의 씨알 개수</p> <p>13. 삭제 &lt;2016. 12. 27.&gt;</p> <p>14. 그 밖에 축산정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p> <p>제20조(수입유통식별대장의 작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입신고를 받은 수입산이력축산물에 대하여 수입유통식별대장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입유통식별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lt;개정 2016. 12. 27., 2020. 2. 11., 2021. 8. 17.&gt;</p>		<p>6의2. 닭의 종류(육계, 산란계, 토종닭으로 구분한다)</p> <p>7.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도축검사 합격 여부</p> <p>8. 「축산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도체 등급판정 결과</p> <p>9. 식육포장처리업체의 명칭(상호) 및 소재지</p> <p>9의2. 계란이력번호표시 의무자의 명칭(상호) 및 주소</p> <p>9의3. 식용란수집판매업자의 명칭(상호) 및 주소</p> <p>10. 소의 도체(屠體: 도축하여 머리 및 장기 등을 제거한 몸체)증량</p> <p>11. 소·종돈의 구제역 백신 접종여부</p> <p>12. 소의 브루셀라병·결핵병 검사결과</p> <p>1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p> <p>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소의 종류 중 한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증축등록기관의 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기준에 따른다.</p> <p>제23조(수입유통식별대장의 작성) 법 제20조제10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p>

<b>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b> <small>(약칭: 축산물이력법)</small>	<b>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b> <small>(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령)</small>	<b>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 <small>(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규칙)</small>
1. 이력번호 2. 수입연월일 및 소비기한(수입 이전 도축일 및 식육포장처리일과 소비기한의 만료일) 3. 원산지(국가명), 수출국, 수출한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4. 거래품명 5. 상대국 도축장명(가공장명) 6.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사업등록번호 및 대표자 주소·성명) 7. 제16조에 따른 거래 및 변경 내역 8. 제17조에 따른 포장처리 및 거래·판매 내역 9. 삭제 <2016. 12. 27.> 10. 그 밖에 축산정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7조(식별대장의 기록사항 보존기간) 법 제2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 6. 28., 2019. 8. 26.> 1. 선하증권번호(bill of lading No) 2.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확인증 발급번호 3. 검사장소 및 입고일 4. 총 수량 및 무게(부위별 수량 및 무게를 포함한다) 5.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및 검사일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21조(식별대장의 관리 및 수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9조에 따른 가축및 축산물식별대장 및 제20조에 따른 수입유통식별대장(이하 “식별대장”이라 한다)을 자기디스크 등 전자적 처리방식(이에 준하		제24조(식별대장의 기록사항 변경신고 등) ①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및 법 제20조에 따른 수입유통식별대장(이하 “수입유통식별대장”이라 한다)의 기록사항에 대하여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b>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b> <small>(약칭: 축산물이력법)</small>	<b>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b> <small>(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령)</small>	<b>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 <small>(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규칙)</small>
<p>는 방법으로 필요한 사항을 확실하게 기록하여 둘 수 있는 방식을 포함한다)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신고 또는 변경 신고한 사항에 기초하여 식별대장의 기록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관리하여야 한다.</p> <p>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별대장을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p> <p>④ 농장경영자, 도축업자 등 관계자는 식별대장의 기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변경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lt;개정 2019. 12. 31.&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가축및축산물식별대상[돼지(종돈은 제외한다), 닭, 오리, 씨알(제3호와 중복되는 사항은 제외한다)의 경우: 품질평가원장</li> <li>2. 수입유통식별대상: 검역본부장</li> <li>3. 가축및축산물식별대상(종계, 종오리 및 그 종란의 수입신고의 경우): 종축등의수출입신고기관의 장</li> </ol> <p>②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가축및축산물식별대상 및 수입유통식별대상(이하 “식별대상”이라 한다)의 수정을 요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정요구서에 기록사항의 누락 또는 오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의 경우 위탁기관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가축및축산물식별대상[돼지(종돈 제외)의 경우]: 품질평가원장</li> <li>2. 가축및축산물식별대상(종돈의 경우): 종돈등록기관의 장</li> <li>3. 수입유통식별대상: 검역본부장</li> </ol>

<b>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b> <small>( 약칭: 축산물이력법 )</small>	<b>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b> <small>( 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령 )</small>	<b>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 <small>( 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규칙 )</small>
<p>제22조(식별대상 기록 누락사항의 조치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별대장의 기록이  사실과 다르거나 그 밖의 사유로 누락되거  나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관  련된 자에게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부터 시정 등의 요구를 받은 자는 지체 없  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③ 농장경영자, 도축업자 등 관계자는 식  별대장의 기록사항이 누락되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수  정을 요구할 수 있다.</p> <p>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시정  요구에 불응하거나 제3항에 따라 기록에 대  한 수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현장 화  인 등을 통하여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b>제4장 지도·감독</b></p> <p>제23조(시정명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가축의 소  유자, 농장경영자, 이력관리대상가축 및</p>		

<b>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b> <small>( 약칭: 축산물이력법 )</small>	<b>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b> <small>( 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령 )</small>	<b>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 <small>( 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규칙 )</small>
<p>           씨알을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자, 가축시장 개설자, 가축거래상인, 도축업자,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계란이력번호표시 의무자, 이력관리대상축산물판매업자, 식품접객업자, 집단급식소운영자 및 통신판매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lt;개정 2016. 12. 27., 2018. 12. 31., 2019. 8. 27.&gt;         </p> <p>           제24조(보고 및 출입·검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축의 소유자, 농장경영자, 이력관리대상기축 및 씨알을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자, 가축시장개설자, 가축거래상인,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제30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기관등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금 해당 가축사육시설, 사무소, 사업장,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와 해당 사업 또는 영업과 관련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p>		<p>           제25조(관계 공무원의 증표)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 또는 수거를 하는 관계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p>

<b>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b> <small>( 약칭: 축산물이력법 )</small>	<b>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b> <small>( 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령 )</small>	<b>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 <small>( 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규칙 )</small>
<p>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를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 &lt;개정 2018. 12. 31., 2019. 8. 27.&gt;</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축업자,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 이력관리대상축산물판매업자, 식품접객업자, 집단급식소운영자 및 통신판매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사무소, 사업장,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와 해당 사업 또는 영업과 관련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이력관리대상축산물 시료를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 &lt;개정 2016. 12. 27., 2018. 12. 31., 2019. 8. 27.&gt;</p> <p>③ 농장경영자, 가축의 소유자, 이력관리대상가축 및 씨알을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자, 가축시장개설자, 가축거래상인, 도축업자,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 이력관리대상축산물판매업자, 식품접객업자, 집단급식소운영자 및 통신판매업자, 그 밖의</p>		

<b>기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b> <small>(약칭: 축산물이력법)</small>	<b>기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b> <small>(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령)</small>	<b>기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 <small>(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규칙)</small>
<p>관계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출입,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lt;개정 2016. 12. 27., 2018. 12. 31.&gt;</p> <p>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 또는 수거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p> <p>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p>		
<p><b>제5장 보칙</b></p> <p>제25조(이력정보의 공개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력관리대상가축과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이력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력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휴대전화기를 이용하는 등 소비자가 이력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③ 이 법에 따라 수집된 정보로서 개인 또는 법인·단체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하며, 방역의</p>	<p>제8조(이력관리대상가축·국내산이력축산물 이력정보의 공개)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이력관리대상가축과 국내산이력축산물에 대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lt;개정 2017. 6. 27., 2019. 7. 2., 2019. 12. 17.&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농장식별번호</li> <li>2. 소·종돈의 개체식별번호</li> <li>3. 이력번호</li> <li>4. 소의 출생연월일 및 종돈의 등록연월일</li> </ol>	

<b>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b> <small>(약칭: 축산물이력법)</small>	<b>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b> <small>(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령)</small>	<b>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 <small>(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규칙)</small>
<p>효율성이나 축산산업 발전 등의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p> <p>④ 이력정보의 처리를 행하는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 또는 제30조에 따라 이력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 또는 법인·단체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⑤ 제1항에 따라 공개하는 정보의 항목, 공개기간, 공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또는 소·종돈의 수입연월일</p> <p>5. 가축의 종류</p> <p>6. 소·종돈의 암수 구분</p> <p>7. 이력관리대상가축을 기르는 사육시설 (이하 "가축사육시설"이라 한다)의 소재지</p> <p>8. 가축사육시설을 경영하는 자(사실상 관리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농장경영자"라 한다)의 이름 또는 명칭</p> <p>9. 도축장의 명칭 및 소재지</p> <p>10. 도축연월일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검사관의 도축 검사 결과</p> <p>10의2. 계란의 산란일자</p> <p>11. 「축산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등급판정 결과(데지고기는 개체별 및 등급별로 닭고기, 오리고기, 계란은 등급별로 구분하여 별 제17조제1항에 따른 포장처리 신고를 한 경우만 해당한다)</p> <p>12.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식육포장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이하 "식육포장처리업자"라 한다)의 명칭 및 소재지</p> <p>12의2.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신고를 한</p>	

<b>기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b> <small>( 약칭: 축산물이력법 )</small>	<b>기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b> <small>( 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령 )</small>	<b>기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 <small>( 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규칙 )</small>
	<p>자의 명칭 및 소재지</p> <p>12의3. 법 제11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명칭 및 소재지</p> <p>13. 소의 도체(屠體: 도축하여 머리 및 장기를 제거한 몸체) 증량</p> <p>14. 소·종돈의 구제역 백신 접종 여부</p> <p>15. 소의 브루셀라병·결핵병 검사 결과</p> <p>1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당 이력관리대상가축이 법 제19조에 따른 기축및축산물 식별대장에 등재된 날부터 도축·폐사 또는 수출된 후 3년까지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제1항에 따른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p> <p>제9조(수입산이력축산물 이력정보의 공개)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수입산이력축산물에 대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lt;개정 2017. 6. 27.&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이력번호</li> <li>2. 선하증권번호(船荷證券番號)</li> <li>3. 원산지(국가명)</li> <li>4. 품명(부위명)</li> <li>5. 수출업체명</li> </ol>	

<b>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b> <small>( 약칭: 축산물이력법 )</small>	<b>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b> <small>( 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령 )</small>	<b>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 <small>( 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규칙 )</small>
<p>제26조(장부의 비치 등) ① 도축업자, 가축시 장개설자, 가축거래상인, 식육포장처리업자 및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는 이력관리대 상가축의 도축처리 및 경매, 이력관리대상 축산물의 포장처리 또는 거래·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록(전자적 처리방식 을 포함한다)하고, 그 기록사항을 보관하 여야 한다. &lt;개정 2018. 12. 31.&gt;</p> <p>②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는 「수입식 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작성 하여야 하는 거래내역서(전자적 처리방식 으로 작성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수입산이력축산물의 이력번호를 기록하고</p>	<p>6. 수입업체명 및 수입연월일 7. 수출구 도축장명(가공장명) 및 수출구에 서의 도축연월일(가공연월일) 8.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사항</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당 수입산이력 축산물이 법 제20조에 따른 수입유통식별 대장(이하 "수입유통식별대장"이라 한다)에 등재된 날부터 3년까지 인터넷 등을 통하 여 제1항에 따른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p>	<p>제26조(장부 및 거래내역서의 기록방법 등) 법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 른 장부 및 거래내역서의 종류, 기록방법 및 보관기간 등은 별표 16과 같다. &lt;개정 2019. 12. 31.&gt;</p>

<b>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b> <small>( 약칭: 축산물이력법 )</small>	<b>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b> <small>( 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령 )</small>	<b>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 <small>( 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규칙 )</small>
<p>그 기록사항을 수입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lt;개정 2016. 12. 27.&gt;</p> <p>③ 이력관리대상축산물판매업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는 거래내역서 등에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이력번호를 기록하고, 매입에 관한 기록은 매입한 날부터 1년간, 매출에 관한 기록은 매출한 날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lt;개정 2016. 12. 27.&gt;</p> <p>④ 식품접객업자, 집단급식소운영자 및 통신판매업자는 제18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를 거래일부터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lt;개정 2016. 12. 27.&gt;</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장부 및 거래내역서의 종류, 기록방법 및 보관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lt;개정 2018. 12. 31.&gt;</p> <p>제27조(이력관리시스템의 구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제10조(이력관리시스템의 보급을 위한 교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이력관리시스템의 보급 대상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p>	<p>제27조(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 업무)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lt;개정 2019. 12. 31.&gt;</p> <p>1. 법 제4조에 따른 농장식별번호 발급신</p>

<b>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b> <small>(약칭: 축산물이력법)</small>	<b>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b> <small>(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령)</small>	<b>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 <small>(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규칙)</small>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이력정보의 신고, 기록 및 관리 등에 관한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이력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고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p> <p>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신고, 통지 등의 업무를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p>		<p>청접수 및 부여·통보, 변경신고</p> <p>2. 법 제5조에 따른 출생 등의 신고</p> <p>3. 법 제6조에 따른 개체식별번호의 부여 및 통보</p> <p>4. 법 제11조에 따른 돼지, 닭, 오리의 이력번호 발급신청 및 통보</p> <p>5.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도축 또는 경매신고</p> <p>5의2. 법 제11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계란의 이력번호 발급신청, 통보 및 거래신고</p> <p>6.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이력번호의 발급신청</p> <p>7.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이력번호의 부여 및 통보</p> <p>8.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입산이력축산물의 거래신고</p> <p>9.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포장처리 또는 거래신고</p> <p>10.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수입산이력축산물의 판매신고</p> <p>11. 법 제21조에 따른 식별대장의 기록·관리</p> <p>12. 법 제25조에 따른 이력정보의 공개</p>

<b>기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b> <small>( 약칭: 축산물이력법 )</small>	<b>기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b> <small>( 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령 )</small>	<b>기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 <small>( 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규칙 )</small>
		<p>13. 법 제26조에 따른 장부 및 거래내역서의 기록</p> <p>14. 삭제 &lt;2017. 6. 28.&gt;</p> <p>15. 그 밖에 원활한 이력관리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p> <p>제28조 삭제 &lt;2017. 6. 28.&gt;</p> <p>제29조(규제의 재검토) ①농림축산식품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lt;개정 2016. 1. 19., 2017. 1. 2.&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8조에 따른 귀표등의 부착기한: 2017년 1월 1일</li> <li>2. 제18조제4항에 따른 거래·포장처리 및 판매 신고의 기한: 2017년 1월 1일</li> <li>3. 제19조제2항에 따른 묶음번호의 표시 방법: 2017년 1월 1일</li> </ol> <p>② 삭제 &lt;2018. 12. 24.&gt;</p>

<b>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b> <small>(약칭: 축산물이력법)</small>	<b>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b> <small>(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령)</small>	<b>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 <small>(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규칙)</small>
<p>제28조(행정기관 간의 업무협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 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을 포함한다)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서로 협조하여야 한다.</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진 자정보처리시스템의 정보 이용 등의 협조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p> <p>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lt;개정 2019. 8. 27.&gt;</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조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9조 삭제 &lt;2016. 12. 27.&gt;</p> <p>제30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p>	<p>제11조(행정기관 간의 업무협조 절차)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협조가 필요한 사유</li> <li>2. 협조 기간</li> <li>3. 협조 사항</li> </ol> <p>② 제1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그 요청에 따를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제12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식육포장처리업자, 법 제17조에 따른</p>	

<b>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b> <small>( 약칭: 축산물이력법 )</small>	<b>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b> <small>( 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령 )</small>	<b>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 <small>( 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규칙 )</small>
<p>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공공기관, 생산자단체, 축산 관련 법인 또는 검정전문기관 등(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기관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p>	<p>이력관리대상축산물판매업자 및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식품접객업자·집단급식소 운영자·통신판매업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국내산이력축산물에 관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lt;개정 2017. 6. 27., 2019. 12. 17.&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23조에 따른 시정명령</li> <li>2.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보고, 출입·검사 및 수거. 다만, 제2항제10호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한 사항은 제외한다.</li> <li>3. 법 제34조제1항제16호부터 제2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li> </ol> <p>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한다. &lt;개정 2017. 6. 27., 2019. 12. 17.&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개체식별번호의 부여·통보(수입 신고된 소의 경우만 해당한다)</li> <li>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이력번호의 부여·통보</li> <li>3.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입</li> </ol>	

<b>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b> <small>( 약칭: 축산물이력법 )</small>	<b>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b> <small>( 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령 )</small>	<b>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 <small>( 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규칙 )</small>
	<p>산이력축산물의 양도·수출 신고 및 변경 신고의 접수</p> <p>4.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입 산이력축산물의 거래·포장처리·판매 신고의 접수</p> <p>5. 법 제19조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의 기록(수입 신고된 소의 경우만 해당한다)</p> <p>6. 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수입유통 식별대장의 기록, 관리, 기록 수정·삭제 등의 조치, 보존 및 변경신고의 접수</p> <p>7. 법 제22조에 따른 수입유통식별대장의 기록에 관한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 및 수입유통식별대장 수정 요구의 접수, 현장 확인 등을 통한 수정</p> <p>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법 제23조에 따른 시정명령</p> <p>가. 소 수입자·수출자</p> <p>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라 한다)</p> <p>다. 식육포장처리업자,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식육판매</p>	

<b>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b> <small>( 약칭: 축산물이력법 )</small>	<b>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b> <small>( 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령 )</small>	<b>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 <small>( 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규칙 )</small>
	<p>업·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신고를 한 자(수입산이력축산물을 취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p> <p>라.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식품접객업자·집단급식소운영자 및 통신판매업자(수입산이력축산물을 취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p> <p>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법 제24조에 따른 보고, 출입·검사 및 수거</p> <p>가. 소 수입자·수출자</p> <p>나.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p> <p>다. 식육포장처리업자,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식육판매업·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신고를 한 자(수입산이력축산물을 취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p> <p>라.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식품접객업자·집단급식소운영자 및 통신판매업자(수입산이력축산물을 취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p> <p>10. 질병 등에 대한 역학조사와 조치 등</p>	

<b>기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b> <small>( 약칭: 축산물이력법 )</small>	<b>기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b> <small>( 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령 )</small>	<b>기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 <small>( 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규칙 )</small>
	<p>을 위한 법 제24조에 따른 보고 및 출입·검사</p> <p>11.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이력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수입산이력축산물의 경우만 해당한다)</p> <p>12. 삭제 &lt;2017. 6. 27.&gt;</p> <p>13. 법 제34조제1항제10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p> <p>1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법 제34조제1항제16호부터 제2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p> <p>가. 소 수입자·수출자</p> <p>나.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p> <p>다. 식육포장처리업자,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식육판매업·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신고를 한 자(수입산이력축산물을 취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p> <p>라.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식품접객업자·집단급식소운영자 및 통신판매업자(수입산이력축산물을 취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p>	

<b>기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b> <small>( 약칭: 축산물이력법 )</small>	<b>기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b> <small>( 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령 )</small>	<b>기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 <small>( 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규칙 )</small>
	<p>15. 제10조에 따른 이력관리시스템 보급 대상자(수입산이력축산물을 취급하는 자에 대한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한 교육에 관한 업무</p> <p>16. 별표 1 제2호가목2), 같은 호 나목4) 및 같은 호 다목2)에 따른 포장처리 및 거래 신고 의무자 신청의 접수</p> <p>③ 삭제 &lt;2019. 12. 17.&gt;</p> <p>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축산법」 제36조에 따른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위탁한다. &lt;개정 2017. 6. 27., 2019. 12. 17.&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4조에 따른 농장경영자의 농장식별번호 발급 신청의 접수, 농장식별번호의 부여·통보 및 변경신고의 접수. 다만, 제5항제1호에 따라 위탁한 사항은 제외한다.</li> <li>2. 법 제5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폐지(종돈은 제외한다), 닭, 오리, 씨알의 양도·양수·이동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li> <li>3. 법 제5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거래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li> </ol>	

<b>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b> <small>(약칭: 축산물이력법)</small>	<b>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b> <small>(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령)</small>	<b>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 <small>(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규칙)</small>
	<p>4.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돼지(종돈은 제외한다)의 사육현황 등 신고의 접수</p> <p>4의2.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닭, 오리 등의 사육현황 등 신고의 접수</p> <p>5. 법 제11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돼지, 닭, 오리 도축 전의 이력번호 발급 신청의 접수 및 이력번호의 부여·통보</p> <p>5의2. 법 제11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계란 이력번호 발급 신청의 접수 및 이력번호의 부여·통보</p> <p>6.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이력관리대상 축산물 중 국내산이력축산물의 포장처리 및 거래 신고의 접수</p> <p>7. 법 제19조에 따른 돼지(종돈은 제외한다), 닭, 오리에 대한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의 기록</p> <p>8. 법 제21조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의 기록·관리, 기록 수정·삭제 등의 조치 및 보존</p> <p>9. 법 제22조제3항·제4항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수정 요구의 접수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한 수정. 다만, 제6항제5호에 따라 축산 관련 법인에 위탁한</p>	

기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축산물이력법)	기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령)	기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규칙)
	<p>사항은 제외한다.</p> <p>10. 법 제24조에 따른 보고, 출입·검사 및 수거(이력관리대상가축 및 국내산이력축산물의 경우만 해당한다)</p> <p>11.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이력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이력관리대상가축 및 국내산이력축산물의 경우만 해당한다)</p> <p>12. 삭제 &lt;2017. 6. 27.&gt;</p> <p>13. 별표 1 제1호에 따른 포장처리 및 거래 신고 의무자 신청의 접수</p> <p>14. 제10조에 따른 이력관리시스템의 보급 대상자에 대한 교육(이력관리대상가축 및 국내산이력축산물의 경우만 해당한다)</p> <p>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호, 제5호 또는 「축산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축산 관련 범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lt;개정 2019. 12. 17.&gt;</p> <p>1. 법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농장 식별번호 발급 신청 및 변경신고의 접수</p> <p>2.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생·</p>	

<b>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b> <small>(약칭: 축산물이력법)</small>	<b>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b> <small>(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령)</small>	<b>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 <small>(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규칙)</small>
	<p>폐사·양도·양수·이동·수입·수출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p> <p>3.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개체식별번호의 부여·통보(출생 신고된 소의 경우만 해당한다)</p> <p>4. 법 제19조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의 기록(출생 신고된 소의 경우만 해당한다)</p> <p>5. 법 제22조제3항·제4항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수정 요구의 접수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한 수정</p> <p>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종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축산 관련 법인 중 「축산법」 제6조에 따라 종돈의 등록기관으로 지정된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lt;개정 2019. 12. 17.&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5조제1항·제2항에 따른 등록·폐사·양도·양수·이동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li> <li>2. 법 제6조제1항에 개체식별번호의 부여·통보</li> <li>3.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사육현황 등 신고의 접수</li> <li>4. 법 제19조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li> </ol>	

<b>기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b> <small>( 약칭: 축산물이력법 )</small>	<b>기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b> <small>( 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령 )</small>	<b>기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 <small>( 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규칙 )</small>
	<p>장의 기록</p> <p>5. 법 제22조제3항·제4항에 따른 기축 및 축산물식별대장의 수정 요구의 접수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한 수정</p> <p>6.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이력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p> <p>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법 제5조제1항·제2항에 따른 종계, 종오리 및 그 종란에 관한 수출입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를 「축산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lt;개정 2019. 12. 17.&gt;</p> <p>⑧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p> <p>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lt;개정 2019. 12. 17.&gt;  [제목개정 2019. 12. 17.]</p>	

<b>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b> <small>(약칭: 축산물이력법)</small>	<b>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b> <small>(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령)</small>	<b>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 <small>(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규칙)</small>
<p>제31조(비용의 지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력관리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제13조(비용의 지원 범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31조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lt;개정 2019. 12. 17.&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7조에 따른 귀표등의 부착에 드는 비용</li> <li>2. 법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른 농장식별번호의 표시·관리에 드는 비용</li> <li>3. 법 제11조·제11조의2 및 제18조에 따른 이력번호의 표시·관리에 드는 비용</li> <li>4. 법 제13조에 따른 수입유통식별표의 부착에 드는 비용</li> <li>5. 법 제17조에 따른 포장처리 및 거래신고 등에 관한 시스템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축 및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li> <li>6. 법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및 수입유통식별대장의 작성·관리 등에 드는 비용</li> <li>7. 법 제26조에 따른 장부 및 거래내역서의 기록·보관 등에 필요한 장비 구입 등에 드는 비용</li> <li>8. 법 제27조에 따른 이력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드는 비용</li> </ol>	

<b>기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b> <small>( 약칭: 축산물이력법 )</small>	<b>기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b> <small>( 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령 )</small>	<b>기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 <small>( 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규칙 )</small>
	<p>제1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제1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p> <p>〈개정 2017. 6. 27., 2019. 12. 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4조에 따른 농장식별번호 발급 신청의 접수, 부여·통보, 변경신고 접수에 관한 사무</li> <li>2. 법 제5조에 따른 출생·폐사·양도·양수·이동·수입·수출·거래의 신고 및 변경신고 접수에 관한 사무</li> <li>3. 법 제6조에 따른 개체식별번호의 부여 및 통보에 관한 사무</li> <li>4. 법 제11조에 따른 돼지, 닭, 오리 및 법 제11조의2에 따른 계란의 이력번호 발급신청의 접수 및 통보에 관한 사무</li> <li>5.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이력번호의 부여 및 통보에 관한 사무</li> </ol>	

<b>기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b> <small>(약칭: 축산물이력법)</small>	<b>기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b> <small>(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령)</small>	<b>기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 <small>(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규칙)</small>
<p><b>제6장 벌칙</b></p> <p>제32조(벌칙) ①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개인 또는 법인·단체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p>	<p>6. 법 제19조 및 제21조에 따른 기축및축산물식별대장의 기록·관리 및 변경신고 접수 등에 관한 사무</p> <p>7. 법 제22조에 따른 식별대장 기록 누락사항 및 오류 수정 등의 조치에 관한 사무</p> <p>8. 법 제24조에 따른 이력정보 조사를 위한 보고 및 출입·검사 등에 관한 사무</p> <p>9. 법 제25조에 따른 이력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무</p> <p>10. 법 제27조에 따른 이력관리시스템의 구축에 관한 사무</p> <p>11. 삭제 &lt;2017. 6. 27.&gt;</p> <p>12. 법 제31조에 따른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무</p> <p>13. 법 제35조에 따른 위반사실 공표에 관한 사무</p> <p>제15조 삭제 &lt;2016. 12. 30.&gt;</p>	

<b>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b> <small>( 약장: 축산물이력법 )</small>	<b>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b> <small>( 약장: 축산물이력법 시행령 )</small>	<b>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 <small>( 약장: 축산물이력법 시행규칙 )</small>
<p>처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t;개정 2014. 10. 15.&gt;</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t;개정 2018. 12. 31., 2020. 2. 11.&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4조제1항의 신청을 거짓으로 한 자</li> <li>2.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li> <li>3. 제8조제1항에 따른 돼지의 농장식별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한 자</li> <li>3의2.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닭, 오리, 씨알의 농장식별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한 자</li> <li>4.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농장식별번호 또는 개체식별번호 표시를 위조·변조하거나 고의로 훼손하여 농장식별번호 또는 개체식별번호의 식별을 곤란하게 한 자</li> <li>4의2. 제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농장식별번호 표시를 위조·변조하거나 표시를 하지 않아 농장식별번호의 식별을 곤란하게 한 자</li> <li>5. 제11조제1항에 따른 도축 또는 경매 신고나 돼지, 닭, 오리의 이력번호 발급</li> </ol>		

<b>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b> <small>( 약장: 축산물이력법 )</small>	<b>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b> <small>( 약장: 축산물이력법 시행령 )</small>	<b>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 <small>( 약장: 축산물이력법 시행규칙 )</small>
<p>신청을 거짓으로 한 자</p> <p>6.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이력번호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p> <p>6의2.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계란의 이력번호 발급 신청을 거짓으로 한 자</p> <p>6의3. 제1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한 자</p> <p>6의4. 제11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농장식별번호를 난좌 또는 운송상자에 거짓으로 표시한 자</p> <p>7. 제12조제1항에 따른 이력번호 발급 신청을 거짓으로 한 자</p> <p>8.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력번호가 표시된 수입유통식별표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수입유통식별표에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한 자</p> <p>9. 제14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 시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기하여 신고한 자</p> <p>10.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유통식별표 위조·변조하거나 떼어내거나 고의로 훼손하여 이력번호의 식별을 곤란하게 한 자</p> <p>11.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p>		

<b>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b> <small>( 약장: 축산물이력법 )</small>	<b>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b> <small>( 약장: 축산물이력법 시행령 )</small>	<b>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 <small>( 약장: 축산물이력법 시행규칙 )</small>
<p>12.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장처리 및 거래·판매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p> <p>제3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lt;개정 2019. 12. 17.&gt;</p>	
<p>제3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lt;개정 2016. 12. 27., 2018. 12. 31., 2020. 2. 11.&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농장식별번호 발금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li> <li>2.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li> <li>3.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li> </ol>		

<b>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b> <small>( 약칭: 축산물이력법 )</small>	<b>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b> <small>( 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령 )</small>	<b>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 <small>( 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규칙 )</small>
<p>4.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귀표등을 붙이지 아니한 자</p> <p>5.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돼지에 농장식별번호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p> <p>6.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매월 돼지의 사육현황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p> <p>6의2. 제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가금이 동신고서등에 농장식별번호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p> <p>6의3. 제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매월 닭, 오리의 사육현황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p> <p>7.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체식별 또는 농장식별이 곤란한 소, 돼지를 양도·양수하거나 수출하거나 가축사육시설에서 이동하게 한 자</p> <p>7의2. 제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농장식별이 곤란한 닭, 오리, 씨알을 양도·양수하거나 수출하거나 가축사육시설에서 이동하게 한 자</p> <p>8.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체식별 또는 농장식별이 곤란하거나 가축및축산물</p>		

<b>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b> <small>( 약장: 축산물이력법 )</small>	<b>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b> <small>( 약장: 축산물이력법 시행령 )</small>	<b>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 <small>( 약장: 축산물이력법 시행규칙 )</small>
<p> 식별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가축 또는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가축사육시설에서 출하한 돼지, 닭, 오리물 도축한 자  9.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축 또는 경매 신고나 돼지, 닭, 오리의 이력번호 발급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9의2. 제1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계란의 이력번호 발급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9의3. 제1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이력번호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  9의4. 제11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농장식별번호를 난좌 또는 운송상자에 표시하지 아니한 자  10.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력번호 발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11.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신고 시 이력번호를 표기하지 아니한 자  12.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입유통식별표가 훼손되어 유통경로의 확인이 곤란하거나 수입유통식별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수입 쇠고기나 수입 돼지고기를 양도·양수하거나 수출한 자  13.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이력번호 </p>		

<b>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b> <small>(약칭: 축산물이력법)</small>	<b>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b> <small>(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령)</small>	<b>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 <small>(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규칙)</small>
<p>호를 표시한 수입유통식별표를 붙이지 아니한 자</p> <p>14.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산이력 축산물의 양도 또는 수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p> <p>15.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p> <p>16.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포장처리 및 거래·판매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p> <p>17. 제18조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이력번호의 게시 또는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p> <p>18.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이력번호를 기재한 거래명세서 등을 발급하지 아니한 자</p> <p>19. 제2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p> <p>20.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하거나 검사 또는 검사물건수거, 시료수거를 거부 및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p> <p>21. 제26조를 위반하여 장부 또는 거래내역서 등에 기록하여야 하는 사항을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하거나</p>		

<b>기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b> <small>(약칭: 축산물이력법)</small>	<b>기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b> <small>(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령)</small>	<b>기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 <small>(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규칙)</small>
<p>정하여진 기한까지 장부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p> <p>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p> <p>제35조(위반사실 공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32조제2항제5호·제6호·제6호의2·제6호의3·제6호의4 및 제7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금 또는 제34조제1항제13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이 연 2회 이상 확정된 영업자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속 기관, 시·도, 시·군·구, 한국소비자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인터넷 정보제공 사업자의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lt;개정 2018. 12. 31.&gt;</p> <p>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기준, 방법, 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7조(위반사실의 공표)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속 기관"이란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말한다.</p> <p>②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인터넷 정보제공 사업자"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공표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천만명 이상인 포털서비스(다른 인터넷주소·정보 등의 검색과 전자우편·카뮤니티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공사업자를 말한다.</p> <p>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35조제</p>	

<b>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b> <small>( 약칭: 축산물이력법 )</small>	<b>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b> <small>( 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령 )</small>	<b>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 <small>( 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규칙 )</small>
<p><b>부 칙</b> &lt;제12119호, 2013. 12. 27.&gt;</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2항제12호, 제34조제1항제16호부터 제18호까지 및 같은 조 제21호의 개정규정 중 돼지고</p>	<p>1항에 따른 벌금 및 과태료 처분을 합하여 연 2회 이상 확정된 날부터 12개월간 농림축산식품부, 시·도,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한국소비자원, 제1항에 따른 기관의 홈페이지와 제2항에 따른 사업자의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li> <li>2. 영업의 종류</li> <li>3.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 성명</li> <li>4. 위반 이력관리대상축산물 등의 명칭</li> <li>5. 위반 내용</li> <li>6. 처분권자, 처분일 및 처분 내용</li> <li>7.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li> </ol> <p><b>부 칙</b> &lt;제25891호, 2014. 12. 26.&gt;</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6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제15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p>	<p><b>부 칙</b> &lt;제120호, 2014. 12. 30.&gt;</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축산물법 시행규칙 일</p>

<b>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b> <small>(약칭: 축산물이력법)</small>	<b>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b> <small>(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령)</small>	<b>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 <small>(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규칙)</small>
<p>기에 관한 사항과 식품접객업자, 집단급식소운영자, 통신판매업자의 이력번호 게시, 표시, 기록, 보관에 관한 사항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9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국내산 돼지고기의 이력관리 등에 관한 적용례) 국내산 돼지고기의 이력관리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농장식별번호를 표시한 국내산 돼지고기부터 적용한다.</p>	<p>시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4조제1호의 개정규정(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자에 관한 사항과 쇠고기를 취급하는 자의 거래신고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li> <li>제4조제2호라목·마목의 개정규정</li> <li>제5조의 개정규정</li> <li>별표 제2호너머로부터 리목까지 및 같은 호 서목의 개정규정(돼지고기에 관한 사항과 식품접객업자, 집단급식소운영자, 통신판매업자의 이력번호 게시, 표시, 기록, 보관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li> </ol>	<p>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별지 제36호서식 앞쪽 중 “㉓고유번호”를 “㉓농장식별번호”로, “〈16〉개체식별번호”를 “〈16〉이력번호”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제4호 중 “축산관련 법령 등에 따라 부여한 고유번호”를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농장식별번호”로 하며, 같은 란 제6호 중 “〈16〉〈18〉”을 “〈18〉”로 한다.</p> <p>별지 제38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43호 서식 중 “개체식별번호”를 각각 “이력번호”로 한다.</p> <p>별지 제44호서식 중 “도체번호”를 각각 “이력번호 및 도체번호”로 한다.</p>
<p>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소 및 축산물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한 신고 등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p> <p>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소 및 축산물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 그 밖에 행정기관이 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p> <p>③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소 및 축산물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소의 소</p>	<p>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 및 축산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소 및 축산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p> <p><b>부 칙</b> &lt;제26936호, 2016. 1. 22.&gt;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b>부 칙</b> &lt;제136호, 2015. 2. 27.&gt; (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p>

<b>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b> <small>(약칭: 축산물이력법)</small>	<b>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b> <small>(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령)</small>	<b>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 <small>(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규칙)</small>
<p>유자등이 한 귀표의 부착 행위는 그에 해당되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p> <p>제4조(농장식별번호의 부여에 관한 경과조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 시행 당시 제4조 제1항에 해당하는 농장을 경영하고 있는 농장경영자에게 농장식별번호를 정하여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p> <p>제5조(판매표지판 등의 이력번호 표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소 및 축산물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개체식별번호 및 수입유통식별번호를 표시한 것은 이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 따라 이력번호를 표시한 것으로 본다.</p> <p>제6조(별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생략</p> <p>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라목 중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축산물수입판매업의 신고를"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의 영업등록을"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p> <p>제4조 생략</p> <p>부 칙 &lt;제27751호, 2016. 12. 30.&gt;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p>	<p>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1호의 귀표등의 관리 등란 다목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p> <p>부 칙 &lt;제189호, 2016. 1. 6.&gt;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 칙 &lt;제192호, 2016. 1. 19.&gt;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 칙 &lt;제237호, 2017. 1. 2.&gt;          (일몰도래 규제 정비를 위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p>

<b>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b> <small>(약칭: 축산물이력법)</small>	<b>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b> <small>(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령)</small>	<b>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 <small>(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규칙)</small>
<p>제48조제3항제4호 중 "소 및 축산물관리 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을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 항"으로 한다.</p> <p>②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8조 중 "소 및 축산물추적에 관한 법 률" 제11조"를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 에 관한 법률" 제18조"로 한다.</p>	<p>시행한다. &lt;단서 생략&gt;</p> <p>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p> <p><b>부 칙</b> &lt;제28153호, 2017. 6. 27.&gt;</p> <p>이 영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p> <p>제2조 생략</p> <p><b>부 칙</b> &lt;제273호, 2017. 6. 28.&gt;</p> <p>이 규칙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p>
<p>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 및 축산물관리 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 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소 및 축산물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 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p>	<p><b>부 칙</b> &lt;제29950호, 2019. 7. 2.&gt;</p> <p>(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lt;단서 생략&gt;</p>	<p><b>부 칙</b> &lt;제341호, 2018. 11. 21.&gt;</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2월 28일 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부터 제5 항까지, 별표 2,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 행한다.</p>
<p>제9조(법률 제11431호 소 및 축산물관리에 관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의 개정) 법률 제 11431호 소 및 축산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 다.</p> <p>제23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p>	<p><b>부 칙</b> &lt;제30247호, 2019. 12. 17.&gt;</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2호어목부터 처 목까지 및 폐목의 개정규정 중 닭, 오리, 계란에 관한 사항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농장식별번호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5 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별표 2, 별지 제1 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농장식별번호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b>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b> <small>(약칭: 축산물이력법)</small>	<b>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b> <small>(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령)</small>	<b>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 <small>(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규칙)</small>
<p>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한다.</p> <p>제32조제1항 중 "제23조제5항"을 "제23조제4항"으로 한다.</p> <p><b>부 칙</b> &lt;제12813호, 2014. 10. 15.&gt;</p>	<p>제2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받은 과태료의 부과처분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p>	<p><b>부 칙</b> &lt;제346호, 2018. 12. 24.&gt;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b>부 칙</b> &lt;제391호, 2019. 8. 26.&gt;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b>부 칙</b> &lt;제404호, 2019. 12. 31.&gt;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b>부 칙</b> &lt;제517호, 2022. 1. 25.&gt;</p>
<p>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b>부 칙</b> &lt;제14478호, 2016. 12. 27.&gt;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8호나목,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4조, 제15조제2항 및 제34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수입 돼지고기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과 부칙 제3조는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수입 돼지고기의 이력관리에 관한 적용례) 수입 돼지고기의 이력관리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식육포장처리업자 및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가 제1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농장식별번호 발급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장식별번호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b>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b> <small>(약칭: 축산물이력법)</small>	<b>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b> <small>(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령)</small>	<b>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 <small>(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규칙)</small>
<p>이력번호 발급을 신청하는 날부터 적용한다.</p> <p>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3조제1항 본문 중 "수입 쇠고기"는 "수입 쇠고기 및 수입 돼지고기"으로 한다.</p> <p><b>부 칙</b> &lt;제16114호, 2018. 12. 31.&gt;</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2항제12호, 제34조제1항제16호부터 제18호까지 및 같은 조 제21호의 개정규정 중 닭, 오리, 계란에 관한 사항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국내산 닭고기·오리고기·계란에 관한 적용례) 국내산 닭고기·오리고기·계란의 이력 관리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제11조 및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력번호를 부여한 국내산 닭고기·오리고기·계란부터 적용한다.</p>		<p>제3조(계란의 이력번호 표시방법 및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14조의 3제3항에 따라 계란의 이력번호가 부여된 경우 그 표시방법 및 관리에 관하여는 별표 9의4 및 별표 13의 개정규정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b>부 칙</b> &lt;제584호, 2023. 4. 27.&gt; (동물보호법 시행규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lt;단서 생략&gt;</p> <p>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p> <p>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별지 제1호의2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제6호 중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6"을 "「동물보호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2호를 말한다) 별표 6"으로 한다.</p> <p>② 및 ③ 생략</p>

<b>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b> <small>( 약칭: 축산물이력법 )</small>	<b>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b> <small>( 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령 )</small>	<b>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 <small>( 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규칙 )</small>
<p>제3조(농장식별번호 부여에 관한 경과조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 시행 당시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농장을 경영하고 있는 농장경영자에게 농장식별번호를 정하여 이 법 시행일 전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p> <p><b>부 칙</b> &lt;제16536호, 2019. 8. 27.&gt;</p> <p>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b>부 칙</b> &lt;제16960호, 2020. 2. 11.&gt;</p> <p>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b>부 칙</b> &lt;제17268호, 2020. 5. 19.&gt;</p> <p>이 법은 2020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p> <p><b>부 칙</b> &lt;제17324호, 2020. 5. 26.&gt; (축산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p>		<p>제17조 생략</p>

<b>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b> <small>(약칭: 축산물이력법)</small>	<b>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b> <small>(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령)</small>	<b>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 <small>(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규칙)</small>
<p>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5조제1항 중 “가축시장개설자(「축산법」 제34조에 따른 가축시장을 개설·관리하는 축산업협동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가축시장개설자(「축산법」 제34조에 따른 가축시장을 개설·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p> <p><b>부 칙</b> &lt;제18445호, 2021. 8. 17.&gt;  <small>(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small></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lt;단서 생략&gt;</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0조제2호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p>		

<b>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b> <small>( 약칭: 축산물이력법 )</small>	<b>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b> <small>( 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령 )</small>	<b>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 <small>( 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규칙 )</small>
<p>기한”으로 한다.            ②부터 ⑦까지 생략</p> <p><b>부 칙</b> &lt;제18853호, 2022. 4. 26.&gt;  <small>(동물보호법)</small></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lt;단서 생략&gt;</p> <p>제2조 부터 제25조까지 생략</p> <p>제2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2항제2호 중 “〔동물보호법〕 제29조”를 “〔동물보호법〕 제59조”로 한다.            ②부터 ⑥까지 생략</p> <p>제27조 생략</p>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 시행령 별표





**포장처리 및 거래 신고 의무지(제4조제2항 관련)**

**1. 국내산이력축산물을 취급하는 자**

취급하는 축산물의 종류	신고 의무자
<p>가. 식육포장처리업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도축업의 작업장 시설과 일체를 이루는 시설이나 연결(連接)한 시설에서 영업하는 자</li> <li>2) 영업장의 전년도 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평균(추업 등의 이유로 전년도 연간 기준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 또는 월별 기준으로 산정하고, 신규허가의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해당 작업장의 시설규모나 사업계획 물량 등을 고려한 연간 예상 평균으로 산정한다) 종업원이 5명 이상인 자</li> <li>3) 1) 또는 2)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신고 의무자가 되기를 원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한 자</li> </ol>	<p>신고 의무자</p>
<p>나.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식육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식육판매업자"라 한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나목6)에 따른 기타 식품판매업으로 신고한 영업장에서 영업을 하는 자로서</li> </ol>	<p>신고 의무자</p>

<p>종업원이 5명 이상이거나 영업장 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자</p> <p>2) 1)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신고 의무자가 되기를 원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한 자</p>	<p>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식육즉석판매 가공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라 한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나목6)에 따른 기타 식품판매업으로 신고한 영업장에서 영업을 하는 자로서 종업원이 5명 이상이거나 영업장 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자</li> <li>2) 1)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신고 의무자가 되기를 원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한 자</li> </ol>
<p>신고기·폐지고기</p>	<p>「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라 한다) 또는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라 한다)로서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신고 의무자가 되기를 원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한 자</p>

계란	<p>가. 법 제11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p> <p>나.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 또는 안전관리인증소로 인증 받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통합인증체로 인증 받은 자</li> <li>2) 1)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신고 의무자가 되기를 원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한 자</li> </ol>
----	---

**2. 수입산이력축산물을 취급하는 자**

구분  쇠고기·돼지고기	<p>신고 의무자</p> <p>가. 식육포장처리업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영업장의 전년도 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을 말한다) 평균(휴업 등의 이유로 전년도 연간 기준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 또는 월별 기준으로 산정하고, 신규 허가의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해당 작업장의 시설규모나 사업계획 물량 등을 고려한 연간 예상 평균으로 산정한다) 종업원이 5명 이상인 자</li> <li>2) 1)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신고 의무자가 되기를 원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한 자</li> </ol>
--------------------	---

나. 식육판매업자,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 또는 식육즉석판매 가공업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영업장의 전년도 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을 말한다) 평균(휴업 등의 이유로 전년도 연간 기준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 또는 월별 기준으로 산정하고, 신규 허가의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해당 작업장의 시설규모나 사업계획 물량 등을 고려한 연간 예상 평균으로 산정한다) 종업원이 5명 이상인 자</li> <li>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나목6)에 따른 기타 식품 판매업으로 신고한 영업장에서 영업을 하는 자</li> <li>3)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li> <li>4) 1)부터 3)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신고 의무자가 되기를 원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한 자</li> </ol>
	<p>다.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가목1)에 해당하는 식육포장처리업자에게 수입산이력축산물의 포장처리를 의뢰한 자</li> <li>2) 1)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신고 의무자가 되기를 원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한 자</li> </ol>

[별표 2] <개정 2019. 12. 17.> [시행일:2020. 7. 1.] 제2호어목, 저목, 처목, 피목의 개정규정 중 닭, 오리, 계란에 관한 사항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사육장 또는 영장장 단위로 적용하며,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 횟수별 과태료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가. 법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농장식별번호 발급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 제1항 제1호	100	200	400	500
나. 법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34조 제1항 제2호	100	200	400	500
다. 법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 제1항 제3호	50	100	200	400
라.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귀표등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 제1항 제4호	50	100	200	400
마.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돼지에 농장식별번호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 제1항 제5호	50	100	200	400
바. 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매월 돼지의 사육현황 등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34조 제1항 제6호	50	100	200	400
사. 법 제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기준 이동신고서등에 농장식별번호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 제1항 제6호의2	50	100	200	400
아. 법 제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매월 닭, 오리의 사육현황 등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34조 제1항 제6호의3	50	100	200	400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 횟수별 과태료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자.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체식별 또는 농장식별이 곤란한 소, 폐지를 양도·양수하거나 수출하거나 가축사육시설에서 이동하게 한 경우	법 제34조 제1항 제7호	50	100	200	400
차. 법 제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농장식별이 곤란한 닭, 오리, 씨알을 양도·양수하거나 수출하거나 가축사육시설에서 이동하게 한 경우	법 제34조 제1항 제7호의2	50	100	200	400
카. 법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체식별 또는 농장식별이 곤란하거나 가축육산물식별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가축 또는 가축육산물식별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가축사육시설에서 출하한 돼지, 닭, 오리를 도축한 경우	법 제34조 제1항 제8호	100	200	400	500
타. 법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축 또는 경매 신고나 돼지, 닭, 오리의 이력번호 발급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 제1항 제9호	50	100	200	400
파. 법 제1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거래의 이력번호 발급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 제1항 제9호의2	50	100	200	400
하. 법 제1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이력번호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 제1항 제9호의3	50	100	200	400
기. 법 제11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농장식별번호를 난좌 또는 운송상자에 표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 제1항 제9호의4	50	100	200	400
너.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력번호 후 발급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 제1항 제10호	50	100	200	400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 횟수별 과태료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더.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신고 시 이력번호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 제1항 제11호	50	100	200	400
러. 법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입유통식별표가 훼손되어 유통경로의 확인이 곤란하거나 수입유통식별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수입산이력축산물을 양도·양수하거나 수출한 경우	법 제34조 제1항 제12호	100	200	400	500
머.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이력번호를 표시한 수입유통식별표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 제1항 제13호	50	100	200	400
버.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산이력축산물의 양도 또는 수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 제1항 제14호	50	100	200	400
서. 법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34조 제1항 제15호	50	100	200	400
어.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포장처리 및 거래·판매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 제1항 제16호	70	140	280	500
저. 법 제18조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이력번호의 게시 또는 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34조 제1항 제17호	70	140	280	500
치. 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이력번호를 기재한 거래명세서 등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 제1항 제18호	70	140	280	500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 횟수별 과태료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키. 법 제2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34조 제1항 제19호	100	200	400	500
티. 법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하거나 검사 또는 검사물감수거, 시료수거를 거부 및 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34조 제1항 제20호	100	200	400	500
피. 법 제26조를 위반하여 장부 또는 거래내역서 등에 기록해야 하는 사항을 기록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정해진 기한까지 장부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 제1항 제21호	50	100	200	400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 시행규칙 별표·별지서식





[별표 1] <개정 2018. 11. 21.>

**수입산이력축산물의 부산물 범위(제3조 관련)**

순번	품명	영문명	비고
1	쇠고기 기타 (고기가 붙어 있는 뼈)	Other Beef	
2	쇠고기 기타	Other Beef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
3	소 식도	Beef Esophagus	
4	소 간	Beef Liver	
5	소 갑상샘	Beef Thyroid Gland	
6	소 건	Beef Tendon	
7	소 골수	Beef Bone Marrow	
8	소 꼬리	Beef Tail	
9	소 뇌	Beef Brain	
10	소 뇌하수체	Beef Pituitary Body	
11	소 대망막	Beef Omentum	
12	소 머리고기	Beef Head Meat	
13	소 목	Beef Neck	
14	소 방광	Beef Bladder	
15	소 비장	Beef Spleen	
16	소 생식기	Beef Reproductive Organ	
17	소 식용 가죽	Beef Edible Skin	
18	소 신장	Beef Kidney	
19	소 심장	Beef Heart	
20	소 위	Beef Tripe	
21	소 유방	Beef Breast	
22	소 입술	Beef Lips	
23	소 자궁	Beef Uterus	

순번	품명	영문명	비고
24	염장 소장/ 염수장 소장(케이싱)	Salted/Brined Beef Gut(Casing)	
25	소 장간막	Beef Mesentery	
26	소 족	Beef Feet	
27	소 지방	Beef Fat	
28	소 창자	Beef Gut	
29	소 척수	Beef Spinal Cord	
30	소 췌장	Beef Pancreas	
31	소 편도	Beef Tonsil	
32	소 허파	Beef Lung	
33	소 혀	Beef Tongue	
34	소 횡격막	Beef Diaphragm	
35	소 가슴샘	Beef Thymus	
36	돼지고기 기타 (고기가 붙어 있는 뼈)	Other Pork	제36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
37	돼지고기 기타	Other Pork	
38	돼지 식도	Pork Esophagus	
39	돼지 간	Pork Liver	
40	돼지 갑상선	Pork Thyroid Gland	
41	돼지 건	Pork Tendon	
42	돼지 골수	Pork Bone Marrow	
43	돼지 꼬리	Pork Tail	
44	돼지 뇌	Pork Brain	
45	돼지 뇌하수체	Pork Pituitary Body	
46	돼지 대망막	Pork Omentum	
47	돼지 머리고기	Pork Head Meat	
48	돼지 목	Pork Neck	
49	돼지 방광	Pork Bladder	

**농장식별번호 신청 및 변경신고의 방법과 절차 등**

(제5조제5항 관련)

**1. 농장식별번호 신청 및 변경신고의 방법과 절차**

- 가. 농장식별번호의 발급을 신청하거나 신청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농장식별번호 발급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변경신고서를 서면, 팩스(Fax), 전자적 처리 등의 방법으로 품질평가원장(소는 위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나. 품질평가원장(소는 위탁기관의 장)은 서면,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고 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으로부터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하며, 그 신고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2. 신청 내용**

항목	내용
신청인 (농장경영자)	가. 성명 나. 주민등록번호(사업체인 경우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다. 주소(거주지) 라. 전화번호
가축사육시설 정보	가. 사육가축의 종류(소, 돼지, 닭, 오리) 나. 농장명칭 다. 사육시설 주소 라. 관리자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마. GPS좌표 바. 사육개시일 연월일
사육규모	가축의 종류별 사육 마릿수

순번	품명	영문명	비고
50	돼지 비장	Pork Spleen	
51	돼지 생식기	Pork Reproductive Organ	
52	돼지 식용 가죽	Pork Edible Skin	
53	돼지 신장	Pork Kidney	
54	돼지 심장	Pork Heart	
55	돼지 위	Pork Tripe	
56	돼지 유방	Pork Breast	
57	돼지 입술	Pork Lips	
58	돼지 자궁	Pork Uterus	
59	염장 돼지장/ 염수장 돼지장(케이싱)	Salted/Brined Pork Gut(Casing)	
60	돼지 장간막	Pork Mesentery	
61	돼지 족	Pork Feet	
62	돼지 지방	Pork Fat	
63	돼지 장	Pork Intestine	
64	돼지 척수	Pork Spinal Cord	
65	돼지 췌장	Pork Pancreas	
66	돼지 편도	Pork Tonsil	
67	돼지 허파	Pork Lung	
68	돼지 혀	Pork Tongue	
69	돼지 횡격막	Pork Diaphragm	
70	돼지 가슴샘	Pork Thymus	
71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부위		

[별표 3] <개정 2019. 12. 31.>

## 이력관리대상가축의 출생 등 신고의 방법과 절차 등

(제6조제6항 관련)

### 1. 신고의 방법 및 절차

가. 소의 경우

구분	신고방법 및 절차 등
공통 사항	<p>1) 제6조제1항에 따른 소 출생 등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를 서면, 팩스(Fax) 또는 전자적 처리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의 위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서면, 팩스, 전자적 처리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구술, 전화 등의 방법으로 같은 내용을 신고할 수 있다.</p> <p>2) 신고서를 제출받은 위탁기관의 장은 신고인의 서명 또는 날인 여부와 신고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구술,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를 받은 위탁기관의 장은 관할 구역 내 농장경영자(신고 대리인)를 포함한다. 가축거래상인 등을 식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탁기관의 신고 접수자로 하여금 대리 날인하게 할 수 있고, 위탁기관의 장은 신고자, 신고 일시, 신고 내용 등을 기록·보관(전자적 자료를 포함한다)해야 한다.</p> <p>3) 품질평가원장은 농장경영자와 가축거래상인 등이 신고한 소의 출생·폐사·양도·양수·이동·거래·수출·수출 내역 및 가축시장의 거래내역 등을 이력관리시스템으로 처리된 결과를 해당자에게 문자 메시지 등의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해야 한다.</p> <p>4) 위탁기관의 장은 소 출생·폐사 등의 신고내용의 보안을 위한 서류를 농장경영자, 가축거래상인 등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농장경영자 등이 불성실하게 신고하거나 증명자료를 미제출 하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구청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p>

### 3. 농장식별번호의 부여 및 통보방법

가. 품질평가원장은 농장식별번호가 신청된 시설에 대하여 현장방문 등을 통해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농장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신청자에게 신청서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6호서식의 농장식별번호 발급증을 발급(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한 통지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다만, 닭, 오리 등의 경우에는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 대상 가축사육시설만 해당한다.

나. 농장식별번호는 권역코드(1자리)와 일련번호(5자리)로 구성된 6자리로 부여한다.

\* 권역코드: 서울·인천·경기(1), 강원(2), 충북(3), 세종·대전·충남(4), 전북(5), 광주·전남(6), 대구·경북(7), 부산·울산·경남(8), 제주(9)

다. 농장식별번호는 축종에 관계없이 땅(지번)을 중심으로 1개의 번호를 부여한다.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번의 가축사육시설을 다수의 농장경영자가 물리적으로 분할하여 경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농장식별번호 발급 신청을 받아 다른 농장식별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 4. 농장식별번호의 기록·관리

가. 품질평가원장은 농장식별번호를 부여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농장식별번호 발급 및 등록대장을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관리해야 한다.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별 제24조제1항에 따라 품질평가원장으로 하여금 농장식별번호가 가축사육시설에 정확히 부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다. 품질평가원장은 제1호 단서에 따라 구술, 전화, 전자적 처리 등의 방법으로 신청 또는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그 내용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5. 그 밖에 농장식별번호의 신청 및 변경신고의 방법과 절차, 기록·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분	신고방법 및 절차 등
출생 신고	<p>1) 위탁기관의 장은 소가 출생하는 경우에는 제2호가목 및 나목의 내용과 가축사육시설의 농장식별번호 부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p> <p>2) 위탁기관의 장은 제2호가목과 나목의 신고내용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농장경영자 등에게 신고내용을 보완할 것을 요청해야 하며, 보완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력관리시스템에서 출생에 관한 처리를 해서는 안 된다.</p> <p>3) 소 출생 신고를 하는 농장경영자 등은 소 귀표를 부착하기 전에는 농장 내에서 소 개체를 구분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p> <p>4) 소 농장경영자는 소 출생 신고 후에 소 귀표를 관할 위탁기관의 장으로부터 수령해야 하며, 신고기한 내에 소 귀표 부착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귀표가 부착된 소 사진을 관할 위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p> <p>5) 위탁기관의 장은 제6조4항에 따라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소 귀표 부착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증거자료(전자적 자료를 포함한다.)를 농장경영자 등에 요청하여 기록·보관 해야 한다. 다만, 소 귀표를 스스로 부착하지 않는 농장에 대해서는 신고기한 내에 소 귀표 부착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귀표가 부착된 소 사진(전자적 자료를 포함한다)을 위탁기관의 장이 직접 기록·보관 할 수 있다.</p>
폐사 신고	<p>1) 위탁기관의 장은 소가 폐사한 경우에는 제2호가목 및 나목의 신고내용, 농장식별번호 부여 여부 및 해당 소가 등록된 농장식별번호와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p> <p>2) 위탁기관의 장은 제2호가목 및 나목의 신고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농장경영자 등에게 폐사에 필요한 신고내용의 보완을 요청해야 하며, 보완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력관리시스템에서 폐사에 관한 처리를 해서는 안 된다.</p> <p>3) 소가 법정 전염병으로 폐사한 경우에는 농장경영자 등은 폐사 사실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위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위탁기관의 장은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법정전염병에 따른 폐사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증거자료(전자적 서류 및 자료를 포함한다)를 요청하여 기록·보관해야 한다.</p> <p>4) 일반 폐사의 경우에는 농장경영자 등이 소 폐사 신고 시에 아래의 서류 또는 증거자료(전자적 서류 및 자료를 포함한다.) 중 1가지 이상을 제출해야 하며, 위탁기관의 장은 제6조4항에 따라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일반 폐사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아래의 서류 또는 증거자료(전자적 서류 및 자료를 포함한다.)를 농장경영자 등에게 요청하여 기</p>

구분	신고방법 및 절차 등
양도·양수·이동 신고 및 가축 거래 신고	<p>1) 위탁기관의 장은 소 개체를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제2호가목과 나목의 신고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가축사육시설에 농장식별번호 부여 여부와 해당 소가 등록된 농장식별번호와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가축거래 상인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p> <p>2) 위탁기관의 장은 해당 소의 양도자나 양수자중 어느 하나라도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양수·이동·가축거래 신고에 필요한 내용을 보완토록 요청해야 하며, 보완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력관리시스템에서 양도·양수·이동·가축거래에 관한 처리를 하여서는 안 된다.</p> <p>3) 농장경영자와 가축거래상인 등이 소 개체를 양도·양수하거나 가축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가목과 나목의 신고내용을 명확하게 제출해야 하며, 양도자는 양도신고서, 양수자는 양수신고서를 해당 위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p> <p>가) 농장 경영자간에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소를 양도하는 농장경영자는 양도 신고를 해야 하며, 소를 양수하는 농장경영자는 양수 신고를 해야 한다.</p> <p>나) 가축거래상인과 농장경영자간에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소를 양도하는 농장경영자는 양도 신고를 해야 하고, 가축거래상인은 양도시에는 양도신고, 양수시에는 양수신고를 모두 해야 하며, 소를 양수하는 농장경영자는 양수 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농장식별번호가 있는 가축상인의 경우에는 농장경영자로서 양수·양도 신고를 해야 한다.</p> <p>다) 가축거래상인과 가축거래상인 간에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소를 양도하는 가축거래상인은 양도 신고를 해야 하며 소를 양수하는 가축거래상인은 양수 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농장식별번호가 있는 가축상인의 경우에는 농장경영자로서 양수·양도 신고를 해야 한다.</p> <p>4) 농장식별번호가 다른 가축사육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농장경영자가 소 개체를 다른 가축사육시설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이동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p>

나. 종돈의 출생·폐사·양도·양수·양도·양수·수입·수출 등 신고

구분	신고방법 및 절차 등
공통 사항	<p>1) 제6조제1항에 따른 종돈의 출생 등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를 서면으로 종돈등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서면, 팩스(Fax), 전자적 처리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구술, 전화 등의 방법으로 같은 내용을 신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p> <p>가) 「축산법」에 다른 종돈의 등록을 위하여 종축등록기관에 제출하는 종돈의 혈통·등록·고등등록 신청서 및 번식용씨패지 혈통증명신청서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내용이 포함된 경우</p> <p>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른 돼지의 이동을 위하여 시·군·구 등 관계기관에 제출하는 임상예찰서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내용이 포함되어 해당내용이 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이 되는 경우</p> <p>2) 품질평가원장은 농장경영자 등이 신고한 종돈의 출생·폐사·양도·양수·이동·거래·수입·수출 내역 등의 이력관리시스템으로 처리된 결과를 해당자에게 문자 메시지 등의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해야 한다.</p> <p>3) 종돈등록기관의 장은 종돈 출생·폐사 등의 신고내용의 보안을 위한 서류 또는 증명자료는 농장경영자 등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농장경영자 등이 불성실하게 신고하거나 증명자료를 미제출 하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p>
출생 신고	<p>1) 종돈등록기관의 장은 종돈의 개체가 출생(종돈의 경우에는 등록을 말한 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가목과 나목의 신고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가축 사육시설의 농장식별번호 부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p> <p>2) 종돈등록기관의 장은 제2호 가목과 나목의 신고내용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농장경영자 등에게 출생에 필요한 신고 내용을 보완토록 요청해야 하며, 보완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력관리시스템에서 출생에 관한 처리를 하여서는 안 된다.</p> <p>3) 종돈의 출생신고를 하는 종축업 또는 정액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종돈의 출생 후 귀표 등을 부착하기 전까지는 종돈 개체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p> <p>4) 종돈의 농장경영자는 종돈 출생 신고 후에 종돈 귀표를 종돈등록기관의 장으로부터 수령해야 하며, 신고기한 내에 종돈 귀표 부착 사실을 증명</p>

구분	신고방법 및 절차 등
수입·수출 신고	<p>1) 검역본부장 및 위탁기관의 장은 소 개체가 수입되거나 수출되는 경우에는 제2호가목과 다목의 신고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가축사육시설에 대한 농장식별번호 부여 여부와 가축거래상인의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p> <p>2) 검역본부장 및 위탁기관의 장은 수입 또는 수출하는 자 중 어느 하나라도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출입자에게 수입·수출에 필요한 신고 내용을 보완토록 요청해야 하며, 보완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력관리시스템에서 수입·수출에 관한 처리를 하여서는 안 된다.</p> <p>3) 농장경영자 등은 소 개체를 수입·수출 하는에는 경우 제2호가목과 다목의 신고 내용을 명확하게 제출해야 한다.</p>
가축시장의 거래 내역 신고	<p>1) 가축시장개설자는 소 개체가 거래되는 경우에는 제2호 가목과 바목의 신고 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가축사육시설에 대한 농장식별번호 부여 여부와 해당 소가 등록된 농장식별번호와 일치 여부, 가축거래상인의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록 여부, 소 소유자 정보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p> <p>2) 위탁기관의 장은 가축거래 당사자(양도자 및 양수자) 중 어느 하나라도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력관리시스템에서 가축거래에 관한 처리를 하여서는 안 된다.</p> <p>3) 가축시장을 통해 가축을 거래코자 하는 농장경영자 또는 가축거래상인은 가축시장개설자에게 해당 소 개체의 양도 또는 양수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농장식별번호가 있는 가축상인의 경우에는 농장경영자로서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p> <p>4) 가축시장개설자는 소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품질평가원장에게 바목에 따른 거래내역 신고(전자적인 방법의 신고를 포함한다)를 해야 한다. 다만, 농장식별번호가 있는 가축상인의 경우에는 농장경영자로서 양수·양도 신고 정보를 처리해야 한다. 이때 가축시장개설자가 신고한 거래내역으로 농장경영자 또는 가축거래상인의 양도·양수 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p>

구분	신고방법 및 절차 등
폐사 신고	<p>할 수 있는 귀표가 부착된 종돈 사진을 관찰 종돈등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한 종돈등록기관의 장은 제6조4항에 따라 신고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종돈 귀표 부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증거자료(전자적 서류 및 자료를 포함한다.)를 농장경영자 등에 요청하여 기록·보관해야 한다.</p> <p>5) 다만, 종돈 귀표를 자가 부착하지 않는 농장에 대해서는 신고기한 내에 종돈 귀표 부착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귀표가 부착된 종돈 사진(전자적 자료를 포함한다.)을 종돈등록기관의 장이 직접 기록·보관 할 수 있다.</p> <p>1) 종돈등록기관의 장은 종돈 개체가 폐사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가목과 마목의 신고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가축사육시설에 농장식별번호 부여 여부와 종돈이 등록된 농장식별번호와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p> <p>2) 종돈등록기관의 장은 제2호 가목과 마목의 신고내용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농장경영자 등에게 폐사에 필요한 신고 내용을 보완토록 요청해야 하며, 보완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력관리시스템에서 출생에 관한 처리를 하여서는 안 된다.</p> <p>3) 종돈이 법정염병으로 폐사하는 경우에는 종축업 또는 정액처리업의 허가 받은 자는 폐사 사실을 관찰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종돈등록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종돈등록기관의 장은 관찰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법정염병에 따른 폐사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증거자료(전자적 서류 및 자료를 포함한다.)를 요청하여 기록·보관해야 한다.</p> <p>4) 일반 폐사의 경우에는 종축업 또는 정액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종돈 폐사 신고 시에는 아래의 서류 또는 증거자료(전자적 서류 및 자료를 포함한다.)중 1가지 이상을 제출해야 하며, 종돈등록기관의 장은 제6조4항에 따라 신고 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일반 폐사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아래의 서류 또는 증거자료(전자적 서류 및 자료를 포함한다.)를 요청하여 기록·보관해야 한다.</p> <p>가) 귀표 등이 포함된 폐사 사진 나) 폐사진단서 다) 검안서 라) 렌터링 처리 확인서 마) 소각(매몰) 증명서</p>

구분	신고방법 및 절차 등
양도·양수·이동 신고	<p>1) 종돈등록기관의 장은 종돈 개체를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가목과 라목의 신고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가축사육시설에 농장식별번호 부여 여부와 해당 종돈이 등록된 농장식별번호와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p> <p>2) 종돈등록기관의 장은 해당 종돈의 양도자나 양수자중 어느 하나라도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양수·이동에 필요한 신고 내용을 보완토록 요청해야 하며, 보완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력관리시스템에서 양도·양수·이동에 관한 처리를 하여서는 안 된다.</p> <p>3) 종축업 또는 정액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종돈 개체를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가목과 라목의 신고 내용을 명확하게 제출해야 하며, 양도자는 양도신고서를, 양수자는 양수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p> <p>4) 농장식별번호가 다른 가축사육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농장경영자가 해당 종돈 개체를 다른 가축사육시설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이동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p>
수입·수출 신고	<p>1) 검역본부장 및 종돈등록기관의 장은 종돈 개체가 수입되거나 수출되는 경우에는 제2호 가목과 라목의 신고 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가축사육시설에 대한 농장식별번호 부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p> <p>2) 검역본부장 및 종돈등록기관의 장은 수입 또는 수출하는 자 중 어느 하나라도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 또는 수출하는 자에게 수입·수출에 필요한 신고 내용을 보완토록 요청해야 하며, 보완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력관리시스템에서 수입·수출에 관한 처리를 하여서는 안 된다.</p>
사육·번경·신고·이동·금지 등	<p>1)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또는 수입유통식별대장의 내용 중에 기록이 누락되었거나 오류사항을 수정하려는 종축업 또는 정액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변경신고서나 수정요구서를 작성하여 검역본부장 또는 종돈등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기록사항 누락 또는 오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p> <p>2) 종축업 또는 정액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한 귀표 등이 부착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훼손되어 개체식별이 곤란한 종돈을 양도·양수, 수출 또는 이동하여서는 안 된다.</p>

다. 돼지(중돈은 제외하다)의 양도·양수·이동 등 신고

구분	신고방법 및 절차 등
<p>공통 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6조제1항에 따른 돼지의 양도 등 신고를 하려는 농장경영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서를 서면, 팩스(Fax), 전자적 처리 등의 방법으로 품질평가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서면, 팩스, 전자적 처리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구술,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li> <li>품질평가원장은 서면,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고된 해당 서류에 신고인으로부터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하며, 그 신고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구술,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를 받은 품질평가원장은 관할 구역 내 농장경영자(신고 대리인)를 포함한다. 가축거래상인 등을 식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고 접수자가 대리 날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 일시, 신고자, 신고 내용 등을 기록·보관(전자적 자료를 포함한다)해야 한다.</li> <li>「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른 돼지의 이동을 위하여 시·군·구 등 관계기관에 제출하는 임상예찰서에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내용이 포함되어 해당내용이 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이 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li> <li>품질평가원장은 농장경영자 등이 신고한 돼지 양도·양수·이동 등의 이력관리시스템으로 처리된 결과를 해당자에게 문자 메시지로 등의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해야 한다.</li> </ol>
<p>양도·양수·이동 신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품질평가원장은 돼지 양도·양수·이동 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가목과 라목의 신고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가축사육시설에 농장식별번호 부여 여부 와 해당 돼지가 등록된 농장식별번호와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li> <li>품질평가원장은 돼지의 양도자나 양수자중 어느 하나라도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양수·이동 신고에 필요한 내용을 보완토록 요청해야 하며, 보완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력관리시스템에서 양도·양수·이동에 관한 처리를 해서는 안 된다.</li> <li>농장경영자 등이 돼지의 양도·양수를 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가목과 라목의 신고내용을 명확하게 제출해야 하며, 양도자는 양도신고서를, 양수자는 양수신고서를 품질평가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li> <li>농장식별번호가 다른 가축사육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농장경영자가 돼지를 다른 가축사육시설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이동 신고서를 품질평가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li> </ol>

라. 닭, 오리, 씨알의 양도·양수·이동·입란(入卵: 암탉에게 알을 안기거나 부화기에 알을 넣는 것)·수입·수출 등 신고

구분	신고방법 및 절차 등
<p>공통 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6조제1항에 따른 닭, 오리, 씨알의 종축 및 씨알을 수입·수출 등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신고서를 서면, 팩스(Fax), 전자적 처리 등의 방법으로 종축 등 수출입 신고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서면, 팩스, 전자적 처리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구술, 전화 등의 방법으로 같은 내용을 신고할 수 있다.</li> <li>제6조제1항에 따른 종축이 아닌 닭, 오리, 씨알 등 양수 등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신고서를 서면, 팩스, 전자적 처리 등의 방법으로 품질평가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서면, 팩스, 전자적 처리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구술,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li> <li>종축 등 수출입 신고기관의 장과 품질평가원장은 서면,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고된 해당 서류에 신고인으로부터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하며, 그 신고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구술,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를 받은 종축 등 수출입 신고기관의 장과 품질평가원장은 관할 구역 내 농장경영자(신고 대리인)를 포함한다. 가축거래상인 등을 식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고 접수자가 대리 날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 일시, 신고자, 신고 내용 등을 기록·보관(전자적 자료를 포함한다)해야 한다.</li> <li>품질평가원장은 농장경영자와 가축거래상인 등의 닭, 오리, 씨알의 양도·양수·이동·거래·수입·수출 신고내역 등이 이력관리시스템으로 처리된 결과를 해당자에게 문자 메시지로 등의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해야 한다.</li> </ol>
<p>양도·양수·이동 신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품질평가원장은 닭, 오리 또는 씨알을 양수·양도·이동(부화장으로 이동도 포함한다) 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가목과 라목의 신고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가축사육시설에 농장식별번호 부여 여부와 해당 닭·오리 또는 씨알이 등록된 농장식별번호와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li> <li>품질평가원장은 닭, 오리 또는 씨알의 양도자나 양수자 중 어느 하나라도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양수·이동 신고에 필요한 내용을 보완토록 요청해야 하며, 보완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력관리시스템에서 양도·양수·이동에 관한 처리를 하여서는 안 된다.</li> <li>농장경영자 등이 닭·오리 또는 씨알의 양도·양수를 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가목과 라목의 신고내용을 명확하게 제출해야 하며, 양도자는 양도신고서를,</li> </ol>

신고방법 및 절차 등	
구분	양수자는 양수신고서를 품질평가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씨알이 부화장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입란신고로 양도·양수를 갈음할 수 있다. 4) 농장식별번호가 다른 가축사육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농장경영자가 닭·오리 또는 씨알을 다른 가축사육시설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이동 신고서를 품질평가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입란 신고	1) 씨알을 부화시키거나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품질평가원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2) 품질평가원장은 신고내용을 확인하여 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수입·수출 신고	1) 종축 등 수출입 신고기관의 장은 닭, 오리 또는 씨알이 수입 또는 수출되는 경우에는 제2호 가목과 다목의 신고 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가축사육시설에 대한 농장식별번호 부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2) 닭, 오리의 종축 또는 씨알을 수출입하는 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종축 등 수출입 신고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3) 종축 등 수출입 신고기관의 장은 수입 또는 수출하는 자 중 어느 하나라도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입 또는 수출하는 자에게 수입·수출에 필요한 신고 내용(보완토록 요청해야 하며, 보완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력관리시스템에서 수입·수출에 관한 처리를 해서는 안 된다). 4) 수입 또는 수출하는 자가 닭, 오리 또는 씨알을 수입·수출 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가목과 다목의 신고내용을 명확하게 제출하여야 한다.

## 2. 신고의 종류 및 내용

### 가. 공통 신고사항

- 1) 농장경영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명칭, 대표자 성명)
- 2) 농장경영자의 주민등록번호(사업체인 경우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 3) 농장경영자의 주소(법인의 경우 대표자 주소)
- 4)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 5) 농장식별번호
- 6) 사육시설의 주소
- 7) 사육개시 연월일

## 나. 출생 신고(소, 종돈만 해당한다)

구분	소	종돈
신고 내용	1) 출생 연월일 2) 암수 구분(암, 수, 거세우, 프리마틴(Freemartin, 이성장태의 암컷에서 생식기 기형이 나타나는 소의 종류) 3) 소의 종류(한우, 젃소, 육우, 수입소, 기타) 4) 부의 개체식별번호 5) 모의 개체식별번호	1) 출생 연월일 2) 혈통등록 또는 고등등록, 번식용씨폐지 혈통확인 연월일 3) 혈통 또는 고등등록, 번식용씨폐지 혈통확인 증명서 번호 4) 암수 구분(암, 수) 5) 종돈의 종류: 순종, 수입종돈, 번식용씨폐지, 기타 - 대요크셔(Large Yorkshire), 랜드레이스(Landrace), 두록(Duroc), 햄프셔(Hampshire), 웰시(Welsh), 피어트레인(Pietrain), 스포티드(Spotted), 버크셔(Berkshire), 재래종 6) 부의 개체식별번호 7) 모의 개체식별번호

### 다. 수입·수출 신고

- 1) 수입·수출 연월일
  - 2) 개체식별번호 또는 농장식별번호(수입 농장 또는 검역시행지정 농장)
  - 3) 암수 구분(암, 수, 거세, 기타) 및 마리 수
  - 4) 소, 종돈, 닭·오리의 종류
  - 5) 원산지(국가명)
  - 6) 종축회사명
  - 7) 검역시행장 지정 여부
  - 8) 선하증권번호
- 라. 양도·양수·이동(반입·반출)·가축거래 신고
- 1) 농장식별번호 또는 가축거래상인의 고유번호
  - 2) 개체식별번호
  - 3) 양도·양수·이동(반입·반출)·가축거래 신고 구분
  - 4) 양도자·양수자, 가축거래상인 성명(사업체인 경우 명칭, 대표자 성명)

[별표 4] <개정 2017. 6. 28.>

## **개체식별번호 부여 및 귀표등 부착 방법 등**

(제7조 및 제8조제3항 관련)

### 1. 소의 개체식별번호 부여 및 귀표등의 부착·관리 방법

개체식별 번호 부여방법	<p>가. 위탁기관의 장 또는 검역본부장은 출생 또는 수입 신고된 소에 대하여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신고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p> <p>나. 출생 신고된 소에는 국가코드(KOR), 바코드 및 고유의 숫자 12자리를 포함한 15자리의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한다.</p> <p>다. 수입 신고된 소는 해당 국가에서 부여된 개체식별번호를 사용하되, 개체 식별번호가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개체식별번호와 호환되지 않는 번호 체계인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p>			
귀표등의 규격	<p>가. 규격</p> <p>1) 귀표의 크기</p> <p>가) 일반형: (가로) 55mm~70mm, (세로) 65mm~85mm</p> <p>나) 단추형: 원형으로 지름 25mm~35mm</p> <p>2) 글자 색상: 검은색</p> <p>3) 바탕 색상: 밝은 노란색</p> <p>나. 재부착용 귀표의 규격</p> <p>1) 크기: (가로) 55mm~70mm, (세로) 65mm~85mm</p> <p>2) KOR, 관리번호 인쇄</p> <p>다. 귀표의 모양</p>			
귀표등의 부착· 표시 방법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33%; 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일반형 </td> <td style="width: 33%; 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단추형 </td> <td style="width: 33%; 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재부착용 </td> </tr> </table> <p>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귀표등의 규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p> <p>가. 소의 개체식별번호 표시는 귀표를 소의 귀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한다.</p> <p>나. 귀표는 소의 오른쪽 귀에 일반형용, 왼쪽 귀에 단추형을 각각 부착한다.</p> <p>다. 귀 없는 기형이거나 농촌관광 또는 학술연구 등으로 사유되어 귀표의 부착이 곤란한 경우에는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목줄을 이용하여 표시하고,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p>	일반형 	단추형 	재부착용 
일반형 	단추형 	재부착용 		

- 5) 생년월일(사업체인 경우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 6) 양도·양수 또는 가축거래 연월일
- 7) 돼지, 닭·오리의 경우 종류별 마리 수, 씨알의 갯수
- 8) 도축을 위한 출하의 경우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도축업자가 도축점사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마. 폐사 신고(소, 중돈만 해당한다)

- 1) 개체식별번호
  - 2) 폐사일
  - 3) 가축의 종류(소, 중돈)
  - 4) 폐사 원인
  - 5) 폐사처리방법
- 바. 가축시장의 거래내역 신고
- 1) 가축시장정보(가축시장명, 주소,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 2) 거래 연월일
  - 3) 개체식별번호(소의 종류, 성별, 출생연월일)
  - 4) 농장식별번호(사육시설 주소), 가축거래상인의 고유번호
  - 5) 양도·양수 신고 구분
  - 6) 양도자·양수자, 가축거래상인의 성명(법인의 경우 명칭, 대표자 성명), 연락처
  - 7) 양도자·양수자, 가축거래상인의 생년월일(법인의 경우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 8) 양도자·양수자, 가축거래상인의 주소, 전화번호

사. 입란신고

- 1) 농장식별번호
- 2) 씨알의 품종
- 3) 알의 종류
- 4) 씨알의 개수

### 3. 그 밖에 출생 등 신고 및 변경신고의 방법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귀표등의 관리 등	<p>가. 검역본부장 또는 위탁기관의 장은 귀표를 수령하여 배부한 경우 별지 제18호서식의 귀표 수령·배부 관리대장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p> <p>나. 검역본부장 또는 위탁기관의 장은 귀표 훼손·탈락 신고 등을 받은 경우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귀표 훼손·탈락 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p> <p>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로 하여금 귀표의 구매·공급, 부착방법 교육 등을 하게 할 수 있다.</p>
그 밖에 개체식별번호의 부여방법 및 귀표등의 규격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2. 종돈의 개체식별번호 부여 및 귀표등의 부착·관리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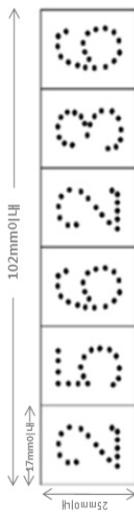
개체식별번호의 구성	<p>가. 종돈등록기관의 장은 출생 또는 수입 신고된 종돈에 대하여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신고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p> <p>나. 출생 신고 또는 수입 신고된 종돈에는 국가코드(KOR), 바코드 및 농장식별번호(6자리), 개체관리번호(6자리)로 구성된 15자리의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한다.</p> <p>다. 수입 신고된 종돈은 해당 국가에서 부여된 개체식별번호를 사용하고,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개체식별번호와 호환되지 않는 번호체계인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p>
귀표등의 규격	<p>가. 귀표의 규격</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귀표등의 크기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일반형: (가로) 25mm~55mm, (세로) 45mm~70mm</li> <li>나) 단추형: 원형으로 지름 25mm~35mm</li> <li>다) 재부착용: 일반형으로 (가로) 25mm~55mm, (세로) 45mm~70mm</li> </ol> </li> <li>2) 귀표등의 글자 색상: 검은색</li> <li>3) 귀표등의 바탕 색상: 밝은 노란색을 기본으로 하되, 종돈의 종류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li> <li>4) 귀표등의 표시사항: KOR, 바코드, 개체식별번호, 기타 종돈장의 로고 등</li> </ol> <p>나. 귀표는 일반형, 단추형을 각각 양쪽 귀에 부착하거나, 둘 중에 하나만 한 쪽 귀에 사용하여 부착할 수 있다.</p> <p>다. 이각(耳殼, 脫지)의 귀를 절개하여 절개된 모양 등에 따라 숫자로 표현되는 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규격은 종돈등록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p>

귀표등의 부착·표시 방법	<p>라. 입목(入木, 脫지) 귀에 문신을 찍어 표시 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표시되는 숫자 하나의 크기 규격은 (가로)5mm (세로)7mm 이내로 한다.</p> <p>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귀표등의 규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p> <p>가. 종돈의 개체식별번호 표시는 귀표등을 종돈의 귀에 부착 또는 표시하는 방식으로 한다.</p> <p>나. 종돈의 개체식별번호 표시를 위한 귀표등에는 귀표, 이각, 입목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각 또는 입목의 방법으로 표시하는 경우 KOR, 기타 종돈장의 로고 등을 생략할 수 있다.</p> <p>다. 귀에 이각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종돈등록기관이 정하는 규격에 따라 표시하되, 이각번호에 해당하는 개체식별번호를 종축등록기관이 발행하는 증명서에 기록하여야 한다.</p> <p>라. 귀에 입목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농장식별번호(6자리), 개체관리번호(6자리)를 귀에 표시할 수 있다.</p> <p>마. 귀에 입목과 이각을 병행하여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할 수 있다.</p> <p>바. 귀 없는 기형이거나 농촌관광 또는 학술연구 목적으로 사용되어 귀표 등 부착이 곤란한 경우에는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목줄을 이용하여 표시하고,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p>
그 밖에 개체식별번호의 부여방법 및 귀표등의 규격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5]

## 돼지에 대한 농장식별번호의 표시방법 및 관리 등

(제9조제2항 관련)

<p>1. 농장식별번호 표시방법</p>	<p>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돼지를 기르는 농장경영자 등은 별표 2에 따라 부여된 농장식별번호(6자리)를 돼지를 출하하거나 다른 가축사육시설로 이동하기 전에 돼지의 오른쪽 엉덩이에 표시하여야 한다.</p> <p>나. 농장식별번호를 돼지에 표시할 수 있는 기구(이하 "농장식별표시기"라 한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에 따라 검역본부장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돼지가 입는 상해 또는 스트레스를 최소화할 수 있는 표시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p> <p>다. 농장식별번호가 표시된 귀표등을 돼지에 부착 또는 표시하는 경우에는 가목에 따른 농장식별번호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p> <p>라. 이동하는 모든 돼지에 농장식별번호를 각각 표시하여야 하되, 하나의 차량에 농장식별번호가 같은 농장의 돼지만을 실어 이동하는 경우에는 출하돼지의 일부(60 두 이하의 경우 10두 이상 표시, 61두 이상인 경우 전체 출하돼지의 20퍼센트 이상 표시)만 표시할 수 있다.</p>
<p>2. 농장식별표시기의 규격 등</p>	<p>가. 농장식별표시기 규격</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숫자판 크기: (가로) 20㎜~25㎜이내, (세로) 80㎜~102㎜이내</li> <li>2) 사용 잉크: 식용색소 적색 3호</li> <li>3) 표시기 모양(예)</li> </ol> 

	<p>나. 농장식별번호 표시 귀표등의 규격</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크기: 별표 4에 따른 종돈의 귀표등 규격을 따른다.</li> <li>2) 표시: 농장식별번호 6자리를 크게 표시하고, 그 밖에 돼지의 순번 등을 추가로 표시할 수 있다.</li> </ol> <p>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농장식별표시기 또는 귀표등의 규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p>
<p>3. 농장식별표시기 등의 관리</p>	<p>가. 돼지를 기르는 농장경영자 등은 농장식별번호가 적절하게 돼지에 표시 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p> <p>나. 농장식별표시기는 질병 등의 전파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항상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p>
	<p>4. 그 밖에 돼지의 농장식별번호의 표시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p>

**돼지의 사육현황 신고의 방법 등**(제10조제2항 관련)

**1.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농장경영자는 매월 돼지의 사육현황을 별지 제5호서식의 돼지 사육현황 신고서로 품질평가원장(중돈의 경우 중돈등록기관의 장을 말한다)에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른 돼지열병·구제역 예방접종증명서에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돼지열병·구제역 예방접종증명서로 신고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신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구술, 전화, 전자적 처리 등의 방법으로 같은 내용을 신고할 수 있다.

**2. 신고 내용**

항목	내용
공통 신고 사항	가. 농장경영자의 성명(사업체인 경우 사업체의 명칭, 대표자 성명) 나. 생년월일(사업체인 경우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다. 농장식별번호 라. 농장경영자의 주소(법인의 경우 대표자 주소) 마.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바. 사육시설의 주소 사. 사육개시 연월일
사육현황	가. 돼지의 종류(일반종, 재래종, 멧돼지) 나. 돼지(모돈, 후보돈, 옹돈, 자돈, 육성돈, 비육돈) 사육단계별 세부 내역(마릿수) 다. 사육 총 마릿수

**3. 사육현황 변경 시**

돼지의 사육현황 신고인 등은 신고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법 제21조 제4항 및 이 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가축및축산물식별대상 기록사항의

변경을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가축및축산물식별대상 기록사항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되, 서면으로 신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구술, 전화, 전자적 처리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4. 기록·관리**

제1호에 따라 신고를 받은 품질평가원장 또는 중돈등록기관의 장은 이력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그 내용을 입력해야 한다.

**5. 그 밖에 돼지의 사육현황 신고의 방법과 절차,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닭, 오리 및 씨알의 농장식별번호의 표시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제10조의2제2항 관련)

<p>1. 닭, 오리</p>	<p>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닭, 오리를 기르는 농장경영자 등이 닭·오리를 출하하거나, 닭, 오리를 다른 가축사육시설로 이동할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부여된 농장식별번호(6자리)를 가금이동신고서에 표시해야 한다.</p> <p>나. 닭·오리를 이동할 경우에는 케이지(cage), 닭을 가두어 사육하는 철망으로 된 우리), 상자 등에 농장식별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다만, 닭, 오리의 날개인식표, 발목링, 발목밴드 등의 방법으로 농장 구분을 하는 경우에는 농장식별번호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p> <p>다. 서로 다른 농장의 닭, 오리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농장별로 가금이동신고서에 농장식별번호를 표시하고, 농장별로 구분하여 케이지 등에 농장식별번호를 표시해야 한다.</p>
<p>2. 씨알</p>	<p>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닭, 오리를 기르는 농장경영자는 다른 가축사육시설로 이동하는 씨알에 별표 2에 따라 부여된 농장식별번호(6자리)를 가금이동신고서에 표시해야 한다.</p> <p>나. 씨알을 이동할 경우에는 난좌(卵座: 가축의 알을 운반·판매 등의 목적으로 담아두거나 포장하는 용기), 상자 등에 해당 농장식별번호를 표시해야 한다.</p> <p>다. 서로 다른 농장의 씨알을 이동하는 경우에는 농장별로 가금이동 신고서에 농장식별번호를 표시하고, 농장별로 구분하여 난좌, 상자 등에 농장식별번호를 표시해야 한다.</p>
<p>3. 그 밖에 닭, 오리, 씨알의 농장식별번호의 표시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p>	

**닭, 오리의 사육현황 신고내용 및 방법 등** (제10조의2제4항 관련)

1. 신고의 방법 및 절차
-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농장경영자는 매일 닭, 오리, 오리의 사육현황 등을 별지 제5호의3서식의 닭, 오리 사육현황 신고서로 품질평가원장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신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구술, 전화, 전자적 처리 등의 방법으로 같은 내용을 신고할 수 있다.

2. 신고내용

항목	내용
<p>공통 신고사항</p>	<p>가. 농장경영자의 성명(사업체인 경우 사업체의 명칭, 대표자 성명)                      나. 생년월일(사업체인 경우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다. 농장식별번호                      라. 농장경영자의 주소(법인의 경우 대표자 주소)                      마.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바. 사육시설의 주소                      사. 사육개시 연월일</p>
<p>사육현황</p>	<p>가. 가금의 종류(육계, 산란계, 토종닭, 오리)                      나. 가금(실용계, 삼계, 원종계, 순계, 육용오리, 종오리, 원종오리) 주령(주廻) 수로 헤아리는 나이(별 세부내용(마릿수))                      다. 사육 총 마릿수</p>

3. 사육현황 변경 시

닭, 오리의 사육현황 신고인 등은 신고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 제21조제4항 및 이 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가축및축산물식별대상 기록 사항의 변경을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가축및축산물식별대상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신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구술, 전화, 전자적 처리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4. 기록·관리**

제1호에 따라 신고를 받은 품질평가원장은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그 내용을 입력해야 한다.

**5. 그 밖에 닭, 오리**의 사육현황 신고의 방법과 절차, 관리 등에 관하여 그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7] <개정 2019. 12. 31.>

**도축처리 결과 등의 신고 (제12조제3항 관련)**

신고의 종류	신고 내용
도축 처리 결과	1. 검사신청인 가. 성명 다. 업소명 2. 도축의뢰인 가. 성명 다. 업소명 3. 도축 목적 4. 출하 농장 가. 성명(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농장경영자 성명 등을 말한다) 나. 생년월일(법인의 경우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다. 주소 라. 농장식별번호 5. 접수번호 6. 가축의 종류(소, 돼지, 닭, 오리) 7. 소의 종류(한우, 젃소, 육우, 수입소) 8. 닭의 종류(육계, 삼계, 토종닭, 산란노계, 산란종계, 육용종계, 겸용종) 9. 성별(소, 종돈만 해당) 10. 연령(소만 해당) 11. 생체량 12. 총수량 13. 도체중량 14. 개체식별번호(소, 종돈만 해당) 15. 이력번호 16. 수입가축의 경우 가. 수출국가명 나. 검역계류장 도착일 17. 신청 연월일

[별표 8] <개정 2019. 12. 31.>

## 도축업자의 이력번호 발급신청 및 이력번호 부여 방법 등

(제13조제2항 관련)

### 1. 신청내용

신청인	가.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 또는 명칭) 나. 생년월일(법인의 경우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다. 주소(연락처)
도축의뢰인	가.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 또는 명칭) 나. 생년월일(법인의 경우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다. 주소(연락처)
출하 농장정보 (공통)	가. 농장명 나. 성명(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농장경영자 성명 또는 명칭) 다.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라. 농장식별번호 마. 주소(GPS좌표, 연락처)
출하 폐지정보	가. 출하 마릿수
출하 닭, 오리정보	가. 출하 마릿수 나. 닭, 오리의 종류 다. 품종 라. 성별 마. 일령 바. 평균체중

### 2. 이력번호 발급신청의 기록·관리

품질평가원장은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서면 또는 전화 등으로 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그 내용을 입력해야 한다.

경매 결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개체식별번호(소만 해당)</li> <li>2. 이력번호(폐지만 해당)</li> <li>3. 접수번호(도체순번)</li> <li>4. 지육·부분육 증량</li> <li>5. 자체 도축이 아닌 지육·부분육의 경우 가. 지육·부분육 구분 나. 반입처 정보(업소·도축장명,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등)</li> <li>6. 중도매인 가. 성명 나. 생년월일(사업체인 경우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다. 업소명 라. 주소(전화번호)</li> <li>7. 경매 거래·반출처 가. 성명 나. 생년월일(사업체인 경우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다. 업소명 라. 주소(전화번호)</li> </ol>
그 밖에 도축처리 결과 및 경매 결과 신고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도축업자의 이력번호 표시방법 및 관리 등**(제14조. 관련)

<p>1. 소, 돼지 이력번호의 표시 방법</p>	<p>가. 도축업자는 소를 도축한 경우에는 그 소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를 해당 도체에 동일하게 이력번호로 표시해야 한다.</p> <p>나. 도축업자는 돼지를 도축한 경우에는 해당 돼지의 농장식별번호가 포함된 이력번호를 해당 도체에 표시해야 한다.</p> <p>다. 도체에 표시하는 이력번호는 이동 또는 환경의 변화로 훼손되거나 탈락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사용되는 표시라벨 등은 위생상 위해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p> <p>라. 돼지의 경우 이력번호 표시라벨을 대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계적인 방식으로 이력번호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력번호를 표시하는 잉크 등은 식품위생상 위해가 없는 것이어야 하며, 인쇄용 색소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제5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격에 따른다.</p> <p>마. 이력번호가 정확히 표시되는지를 정기적(가급적 매일)으로 확인·관리해야 한다.</p> <p>바. 도체를 2분체 또는 4분체로 분할하여 이동하는 경우 분할된 도체마다 같은 이력번호를 표시해야 한다.</p> <p>사. 도축업자는 천재지변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귀표등이 떨어지거나 훼손되어 개체식별번호 또는 농장식별번호를 알 수 없는 가족의 도축을 의뢰받은 경우에는 해당 시·도 소속 검사관에 신고하고, 검사관의 확인을 받아 별지 제20호서식의 도축장 개체식별번호 및 농장식별번호 발급 확인대장을 통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발급받은 개체식별번호 또는 농장식별번호가 포함된 이력번호를 도체에 표시해야 한다.</p>
<p>2. 닭, 오리 이력번호의 표시방법</p>	<p>가. 도축업자는 닭 또는 오리를 도축한 경우에는 해당 기금의 농장식별번호 등의 정보를 포함하여 발급 신청된 이력번호를 최소포장지에 표시해야 한다.</p> <p>나. 최소포장지에 표시된 이력번호는 이동 또는 환경의 변화로 훼손·탈락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사용되는 표시라벨 등은 위생상 위</p>

**3. 이력번호 부여 방법**

가. 돼지 이력번호는 축종코드 1자리, 농장식별번호 6자리, 일련(출하순번)번호 5자리 등 총 12자리 숫자로 구성하여 부여한다.

나. 닭, 오리 이력번호는 축종코드 1자리, 도축일자 6자리, 도축장코드 3자리, 일련번호 2자리 총 12자리 숫자로 구성하여 부여한다.

다. 전산장에 등으로 인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이력번호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 품질평가원장은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신청인에게 이력번호를 통보해야 한다. 다만, 전산장에 등으로 인하여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전화 등을 통하여 통보할 수 있다.

**4. 이력번호 축종코드**

구분	소	돼지	닭	계란	오리
축종코드	0	1	2	3	5

**5. 그 밖에 이력번호 발급신청 및 이력번호 부여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9의2] <신설 2019. 12. 31.>

**계란의 선별포장 결과 등의 신고방법** (제14조의2제2항 관련)

	<p>해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p> <p>다. 이력번호 표시라벨을 대신하여 최소포장지에 기계적인 방식으로 이력번호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력번호를 표시하는 잉크 등은 식품위생상 위해가 없는 것이어야 하며, 인쇄용 색소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격에 따른다.</p> <p>라. 다목에 따른 기계적인 방식으로 이력번호를 표시하는 도축장은 이력번호가 정확히 표시되는지를 정기적(기금적 배일)으로 확인·관리해야 한다.</p> <p>마. 도축업자는 농장식별번호를 알 수 없는 기금의 도축을 의뢰받은 경우에는 해당 시·도 소속 검사관에 신고하고, 검사관의 확인을 받아 별지 제20호서식의 도축장 농장식별번호 발급 확인대장을 통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발급받은 농장식별번호 정보가 포함된 이력번호를 최소포장지에 표시해야 한다.</p>
<p>3. 이력번호 관리 등</p>	<p>가. 소와 돼지의 경우에는 도축장과 식육포장처리업소의 시설이 직접 연결되어 도축 후 곧바로 식육포장처리업소로 도체가 이동되는 경우에는 그 이동 시 이력번호 대신 임의의 도축번호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도 식육포장처리업소에서 포장처리를 마치고 시설 밖으로 도체를 반출할 때에는 이력번호를 표시해야 한다.</p> <p>나. 소 또는 돼지 도축업자는 도체에 표시된 이력번호가 오염 또는 훼손되어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력번호를 다시 표시해야 한다.</p> <p>다. 소 도축업자는 지체 없이 귀표를 수거하여 소각, 파쇄 등의 방법으로 폐기처분해야 하며, 귀표가 다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p> <p>라. 기금 도축업자는 최소포장지에 표시된 이력번호가 오염 또는 훼손되어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력번호를 다시 표시해야 한다.</p>
<p>4. 그 밖에 이력번호 표시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p>	

신고의 종류	신고 내용
<p>계란이력번호 표시의무자의 거래 등의 결과</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신고인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성명 나. 생년월일(법인의 경우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li> <li>다. 업소명 라. 주소(전화번호)</li> </ol> </li> <li>2. 선별포장 의뢰인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성명 나. 생년월일(법인의 경우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li> <li>다. 업소명 라. 주소(전화번호) 마. 허가(등록)번호</li> </ol> </li> <li>3. 출하 농장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성명(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농장경영자 성명 등을 말한다)</li> <li>나. 생년월일(법인의 경우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li> </ol> </li> <li>다. 주소</li> <li>라. 농장식별번호</li> <li>4. 접수번호</li> <li>5. 계란·용도</li> <li>6. 산란일자</li> <li>7. 산란주령(계란을 낳을 수 있는 닭을 주(週) 수로 헤아리는 나이)</li> <li>8. 보관방법</li> <li>9. 유통기한</li> <li>10. 선별포장 증량별 수량</li> <li>11. 총수량</li> <li>12. 이력번호</li> <li>13. 신청 연월일</li> </ol>
<p>그 밖에 계란 포장처리 결과 신고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p>	

**계란이력번호표시무자의 이력번호 발급신청 및 부여 방법 등(제14조의3제3항 관련)**

**1. 이력번호 발급신청의 내용**

신청인	가.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 또는 명칭) 나. 생년월일(법인의 경우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다. 주소(연락처)
선별포장 의뢰인	가.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 또는 명칭) 나. 생년월일(법인의 경우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다. 주소(연락처)
출하 농장정보 (공통)	가. 농장명 나. 성명(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농장경영자 성명 등을 말한다) 다.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라. 농장식별번호 마. 주소(GPS좌표, 연락처)
출하 계란 정보	가. 출하 수량(개수) 나. 계란의 용도 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계란 껍데기에 표시해야 하는 산란일, 고유번호(「축산법」 제22조에 따라 발급받은 축산업 허가증 또는 축산업 등록증에 기재된 고유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사유환경번호 라. 산란주령 마. 보관방법 바. 식용란의 증량별 수량(양란, 특란, 대란, 중란, 소란)

**2. 이력번호 발급신청서의 기록·관리**

품질평가원은 제14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서면 또는 전화 등으로 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그 내용을 입력하여야 한다.

**3. 이력번호 부여 방법**

- 가. 이력번호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계란 껍데기에 표시해야 하는 산란일(월일 4자리), 고유번호(5자리) 및 사유환경번호(1자리)로 구성하여 부여한다.
- 나. 품질평가원은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신청인에게 이력번호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장애 등으로 인하여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전화 등을 통하여 통보할 수 있다.
- 다. 전산장애 등으로 인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이력번호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그 밖에 이력번호 발급신청 및 이력번호 부여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계란의 이력번호 표시방법 및 관리 등** (제14조의5제1항 관련)

<p>1. 표시방법</p>	<p>가. 최종 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가정용으로 유통·판매하는 계란을 선별 포장한 경우에는 해당 계란의 이력번호를 계란 껍데기에 표시해야 한다.</p> <p>나. 계란 껍데기에 표시된 이력번호는 이동 또는 환경의 변화로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p> <p>다. 계란 껍데기에 기계적인 방식으로 이력번호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력번호를 표시하는 잉크 등은 식품위생상 위해가 없는 것이어야 하며, 인쇄용 색소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제5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격에 따른다.</p> <p>라. 다목에 따른 기계적인 방식으로 이력번호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이력번호가 정확히 표시되는지를 새로운 이력번호가 표시될 때마다 확인·관리해야 한다.</p>
<p>2. 이력번호 관리 등</p>	<p>계란 껍데기에 표시된 이력번호가 오염 또는 훼손되어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력번호를 다시 표시해야 한다.</p>
<p>3. 그 밖에 이력번호 표시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p>	

**수입산이력축산물에 대한 이력번호 발급신청의 방법·절차 등** (제15조제2항 관련)

**1. 이력번호 발급신청의 내용**

<p>신청인</p>	<p>가. 성명(상호 또는 법인명)                  나. 생년월일(사업체인 경우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다. 소재지 라. 전화번호                  마. 영업신고(허가)번호 바. 팩스번호                  사. 업종</p>
<p>검사(반입)장소</p>	<p>가. 검사(반입) 장소명</p>
<p>수입품목</p>	<p>가. 한글명 나. 영문명                  다. 포장수량 라. 순무게(kg, t)</p>
<p>부위</p>	<p>가. 부위명 나. 부위별 수량                  다. 부위별 무게(kg, t)</p>
<p>수입내역</p>	<p>가. 화물관리번호 나. 선하증권번호(bill of lading No)                  다. 생산국 라. 상대국의 도축장명 및 가공장명</p>

**2. 신청서의 기록·관리**

검역본부장은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서면, 전화, 구술, 팩스 등으로 발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그 내용을 입력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이력번호 발급신청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수입산이력추적신물에 대한 이력번호 부여방법 등 (제16조 관련)**

1. 이력번호의 부여·통보 방법	<p>가. 이력번호는 가축종류코드 1자리, 원산지코드 2자리, 수입업자코드 4자리, 수입유통식별일련번호 5자리 등 총 12자리 코드로 구성하여 부여한다.</p> <p>나. 검역본부장은 이력번호를 부여한 후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p>
2. 수입유통식별표의 표시사항과 규격	<p>수입유통식별표에는 이력번호가 표시되어야 하고, 이력번호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눈에 띄게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활자의 크기는 10포인트 이상으로 해야 한다.</p>
3. 수입유통식별표의 부착방법	<p>가. 수입유통식별표는 수출지 라벨이 부착된 면에 부착할 수 있으나, 원래의 용기·포장에 표시된 제품명, 원재료명, 유통기한 등 날짜표시에 관한 사항 등 주요 표시 사항을 가려서는 안 된다.</p> <p>나. 수입유통식별표를 부착하였으나, 전산장에 또는 사용자의 실수 등으로 수입유통식별표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검역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그 오류를 수정할 수 있다.</p> <p>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한글표시 스타키(블임팍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력번호를 포함하여 부착해야 한다.</p>
4. 수입유통식별표의 관리	<p>검역본부장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가 수입유통식별표를 적합하게 표시하여 부착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한다.</p>
5. 그 밖에 이력번호의 부여방법 및 수입유통식별표의 표시사항과 규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거래, 포장처리 또는 판매 신고의 내용 등 (제17조제4항 및 제18조제6항 관련)**

**1. 거래 신고 내용**

항목	내용
신고인	<p>가. 성명(법인명) 나. 대표자 다.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라. 영업허가(신고)번호 마. 주소 바. 연락처</p>
출고(입고)처	<p>가. 영업장 명칭(상호) 나. 영업허가(신고)번호 다.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p>
거래처 (입고·출고)	<p>가. 상호(법인명) 나. 대표자 다.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라. 영업허가(신고)번호 마. 주소 바. 연락처</p>
거래내역 (입고·출고)	<p>가. 거래일 나. 이력관리대상가축의 종류(소, 돼지, 닭, 오리, 계란) 다. 이력(묶음)번호 라. 제품명(부위명) 마. 수량 바. 무게 사. 소, 돼지의 도체순번(도체번호)</p>

**2. 포장처리 신고 내용(식육포장처리업자만 해당한다)**

- 가. 업체명(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 나. 진화번호
- 다. 주소
- 라. 포장처리일
- 마. 이력(무음)번호
- 바. 원료 또는 부위명
- 사. 무게(kg, t)
- 아. 입고·출고(상호,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전화번호)
- 바. 의뢰업체명(상호,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전화번호)

**3. 판매 신고 내용(수입이력축산물을 취급하는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식육즉석판매 가공업자의 경우)**

항목	내용
신고인	가. 성명(법인명) 나. 대표자 다.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라. 주소 마. 연락처
출고처	가. 영업장 명칭(상호) 나.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판매처(양도)	가. 성명(법인명) 나. 대표자 다.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라. 주소 마. 연락처
판매내역(양도)	가. 판매일 나. 이력(무음)번호 다. 제품명(부위명) 라. 수량 마. 무게

**4. 신고서의 기록·관리**

제17조제1항 단서 및 제18조제5항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를 받은 경우 검역본부장 또는 품질평가원장은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그 내용을 입력해야 한다.

**5. 그 밖에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거래, 포장처리 또는 판매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식육포장처리업자 · 식육판매업자 ·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  
·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식용란선별포장업자 · 식용란수집판매업자의 이력번호  
표시 및 관리 방법**(제19조제1항 관련)

**1. 국내산이력축산물**

구분	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식용란선별포장업자·식용란수집판매업자
이력번호의 표시방법	<p>가. 도체, 포장처리된 부분육에 표시된 이력번호를 확인한 후, 축산물을 재포장하거나 식육판매업소,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로 판매 등 이동을 할 경우 동일한 이력번호를 표시해야 한다.</p> <p>나. 돼지고기를 포장처리할 경우 농장 간 혼입이 없도록 이력번호 단위로 구분·가공해야 하며, 등외등급은 별도로 구분하여 포장처리해야 한다.</p> <p>다. 닭고기, 오리고기를 포장처리할 경우 이력번호 단위로 구분·가공해야 한다.</p> <p>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포장육의 이력번호 표시는 최소 단위의 용기·포장에 대하여 동일한 이력번호로 표시해야 한다.</p> <p>마. 식육판매업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는 식육포장처리업자 등</p>	<p>계란 껍데기에 이력번호가 있는지를 확인한 후, 이력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통보된 해당 계란의 이력번호를 제14조제5항 제1항에 따라 다시 표시해야 한다.</p>

	<p>으로부터 매입한 국내산이력축산물을 판매할 경우 포장육 등에 표시된 이력번호를 확인한 후 식육판매 표시판 등에 같은 이력번호를 표시해야 한다.</p> <p>바. 이력번호가 다른 여러 개의 국내산이력축산물을 하나로 포장할 경우 묶음번호를 표시할 수 있다.</p> <p>사. 닭고기, 오리고기의 경우 도축일자가 동일한 이력번호를 하나로 포장할 경우 묶음번호를 표시할 수 있다. 다만, 부분육 생산을 위해서는 전일 도축일자(1일 이내)까지 포장 원료육을 묶음번호로 구성할 수 있다.</p> <p>아. 이력번호는 국가코드(KOR)를 제외한 12자리로 표시한다.</p>
이력번호의 관리	<p>가. 표시된 이력번호는 환경의 변화 등으로 훼손되거나 지워지지 않도록 하며, 이력번호가 오염 또는 훼손되어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시 표시해야 한다.</p> <p>나. 거래·판매 후 남은 국내산이력축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이력번호를 표시하여 보관해야 한다.</p>
	<p>그 밖에 이력번호를 표시하는 방법과 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식육판매업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식육란선별포장업자, 식용란수집판매업자가 식육판매 표시판 또는 라벨 등을 이용하여 이력번호를 표시하는 세부적인 방법에 관하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p>

2. 수입산이력추산물

구분	식육포장처리업자·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식육판매업자·식육부산물판매업자·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이력번호의 표시방법	<p>가. 수입산이력추산물을 포장 처리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장에 입고된 수입산이력추산물의 이력번호와 같은 이력번호를 포장육 등에 표시해야 한다.</p> <p>나. 이력번호의 표시는 판매하는 포장육의 최소 단위의 용기·포장에 해야 한다.</p> <p>다. 이력번호가 서로 다른 여러 개의 수입산이력추산물을 한 개의 용기·포장에 표시하려는 경우 묶음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p> <p>라. 용기·포장에 표시된 이력번호가 오염 또는 훼손되어 확인이 어려운 경우 원래의 이력번호를 다시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식별하기 쉽게 표시해야 한다.</p> <p>마. 수입산이력추산물을 원료로 사용하여 포장육을 표시하여 보관해야 한다.</p>	<p>가. 수입산이력추산물을 진열대에 진열하거나 비닐 등으로 포장하여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장에 입고된 수입산이력추산물의 이력번호와 같은 이력번호를 식육판매 표지판 또는 비닐 포장 등에 표시해야 한다.</p> <p>나. 이력번호가 서로 다른 여러 개의 수입산이력추산물을 하나의 묶음번호로 표시할 수 있다.</p> <p>다. 수입산이력추산물을 진열하여 판매하는 경우 식별하기 쉽도록 식육 판매표시판을 해당 수입산 이력추산물의 전면에 설치해야 한다.</p> <p>수입산이력추산물을 보관하는 경우 이력번호를 표시하여 보관해야 한다.</p>
이력번호의 관리	<p>표시된 이력번호는 환경의 변화 등으로 훼손되거나 지워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p>	<p>표시된 이력번호는 환경의 변화 등으로 훼손되거나 지워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p>
<p>그 밖에 이력번호를 표시하는 방법과 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식육판매업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가 식육판매표지판 또는 라벨 등을 이용하여 이력번호를 표시하는 세부적인 방법에 관하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p>		

[별표 14] <개정 2022. 1. 25.>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묶음번호 표시 및 관리 방법

(제19조제2항 관련)

1. 국내산이력추산물

이력번호의 표시방법	<p>가. (공통)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가 여러 개의 다른 이력관리대상축산물(세란은 제외한다)을 한 개로 포장 처리·판매할 경우 이력번호를 전부 표시하거나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묶음번호 구성내역서를 기록한 후 묶음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p> <p>나. (공통) 여러 개의 다른 이력번호를 하나의 포장지로 묶는 경우 소포장지마다 해당 이력번호를 표시해야 한다.</p> <p>다. (공통) 묶음번호를 구성한 이력번호는 다시 묶음번호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묶음번호 구성내역에 대하여 이력관리시스템으로 전산신고를 하는 폐지고기의 경우 한 번 더 묶음번호를 구성할 수 있다.</p> <p>라. (쇠고기) 국내산 쇠고기 등급표시 의무 부위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5호가목에 제척되지 않는 범위에서 묶음번호로 표시할 수 있다.</p> <p>마. (쇠고기)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는 소의 종류가 같을 때에만 묶음번호를 구성할 수 있다.</p> <p>바. (폐지고기) 폐지고기의 묶음번호 가공 시 성별, 등급별로 묶음번호를 구성할 것을 권장한다.</p> <p>사. (닭고기, 오리고기) 도축일자가 동일한 경우에만 묶음번호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부분육 생산을 위해서는 전일 도축일자(1일 이내)까지 포장 원료육을 묶음번호로 구성할 수 있다.</p>
이력번호의 관리	<p>가. 묶음번호를 구성하는 쇠고기의 개체는 20마리 이하로 한다. 다만, 여러 마리의 쇠고기를 혼합하여 포장하는 갈비, 세철육(갈비, 자른고기), 분쇄육 등은 50마리 이하로 구성할 수 있다.</p> <p>나. 묶음번호를 구성하는 폐지고기의 이력번호는 30개 이하로 해야 한다.</p> <p>다. 묶음번호를 구성하는 닭고기·오리고기의 이력번호는 10개 이하로 해야 한다.</p> <p>라.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와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는 구매자 등이 요청한 경우 별지 제21호서식의 묶음번호 구성내역서를 지체</p>

	<p>없이 제공해야 한다.</p> <p>마. 영 제4조제1호에 따른 전산신고 대상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 및 식육축색판매기공업자는 소비자가 인터넷 등으로 묽음번호를 조회하여 이력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묽음번호 구성내역서를 전산신고 해야 한다.</p>																		
<p>묽음번호의 구성체계</p>	<p>가. 묽음번호는 아래 구성체계와 같이 L을 포함한 15자리 문자·숫자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이력관리시스템에서 부여받은 영업장의 고유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영업자코드를 사업자등록번호의 조합으로 표시할 수 있다.</p> <p>나. 묽음번호 구성체계</p> <table border="1" data-bbox="531 1058 620 1693"> <tr> <td>구분</td> <td>묽음고정코드</td> <td>구분코드</td> <td>묽음날짜코드</td> <td>영업자코드</td> <td>일련번호</td> </tr> <tr> <td>길이</td> <td>1</td> <td>1</td> <td>6</td> <td>4</td> <td>3</td> </tr> <tr> <td>타입</td> <td>영문자(L)</td> <td>숫자</td> <td>숫자</td> <td>숫자</td> <td>숫자</td> </tr> </table> <p>1) 묽음고정코드는 영문자 'L'을 표기한다.</p> <p>2) 구분코드는 최고기는 '0'으로, 폐지코기는 '1'로, 닛고기는 '2'로, 오리고기는 '5'로 표기한다.</p> <p>3) 묽음날짜는 연도 2자리, 월 2자리, 일 2자리로 표기한다.</p> <p>4) 영업자코드는 다음과 같이 부여한다.</p> <p>가) 영 제4조제1호에 따른 전산신고 대상 영업자의 경우: 이력관리시스템으로 부여 받은 영업장의 고유번호를 사용한다.</p> <p>나) 영 제4조제1호에 따른 전산신고 대상 영업자가 아닌 경우: 세무서에 부여 받은 사업자등록번호 10자리 숫자 중 끝에서 마지막 한 자리 숫자를 제외한 4자리 숫자를 사용한다.</p> <p>5) 일련번호는 묽음상품의 날짜별로 중복되지 않도록 영업자가 자체적으로 부여한다.</p>	구분	묽음고정코드	구분코드	묽음날짜코드	영업자코드	일련번호	길이	1	1	6	4	3	타입	영문자(L)	숫자	숫자	숫자	숫자
구분	묽음고정코드	구분코드	묽음날짜코드	영업자코드	일련번호														
길이	1	1	6	4	3														
타입	영문자(L)	숫자	숫자	숫자	숫자														
<p>그 밖에 묽음번호의 표시 및 관리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p>																			

## 2. 수입산이력축산물

<p>묽음번호의 표시방법</p>	<p>가.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및 식육축색판매기공업자는 여러 개의 다른 수입산이력축산물을 한 개로 포장 처리·판매할 경우 이력번호를 전부 표시하거나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묽음번호 구성내역서를 기록</p>
-------------------	---

	<p>한 후 묽음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p> <p>나. 이력번호가 다른 여러 수입산이력축산물을 하나의 포장지로 묽음번호 소포장지마다 해당 이력번호 전부 또는 묽음번호를 표시해야 한다.</p> <p>다. 원산지가 같은 수입산이력축산물만 묽음번호로 구성할 수 있다.</p>																												
<p>묽음번호의 관리</p>	<p>가. 묽음번호를 구성하는 수입산이력축산물의 이력번호는 5개 이하로 한다.</p> <p>나. 묽음번호로 구성된 수입산이력축산물을 이용하여 다시 묽음번호를 구성해서는 안 된다.</p> <p>다.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및 식육축색판매기공업자는 구매자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별지 제21호서식의 묽음번호 구성내역서를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한다.</p>																												
<p>묽음번호의 구성체계</p>	<p>가. 묽음번호는 아래 구성체계와 같이 24자리 문자 또는 숫자로 표시해야 한다.</p> <p>다만, 이력관리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수기로 식육판매 표시판 등에 표기할 경우에는 묽음번호 표시는 Lot를 포함한 묽음날짜와 일련번호를 조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1는 수입을 의미한다).</p> <p>나. 묽음번호 구성체계</p> <table border="1" data-bbox="813 201 931 846"> <tr> <td>구분</td> <td>기관코드</td> <td>구분코드</td> <td>영업자코드</td> <td>영업장코드</td> <td>묽음날짜</td> <td>일련번호</td> </tr> <tr> <td>길이</td> <td>1</td> <td>2</td> <td>10</td> <td>3</td> <td>6</td> <td>2</td> </tr> <tr> <td>타입</td> <td>영문자</td> <td>숫자</td> <td>숫자</td> <td>숫자</td> <td>숫자</td> <td>숫자</td> </tr> <tr> <td>코드</td> <td>A</td> <td>고정</td> <td>사업등록번호</td> <td>변동</td> <td>변동</td> <td>변동</td> </tr> </table> <p>1) 구분코드는 각각 수입 최고기를 '41'로 하고, 수입 폐지코기를 '42'로 한다.</p> <p>2) 영업장코드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부여받은 사업자등록번호의 숫자만 표기한다.</p> <p>3) 영업장코드는 영업자가 자체적으로 부여하여 활용하며, 단일 영업장인 경우 "000"으로 표기한다.</p> <p>4) 묽음날짜는 연도 2자리, 월 2자리, 일 2자리로 표기한다.</p> <p>5) 일련번호는 묽음상품의 날짜별로 중복되지 않도록 영업자가 자체적으로 부여한다.</p> <p>그 밖에 묽음번호의 표시 및 관리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p>	구분	기관코드	구분코드	영업자코드	영업장코드	묽음날짜	일련번호	길이	1	2	10	3	6	2	타입	영문자	숫자	숫자	숫자	숫자	숫자	코드	A	고정	사업등록번호	변동	변동	변동
구분	기관코드	구분코드	영업자코드	영업장코드	묽음날짜	일련번호																							
길이	1	2	10	3	6	2																							
타입	영문자	숫자	숫자	숫자	숫자	숫자																							
코드	A	고정	사업등록번호	변동	변동	변동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식품접객업자·집단급식소운영자·통신판매업자의 이력번호 표시방법(제21조 관련)**

**1. 영 제5조제1호에 해당하는 휴게음식점영업자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자**

가. 이력관리대상축산물(부산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을 조리·판매하려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에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이력번호를 표시하고 게시해야 한다.

- 1) 메뉴판 또는 메뉴게시판
- 2) 거래명세서 또는 거래영수증
- 3)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제30조에 따른 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확인증
- 4) 이력관리대상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 출력물
- 5) 별도 게시판 또는 풋말
- 6) 인터넷 홈페이지(해당 영업장 정보가 포함된 홈페이지)
- 7)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제품 표시사항을 포함한 스티커 또는 라벨

나. 제1호가목에 따른 이력관리대상축산물 이력번호 표시를 메뉴판, 메뉴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외의 방법으로 게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장소 중 한 곳 이상에 비치하여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1) 계산대
- 2) 출입문 주변
- 3)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

다. 이력번호는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공급받은 일자를 기준으로 7일 이내에 모두 게시하고, 해당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소진한 시점까지 게시하도록 한다. 다만, 영업자가 공급받은 이력관리대상축산물 모두를 게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음식으로 판매·제공할 때 게시할 수 있다.

라. 이력번호가 다른 2개 이상의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모든 이력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2. 영 제5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탁급식영업자 및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가. 「학교급식법」 제4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급식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이력번호를 제1호가목에 따른 방법으로 급식일을 기준으로 7일 이내에 표시하고 게시해야 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 등(학교 홈페이지 등 학교명이 포함된 곳만 해당한다)을 통하여 해당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이력번호를 조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력번호 게시를 대신할 수 있다.

나. 이력번호가 다른 2개 이상의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모든 이력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3. 영 제5조제4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

가. 통신판매업자는 통신판매 수단을 통하여 이력번호 표시제품임을 표시·고지하고 배송 상품에 해당 이력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나. 인터넷, TV, 잡지 등 통신판매 수단의 특성상 문자로 정보를 표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 표시정보 주위에서 자막, 별도의 칸 등을 이용하여 '이력번호 표시 제품임'을 표시해야 한다.

- 1) 표시 시기: 전자매체의 경우 상품이 화면에 표시되는 시점부터 표시
  - 2) 표시 문구(예시): 이력번호 표시제품임. 이력번호는 배송된 상품에 표시됨.
- 다. 진화 등 통신판매 수단의 특성상 문자로 정보를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력번호 표시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반복적으로 말로 설명해야 한다.
- 1) 설명 방법: 말의 속도 및 소리의 크기는 상품 설명과 동일하게 하고, 반복적(1회당 2번 이상)으로 설명
  - 2) 설명 문구(예시): 본 상품은 이력번호가 표시된 제품이며, 이력번호는 배송되는 상품에 표시됩니다.

**4. 그 밖에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게시 및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장부 및 거래내역서의 기록방법 등(제26조 관련)

### 1.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록·관리

가. 가축거래상인

가축거래상인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출생·폐사·양도·양수·이동이 있는 이력 관리대상가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장부(「축산법 시행규칙」 제37조의4제2호에 따른 관리대장을 의미한다) 또는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날짜별로 기록·관리해야 하고, 기록일로부터 1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나. 가축시장개설자

가축시장개설자는 제6조제3항에 따른 가축의 거래내역을 장부 또는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날짜별로 기록·관리해야 하고, 기록일로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한다.

다. 도축업자

도축업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도축처리 및 경매 결과와 장부 또는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날짜별로 기록·관리해야 하고, 기록일로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한다.

라. 식육포장처리업자

1) 영 제4조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자는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포장 처리한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이력관리대상축산물 포장처리 실적을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포장처리일별로 기록·관리해야한다.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국내산이력축산물은 별지 제10호서식, 수입산이력축산물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실적을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거래일별로 기록·관리해야 하고, 기록일로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한다.

2) 영 제4조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자 외의 식육포장처리업자는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포장 처리하거나 거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이력관리대상축산물 포장처리 실적과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이력관리대상축산물 판매·반출 실적을 자체적으로 장부에 날짜별로 기록·관리하거나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관리해야 한다. 다만, 포장처리

및 판매·반출 실적의 기록·관리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2에 따라 원료수불, 생산·작업 및 거래내역 등에 관한 서류의 작성(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서식의 기재사항 모두를 기록·관리한 경우에만 해당한다)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기록일로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한다.

3) 식육포장처리업자가 영 제5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자, 집단급식소운영자, 통신판매업자에게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판매 실적을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판매일별로 기록·관리해야 하고, 기록일로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한다.

마. 계란이력번호표시 의무자

1) 영 제4조에 따른 식용란선별포장업자, 식용란수집판매업자(법 제11조의2제2항 및 영 제2조의3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받은 농장 및 동물복지축산 인증을 받은 농장으로서 직접판매를 하기 위하여 식용란수집판매업 신고를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계란을 선별·포장 처리한 경우 별표 9의2에 따른 계란의 선별포장 결과 등을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선별포장처리일별로 기록·관리해야 한다. 이력관리대상축산물(계란)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국내산이력축산물은 별지 제10호의2서식에 따른 실적을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거래일별로 기록·관리해야 한다. 식용란선별포장업자는 선별·포장 처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일로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하고, 식용란수집판매업자는 식용란의 수집·포장 및 판매내역 중 매입에 관한 기록은 매입한 날로부터 1년간, 매출에 관한 기록은 매출한 날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한다.

### 2.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기록·관리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8조에 따른 거래내역서에 이력번호를 거래일별로 구분하여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관리해야 하고, 기록사항을 수입일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한다.

### 3.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기록·관리

가. 영 제4조에 따른 식육판매업자,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식육축산물매가공업자 및 식용란수집판매업자는 이력관리대상

축산물을 매입한 경우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8조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에 따른 거래내역서에 기재된 이력번호를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날짜별로 기록·관리하고,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에게 판매·반출한 경우에는 수입산 이력축산물은 별지 제8호서식, 국내산이력축산물은 별지 제10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에 따른 판매·반출 실적을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관리해야 하고, 매입에 관한 기록은 매입한 날로부터 1년간, 매출에 관한 기록은 매출한 날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한다.

나. 영 제4조에 따른 식육판매업자,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및 식용란수집판매업자 외의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취급하는 식육판매업자, 식육부산물판매업자,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및 식용란수집판매업자는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매입한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8조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에 따른 거래내역서에 이력번호를 자체적으로 기록·관리하거나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관리하고,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에게 판매·반출한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판매·반출 실적을 자체적으로 장부에 거래일별로 기록·관리하거나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관리해야하고, 매입에 관한 기록은 매입한 날로부터 1년간, 매출에 관한 기록은 매출한 날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한다. 다만, 판매·반출 실적의 기록·관리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에 따른 거래내역서의 작성(별지 제22호서식의 기재 사항 모두 기록·관리한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 식육판매업자, 식육부산물판매업자,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및 식용란수집판매업자가 영 제5조에 따른 식품점객업자, 집단급식소운영자, 통신판매업자에게 수입산이력축산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판매 실적을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판매일별로 기록·관리해야 하고, 매입에 관한 기록은 매입한 날로부터 1년간, 매출에 관한 기록은 매출한 날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한다.

■ 가족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을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 1. 25.>

**농장식별번호 발급신청서(소·돼지)**

\* 뒷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양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① 상명 ③ 주소(거주지) ②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④ 전화번호		
⑤ 사육가족의 종류 및 사육양식	[ ] 소 [ ] 돼지 [ ] 자가사육 [ ] 위탁사육 [ ] 자가사육+위탁사육 [ ] 방목지 [ ] 종축장 [ ] 위탁사육 [ ] 위탁사육 [ ] 자가사육+위탁사육 [ ] 종돈장 [ ] 기타		
농장 명칭:			
사육시설 주소:			
⑥ 가족 사육시설	관리자 성명:	관리자 주민등록번호:	
	관리자 주소:	(전화번호: )	
	GPS좌표:		
	사육개시 연월일:	[ ] 하가 [ ] 등락 [ ] 기타	
⑦ 허가등록사항	[ ] 하가 [ ] 등락 [ ] 기타	⑧ 고유번호	돼지
⑨ 사육규모	종류	미릿수	소
	소계	후모돈	세부 명세(미릿수)
	한우	모돈	후모돈
	목우	소계	모돈
	젓소	소계	모돈
	한우	목우	젓소
	목우	젓소	비육돈

가족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신칭인 (서명 또는 인)  
 대리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 신청인 전화번호

신청인 신칭인 (서명 또는 인)  
 대리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 신청인 전화번호

**축산물품질평가원**  
 위탁기관의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종질지(80g/㎡)]

(뒤쪽)

**개인정보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서**

-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사육정보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이력관리, 축산물우수관리, 축산물안전관리, 가축병역지원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가족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가축이력관리, 축산물안전관리, 방역 효율성 등 축산업 및 관련 산업 발전과 소비자의 이익 보호 및 증진 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권한의 위임·위탁된 기관에게 제공 및 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는 농장식별번호 등록이 완료된 날부터 유효하며 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등록 말소 후에도 가족이력 정보관리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 \*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가족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 사육·이동, 도축 등 가족이력 정보를 활용하는 가족질병 및 축산 관련 각종 지원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활용 동의자)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b>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b>					
신청인은 이 거의 의무절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직원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만원인 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자)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유의 사항**

- ①~④란은 신청인에 대한 기초정보를 기재하며, 위탁사육인 경우 위탁자의 기초정보도 기재해야 합니다.
  - ⑤란에는 사육가족의 종류 및 신청인이 자가·위탁사육을 분별하여 하고, 출육장 또는 출돈장일 경우에 [ ]에 √ 표를 합니다.
  - ⑥란에는 신청인이 소·우 및 관리하는 가족사육시설에 기초정보를 기재하고 관리자는 농장경영자와 계약 또는 가족관계 등에 의해 실제적으로 농장을 관리하는 자를 말합니다.
  - ⑧란에는 축산업 허가증 또는 축산업 등록증에 기재된 고유번호 5자리로 적습니다.
  - 사용규모는 ⑨란에 소 또는 돼지의 사용마릿수를 기재합니다. 돼지의 경우 항목별 기재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 일반종: 우리나라, 교양의 제리종을 제외한 사양종 및 모든 교잡종
    - \* 사양종: 대우크서(Large Yorkshire), 핀드레이스(Landrace), 두록(Duroc), 햄프셔(Hampshire), 웰시(Welsh), 피트리인(Pietrain), 스포티드(Spotted), 버크셔(Berkshire)
- 나. 제리종(Korean native pig): 한국축종개발협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른 제리종 교양의 외모기준을 유지하는 돼지이어야 하고, 실격조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다. 멧돼지: 가족화되어 집에서 사육하는 멧돼지
- 라. 모돈: 자돈을 생산하고 있는 번식용씨돼지 마릿수
- 마. 후모돈: 번식에 이용할 목적으로 사육 중인 후모돈 마릿수
- 바. 종돈: 번식에 이용할 목적으로 사육 중인 종돈 마릿수
- 사. 지돈(2개월 미만), 육성돈(2~4개월 미만), 비육돈(4~6개월 이상)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적정 여부 검토 및 확인	→	농장식별번호 및 발급증 교부
신청인		처리기관 (축산물품질평가원, 소·위탁기관)		처리기관 (축산물품질평가원)		발급기관 (축산물품질평가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종질지(80g/㎡)]

■ 가족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을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23. 4. 27.>

**농장식별번호 발급신청서(담·오리)**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① 상 평(경양자)										
② 전화번호										
신청인										
③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④ 주소(가주소)										
축산업 분류										
⑤ 축산업 분류 및 축가축의 종류										
축산업 분류 [ ] 가축사육업 [ ] 총축업 [ ] 부화업 기금의 종류 [ ] 육계 [ ] 산란계 [ ] 토종담 [ ] 오리 육계 [ ] 실용계 [ ] 산계 [ ] 종계 [ ] 원종계 [ ] 원종계 산란계 [ ] 산용계 [ ] 종계 [ ] 원종계 [ ] 원종계 세부종류 토종담 [ ] 실용계 [ ] 종계 [ ] 원종계 [ ] 순계 오리 [ ] 육용오리 [ ] 종오리 [ ] 원종오리										
농장명칭:										
사육시설 소재지: _____										
관리자 성명: _____										
관리자 주소: _____										
GPS좌표: _____										
⑥ 가족 사육시설										
관리자 주민등록번호: _____										
(전화번호: _____)										
휴대전화번호: _____										
사육개시 연월일: _____										
⑦ 사육규모(평균)										
<b>사육현황</b>										
⑧ 허가등록사항 [ ] 허가 [ ] 등록 [ ] 기타										
⑨ 고유번호										
⑩ 사육환경 [ ] 방사사육 [ ] 축사 내 방사 [ ] HACCP [ ] 친환경 [ ] 동물복지 [ ] 개선된 케이지 [ ] 기존 케이지 [ ] 무항생제 [ ] 유기축산										
⑬ 사육규모(상세)	육계	실용계	주령	마릿수	종계	주령	마릿수	원종계	주령	마릿수
			원종계	주령	마릿수	원종계	주령	마릿수		
	산란계	실용계	주령	마릿수	종계	주령	마릿수	원종계	주령	마릿수
			원종계	주령	마릿수	원종계	주령	마릿수		
	토종담	실용계	주령	마릿수	종계	주령	마릿수	순계	주령	마릿수
			원종계	주령	마릿수	원종계	주령	마릿수		
	오리	육용오리	주령	마릿수	종오리	주령	마릿수	원종오리	주령	마릿수
			원종오리	주령	마릿수	원종오리	주령	마릿수		

「가족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_\_\_\_\_ 년 월 일  
 대리 신청인 \_\_\_\_\_ (서명 또는 인)  
 대리 신청인 전화번호 \_\_\_\_\_ (서명 또는 인)

축산물품질평가원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신청인 제출서류	축산업 허가신청서 사본(축산업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또는 축산업 등록신청서 사본(축산업 등록을 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담당 직원 확인사항	축산업 허가신청서 사본(축산업 허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축산업 등록증(축산업 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b>개인정보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서</b>			
1.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사육정보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이력관리, 축산물수급관리, 축산물안전관리, 가축방역지원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가족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가족이력관리, 축산물안전관리, 방역 총성 등 축산업 및 관련 사업 발전과 소비자의 이익 보호 및 진진 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권한의 위임·위탁된 기관에게 제공 및 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는 농장식별번호 등록이 완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 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유류, 말소 후에도 가족이력 정보 관리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가족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사육·이동·도축 등 가족이력 정보를 활용하는 가족식별명 및 축산 관련 각종 지원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활용 동의자)	(신청인) _____ (서명 또는 인)		
<b>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b>			
신청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직원 직위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자)	(신청인) _____ (서명 또는 인)		
<b>유의 사항</b>			
1. ①~④란은 신청인(위탁농장은 위탁자, 자가위탁농장은 경영주 및 위탁자)에 대한 기초정보를 적습니다. 2. ⑤란에는 축산업 분류 및 사육가족의 종류에 따라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3. ⑥란에는 신청인이 소용 및 관리하는 가족사육시설에 대한 기초정보를 적습니다(관리자는 농장경영주와 계약 또는 가족관계 등에 의해 실질적으로 농장을 관리하는 자를 말합니다). 4. ⑦란에는 가족사육시설에서 사육 가능한 평균 마릿수를 적습니다. 5. ⑧란에는 축산업 허가증 또는 축산업 등록증에 기재된 고유번호 5자리를 적습니다. 6. ⑨(방사사육) 동물보호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2호를 말한다) 별표 6의 산란계의 자 유양육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축사 내 방사) 축사내 개방형 케이지를 포함, (개선된 케이지) 사육밀도가 마리당 0.075㎡ 이상인 경우, (기존 케이지) 사육밀도가 마리당 0.05㎡ 이상인 경우 (선택사항). 7. ⑩(순계어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등 해당 가족사육시설에 해당하는 인증사항을 선택합니다 (선택사항). 8. ⑪(사육규모(상세)): 농장경영주(관리자) 등이 신고하는 현재 사육하고 있는 마릿수			
육계, 토종담	○ 고기를 이용할 목적으로 사육하는 담 및 그 담의 종계·원종계·순계		
산란계	○ 식용계란(판)을 위한 식용 유정란도 포함을 생산하기 위하여 사육하는 담 및 그 담의 종계·원종계		
오리	○ 고기를 이용할 목적으로 사육하는 오리 및 그 오리의 종오리·원종오리		
<b>처리 절차</b>			
신청서 작성	→ 접수	→ 적정 여부 검토 및 확인	→ 농장식별번호 및 발급교부
신청인	처리 기관 (축산물품질평가원)	처리 기관 (축산물품질평가원)	발급 기관 (축산물품질평가원)

■ 가족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2. 1. 25.>

**[농장식별번호의 발급 신청사항  
주소, 종돈의 출생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주소, 종돈의 폐사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양도·양수·이동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수입·수출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가족사항의 거래내역**

\* [ ]는 해당란에 √ 표시하며,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농장식별번호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영업의 종류 및 허가(신고)번호				
개체식별번호 또는 이력번호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변경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가족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3항,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 제6조제5항에 따라 신청사항 또는 신고사항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b>축산물품질평가원장 위탁기관의 장 중등등록기관의 장 중등수출입 신고기관의 장</b>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및 담당직원 확인사항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개인정보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서**

1.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사육정보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 이력관리, 축산물수급관리, 축산물안전관리, 가족방역지원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가족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가족이력관리, 축산물안전관리, 방역 효율성 등 축산업 및 관련 산업 발전과 소비자의 이익 보호 및 증진 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권한의 위임·위탁된 기관에게 제공 및 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는 농장식별번호 등록이 완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등 특정모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등록 말소 후에도 가족이력 정보관리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가족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 사육·이동, 도축 등 가족이력 정보를 활용하는 가족질병 및 축산 관련 각종 지원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활용 동의자)	(신청인)
<b>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b>	

신청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직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자)	(신청인)
<b>유의 사항</b>	

- 공통사항  
가. 축산농장의 경우 농장식별번호는 반드시 기재합니다.  
나. 변경되는 변경 전 등록내용을 왼쪽에 기록하고 변경 후 등록내용을 오른쪽에 기록합니다.  
2. 농장식별번호 변경신고 시  
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동의하지 않거나, 해당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축산물품질평가원은 변경되는 사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하거나 관련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작정 여부 검토 및 확인	→	결과 반영 및 발급증 교부
신청인		처리기관 (축산물품질평가원, 위탁기관, 중등등록기관, 중축 등 수출신고기관)		처리기관 (축산물품질평가원, 위탁기관, 중등등록기관, 중축 등 수출신고기관)		처리기관 (축산물품질평가원, 위탁기관, 중등등록기관, 중축 등 수출신고기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가죽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9. 12. 31.>

**소의 { 출생·수입·수출  
양도·양수·이탈 } 폐사 신고서**

\* 뒤쪽의 신고서 작성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양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농장 경양자 등 정보	① 성명 ②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③ 법인 명칭 (가축거래상인 고유번호) ④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⑤ 농장식별번호 (전화번호: ⑥ 위탁기관명)			
가축 사육시설 정보	⑦ 사육시설 주소 ⑧ 사육 개시 연월일 ⑨ 관리자 성명 ⑩ 관리자 생년월일 ⑪ 관리자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출생 수입 수출 신고	⑫ 출생·수입·수출 연월일	⑬ 소의 종류	1. 한우	2. 젖소	3. 육우	4. 수입소	5. 기타
	⑭ 양수 구분	1. 암	2. 수	⑮ 부 개체식별번호	⑯ 모 개체 식별번호	⑰ 자가 생산	⑱ 데리모 생산
양도·양수 이탈(임고·출고) 신고	⑲ 송아지 개체식별번호	⑳ 원산지	⑳ 출생·수입·수출 연월일 ㉑ 양도(출고)·양수(임고) 구분 1. 양도(출고) 2. 양수(임고) ㉒ 양도(출고)·양수(임고) 연월일 및 장소 ㉓ 양도(출고)·양수(임고)·양수(임고)·상행(상호) ㉔ 주수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양도·양수 이탈(임고·출고) 신고	㉕ 양도(출고)·양수(임고) 구분	㉖ 개체식별번호	㉗ 양도(출고)·양수(임고)·양수(임고)·상행(상호) ㉘ 주수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㉙ 양도(출고)·양수(임고)·양수(임고)·상행(상호)	㉚ 주수	㉛ 폐사일	㉜ 폐사식별번호 ㉝ 폐사 원인 1. 법정가축전염병 살처분 2. 폐기처리(업체명: ) 3. 사고 4. 기타 ㉞ 폐사처리방법 1. 매몰(장소: ) 2. 폐기처리(업체명: ) 3. 사고 4. 기타 5. 기타 (전화번호: )			

가죽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신고인  
대리 신고인  
대리 신고인 (전화번호)

OO축산업협동조합장  
OO농업협동조합장  
OO협동조합  
OO법인(축산 관련 법인)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유의사항**

- 출생·수입·수출신고는 ①~⑯란을 적습니다. ①~④란에는 농장경양자의 인적사항을 적고, ⑤~⑯란은 가축사육시설의 정보인 농장식별번호, 관리자의 인적사항 등을 적습니다. ⑩란의 소의 종류 및 ⑭란의 양수 구분은 해당되는 번호에 ○를 표시해야 하며, ⑯란은 본인이 알 수 있는 경우에만 적고, ※ 송아지 개체식별번호는 귀표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만 적으며, 원산지란은 수입소만 해당합니다. ⑰ 모 개체식별번호는 "자가 생산란"에 있는 송아지의 모(母)의 개체식별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자가 생산이 아닌 데리모를 통해 생산한 경우, 자가생산란에는 난소를 제공한 양수의 개체식별번호를 적고, "데리모 생산"란에는 실제 출산한 양수의 개체식별번호를 적습니다.
  - 양도·양수 및 이동(반입, 반출) 신고는 ①~⑯란과 ⑰~⑳란을 적습니다. 또한, ㉗란의 양도(반입)·양수(반출) 구분은 해당되는 번호에 ○를 표시해야 하며, ㉘란의 농장식별번호(또는 가축거래상인 고유번호)는 양도·양수·이동되는 상태, 가축사육시설의 농장식별번호(또는 가축거래상인 고유번호)를 기재합니다.
  - 폐사신고는 ①~⑯란과 ㉜란을 적고, ㉝란의 폐사 원인은 해당되는 번호에 ○를 표시하며, ㉞란의 폐사처리방법은 매몰인 경우 장소를 적고, 폐기(소각, 재활용)인 경우 업체명과 연락처를 적습니다.
  - 이 신고서는 경영자들이 직접 작성하며, 본인이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는 대리인이 작성하고 대리인의 성명과 연락처를 적습니다.
  - 전화 및 구술의 방법으로 신고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즉시 신고서의 해당란에 그 내용을 적어서 보관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신고접수자가 대리 날인할 수 있습니다.
  - 여러 마리의 송생 등 신고(기존 소의 신고를 포함합니다)를 할 경우 해당 신고 항목을 표시한 별도의 서식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의 작성 참고사항
    - 12자리 기체(KOR 국가코드를 제외한 나머지 12자리)
    - 기입 예) KOR 002 123 456 785 ⇒ 002 123 456 785
    - 소의 종류: 해당하는 숫자에 ○표 표시(1. 한우, 2. 젖소, 3. 육우, 4. 수입소)
    - 양우: 종축등록기관의 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한우기준에 부합하는 소
    - 젖소: 착유하고 있거나 착유를 위하여 사육중인 소, 젖소 암소 중 송아지를 낳은 경력이 있는 소
    - 육우: 젖소 중 착유한 경력이 없는 암소, 젖소 암소 중 송아지를 낳은 경력이 없는 소, 젖소수소, 그 밖의 식용 소
    - 수입소(수입국명): 동물검역관이 수입소로 인정하는 소
- 다. 부 개체식별번호: 해당 소의 개체식별번호(영액번호)를 포함한다)  
라. 모 개체식별번호: 해당 소를 분만한 어미 소의 개체식별번호(수정란 이식의 경우 난소를 제공한 양수의 개체식별번호를 포함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가족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9. 12. 31.>

[ ] 출생 · 수입 · 수출 신고서  
중돈 [ ] 양도 · 양수 · 이동 신고서  
[ ] 폐사

\* 뒤쪽의 신고서 작성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농장 경영자 등 정보	① 성명	②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③ 법인 명칭	(가족거래상인 고유번호)		
	④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공통 신고 사항	⑤ 농장식별번호			
	⑥ 사육 주소			
	⑦ 사육 개시 연월일			
	⑧ 관리자 성명	⑨ 관리자 생년월일		
	⑩ 관리자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출생 수입 수출 신고	⑪ 개체식별번호	⑮ 중돈의 종류(1. 수중, 2. 수인중돈, 3. 번식용수면지, 4. 기타) <input type="checkbox"/> 대요크셔(Large Yorkshire), <input type="checkbox"/> 램드레이스(Landrace), <input type="checkbox"/> 듀록(Duroc), <input type="checkbox"/> 햄프셔(Hampshire), <input type="checkbox"/> 웰시(Welsh), <input type="checkbox"/> 피아트레인(Pietrain), <input type="checkbox"/> 스폿타이드(Spotted), <input type="checkbox"/> 버크셔(Berkshire) <input type="checkbox"/> 재래종
	⑫ 1. 혈통·고등 등록일(등록번호):	
	2. 번식용사태지 혈통 확인일(확인번호):	
	⑬ 출생(수입·수출) 연월일 * 수입 또는 수출 원산지(국가명)	
	⑭ 양수 구분	1. 암 ( 두 ) 2. 수 ( 두 )

양도·양수 이동(출고·입고) 신고	⑯ 양도(출고)·양수(입고) 구분	⑰ 개체식별번호
	1. 양도 ( 두 ) 2. 양수 ( 두 )	
	⑱ 양도(출고)·양수(입고) 연월일 및 장소	⑲ 농장식별번호(또는 가족거래상인 고유번호)
	⑳ 양도자(출고자)·양수자(입고자) 성명(성호)	㉑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㉒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폐사 신고	㉓ 개체식별번호	㉔ 폐사일
	㉕ 폐사 원인	1. 법정가족전염병 살처분 2. 일반질병 3. 사고 4. 기타
	㉖ 폐사처리방법	1. 매몰(장소: ) 2. 폐기처리(업체명: ) (전화번호: )

가족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리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신고인 전하  
번호

중돈등록기관의 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유의사항

- 출생·수입·수출신고는 ①~⑭란을 적습니다. ①~④란에는 농장경영자의 인직사항을 적고, ⑤~⑭란은 가족사육시설의 정보인 농장식별번호, 관리자의 인직사항 등을 적습니다. ⑮란의 혈통·고등 등록일(등록번호) 또는 번식용사태지 혈통확인일(확인번호) 적으며, ⑯란의 양수구분 및 ⑰란의 중돈 종류는 해당되는 번호에 ○를 표시해야 하며, 중돈의 품종을 아는 경우 √ 를 표시합니다. ⑮~⑰란은 본인이 알 수 있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 양도·양수·이동(반입·반출) 신고는 ①~⑭란과 ⑰~⑲란을 적습니다. 또한, ⑲란의 양도(반입)·양수(반출) 구분은 해당되는 번호에 ○를 표시해야 하며, ⑲란의 농장식별번호(또는 가족거래상인 고유번호)는 양도·양수·이동되는 상태 가족사육시설의 농장식별번호(또는 가족거래상인 고유번호)를 기재합니다.
- 폐사신고는 ①~⑭란과 ㉓란을 적고, ㉔란의 폐사 원인은 해당되는 번호에 ○를 표시하며, ㉔란의 폐사처리방법은 매몰인 경우 장소를 적고, 폐기처리(소각, 재황양)인 경우 업체명과 연락처를 적습니다.
- 이 신고서는 경영자들이 직접 작성하되 본인이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는 대리인이 작성하고 성명과 연락처를 적습니다.
- 진화 및 구술의 방법으로 신고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즉시 신고서의 해당란에 그 내용을 적어서 보관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신고접수자가 대리 날인할 수 있습니다.
- 여러 마리의 출생 등 신고를 할 경우 해당 신고 항목을 표시한 별도의 서식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의 작성 참고사항  
가. 개체식별번호  
- 12자리(농장식별번호 6자리 + 농장별 개체관리번호 6자리)  
나. 중돈의 종류 구분  
- 대요크셔(Large Yorkshire), 램드레이스(Landrace), 듀록(Duroc), 햄프셔(Hampshire), 웰시(Welsh), 피아트레인(Pietrain), 스폿타이드(Spotted), 버크셔(Berkshire), 재래종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가족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신설 2019. 12. 31.>

## [ ] 담, [ ] 오리 [ ] 수입 신고서 [ ] 새알 [ ] 수출

※ 뒤쪽의 신고서 작성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측시
------	------	-----	------	----

농장 경영자 등 정보	① 성명	②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③ 법인 명칭	(가축거래상인 고유번호)	
	④ 주소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공통 신고 사항	⑤ 농장식별번호		
가족 사육·생 사육·생 정보	⑥ 사육 주소		
	⑦ 사육 개시 연월일		
	⑧ 관리자 성명		⑨ 관리자 생년월일
	⑩ 관리자 주소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수입 수출 신고	⑩ 수입 수출 연월일: * 수입·수출 원산지(국가명): * 수입·수출 회사명: ⑪ 마릿수(새알 개수):	⑭ 담·오리·새알의 종류(1. 순계, 2. 원종계, 3. 종계, 4. 원종오리, 5. 종오리, 6. 기타) 신란계: [ ] 하이라인 백색, [ ] 하이라인 갈색, [ ] 이사브라온, [ ] 바브룩, [ ] 낙치 백색, [ ] 데칼브와렌, [ ] 하이섹스갈색, [ ] 로만백색, [ ] 로만갈색, [ ] 데칼브브라운, [ ] 노반스브라운, [ ] 브라온닉 육용계: [ ] 하이브로, [ ] 인디안리버, [ ] 허버드, [ ] 아바에이카, [ ] 로스, [ ] 코브, [ ] 로만, [ ] 에이버안 오리(매린종): [ ] 스타 53, [ ] SM 3, ST 5 ⑮ 감역시행장 지정 여부: ⑯ 선하증권번호(B/L):
----------------	--	--

가족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신 고 인	년	월	일
대리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리 신고인 연락처			(서명 또는 인)

종축동수출입신고기관의 장 귀하

(뒤쪽)

### 유의사항

- ①~⑩란은 공통신고사항으로 모든 신고 시에 작성하며, 담·오리 또는 새알의 농장경영자, 관리자에 대한 기초 정보를 기재합니다.
- 수입·수출 신고는 ①~⑩란에 해당 내용을 기재합니다. 항목별 기재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수입·수출: 수입·수출 연월일, 수입·수출 원산지(국가명)와 수입·수출 회사명  
나. 마릿수(새알 개수): 수입·수출신고 대상이 되는 담·오리의 마릿수 또는 새알의 개수  
다. 암수 구분: 기묘한 경우에는 구분하여 작성하고,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암'에 총 마릿수 기재  
라. 담·오리·새알의 종류: 순계, 원종계, 종계, 원종오리, 종오리 중 해당되는 담·오리·새알의 종류에 ○ 표시합니다.  
해당되는 담·오리·새알의 종류가 없는 경우에는 기묘에 ○ 표시합니다.  
\*신란계: 하이라인 백색, 하이라인 갈색, 이사브라온, 바브룩, 낙치 백색, 데칼브와렌, 하이섹스 갈색, 로만백색, 데칼브브라운, 노반스브라운, 브라온닉  
\*육용계: 하이브로, 인디안리버, 허버드, 아바에이카, 로스, 코브, 로만, 에이버안  
\*오 리(매린종): 스타 53, SM 3, ST 5  
마. 감역시행장 지정 여부: ⑤ 농장식별번호를 부여받은 가축사육시설이 감역시행장으로 지정된 경우에 '야'로 표시합니다.  
바. 선하증권번호(B/L): 수입 기묘에 대한 선하증권번호를 기입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가족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3서식] <개정 2022. 1. 25.>

[ ] 닭, [ ] 오리, [ ] 양도, 양수, 이동 신고서  
 [ ] 새알, [ ] 입란

※ 뒤쪽의 신고서 작성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왼쪽)

신고번호	신고일	발급일	처리인	주소
------	-----	-----	-----	----

농장 형태 등 정보	① 성명 ③ 법인 명칭 ⑤ 주소 (전화번호: )	② 생산월일(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④ 가족거래상인 고유번호 (전화번호: )
------------------	-------------------------------------	--

공통 신고 사항	⑥ 동장식별번호 ⑧ 사육 주소 ⑩ 관리자 주소 (전화번호: )	⑦ 사육 개시 연월일 ⑪ 관리자 생년월일 (전화번호: )
----------------	---	---------------------------------------

목적	상계		중계		원종계	
	수량	미릿수	수량	미릿수	수량	미릿수
산란계	수량	미릿수	수량	미릿수	수량	미릿수
	1일 계란 생산량 (월말 기준)	수량	수량	수량	수량	미릿수
도종닭	수량	미릿수	수량	미릿수	수량	미릿수
	수량	미릿수	수량	미릿수	수량	미릿수
오리	수량	미릿수	수량	미릿수	수량	미릿수
	수량	미릿수	수량	미릿수	수량	미릿수

⑬ 닭, 오리 미릿수 또는 새알의 개수(양, 수 구분, 새알은 알의 종류)  
 1. 총 미릿수/개수: 미릿/개, (양: 미릿, 수: 미리)  
 2. 알의 종류: 새알, 백새미, 울알

⑭ 닭, 오리, 새알의 종류

산란계	[ ] 하이라인백색	[ ] 하이라인갈색	[ ] 이사브라운	[ ] 비브론	[ ] 니치백색
	[ ] 데칼브라에	[ ] 하이센스갈색	[ ] 브라운	[ ] 브라운	[ ] 브라운갈색
	[ ] 데칼브라운	[ ] 브라운스브라운	[ ] 브라운	[ ] 브라운	[ ] 브라운
육계	[ ] 하이브로	[ ] 인디안인버	[ ] 하바드	[ ] 아메이카	[ ] 로스
	[ ] 코브	[ ] 토만	[ ] 에이비안	[ ] 기타	
도종닭	[ ] 하림	[ ] 소래	[ ] 유리맛닭	[ ] 기타	
오리	[ ] 스타 53	[ ] ISM 3	[ ] ST 5	[ ] 기타	

⑮ 양도(반입)·양수(반출)·인란, 여월일  
 ⑯ 동장식별번호(또는 가족거래상인 고유번호)  
 ⑰ 양도(반입)·양수(반출)·생명상호  
 ⑱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⑲ 주소 (전화번호: )

가족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호의3제2항에 따라 작위·양도 신고한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리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리 신고인 연락처

축산물품질평가원장 귀하  
 210mmx297mm(백상지(80g/㎡) 또는 종질지(80g/㎡))

(뒤쪽)

유의 사항

- ①~⑬란은 공통신고사항으로 모든 신고 시에 작성하며, 가금의 농장경영자, 관리자에 대한 기초정보를 적습니다.
- 사육한신고는 가금의 종류를 육계, 산란계, 도종닭, 오리로 구분하여 기준일(예월 말일)의 주령별 사육 미릿수를 적습니다.

육계, 도종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기를 이용할 목적으로 사육하는 닭 및 그 닭의 종계·원종계·순계</li> </ul>
산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식용계란(판매를 위한 식용 유정란도 포함)을 생산하기 위해 사육하는 닭 및 그 닭의 종계·원종계</li> </ul>
오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기를 이용할 목적으로 사육하는 오리 및 그 오리의 종오리·원종오리</li> </ul>

- 양도·양수·이동·인란·신고는 ⑬~⑯란에 해당 내용을 적습니다. 항목별 기재내용은 아래의 같습니다.  
 가. 양도(반출)·양수(반입)·인란 구분: 해당되는 신고항목의 [ ]에 √를 표시합니다.  
 나. 양도·양수하는 닭·오리의 미릿수 또는 인란하는 새알의 개수를 적습니다(도종출하 신고는 도종신청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으며, 새알의 이동신고는 부화장 입란신고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 양수 구분: 양도·양수하는 닭·오리의 양수를 알 수 있을 경우에 적습니다.  
 라. 새알의 경우 해당되는 알의 종류에 ○ 표시합니다.  
 마. 닭·오리·새알의 종류: 해당하는 품종에 √를 표시하고, 해당하는 품종이 없는 경우에는 기타에 √를 표시합니다.  
 바. 연월일: 양도·양수·인란한 연월일자를 적습니다.  
 사. 동장식별번호(또는 가족거래상인 고유번호): 닭·오리를 양도하거나 양수받은 가족사육시설의 동장식별번호(또는 가족거래상인 고유번호)를 적고 새알은 새알을 생산한 동장식별번호를 적습니다.  
 아. 양도자·양수자: 동장식별번호를 부여받은 가족사육시설의 농장경영자 및 농장명, 가족거래상인의 성명을 적습니다.  
 자. 생년월일: 거래 농장경영자의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를 알 수 있는 경우 적습니다.  
 차. 사육지 주소: 거래 농장식별번호의 가족사육시설의 주소, 가족거래상인의 주소를 적습니다.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 돼지 이력번호 발급신청서

※ 아래 신청서 작성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비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대표자 또는 명칭)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도축 의뢰인	성명(대표자 또는 상호)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출하 농장정보	농장명	성명(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농장식별번호		
	주소	GPS좌표 ( )		
출하 돼지정보	출하 두수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장 귀하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신청서는 도축 출하시 농장식별번호 또는 도축 의뢰인별 단위로 작성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 <신설 2019. 12. 31.>

### 닭, 오리 이력번호 발급신청서

※ 아래 신청서 작성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비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대표자 또는 명칭)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도축 의뢰인	성명(대표자 또는 상호)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출하 농장정보	농장명	농장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농장식별번호		
	주소	연락처		
신청 내용	가금의 종류	품종	성별	일령
				평균체중
				마릿수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장 귀하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신청서는 도축 출하시 농장식별번호 또는 도축 의뢰인별 단위로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가족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3서식] <개정 2022. 1. 25.>

### 계란 이력번호 발급신청서

\* 아래 신청서 작성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비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	-----	-----	------	----

신청인	성명(대표자 또는 명칭)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신별 포장 의뢰인	성명(대표자 또는 상호)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주소	인허가번호		
	인증	연락처(휴대전화)		
출하 농장정보	농장명	농장경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농장식별번호		
	시육방식	시육과정 중 동물중의약품 등 사용 여부		
	주소	(GPS좌표: )		
인증	연락처			

계란 정보	용도	계란 검대기 표시정보	산란 주령 방법	모관 방법	유통 기한	유관	특란	대란	중란	소란	계

가족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제 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신장인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축산물품질평가원장 귀하

유의사항

신청서는 신별 포장의뢰 농장 식별번호 또는 신별 포장 의뢰인별 단위로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가족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6.1.6.>

## 수입산이력축산물 [ ]판매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 ]는 해당란에 √ 표시하며, 비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농장시별번호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영업의 종류 및 허가(신고)번호				
이력번호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변경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p>가족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신고사항 변경을 신고합니다.</p>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귀하	신고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 가족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9. 12. 31.>

## 국내산이력축산물의 거래 신고서(소·돼지·닭·오리 고기)

\* 아래 및 뒤쪽의 신고서 작성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비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양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법인명)	대표자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연락처		
	영업허가(신고)번호	주소		
(출고·입고)처	영업장의 명칭(상호)			
거래처	성명(법인명)	대표자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연락처		
	영업허가(신고)번호	주소		
거래내역	거래일	도축일	가공일	
	이력번호	도축번호	원료 또는 부유명	
	수량(BOX, 미리)	무게(kg, t)		

가족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내산이력 축산물의 거래내역을 신고합니다.

### 축산물품질평가원장 귀하

유의사항

1. (출고·입고)처란은 판매·반출신고의 경우에는 "출고"에, 매입·반입신고의 경우에는 "입고"에 "O"표를 하고, 국내산이력축산물이 포장처리 또는 보관되어 있는 창고의 영업장 명칭(상호) 및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 국내산이력축산물 거래내역 신고서는 거래차별로 작성합니다.
3. 거래내역이 다수인 경우에는 뒤쪽의 거래내역 목록을 작성합니다.
4. 이력번호는 거래 당시 국내산이력축산물에 표시된 이력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묶음번호를 적는 경우에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묶음번호 구성내역서를 첨부합니다.
5. 원료 또는 부유명은 거래한 국내산이력축산물 또는 거래내역서 등에 적힌 내용을 기준으로 부유명(예: 갈비, 목살, 제4위, 무뼈 등)로 최대한 세부적으로 적습니다.
6. 수량 및 무게는 거래한 물량을 박스 수량과 무게(kg 또는 t(톤)) 단위로 적습니다. 다만, 도체 지육으로 거래하는 경우 도축일, 가공일, 도축번호를 적고, 수량에 두수(마리)와 무게(kg)로 적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9. 12. 31.>

### 이력관리대상축산물 포장처리 신고서

※ 작성 시 아래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체명		전화번호		주소	
① 포장 처리일	② 이력(류명) 번호	③ 원료 또는 무위명	④ 무게 (kg, l)	⑤ 매입·반입처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상호 전화번호	⑥ 의뢰업체명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전화번호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포장처리 내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축산물품질평가원장, 귀하

#### 유의사항

- 포장 처리일은 매입 또는 반입된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포장 처리한 날짜를 적습니다.
- 이력번호는 매입 당시 해당 이력관리대상축산물에 표시된 이력번호 12자리를 적습니다. 다만, 류음번호를 적은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류음번호 구성내역서를 작성하고 보관(이력관리시스템 전신고 포함)해야 합니다.
- 원료 또는 무위명은 해당 식품포장처리업체에서 매입한 도체 또는 부분육의 명칭을 적습니다.
- 무게는 해당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무게(kg 또는 l)를 적습니다.
- 매입·반입처는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구입한 업체의 상호,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및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도축장에서 직접 매입·반입한 경우에는 도축장의 상호,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및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의뢰업체명은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등에 의하여 의뢰되어 포장처리된 이력관리대상축산물에 대하여 의뢰업체의 상호,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및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7. 6. 28.>

### [ ] 가축및축산물식별대상 기록사항 [ ] 변경신고서 [ ] 수입유통식별대상 [ ] 수정요구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성명(법인명) <input type="checkbox"/> 주민등록번호(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 수입유통식별대상은 생년월일로 기재				
신고인	농장식별번호	전화번호		
주소 <input type="checkbox"/> (전화번호)				
영업의 종류 및 허가(신고)번호				
개체식별번호 또는 이력번호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반경(수정)사항				
구분	반경(수정) 전	반경(수정) 후		
반경(수정) 사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 따라 ( [ ] 가축및축산물식별대상, [ ] 수입유통식별대상)의 기록사항 변경 또는 수정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축산물품질평가원장  
충돈등록기관의 장 귀하

#### 유의사항

-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의 기록사항 중 돼지의 사육현황에 관한 기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이 서식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구버서유 1. 변경신고: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수정요구: 기록사항의 누락 또는 오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절지 80g/㎡)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제 호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  
조사공무원(조사원)증**

사 진

3cm×4cm

(모자를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성 명**  
**기 관 명**

60mm×90mm[보존용지(1층) 120g/㎡]

(색상: 연노란색)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삭제 <2017. 6. 28.>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삭제 <2017. 6. 28.>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농장식별번호 발급증**

제 호

농장식별번호:  
가축사육시설 명칭:  
가축사육시설 소재지:  
가축의 종류:  
농장경영자 성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축사육시설에 대한 농장식별번호를 부여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축산물품질평가원장**

직인

※ 농장식별번호를 통보받은 농장경영자는 사육 가축의 출생, 양수·양도·이  
동, 폐사, 변경신고, 돼지의 농장식별번호 표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당 농장식별번호를 숙지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1층 120g/㎡]

(뒤쪽)

**조사공무원(조사원)증**

소속/지급:  
장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  
제 조사공무원 또는 조사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장 명**

직인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임대할 수 없습니다.
2. 이 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 축산물이력제 업무편람

돼지



- 발 행 인 : 박 병 흥 원장
- 편 집 : 소비정보본부 이력관리처
- 발 행 일 : 2023년 7월
- 발 행 처 : 축산물품질평가원  
(30100)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길 21(아름동)  
Tel : 044-410-7000  
Fax : 044-410-7176
- 인 쇄 처 : (주)화신문화

\* 이 책에 실린 내용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소비정보본부  
이력관리처(044) 410-716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